20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동산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회의일시 : 2016. 4. 14(목) 13: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참석위원 : 신승운(위원장), 곽노봉, 김명규,

오용섭, 유창종, 이원복, 진화수, 최응천

목 차

【심의사항】 9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서경우 초상 및 함	공개
2	서문중 초상 및 함	〃
3	은제도금화형탁잔	〃
4	주역참동계	〃
5	조선왕조의궤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국외반출>	
6	국보 제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국외반출	공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현상변경>	
1	보물 제1783호 '청자상감국화모란유로죽문매병 및 죽찰' 보존처리 현상변경	공개
2	보물 제1784호 '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 및 죽찰' 보존처리 현상변경	〃
3	국보 제303호 '승정원일기' 보존처리 현상변경	〃
【검토사항】 10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1	고려 수월관음보살도	공개
2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
3	서울 청진1구 출토 백자항아리	〃
4	선우추·김생 서법첩	〃
5	황제지보	〃
6	유서지보	〃
7	준명지보	〃
8	임계기사	〃
9	대명률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명칭변경>	
1	국보 제233호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 지정 명칭·번호 변경	공개
【보고사항】 3건		
1	고려금속활자 지정조사 중간보고	공개
2	'동산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현상변경 관련 제도개선 보고	〃
3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현상변경 심의 소위원회 구성(안) 보고	〃

심 의 사 항

【심의사항】

Ⅰ.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16-02-001

1. 서경우 초상 및 함(徐景雨 肖像 및 函)

가. 심의사항

"서경우 초상 및 함"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서경우 초상 및 함'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4.5.16)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1.18)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6년 제1차 회의(2.4)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6.2.24~'16.3.24)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서경우 초상 및 함(徐景雨 肖像 및 函)
○ 소유자(관리자): 서**
○ 소 재 지: 경기도 포천시
○ 수　　량: 1건 2점
○ 규격(cm): 175.4×98.8
○ 재　　질: 비단
○ 제작연대: 17세기 초
○ 제 작 자: 미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문중에서 잘 보관했기에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조선 중기 17세기 초 시대에 따른 화풍상의 특징을 功臣像과 평상복인 時服像 양면에서 각기 잘 반영함. 사실적인 描寫와 設彩 등 이를 제작한 화가의 기량에 의해 傳神에 성공적으로 사료됨.

ㅇ

<서경우 초상>은 오늘날까지 원형대로 잘 보존된 17세기 초반 공신상 가운데에서도 가품(佳品)에 속하는 귀중한 초상화로서 조선 중기 초상화의 우수성과 수준을 잘 반영하는 우수한 작품이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함은 비록 후대에 제작된 것이지만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서 역사성을 일정부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ㅇ

<서경우 초상>은 지금까지 알려진 다른 익사공신상과 표현양식이 매우 유사하다. 18세기 이후에 볼 수 있는 명암법은 전혀 보이지 않아 후대에 다시 그린 모사본이라 할 만한 단서는 찾기 어렵고,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1613년 당시에 그린 익사공신화상일 가능성이 매우 크며,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닌 초상화로 판단된다.

<서경우 초상>과 함께 전하는 함은 공신화상을 제작할 때 함께 만든 것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제작기술이 뛰어나 함께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ㅇ 내용 및 특징

기존에 알려진 조선시대 초상화 중에서 대구 서씨 문중에서 보존한 徐景雨 功臣圖像과 徐文重 時服像 세대를 달리한 두 影幀은 조선시대 초상의 위상을 대변

하는 점에서 재론의 여지가 없는 秀作들로 양호한 보존상태, 작품성, 화풍상 선명한 시대성, 장황에 손을 대긴 했으나 원상태를 유지한 점, 영정함까지 갖추고 있음.

□

ㅇ 현　　상

조선 중기의 문신 서경우(徐景雨: 1573-1645)의 초상은 현재까지 알려진 광해군대의 공신초상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높은 예술성과 함께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영정함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

ㅇ 내용 및 특징

조선 중기의 문신 서경우(徐景雨: 1573-1645)의 본관은 대구(大邱, 達城), 자는 시백(施伯), 호는 만사(晩沙), 아버지는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를 지낸 약봉(藥峯) 서성(徐渻)이다. 1612년(광해군 4)에 정주목사(定州牧使)가 되었으나 다음해에 아버지가 유배당하자 벼슬을 버리고 10년간 은퇴했다.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다시 등용되어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강화도로 인조를 호종하였고 대사간, 대사헌, 이조참판, 경기도관찰사, 도승지 등을 역임했다. 1643년에는 형조판서로 성절 겸 진하사(聖節兼進賀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고 이듬해 우의정이 되었고 기로소(耆老所)에도 들어갔으며 그 이듬해 은퇴하여 판중추부사의 한직을 맡았다.

서경우 초상은 1613년(광해군 5년)에 책록한 위성공신(衛聖功臣), 익사공신(翼社功臣), 형난공신(亨難功臣)의 공신초상과 매우 유사하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광해군(光海君)을 호종(扈從)한 공로로 책록한 위성공신상으로는 보물 제1490호 이성윤(李誠胤: 1570-1620) 초상화, 임해군(臨海君) 옥사를 다스린 익사공신상으로는 보물 제1502호 윤효전(尹孝全: 1563-1619) 초상화와 보물 제1503호 임장(任章: 1568-1619) 초상화, 김직재(金直哉)의 역모를 평정한 형난공신상으로 보물 1479호인 유숙(柳潚: 1564-1636) 초상화가 남아있어 비교가 된다.

오사모에 흑색 단령을 입은 좌안 7분면의 전신교의좌상으로서 쌍학 흉배를 하고 있다. 화면 속 인물의 안정적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양 어깨의 형태나 경사각도를 약간 과장하여 처리했다. 사모의 모정이 평평하고 양각은 넓고 짧으면서 둥근 17세기 초의 모제(帽制)를 반영한다. 사모는 굵고 검은 선으로 윤곽을 규정하고, 그 안에 엷은 먹으로 운문(雲紋)을 그려 넣었다. 안색은 옅고 밝은 살빛을 주조로 하고 이목구비를 약간 짙은 갈색선으로 하였다. 17세기 전기의 공신상에서 익히 보듯이 양 미간에 몇 개의 주름 선을 집어넣어 생각에 잠긴 듯한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며 뺨에는 약간의 홍조가 있다. 눈썹은 털의 특징을 잘 살려 그렸고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는 얼굴모습을 통해 40대 장년이었던 광해군대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선묘로 이목구비를 그렸고 눈썹과 수염의 검은 부

분은 담묵처리를 한 후 털 올을 그렸는데 전반적으로 세밀한 묘사와 표현이 돋보인다. 코는 옆에서 본 형태이고 팔자주름 부위에도 약간의 선염기를 넣었다.

단령은 검은색 운문단으로 채색을 두텁게 하여 의습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주름들을 간략하게 표시하여 몸체의 굴곡을 드러내지 않았다. 단령의 틈새로 녹색 내공(內工)과 청색 첩리(帖裏)가 보이는데, 내공과 첩리의 문양도 섬세하게 그려 넣었다. 한편 흉배의 묘사는 매우 화려하다. 수놓은 학의 깃털을 세밀하게 표현하였고 모란과 구름 묘사 역시 섬세하고 화려하다. 바깥 양쪽으로 뻗치는 의자 손잡이의 모습은 17세기 초라는 시대성을 보여주는 특징이다. 바닥에는 화려한 문양의 채전이 깔려있으며 족좌대 위에는 팔자형의 흑피화(黑皮靴)가 보인다. 화면 우측 상단의 "우의정만사서공화상(右議政晩沙徐公畵像)"은 후대의 후손이 써 넣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 유소(流蘇)는 없다. 목재 영정함은 후대인 조선 후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

ㅇ 조사내용

서경우(徐景雨, 1573~1645)는 본관이 달성(達城). 자는 시백(施伯), 호는 만사(晩沙)이며 아버지는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서성(徐渻)이다. 1603년(선조 36)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1612년(광해군 4) 정주목사(定州牧使)가 되었고, 다음해 3월에 익사공신(翼社功臣)에 녹훈되었다. 같은 해 5월 이후 아버지 서성이 유배당하자 벼슬을 버리고 10년간 은거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재등용 되어 승지 등을 거쳐 대사간을 지냈다. 1643년 형조판서로서 성절겸진하사(聖節兼進賀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우의정에 승진하였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서경우는 1613년(광해군 5) 3월 12일 익사공신에 녹훈되었다. 서경우가 익사공신이라는 사실은 그동안 그를 소개하는 글에서 거론되지 못했다. 초상화를 보관해 오던 후손들도 알지 못했다. 익사공신인 성시헌(成時憲)이 받은 <익사공신교서>을 통해 서경우가 3등에 녹훈된 28명 안에 포함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광해군은 1609년에 있었던 임해군(臨海君)의 역모를 알리고 옥사를 국문한 신하들을 1613년 익사공신에 녹훈하였다. 『광해군일기』 5년(1613) 3월 12일에는 익사공신을 녹훈하던 날 백악산 아래에서 회맹제를 지냈고, 인정전으로 이동하여 공신교서축과 화상, 은단(銀段), 마(馬)·노비(奴婢), 토전(土田)을 각기 차등있게 내려 주었다고 되어 있다.

<서경우 초상>은 1613년 그의 나이 41세 때 익사공신에 녹훈되어 받은 것으로 추측되며, 당시에 내려준 원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광해군이 1613년에 내린 위성·익사·정운·형난공신은 1623년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출되자 모두 삭훈되었고, 공신교서과 초상화도 국가에서 수거하여 소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의 공신교서와 공신화상이 후손가에 전해지기도 했다. <서경우 영정>도 그런 경

우에 속한다.

서경우의 공신화상은 오사모에 단령을 입고 의자에 앉은 전신의좌상이다. 얼굴은 반측면에 가까운 좌안 8분면 정도로 향했다.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는'右議政晩沙徐公畵像'이라 적혀 있다. 이 글씨는 후대에 후손이 쓴 것으로 추측된다. 흉배는 매우 섬세하게 묘사하였는데, 2품에 해당하는 운안흉배(雲雁胸背)에 삽금대(鈒金帶)를 두르고 있다.

이 초상에서 볼 수 있는 주요 특징은 사모의 높이가 낮고, 단령의 옆트임이 직선으로 떨어진 점, 단령의 묘사에 있어 공수자세를 취한 소매로부터 무릎 부분에 이르기까지 돌출감이 전혀 없이 평면으로 처리된 점, 옷의 윤곽과 주름은 선묘로 나타내었지만 그 사이를 매운 문양은 연결된 무늬로 처리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선조 대의 공신상과 다른 광해군대 공신상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함께 익사공신으로 녹훈된 <전 윤효전(尹孝全, 1563~1619) 초상>, <임장 초상>, 국립중앙박물관의 <심희수(沈喜壽) 초상>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얼굴 묘사는 갈색의 선묘로 얼굴윤곽과 귀, 코, 눈과 코 주변의 주름을 그린 뒤 옅은 살색으로 채색하였다. 명암이나 고저의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특히 눈동자인 동공은 정 가운데인 정면을, 눈위 위쪽 윤곽은 갈색선묘 위에 먹으로 한 번 더 그었고, 눈 아래 윤곽에는 속눈썹을 그려넣었다. 코는 측면으로 그려져 있어 불합리한 구성을 보이지만, 이러한 요소는 17세기 전반기 초상화가 지닌 시대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장황부분에서 아래쪽 녹색계통의 하회장이 위쪽 상회장 길이의 1/2정도에 해당하며, 문양도 규칙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러한 특색은 위성공신 <이성윤 초상>, 익사공신 <전 윤효전 초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경우 초상>은 지금까지 알려진 다른 익사공신상과 표현양식이 매우 유사하다. 18세기 이후에 볼 수 있는 명암법은 전혀 보이지 않아 후대에 다시 그린 모사본이라 할 만한 단서는 찾기 어렵고,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1613년 당시에 그린 익사공신화상일 가능성이 매우 크며,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닌 초상화로 판단된다.

<서경우 초상>과 함께 전하는 함은 공신화상을 제작할 때 함께 만든 것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제작기술이 뛰어나 함께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안건번호 동산 2016-02-002

2. 서문중 초상 및 함(徐文重 肖像 및 函)

가. 심의사항

"서문중 초상 및 함"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서문중 초상 및 함'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4.5.16)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1.18)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6년 제1차 회의(2.4)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6.2.24~'16.3.24)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서문중 초상 및 함(徐文重 肖像 및 函)
○ 소유자(관리자): 서**
○ 소 재 지: 경기도 포천시
○ 수　　량: 1건 2점
○ 규격(cm): 155.0×103.2
○ 재　　질: 비단
○ 제작연대: 18세기 초
○ 제 작 자: 미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문중에서 잘 보관했기에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조선후기로 넘어가는 18세기 초 시대에 따른 화풍상의 특징을 功臣像과 평상복인 時服像 양면에서 각기 잘 반영함. 사실적인 描寫와 設彩 등 이를 제작한 화가의 기량에 의해 傳神에 성공적으로 사료됨.

ㅇ

<서문중 초상>은 조선시대 시복본 전신좌상 가운데 높은 예술성을 잘 보여주는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된다. 서경우 초상과 서문중 초상은 시대성과 예술성을 고루 갖춘 작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비록 친 손자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인 조부와 손자의 초상이라는 의미도 크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함은 비록 후대에 제작된 것이지만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서 역사성을 일정부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ㅇ

<서문중 초상>은 단령의 윤곽과 주름은 간결하게 생략하여 큰 변화만을 반영하였다. 또한 단령의 안쪽에 드러난 직령에는 섬세한 문양들이 그려져 있다. 조선 중기의 초상화가 극복하지 못한 시대적인 한계를 보이면서도 새로운 화법이 반영된 조선후기 초상화의 과도기적인 현상을 보이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런 점에서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ㅇ 내용 및 특징

기존에 알려진 조선시대 초상화 중에서 대구 서씨 문중에서 보존한 徐景雨 功臣圖像과 徐文重 時服像 세대를 달리한 두 影幀은 조선시대 초상의 위상을 대변하는 점에서 재론의 여지가 없는 秀作들로 양호한 보존상태, 작품성, 화풍상 선명한 시대성, 장황에 손을 대긴 했으나 원상태를 유지한 점, 영정함까지 갖추고 있음.

□

ㅇ 현　　상

조선 후기의 문신 서문중(徐文重: 1634-1709)의 초상은 시복본 전신좌상으로서

높은 예술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높은 예술성과 함께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영정함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

ㅇ 내용 및 특징

서문중(徐文重: 1634-1709)의 본관은 대구, 자는 도윤(道潤), 호는 몽어정(夢漁亭)이다. 약봉(藥峯) 서성(徐渻)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제조(提調) 경주(景霌)이고, 아버지는 남원부사 정리(貞履)이다. 어머니는 판서 이시발(李時發)의 딸이다. 당숙인 함경도관찰사 원리(元履)에게 입양되었다. 서원리는 서경우의 아들이다.

1657년(효종 8) 생원시에 합격했으며, 1673년(현종 14)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동몽교관에 임명되었다. 그 뒤 계속 승진해 청도군수·이천부사·상주목사를 역임하고, 1680년(숙종 6) 정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 당상관에 올랐다. 예조참판·도승지·좌윤·공조참판, 공조판서, 훈련대장·형조판서·병조판서, 우의정 등을 역임하고 세 번에 걸쳐 영의정에 올랐다. 정치적으로 소론(少論) 입장이었고, 군사제도와 그 운영에 밝았으며 기근구제 사업에 많은 구실을 하였다. 『조야기문(朝野記聞)』·『상제례가범(喪祭禮家範)』·『병가승산(兵家勝算)』 등의 많은 저서를 남겼다. 시호는 공숙(恭肅)이다.

서문중 초상은 오사모에 담홍색 시복을 착용하고 삽은대를 두른 전신교의좌상으로 교의에는 표범가죽이 덮여 있고 족좌대에는 민돗자리가 깔려있다. 얼굴과 신체의 비례가 적절하게 조화되어 있고 인물의 개성과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 우향 7분면의 얼굴은 코와 눈두덩 주위의 움푹 들어간 부분, 입 주위 등의 주름을 뚜렷이 지시한 후 음영을 넣어 묘사하였다. 특히 풍성한 수염의 치밀하고도 섬세한 묘사가 돋보인다. 오사모의 각(角)은 왼쪽을 조금 길게 하여 인물의 얼굴과 시선의 방향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단령은 깊게 파이지 않았고 옷 주름은 비수(肥瘦)의 변화가 거의 없는 분홍색의 가는 선으로 다소 경직되게 그렸으며 옷소매도 대칭적 느낌을 준다. 알맞은 신체 비례와 비교적 사실적인 옷 주름선, 상과 교의, 족좌대의 합리적 연관성 등은 18세기 초 이후의 양식이다. 옷 주름의 고식적 표현 등에서 옷소매 끝의 좁고 긴 푸른 안감의 노출은 18세기 초의 <남구만 초상>에서도 보이는 특징인데 엄숙하고 고식적 느낌을 준다.

족좌대의 모습은 정면의 모습과 측면의 모습이 혼재된 느낌이고, 돗자리 윗부분은 역원근법으로 뒤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이다. 전반적으로 표피(豹皮)를 제외하면 흑색, 담홍색, 하늘색, 흰색만을 사용하였고 옷 주름이나 기타 세부 표현을 제한하여 절제미를 보여준다. 이에 비해 표피와 삽금대는 세밀하고 정교하게 표현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주었다. 화면 상단 우측의 글씨 “영의정몽어서공화상(領議政夢漁徐公畵像)”은 조선 후기에 후손이 써 넣은 것으로 추정되며, 영정함은 후대인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

ㅇ 조사내용

서문중(1634~1709)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대구(大邱). 자는 도윤(道潤), 호는 몽어정(夢漁亭)이다. 판서 서성(徐渻)의 증손이다. 아버지는 남원부사 서정리(徐貞履), 어머니는 판서 이사발(李時發)의 딸이다. 1657년(효종 8)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1673년(현종 14)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동몽교관에 임명되었다. 그 뒤 상주목사 등을 지냈으며, 1680년(숙종 6) 정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당상관에 올랐다.

1683년 호조참판을 거쳐 경상도관찰사가 되었다. 그 뒤에도 판서를 비롯한 여러 요직을 거쳤으며, 1689년 기사환국으로 우참찬으로 재직하다가 중앙 정계에서 밀려났다. 1698년에는 우의정에 올랐으며, 1699년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이 되었고, 정치적으로 소론(少論)에 속했다. 군사제도와 기근구제 등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시호는 공숙(恭肅)이다.

<서문중 초상>은 오사모에 분홍색 시복(時服)을 입고 교의좌(交椅座)에 앉은 전신의좌상(全身椅座像)이다. 얼굴은 좌안팔분면 정도로 약간 오른쪽으로 돌렸으나 몸체는 거의 정면을 향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領議政夢漁徐公畵像”이라 적혀 있다. 그림에 적힌 ‘영의정몽어서공화상’을 고려하면, 그가 66세로 영의정에 오른 1699년에 그린 것이 된다. 영의정은 정1품이므로 서대를 매고 있다. 교의좌에는 표범 가죽을 걸쳤다. 족좌대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의 사선으로 내려오는 사선투시를 하고 있다.

사모(紗帽)는 모정이 높고, 양각(兩脚)에 매우 세밀한 문양이 들어가 있다. 안면부는 사실적인 표현을 하고자 노력을 들였으나 전체적인 묘사의 일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상투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개성미 있고, 인상적인 표정 묘사가 잘 살아나 있다. 눈 부분은 눈매의 방향이나 각도, 눈 주위의 오목하게 들어가면서도 주름이 몰려 있는 부분, 흰 눈썹과 길게 자라 삐쳐나온 눈썹 등은 매우 사실적인 묘사력을 보여주고 있다. 코는 콧구멍이 하나만 보이는 측면을 그리고자 했으나 콧등의 두께감을 나타내기 위해 콧등에 두 개의 선이 들어가 있다. 수염 부분은 정리되지 않은 검은 수염과 흰 수염의 결이 잘 드러나 있고, 가닥을 매우 자세하고 풍성하게 그리고자 노력했다.

이마의 주름과 눈 주변, 그리고 코 좌우변의 법령 부분의 주름에는 선묘 옆에 미세한 명암이 약간 들어가 있다. 이러한 특징은 18세기 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선묘와 음영을 함께 사용한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생각된다. 이런 특징과 부합하는 초상으로는 1690년 경에 그린 <박세당 초상화>가 있다.

단령의 윤곽과 주름은 간결하게 생략하여 큰 변화만을 반영하였다. 또한 단령의 안쪽에 드러난 직령에는 섬세한 문양들이 그려져 있다. 조선중기의 초상화가 극복하지 못한 시대적인 한계를 보이면서도 새로운 화법이 반영된 조선후기 초

상화의 과도기적인 현상을 보이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런 점에서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안건번호 동산 2016-02-003

3. 은제도금화형탁잔(銀製鍍金花形托盞)

가. 심의사항

"은제도금화형탁잔"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 기관 업무협의(8.23)를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3.16)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6년 제1차 회의(2.4)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6.2.24~'16.3.24)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은제도금화형탁잔(銀製鍍金花形托盞)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 재 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1조(잔과 잔 받침)
○ 규격(cm): 잔높이 6.0, 입지름 8.6, 굽높이 1.3, 굽지름 3.6
잔탁 높이 6.8, 지름 17.0 굽높이 2.9, 굽지름 10.3,
잔좌 높이 3.4. 잔좌지름 4.6
○ 재　　질: 은제도금
○ 제작연대: 고려 12세기
○ 제 작 자: 미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탁잔으로, 잔에 잔 받침이 같이 한쌍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잔 받침은 높은 굽이 달리고 굽 위의 넓은 전에는 꽃송이 무늬가 선으로 새겨져

있으며 가운데에는 괴임이 높게 솟아 있다. 이 괴임 부분에는 꽃송이 무늬를 도드라지게 압출(押出)시켜 입체적으로 빽빽하게 장식하여 음각으로 새겨진 다른 장식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게 하였다. 괴임 위에 받쳐진 잔은 6잎의 꽃모양으로 면을 구획하여 선조로 연당초문(蓮唐草文)을 음각하였다. 안정된 비례와 단정한 형태를 지닌 은제 탁잔의 세부에는 압출, 음각 등의 다양한 세공 기술을 발휘하여 시문하였고 전면에 도금을 입혀 더욱 장식성이 돋보인다. 고려 은제탁잔 가운데 가장 뛰어난 걸작으로서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

ㅇ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은제도금잔탁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조형성과 제작수법, 독창성이 뛰어나 고려 금속공예를 대표할 만한 유물로 다음과 같이 몇가지 공예사적인 의의가 있다.

첫째, 조형적으로는 송, 요 기형과 같은 형태이나 수파형 연판문 변식은 고려 장인의 창안이라는 점, 둘째, 기법적으로는 고려 금공의 표식인 고육각의 타출기법과 조각기법으로 문양을 섬세하고 생동감 있게 시문한 점 등이 돋보인다. 특히 높은 잔좌에 문양을 [Ω]꼴로 높게 타출한 예는 매우 드문 경우이다,

셋째는 디아모레뮤지움 소장 은제도금잔탁이나 경북대박물관 소장 동제타출잔탁 등 금속이나 熙宗 碩陵(1237년) 출토 청자상감국화문 잔받침, 유천리 출토 청자상감잔탁편처럼 재료를 망라해서 널리 유행한 유형으로서 고려시대 酒器 연구의 좋은 자료라는 점 등이다.

따라서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며, 문화재명칭은 고려시대에 잔탁, 탁잔으로 1벌을 칭했으나 주기능인 잔을 받치는 받침인 탁까지 하나의 용어로는 잔탁이므로 은제도금잔탁이 옳겠다.

ㅇ

잔과 탁의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통해 금속공예품으로는 드물게 빼어난 미적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으며, 시문된 문양이 세련되고, 타출기법 또한 흠잡을 데 없이 정교하여 고려시대 우수한 공예기술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남아 있는 고려시대 금속제 탁잔의 유례가 드물고, 현존하는 탁잔 중에서 기법적으로나 조형적으로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중앙에서 활동했던 가장 우수한 장인에 의해 제작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 탁잔은 형태나 세부 표현 방식 등에서 송나라 사신 서긍이 1123년(고려 인종 1)에 찬술한 『선화봉사고려도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탁잔(반잔)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여 시기적으로 문벌귀족 문화가 가장 화려하게 꽃피웠던 12세기 대에 제작된 금속공예품으로 추정된다. 이 탁잔은 고려시대 금속공예 연구뿐만 아니라 당시의 생활 문화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보호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조사내용

고려시대에는 은제 주전자 뿐 아니라 은제도금 탁잔이나 은제 합, 팔찌 등에 높게 도드라지는 타출기법을 사용하여 화려한 장식문양을 전면에 빠짐없이 시문하는 것이 크게 유행되었다. 내면에서 타출시킨 뒤 다시 외부에서 그 여백을 두드려 누르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서 마치 누금(縷金)처럼 따로 떼어 붙인 듯 입체감이 강조되는 정교한 기법은 고려 금속공예 분야에서 가장 돋보이는 기술적 특질로 자리잡았다.

이 은제 도금 탁잔은 고려시대 타출 공예의 정교함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고려 금속 탁잔 가운데 가장 큰 크기이면서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탁잔은 잔과 받침으로 이루어졌는데, 여섯 번의 굴곡을 이룬 육화형(六花形)의 넓은 전이 달린 잔 받침은 아래에 높은 굽이 달리고 중앙에 높게 돌출된 잔 받침대(盞臺)를 두어 은제 잔이 올려진 모습이다. 바깥으로 말린 잔 받침의 굽 위로는 엽문(葉文)을 얕게 음각시켰고 이 문양은 잔 구연부와 굽 위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폭이 넓은 전부의 각 면 중앙에는 연당초문(蓮唐草文)을 유려하게 음각시켰고 움푹 파인 잔 받침의 둘레에는 그보다 길이가 짧아진 연당초문을 장식하였다. 솟아 있는 잔 받침부의 측면에는 굴곡을 이룬 각 릉(稜)을 돌출된 1조의 종선으로 나누어 그 내부마다 중앙의 연화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연결된 연화문을 타출시켜 더욱 화려하게 꾸몄다. 잔을 올리는 잔 받침의 상부에도 돌출된 연화문을 중심으로 그 주위로 풀잎문을 두르고 다시 6릉의 띠로 구성한 뒤 그 주위를 연판문으로 촘촘히 두른 모습으로서 잔이 올려지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빠짐없이 장식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위에 올려진 잔은 잔 받침과 꼭 들어맞도록 굽의 외형을 만들고 굽을 따라 바깥으로 벌어진 6릉의 몸체의 직립 구연부에도 굴곡에 맞게 6릉의 굴곡을 이루었다. 잔의 몸체 바깥에는 각 굴곡마다 위로 솟은 연화문을 음각시켰으며 잔 내부에는 둥근 연화문을 중심으로 엽문이 에워싼 모습을 음각시켰다. 전체적인 구성에서 볼 수 있듯이 크기를 서로 달리한 꽃모양의 6릉을 이용하여 잔과 잔 받침을 구성한 참신한 조형성과 함께

타출의 정교한 문양이 돋보이는 수작으로서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귀족적인 면모를 여실히 살펴볼 수 있다. 은제로 만들어진 탁잔은 고려시대에 많이 만들어졌지만 이처럼 타출문의 정교한 장식과 도금까지 입힌 점에서 이 탁잔은 당시로서도 최고의 기술과 정성이 동원된 왕실용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동일한 형태의 상감청자(象嵌靑磁)가 유행했던 시기가 13세기 전반경인 점으로 미루어 그보다 조금 앞서는 12세기 중~후반의 제작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중요성에 미루어 이 탁잔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관리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ㅇ 참고문헌

- 최응천 · 김연수, 『금속공예』, 솔출판사, 2004
- 최응천 외, 『찬란하고 아름다운 금속공예』, 통천문화사, 2007

□

ㅇ 조사내용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은제도금잔탁〈유물번호: 덕수-000130-000〉은 『조선고적도보』에도 실려 있어 일제강점기에 수집된 것으로 보존상태도 양호하다.[1] 보스톤뮤지움 소장 은제주자와 함께 고려시대 일반금속공예를 대표할 만한 이 잔탁은 은잔을 받쳐주는 은제 받침이 세트를 이룬 기형으로 조형성과 공예기술이 뛰어난 유물이다.(도1) 酒器인 이 기형은 12~13세기에 청자, 상감청자로도 생산되었으며, 중국 송대 기형과 같으나 세부와 문양, 타출기법에서 고려적인 특징이 돋보인다.(도2)

이 기형의 명칭에 대해서는 북송 孟元老가 휘종 崇寧-宣和년간(1102-1125)의 개봉 풍경을 엮은 『동경몽화록』에 "큰 술집인 正店 회선루에서 두 사람이 술을 마실 때 注碗 1벌, 盤盞 2벌이 필요하다."고 했다.[2] 또한 1123년에 고려에 온 徐兢도 『고려도경』에서 盤盞이라 칭하며, 형태에 대해서는

> "반잔의 만듦새는 다 중국의 것과 같다. 다만 잔은 깊고 테두리가 오무라들었고, 주는 작고 발이 높다. 은으로 만들고, 간혹 금으로 칠하기도 하고 꽃을 아로 새긴 것이 재치가 있다. 권주할 때마다 다른 술잔으로 바꾸는데, 다만 용량이 약간 많을 뿐이다.[3]

---

1) 『朝鮮古蹟圖譜』 제9권, p.1220, 도판 4039.

2) 孟元老, 『东京梦华錄』 卷4, 「会仙酒楼」, "如州东仁和店、新门里会仙楼正店, 常有百十分厅馆, 动使各各足备, 不尚少阙一件. 大抵都人风俗奢侈, 度量稍宽, 凡酒店中不问何人, 止两人对坐饮酒, **亦须用注碗一副, 盘盏两副.**".

3) 『高麗圖經』 卷第30, 「器皿」 1, 〈盤琖〉 條, "盤琖之制. 皆似中國. 惟琖深而釦斂. 舟小而足高. 以

라고 설명한 바 있다. 즉 반잔은 지금의 은제도금잔탁과 같은 형태를 일컬으며 도금하고 꽃을 아로새긴(鏤花) 점을 특징으로 보았다. 금제, 은제잔탁은『고려사』에 對宋 國信物이나 국내에서 하사한 물품으로 기록되어 있어 고려에서 자신있게 생산한 기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문종 26년(1072)에는 "모두 무게가 40냥인 금반잔 2벌", 문종 34년(1080)에는 "금반잔 2벌"을 송 황제가 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후 고종 때에도 은잔 2개를 우가하에게 보냈고, 몽고의 지휘관 3명에게 금잔반 1벌씩을 보냈다. 충렬왕 때에 원 황제에 바치는 토산물 중에 은잔 1벌이 들어있었다. [표1. 참조]

표 1.『高麗史』에 보이는 金銀製 盞

년 대	내 용	전 거
文宗26년(1072) 6월26일 甲戌	"...金悌至省所進奉,..金合二副共重六十兩...**金盤盞二副共重四十兩**...金注子一副重六十五兩...金鏤羅一隻重一百五十兩..."	9卷, 世家9
文宗34년(1080) 7월2일 癸亥	"省所進謝恩御衣二領金腰帶二條金鏤羅一面金花銀器二千兩...", "省所上進金合二副**盤盞二副**注子一副..."	9卷, 世家9
高宗7년(1220) 3월6일 丙申	"...以銀尊銀盤銀盂各一**銀盞**二...遺于哥下以酬其功."	22卷, 世家22
高宗18년(1231) 12월4일 乙卯	"...以**金酒器大小盞盤各一副**銀甁..等物贈送于三元帥."	23卷, 世家23
忠烈王22년(1296) 11월19일 甲申	"王與公主謁帝獻方物. 金甁金鍾二事鏤銀壺銀湯甁各一事**銀盞一副**銀胡甁銀大樽各一事半鏤銀胡甁二事銀大鍾一事銀盂五十事..."	31卷, 世家31

위와 같은 기록을 볼 때, 받침을 갖춰서 잔과 받침이 1세트인 잔을 반잔, 잔반으로 불렀고, 금주자 1부 역시 1개가 아니라 승반을 갖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4)]

ㅇ 내용 및 특징

조사대상인 은제도금잔탁은 표면에 도금이 고루 입혀져 여전히 금색이 완연한 상태인데, 잔의 구연부 윤곽 및 굽의 문양, 받침의 하단문양이 동일한 연판문을

銀爲之. 間以金塗. 鏤花工巧. 每至勸酒. 則易別杯. 第量容. 差多耳.".

4) 고려 청자주자나 사천 팽주에서 출토한 남송 초 은제주자들도 대부분 승반을 갖추고 있다. 成都市文物考古研究所· 彭州市博物館,『四川彭州宋代金銀器窖藏』, 科學出版社, 2003. 참조

彫金하였고, 받침의 잔좌에 화문을 타출시켜 시선을 유도하고 있다.

조형을 보면, 잔은 높이 6cm×구경 8.6cm 크기의 六花形으로 볼륨감이 있는 편이다. 곡선형 각 화판 중앙에는 [()]꼴로 절지모란문을, 화판과 화판이 연결된 부분 상하에는 삼각형 절지모란문을 배치했고, 구연과 굽 끝에는 연판문을 배치해 안정된 공간감을 느끼게 한다.(도3) 잔 내부에도 중앙에 3송이 절지모란이 원형을 이루고 있고 그 주위에 연판문이 육화형으로 장식되었다.(도4)

받침은 높이 6.8cm×폭 17cm, 굽 지름 10.3cm, 전 2.2cm 크기여서 안정감이 있을 뿐 아니라 전이 넓어 두 손으로 받들기 편한 형태이다. 전에 박락된 부분이 있으나 제작수법이 뛰어난 이 받침은 잔좌부터 전 윤곽선까지 여러 겹의 육화형 평면도를 보이고 있으며 뒷면도 2개의 육화형을 보이고 있다.(도5, 6) 이렇듯 각 부분을 땜으로 성형하면서 작은 형태에 동일한 곡선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표면의 문양은 전 화판마다 2개의 모란가지 끝을 반대로 이은 절지모란문을 시문하였고, 안쪽에도 작은 절지모란문을 시문했다. 잔좌는 잔과 맞닿는 상면에 원형 花文團을, 그 주변에는 육화형으로 연판문 변식을 타출했다. 이 유물의 가장 압권인 잔좌의 측면에는 高肉刻 타출기법으로 연판문을 두르고 그 아래에는 각 화판마다 [⊠]형으로 모란문을 아로새겼다.(도7, 8, 9)

고육각 타출기법은 遼代 금속공예와 교류에 의한 것으로 고려 12세기에 전성을 이룬 금공기법이다. 은판을 감탕으로 고정시켜서 표면이 갈라지지 않고 문양을 [Ω]꼴로 돌출시킨 수법은 고려 銀匠의 우수한 기량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한국 공예사상 고려 금공의 위치를 가늠케 한다. 받침의 전이나 잔 표면에 문양을 시문한 조각수법은 끝이 [▼]꼴인 삼각정으로 끌듯이 선을 이어나가 생동감이 있다.(도10) 무엇보다 이 유물에 보이는 고려적인 독창성은 연판문 변식이다.(도11) 약간 사선꼴인 연판문 邊飾은 唐代 금은기에 유행하던 장식법으로 요대 금은기에도 계승된 것인데, 고려에서는 그 끝을 비늘정으로 반원형을 연결시켜 일견 파도같은 水波形으로 변형시켰다. 이런 문양은 12세기에 제작된 은제금도금합(도12)이나 佩飾인 은합(도13), 은제화형접시(도14)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상 간략히 살펴 본 은제금도금잔탁은 기형으로 볼 때 송-요-고려에서 널리 유행한 잔탁의 여러 유형 중 하나로서 잔과 받침과는 달리 잔은 구연이 넓고 굽이 낮은 별구완이 아니라 구연이 모아지고 八字形 높은 굽이 달린 형태이며, 받침의 잔좌가 매우 높은 점이 특징이다, 이런 유형은 요대 10세기 耶律羽之墓(941년) 출토 금제오화형잔이나 11세기 창무 요묘 출토 은제탁 같은 금공유물이나 북송 11세기의 월요청자와 12세기의 여요 청자에도 보인다. 고려에서도 12~13세기에 금속공예나 청자, 상감청자로 생산되었는데, 요-북송 잔탁처럼 잔좌에 覆蓮이 장식되었다.[참고자료 참조]

ㅇ 참고문헌

- 『高麗史』
- 『宣和奉使高麗圖經』
- 蓋之庸,『探尋逝去的王朝-遼耶律羽之墓』, 內蒙古大學出版社, 2004
- 九州國立博物館 編輯,『契丹』, 2011
- 국립전주박물관, 『전북의 고려청자-다시찾은 비취색 꿈』, 2006
- 김은애,『高麗時代 打出工藝品 硏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南宋藝術與文化· 器物卷』, 국립고궁박물원, 2009
- 『디아모레뮤지움소장품도록』, 디아모레뮤지움, 2005
- 成都市文物考古硏究所· 彭州市博物館,『四川彭州宋代金銀器窖藏』, 科學出版社, 2003
- 于建設 主編,『赤峰金銀器』, 遠方出版社, 2006
- 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 外,『寺龍口越窯址』, 文物出版社, 2002
- 『靑磁의 色 形-한국· 중국 청자 比較展』, 조선관요박물관, 2005

[도판]

도1. 은제도금잔탁, 고려 12세기, 국립중앙박물관

도2. 靑磁花形盞托, 고려 12세기

도3. 은제도금잔의 문양(모란, 연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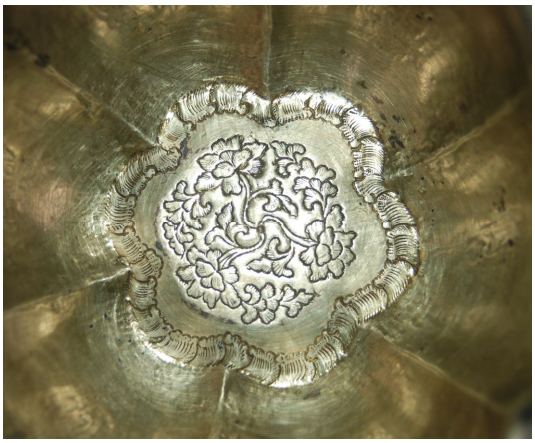

도4. 은잔의 내면 문양(모란, 연판문)

도5. 은제도금탁의 top view

도6. 은제도금탁의 뒷면 top view

도7. 은제도금탁의 표면(打出技法, 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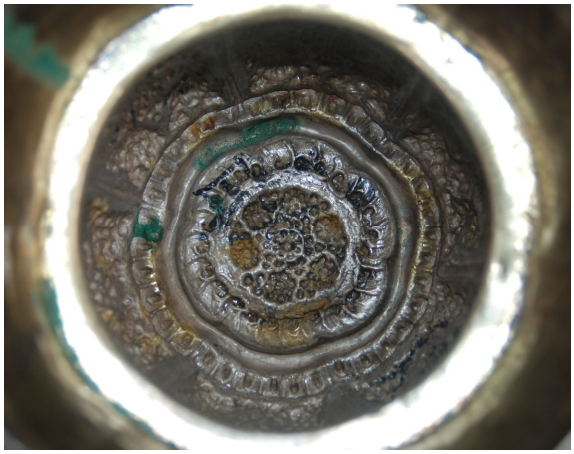

도8. 도7의 안쪽 면(凹면)

도9. 타출한 연판장식

도10. 전에 彫金된 折枝牡丹文

도11. 잔의 연판문 邊飾

도12. 은제금도금합의 연판문 邊飾, 고려 12세기, 개성출토, 고 6.1cm, 구경 7.6cm

그림13. 은합의 연판문 변식, 고려 12세기, 18.5cm

그림14. 은제화형접시의 연판문 변식, 고려 12세기, 국립중앙박물관, 구경 10.5cm

[참고자료]

(좌) 금제오화형잔, 遼 會同4년(941), 내몽고 赤峰市 阿魯科尔旗 耶律羽之墓 출토
잔 높이 4.7cm, 구경 7.7cm,
(우) 銀製托, 요 11세기, 요녕성 彰武 朝陽區 2號墓 출토

(좌) 靑磁托片, 북송 11세기, 절강성 寺龍口 越窯址 출토
(우) 靑磁托, 북송 12세기, 汝窯, 탁 높이 4.3cm, 구경 17cm

(좌) 은제도금잔탁, 고려 12세기, 전체 높이 9.2cm, 잔 높이 4.7cm, 잔 구경 7.5cm,
탁 구경 14.7cm, 디아모레뮤지움
(우) 청자모란문잔탁, 고려 12세기, 잔 높이 5.5cm, 잔 구경 7.8cm, 탁 높이 5.7cm,
탁 구경 15.4cm

(좌) 청자상감국화문잔탁, 고려 12세기, 전체 높이 9.5 cm, 잔 구경 7.2cm
(우) 청자상감잔탁편, 부안 유천리 요지 출토 , 12세기 후반~13세기전반

□

ㅇ 조사내용

이 탁잔은 잔과 함께 잔을 받치는 잔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개 盞과 함께 한 벌을 이룰 때에 탁잔이라 불리운다. 잔탁의 명칭은 중국과 한국의 문헌 기록에는 '茶托子', '茶托', '盤盞', '盞盤', '盤臺', '臺盞', '盞托', '盞橐'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이들 용어는 탁이나 대, 반 등과 같은 받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잔을 받치는 용도의 잔탁을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잔탁이라는 명칭은 송대 이후의 문헌기록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잔탁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중국 당대 李匡乂의 『資暇集』에서 확인되는데, 唐의 建中年間(780-783년) 宰相 崔寧의 딸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잔을 흔들림 없이 고정시켜 내용물이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뜨거운 잔을 받치기 위하여 받침 접시에 잔의 굽과 같은 모양의 밀납을 녹여 사용했다는 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때는 잔탁이라는 명칭 대신 '茶托子'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탁잔이라는 명칭은 宋代 이후의 문헌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완전히 정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즉 송대에는 唐代 최령의 딸이 고안한 茶托子를 잔탁의 시원으로 언급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기물을 통상 잔탁이라 칭하고 있다.[5)]

고려시대 탁잔은 잔 받침대의 형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2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연꽃이 폈을 때의 모습과 같은 仰蓮式 탁잔과 연꽃을 엎어 놓은 모습과 같은 覆蓮式 탁잔이다. 복련식 탁잔에는 탁과 잔의 형태가 원형으로 된 것과 花瓣形으로 된 것이 있는데, 화판형은 잔은 물론 托의 받침대와 구연부까지 모두 꽃잎 모양

5) 이윤진, 「고려시대 자기잔탁 연구」, 『미술사학연구』 273(한국미술사학회, 2012), pp.36-37.

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탁잔은 잔의 받침대가 복련식으로 되어 있고 잔과 잔탁이 공히 화판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탁잔이다. 잔은 꽃잎을 살짝 오므린 형태이며, 잔탁은 활짝 펼친 형태로 도안하였다.

잔은 다리와 잔 부분이 따로 만들어 땜질하였고, 잔의 몸통은 입술에서 바닥으로 내려 갈수록 체감률을 줄여 참외형을 이루고 있고, 굽 받침은 이와 반대로 기저부와 맞닿은 부분에서 바닥으로 내려올수록 입을 벌린 형태이다. 잔의 구연부와 굽의 아랫부분에는 물거품을 일렁이는 수파문을 새겼다. 6엽 꽃잎으로 이루어진 잔의 몸통에는 모란절지문을 음각하였고, 화판과 화판이 만나는 움푹하게 접히는 곳에도 위·아래에로 작은 모란절지문을 새겨 섬세함과 화려함을 더하였다. 잔의 안쪽 바닥면에는 잔의 윤곽을 따라 水波文을 새겨 넣었고, 바닥 중심에는 바람개비처럼 3가닥으로 휘감아 도는 모란절지문을 음각하였다.

잔 받침대의 윗면은 움푹하게 만들어 마치 연못처럼 고안하였고 그 중심에는 복련형의 잔 받침대를 섬처럼 두었다. 이러한 장치는 잔에서 넘쳐흐르는 술이나 차가 고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잔 받침대 상면에도 잔 굽의 크기와 형태에 꼭 맞게 파내어 잔이 흔들리지 않도록하였다. 복련형의 잔 받침대의 표면에는 고부조로 꽃무늬를 오돌토돌하게 타출하였고, 오돌토돌하게 두드려 문양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지러짐 없이 매우 정교하다.

고려시대 이러한 탁잔의 사용 예는 徐兢의 『宣和奉使高麗圖經』卷30 器血 1에 盤盞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긍의 기록에는 “반잔은 중국의 그것과 흡사하다. 다만 잔의 깊이가 더 깊고 금테로 장식을 했으며, 잔 받침은 작고 다리는 긴 편이다. 은으로 만드는데 간혹 도금하기도 하였으며, 아로새긴 꽃은 정교하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기록은 마치 송나라 사신 서긍이 국립중앙박물관 탁잔을 옆에 두고 서술한 듯한 인상을 주는데, 아마 서긍이 고려에 왔을 당시 문벌귀족층 사이에서 타출공예로 만든 탁잔이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은제도금탁잔은 서긍이 고려를 방문했을 때 보았던 것과 같은 계통의 탁잔으로 생각되며, 현재 금속제로 제작된 기년작 탁잔은 없지만 12세기로 편년되고 있는 여러 금속제 탁잔이나 도자기, 그리고 문헌자료들과 비교 검토했을 때 이 탁잔도 문벌귀족 문화가 절정으로 꽃피웠던 12세기 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ㅇ 참고문헌

-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 김은정, 「고려시대 금은기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은애, 「고려시대 타출 공예 연구」, 『미술사학연구』, 253, 한국미술사학회, 2007
• 이윤진, 「高麗時代 瓷器盞托 硏究」,『미술사학연구』273, 한국미술사학회, 2012

안건번호 동산 2016-02-004

4.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

가. 심의사항

"주역참동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주역참동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3.9.16)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2.4)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6년 제1차 회의(2.4)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6.2.24~'16.3.24)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
○ 소유자(관리자) : 고령신씨 안협공파 종중(국립중앙박물관)
○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용산로 6가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2권2책
○ 규격(cm) : 세로34.4(22.0)×가로21.9(14.5)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초주갑인자본(初鑄甲寅字本)
○ 형　　식 : 선장[線裝(五針眼訂)]
○ 제작연대 : 1441년(세종 23)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周易參同契」는 後漢朝 魏伯陽(100~170)의 저술로 道家의 心身修練의 방식과 長生不老를 위하여 복용하는 丹藥의 제조법에 관하여 4~5자의 韻文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본 「周易參同契」는 明朝時代 初期에 張本鎭(?~?)이 宋末元初에 兪琰(1258~1327)

이 저술한 「周易參同契發揮」(3篇)와 「周易參同契釋疑」(3篇)를 合本하여 간행한 것을 저본으로 하여 朝鮮의 세종 23(1441)년에 初鑄甲寅字로 印出된 것이다. 冊2의 末尾에는 權近(1352~1409)의 <癸未字跋>과 卞季良(1369~1430)의 <庚子字跋> 및 金嬪(?~1455)의 <甲寅字跋>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金嬪의 <甲寅字跋> 말미에는 "正統六年八月日印出"이라 기록되고 있어 본서가 세종 23(1441)년 8월에 印出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본 「周易參同契」가 初鑄甲寅字로 간행되었다는 記錄이나 實物은 지금까지 전혀 알려진 바 없어 본서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唯一本이며, 學術的·文化財的 가치가 매우 높은 貴重本이다. 또한 조사본 「周易參同契」는 조선시대 초기의 道家思想의 관심을 窺見할 수 있을 뿐 아니라 現傳本이 없는 唯一本이라는 점 등을 통하여 조선시대 전기의 活字史와 印刷文化史 및 書誌學을 비롯한 葬禮風俗 등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사본 「周易參同契」는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硏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ㅇ

조사본『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는 명초(明初) 장본진(張本鎭, ?~?)이 남송 유염의『周易參同契發揮(주역참동계발휘)』(3편)와『주역참동계석의(周易參同契釋疑)』(3篇)를 合本하여 간행한 것을 저본으로 하여 1441년(세종 23)년에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인출된 것이다.

현재 전하는『주역참동계』중에는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으로 조선 광해군대(1608~1623)에 훈련도감자(訓鍊都監字)로 간행된 자료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본은 현재까지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간행되었던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이나 실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확인된 유일본으로 조선 전기의 도가사상(道家思想)과 서적을 연구할 수 있는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귀중본이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ㅇ

「周易參同契」는 중국 後漢代에 眞人이라 불리던 魏伯陽(100~170)의 저술로 丹學 및 道家의 대표적인 경전이며 道家의 心身修練 방식과 장생불노를 위해 복용하는 丹藥의 제조법에 관하여 四言과 五言의 韻文 형식으로 저술되어 있는데, 상편은 주역의 도에 중편은 內養, 하편은 爐火에 중점을 두어 기술했다.

조사본 「周易參同契」는 宋末元初에 兪琰(1258~1327)이 저술한 「周易參同契發揮」(3篇)와 「周易參同契釋疑」(3篇)의 合本을 明代 初에 張本鎭(?~?)이 간행한 것을

저본으로 조선 세종 23(1441)년에 初鑄甲寅字로 印出된 것이다. 冊2의 末尾에 수록된 金鑌의 <甲寅字跋> 끝에 “正統六年八月日印出”이라 기록되어 있어 조사본이 세종 23(1441)년 8월에 印出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전하는 「周易參同契」 중에는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인, 조선 光海年刊(1608~1623)에 訓鍊都監字로 간행된 자료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周易參同契」가 初鑄甲寅字로 간행되었다는 기록이나 실물은 지금까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 조사본은 처음으로 소개되는 유일본이며, 조선 전기의 道家思想과 印刷文化史 및 書誌學 및 葬禮風俗을 연구할 수 있는 學術的, 文化財的 가치가 매우 높은 귀중본이다.

따라서 조사본 「周易參同契」는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硏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자료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書誌記述 : 調査本 「周易參同契」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周易參同契 / 魏伯陽(100~170, 後漢) 撰 ; 朱熹(1130~1200, 南宋) 解 ; 黃瑞節(?~?, 宋末元初) 附錄 ; 兪琰(1258~1327, 宋末元初) 釋疑·發揮 ; 張本鎭(明初) 編. -- 金屬活字本(初鑄甲寅字).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世宗23(1441) 推定].
2卷2冊 : 圖, 四周單邊, 半郭 22.0×14.5 ㎝, 有界, 10行18字, 註雙行, 白口, 上下下向黑魚尾 ; 34.4×21.9 ㎝. 楮紙. 線裝(五針眼訂).

表　題: 周易參同契
表　紙: 비단(有紋緞)
板心題: 參同契, 參同契釋疑
內　容: [冊1]; -周易參同契發揮序(至元甲申四月十四日林屋山人全陽子兪琰玉吳自序, 朝請郎秘書監兼尙書左右司阮登炳七十歲書), -序(至大三年歲庚戌臘嗣天師張與材題, 南谷子杜道堅), -周易參同契釋疑([序]…時五星聚丑之年金精滿鼎之日林屋洞天紫庭眞逸全陽子書, 上篇釋疑, 中篇釋

疑, 下篇釋疑, 鼎器歌釋疑, 序釋疑, 讚序釋疑), -周易參同契(上篇). [冊2]; -周易參同契(中篇), -周易參同契(下篇, 讚序), -鑄字跋([癸未字, 權近], [庚子字, 卞季良], [甲寅字, 金嬪]).

刊　記: 正統六(1441, 세종 23)年八月日印出.

印　記: 宣賜/之記(序文第1面)

鑄字跋: [癸未字] 永樂元年春二月 殿下謂左右曰 凡欲爲治 必須博觀典籍 然後可以窮理正心 而致修齊治平之效也 吾東方在海外 中國之書罕至 板刻之本 易以剜缺 且難盡刊天下之書也 予欲範銅爲字 隨所得書 必就而印之 以廣其傳 誠爲無窮之利 然其供費 不宜斂民 予與親勳臣僚有志者共之 庶有成乎 於是悉出內帑 命判司平府事臣李稷 驪城君臣閔無疾 知申事臣朴錫命 右代言臣李膺等監之 軍資監臣姜天霆 長興庫使臣金莊侃 代言司注書臣柳薰 壽寧府丞臣金爲民 校書著作郎臣朴允英等掌之 又出經筵古注詩書左氏傳以爲字本 自其月十有九日而始鑄 數月之間 多至數十萬字 恭惟我殿下濬哲之資 文明之德 萬機之暇 留神經史 孜孜無倦 以濬出治之源 而闡修文之化 思廣德教 以淑當時而傳後世 拳拳焉爲鑄是字 以印群書 可至於萬卷 可傳於萬世 規模宏大 思慮深長如此 王敎之傳 聖曆之永 固當並久而彌堅矣 是年後十一月初吉 推忠翊戴佐命功臣 正憲大夫 參贊議政府事 判禮曺事 寶文閣大提學 知經筵春秋成均館事 吉昌君 臣權近 拜手稽首敬跋

鑄字跋: [庚子字] 鑄字之設 可印群書以傳永世 誠爲無窮之利矣 然其始鑄字樣有未盡善者 印書者病其功不易就 永樂庚子冬十有一月 我殿下發於宸衷 命工曺參判臣李蕆新鑄 字樣極爲精緻 命知申事臣金益精 左代言臣鄭招等監掌其事 七閱月而功訖 印者便之 而一日所印 多至二十餘紙矣 恭惟我恭定大王作之於前 今我主上殿下述之於後 而條理之密 又有加焉者 由是而無書不印 無人不學 文敎之興當日進 而世道之隆當益盛矣 視彼漢·唐人主規規於財利兵革 以爲國家之先務者 不啻霄壤矣 實我朝鮮萬世無疆之福也 永樂二十年 冬十月 甲午 正憲大夫議政府參贊 集賢殿大提學 知經筵同知春秋館事 兼成均館大司成 臣卞季良 拜手稽首敬跋

鑄字跋: [甲寅字] 宣德九年 秋七月 殿下謂知中樞院事臣李蕆曰 卿所嘗監造鑄字 印本固爲精好矣 第恨字體纖密 雖於閱覽 更用大字本 重鑄之尤佳也 仍命監其事 集賢殿直提學臣金墩直 集賢殿臣金鑌 護軍臣蔣英實 僉知司譯院事臣李世衡 議政府舍人臣鄭陟 奉常注簿臣李純之 訓練觀參軍臣李義長等 掌之 出經筵所藏孝順事實 爲善陰騭論語等書 爲資本 其所不足 命晉陽大君臣瑈書之 自其月十有二日始事 再閱月而所鑄 至二十有餘萬字 越九月初九日 始用以印書 一日所印 可至四十餘紙 字體之明正功課之易就 比舊爲倍矣 恭惟我殿下 聖學無厭 萬機之暇 潛心載籍 思

欲便利於用 廣布於下俾人 人皆得以講明焉 凡再變而鑄字之文 尤爲盡美 誠我朝鮮萬世之寶也哉 宣德九年九月日 中訓大夫試集賢殿直提學知製敎經筵侍讀官 臣金鑌 拜手稽首 敬跋 **正統六年八月日印出**

狀 態: 1998년 4월에 발굴된 이후 최근에 全體를 保存處理를 실시하였으며, 保存狀態는 매우 良好한 편이다.

所 藏: 2013년에 서울특별시 龍山區 文培洞 11-14의 高靈申氏安峽公派宗中이 國立中央博物館에 寄託함에 따라 현재 서울특별시 龍山區 龍山路 6街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傳來歷: 1998년 4월에 京畿道 楊州郡 長興面 三上里 소재의 高靈申氏의 墓域整地作業 중 持正公 申彦滉(1519~1582)의 墓에서 服飾遺物과 함께 발굴된 것이다.

規 格: 上冊 세로 34.4 × 가로 21.9 ㎝, 下冊 세로 34.4 × 가로 21.7 ㎝.

▢ 現狀 :

조사본 「周易參同契」는 1998년 4월에 京畿道 楊州郡 長興面 三上里 소재의 高靈申氏의 墓域整地作業 중 持正公 申彦滉(1519~1582)의 墓에서 服飾遺物과 함께 발굴된 것으로, 2013년에 서울특별시 龍山區 文培洞 11-14의 高靈申氏安峽公派宗中이 國立中央博物館에 寄託함에 따라 현재 서울특별시 龍山區 龍山路 6街의 국립중앙박물관에 守藏되어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周易參同契」는 1998년 4월에 발굴된 이후 최근에 全體를 保存處理를 실시하였으며, 保存狀態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ㅇ 조사내용

「周易參同契」는 後漢朝 魏伯陽(100~170)의 저술로 '周易參同契'는 「周易」이 鍊丹術과 老子(BC571~BC471 推定)의 道와 서로 섞여 통한다는 의미이며, 丹學 및 道家의 最高의 經典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내용은 초기 道敎思想을 「易經」의 형식을 빌어서 內丹과 外丹을 方技로 삼아 煉丹神仙의 계통적 이론을 논술하고 있고 坎·離·水·火·龍·虎·船 등을 빌어서 煉丹養生을 설명하고 있어, 外丹修練은 과학기술의 化學分野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고 內丹修練은 生命延長과 疾病防止에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중시되었다.

「周易參同契」는 이와 같이 道家의 心身修練의 방식과 長生不老를 위하여 복용하는 丹藥의 제조법에 관하여 4~5자의 韻文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後漢朝의 魏伯陽(100~170) 이후로도 五代後蜀朝(934~965) 彭曉(?~?)의 「周易參同契通眞義序」, 南宋朝 朱子(朱熹, 1130~1200)의 「周易參同契考異」(1卷), 宋末元初 兪琰(1258~1327)의 「周易參同契發揮」(3卷) 등의 註釋書가 나왔다. 그 중에서도 朱子는 「周易參同契」 문장을 좋아하여 「參同契考

異」를 저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사본 「周易參同契」는 明朝時代 初期에 張本鎭(?~?)이 宋末元初에 兪琰(1258~1327)이 저술한 「周易參同契發揮」(3篇)와 「周易參同契釋疑」(3篇)를 合本하여 간행한 것을 저본으로 하여 朝鮮의 세종 23(1441)년에 初鑄甲寅字로 印出된 것이다.

조사본 「周易參同契」의 冊1에는 <周易參同契發揮序(至元甲申四月十四日林屋山人全陽子兪琰玉吳自序, 朝請郎秘書監兼尙書左右司阮登炳七十歲書)>, <序(至大三年歲庚戌臘嗣天師張與材題, 南谷子杜道堅)>, <周易參同契釋疑([序]…時五星聚丑之年金精滿鼎之日林屋洞天紫庭眞逸全陽子書, 上篇釋疑, 中篇釋疑, 下篇釋疑, 鼎器歌釋疑, 序釋疑, 讚序釋疑)>, <周易參同契(上篇)>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冊2에는 <周易參同契(中篇)>, <周易參同契(下篇, 讚序)>, <鑄字跋([癸未字, 權近], [庚子字, 卞季良], [甲寅字, 金嬪])> 등이 수록되어 있다.

조사본 「周易參同契」의 冊2 末尾에는 權近(1352~1409)의 <癸未字跋>과 卞季良(1369~1430)의 <庚子字跋> 및 金嬪(?~1455)의 <甲寅字跋>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金嬪의 <甲寅字跋> 말미에는 "正統六年八月日印出"이라 기록되고 있어 본서가 세종 23(1441)년 8월에 印出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본 「周易參同契」에는 頒賜記는 없으나, 序文 第1面에 朱印의 "宣賜/之記"가 있어 국왕의 頒賜本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申叔舟(1417~1475)의 아우인 申末舟(1429~1503)의 현손으로 墓主인 申彦滉(1519~1582)이 중종 14(1514)년에 출생하여 선조 15(1582)년에 졸거한 점을 감안하면 世宗朝에 頒賜되어 집안에 전해오던 本書를 그의 葬禮 때에 副葬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본 「周易參同契」가 初鑄甲寅字로 간행되었다는 記錄이나 實物은 지금까지 전혀 알려진 바 없어 본서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唯一本이며, 學術的·文化財的 가치가 매우 높은 貴重本이다. 또한 조사본 「周易參同契」는 조선시대 초기의 道家思想의 관심을 窺見할 수 있을 뿐 아니라 現傳本이 없는 唯一本이라는 점 등을 통하여 조선시대 전기의 活字史와 印刷文化史 및 書誌學을 비롯한 葬禮風俗 등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사본 「周易參同契」는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硏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ㅇ 참고문헌

- 서울특별시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등의 指定·認定 資料報告書 (辛承云·吳龍燮·朴相國의 調査報告書). 서울 : 서울특별시文化財委員會, 2013.
- 申春植 編, 『周易參同契』. 影印本. 서울 : 高靈申氏安峽公派宗中會, 2013.
- 국립중앙박물관 편, 「한국의 도교문화=Taoist culture in Korea : the road to happiness : 행복으로 가는 길」. 서울 : 국립중앙박물관,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문화재검색(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search01_new.jsp?mc=NS_04_03_01)

□

書誌事項

周易參同契 / 魏伯陽(100~170, 後漢) 撰 ; 朱熹(1130~1200, 南宋) 解 ; 黃瑞節(?~?, 宋末元初) 附錄 ; 兪琰(1258~1327, 宋末元初) 釋疑·發揮 ; 張本鎭(明初) 編. -- 金屬活字本(初鑄甲寅字).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世宗 23(1441) 推定].

2卷2冊 : 圖, 四周單邊, 半郭 22.0×14.5 ㎝, 有界, 10行18字, 註雙行, 白口, 上下下向黑魚尾 ; 34.4×21.9 ㎝. 楮紙. 線裝(五針眼訂).

表　題: 周易參同契
表　紙: 비단(有紋緞)
板心題: 參同契, 參同契釋疑
內　容:

[冊1]; -周易參同契發揮序(至元甲申四月十四日林屋山人全陽子兪琰玉吳自序, 朝請郞秘書監兼尙書左右司阮登炳七十歲書), -序(至大三年歲庚戌臘嗣天師張與材題, 南谷子杜道堅), -周易參同契釋疑([序]…時五星聚丑之年金精滿鼎之日林屋洞天紫庭眞逸全陽子書, 上篇釋疑, 中篇釋疑, 下篇釋疑, 鼎器歌釋疑, 序釋疑, 讚序釋疑), -周易參同契(上篇).

[冊2]; -周易參同契(中篇), -周易參同契(下篇, 讚序), -鑄字跋([癸未字, 權近], [庚子字, 卞季良], [甲寅字, 金嬪]).

刊　記: 正統六年八月日印出.

印　記: 宣賜/之記(序文第1面)

鑄字跋: [癸未字] 永樂元年春二月 殿下謂左右曰 凡欲爲治 必須博觀典籍 然後可以窮理正心 而致修齊治平之效也 吾東方在海外 中國之書罕至 板刻之本 易以剜缺且難盡刊天下之書也 予欲範銅爲字 隨所得書 必就而印之 以廣其傳 誠爲無窮之利 然其供費 不宜斂民 予與親勳臣僚有志者共之 庶有成乎 於是悉出內帑 命判司平府事臣李稷 驪城君臣閔無疾 知申事臣朴錫命 右代言臣李膺等監之 軍資監臣姜天霆 長興庫使臣金莊侃 代言司注書臣柳荑 壽寧府丞臣金爲民 校書著作郞臣朴允英等掌之 又出經筵古注詩書左氏傳以爲字本 自其月十有九日而始鑄 數月之間 多至數十萬字 恭惟我殿下濬哲之資 文明之德 萬機之暇 留神經史 孜孜無倦 以濬出治之源 而闡修文之化 思廣德敎 以淑當時而傳後世 拳拳焉爲鑄是字 以印群書 可至於萬卷 可傳於萬世 規模宏大 思慮深長如此 王敎之傳 聖曆之永 固當並久而彌堅矣 是年後十一月初吉 推忠翊戴佐命功臣 正憲大夫 參贊議政府事 判禮曺事 寶文閣大提學 知經筵春秋成均館事 吉昌君 臣權近 拜手稽首敬跋

鑄字跋: [庚子字] 鑄字之設 可印群書以傳永世 誠爲無窮之利矣 然其始鑄字樣 有未盡善者 印書者病其功不易就 永樂庚子冬十有一月 我殿下發於宸衷 命工曺參判臣李蕆新鑄 字樣極爲精緻 命知申事臣金益精 左代言臣鄭招等監掌其事 七閱月而功訖 印者便之 而一日所印 多至二十餘紙矣 恭惟我恭定大王作之於前 今我主上殿下述之於後 而條理之密 又有加焉者 由是而無書不印 無人不學 文敎之興當日進 而世道之隆當益盛矣 視彼漢·唐人主規規於財利兵革 以爲國家之先務者 不啻霄壤矣 實我朝鮮萬世無疆之福也 永樂二十年 冬十月 甲午 正憲大夫議政府參贊 集賢殿大提學 知經筵同知春秋館事 兼成均館大司成 臣卞季良 拜手稽首敬跋

鑄字跋: [甲寅字] 宣德九年 秋七月 殿下謂知中樞院事臣李蕆曰 卿所嘗監造鑄字印本固爲精好矣 第恨字體纖密 雖於閱覽 更用大字本 重鑄之尤佳也 仍命監其事 集賢殿直提學臣金墩直 集賢殿臣金鎔 護軍臣蔣英實 僉知司譯院事臣李世衡 議政府舍人臣鄭陟 奉常注簿臣李純之 訓練觀參軍臣李義長等 掌之 出經筵所藏孝順事實 爲善陰騭論語等書 爲資本 其所不足 命晉陽大君臣瑈書之 自其月十有二日始事 再閱月而所鑄 至二十有餘萬字 越九月初九日 始用以印書 一日所印 可至四十餘紙 字體之明正 功課之易就 比舊爲倍矣 恭惟我殿下 聖學無厭 萬機之暇 潛心載籍 思欲便利於用 廣布於下俾人 人皆得以講明焉 凡再變而鑄字之文 尤爲盡美 誠我朝鮮萬世之寶也哉 宣德九年九月日 中訓大夫試集賢殿直提學 知製敎經筵侍讀官 臣金鎔 拜手稽首 敬跋 正統六年八月日印出

ㅇ 현　　상

1998년 4월에 京畿道 楊州郡 長興面 三上里 소재의 高靈申氏의 묘역 정지작업 중 持正公 申彦湜(1519~1582)의 묘에서 服飾遺物과 함께 출토된 유물로서, 2013년에 高靈申氏安峽公派宗中이 국립중앙박물관에 寄託하였다. 최근 보존처리를 실시하였으며,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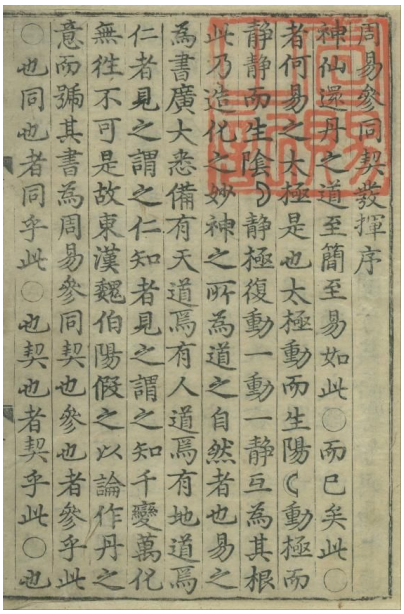
周易參同契發揮序
神仙還丹之道至簡至易如此○而已矣此○
者何易之太極是也太極動而生陽(動極而
靜靜而生陰)靜極復動一動一靜互爲其根
此乃造化之妙神之所爲道之自然者也易之
爲書廣大悉備有天道焉有人道焉有地道焉
仁者見之謂之仁知者見之謂之知千變萬化
無往不可是故東漢魏伯陽假之以論作丹之
意而譜其書爲周易參同契也參也者參乎此
○也同也者同乎此○也契也者契乎此○也

주역참동계발휘서/선사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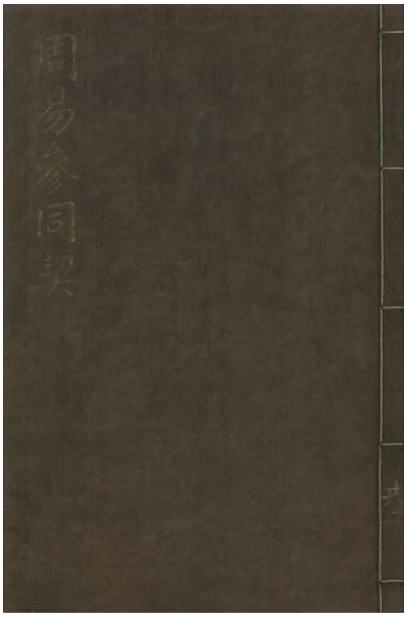

표지

ㅇ 내용 및 특징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는 후한(後漢) 위백양(魏伯陽, 100~170)의 저술로서 초기 도교(道敎)에 관한 내용을 역경(易經)의 형식을 빌어서 서술한 책이다. 내단(內丹;道敎기공)과 외단(外丹;煉丹術)을 방기(方技)로 삼아 연단신선(煉丹神仙)의 이론을 계통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감(坎)·리(離)·수(水)·화(火)·용(龍)·호(虎)·선(船) 등을 빌어서 연단양생(煉丹養生)을 설명하고 있다.

체제는 상중하 3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도가(道家)의 심신수련(心身修練) 방식과 장생불노를 위해 복용하는 단약(丹藥)의 제조법에 관하여 4언(四言)과 5언(五言)의 운문 형식으로 저술되어 있는데, 상편은 주역의 도에 중편은 내양(內養), 하편은 노화(爐火)에 중점을 두어 기술했다.

이 책은 그 내용이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위백양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후촉(後蜀, 934~965)의 팽효(彭曉, ?~?)가 지은 『주역참동계통진의서(周易參同契通眞義序)』, 남송(南宋) 주희(朱熹, 1130~1200)의 『주역참동계고이(周易參同契考異)』(1卷), 남송(南宋) 유염(兪琰, 1258~1327)의 『周易參同契發揮(주역참동계발휘)』(3卷) 등이 있다.

조사본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는 명초(明初) 장본진(張本鎭, ?~?)이 남송 유염의 『周易參同契發揮(주역참동계발휘)』와 『주역참동계석의(周易參同契釋疑)』(3篇)를 合本하여 간행한 것을 저본으로 하여 1441년(세종 23)년에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인출된 것이다.

조사본의 冊1에는 「주역참동계발휘서(周易參同契發揮序)」, 「序」, 「주역참동계석의(周易參同契釋疑)」, 「周易參同契(上篇)」이 수록되었고, 冊2에는 「周

易參同契(中篇)」, 「周易參同契(下篇, 讚序)」 그리고 권근(權近, 1352~1409)의 「계미자발(癸未字跋)」과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의 「경자자발(庚子字跋)」 및 김빈(金鑌, ?~1455)의 「갑인자발(甲寅字跋)」등이 수록되어 있다. 김빈의 「갑인자발」 말미에 "正統六年八月日印出"이라 기록되고 있어 본서가 세종 23(1441)년 8월에 印出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사본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에는 서문(序文) 第1面에 주인(朱印)의 "선사지기(宣賜之記)"가 있어 국왕의 반사본(頒賜本)임을 알 수 있으나 반사기(頒賜記)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묘주(墓主)인 신언식(申彦湜, 1519~1582)의 고조(高祖)인 신말주(申末舟, 1429~1503)가 신숙주(申叔舟, 1417~1475)의 아우였던 점을 감안하면 세종대에 반사되어 집안에 전해오던 책을 그의 장례 때에 부장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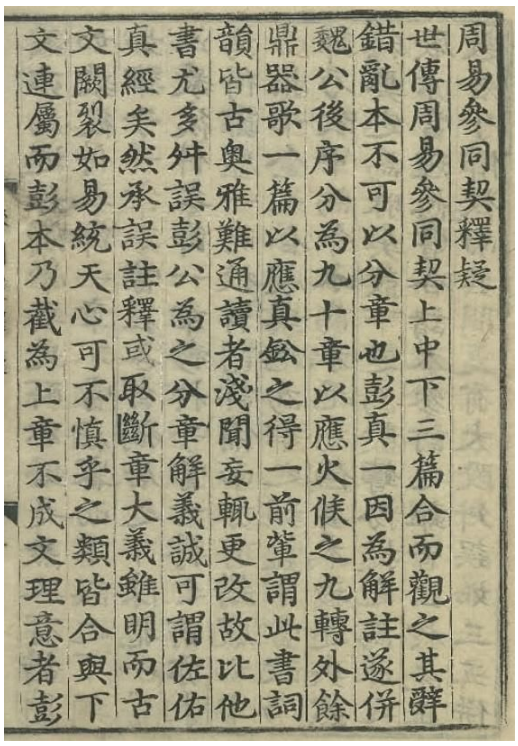
周易參同契釋疑
世傳周易參同契上中下三篇合而觀之其辭
錯亂本不可以分章也彭真一因為解註遂併
魏公後序分為九十章以應火候之九轉外餘
鼎器歌一篇以應真鈐之得一前輩謂此書詞
韻皆古奧雅難通讀者淺聞妄輒更改故比他
書尤多舛誤彭公為之分章解義誠可謂佐佑
真經矣然承誤註釋或取斷章大義雖明而古
文闕裂如易統天心可不慎乎之類皆合與下
文連屬而彭本乃截為上章不成文理意者彭

주역참동계발휘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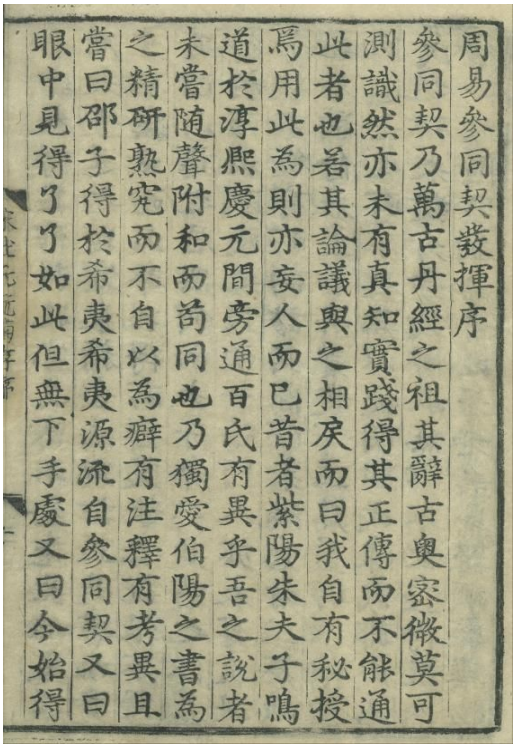
周易參同契發揮序
參同契乃萬古丹經之祖其辭古奧密微莫可
測識然亦未有真知實踐得其正傳而不能通
此者也若其論議與之相戾而曰我自有秘授
爲用此爲則亦妄人而已昔者紫陽朱夫子鳴
道於淳熙慶元間旁通百氏有異乎吾之說者
未嘗隨聲附和而苟同也乃獨愛伯陽之書爲
之精研熟究而不自以爲癖有注釋有考異且
嘗曰邵子得於希夷希夷源流自參同契又曰
眼中見得了了如此但無下手處又曰今始得

주역참동계발휘서

ㅇ 참고문헌

- 서울특별시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등의 指定·認定 資料報告書 (辛承云·吳龍燮·朴相國의 調査報告書). 서울 : 서울특별시文化財委員會, 2013.
- 申春植 編, 『周易參同契』. 影印本. 서울 : 高靈申氏安峽公派宗中會, 2013.
- 국립중앙박물관 편, 「한국의 도교문화=Taoist culture in Korea : the road to happiness : 행복으로 가는 길」. 서울 : 국립중앙박물관, 2013.

□

ㅇ 현　　상

▢ 書誌記述 : 調査本「周易參同契」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周易參同契 / 魏伯陽(100~170, 後漢) 撰 ; 朱熹(1130~1200, 南宋) 解 ; 黃瑞節(?~?, 宋末元初)　　附錄 ; 兪琰(1258~1327, 宋末元初) 釋疑·發揮 ; 張本鎭(明初) 編. -- 金屬活字本(初鑄甲寅字).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世宗 23(1441)

3卷2冊 : 圖, 四周單邊, 半郭 22.0 × 14.5 ㎝, 有界, 10行18字, 註雙行, 白口, 上下下向黑魚尾 ; 34.4 × 21.9 ㎝. 楮紙. 線裝(五針眼訂).

表　題: 周易參同契

板心題: 參同契, 參同契釋疑

內　容:

-冊1:　周易參同契發揮序(至元甲申四月十四日林屋山人全陽子兪琰玉吳自序, 朝請郞秘書監

兼尙書左右司阮登炳七十歲書), 序(至大三年歲庚戌臘嗣天師張與材題, 南谷子杜道

堅),　周易參同契釋疑([序]…時五星聚丑之年金精滿鼎之日林屋洞天紫庭眞逸全陽子

書, 上篇釋疑, 中篇釋疑, 下篇釋疑, 鼎器歌釋疑, 序釋疑, 讚序釋疑), 周易參同契 上篇

-冊2: 周易參同契 中篇, 周易參同契 下篇, 讚序, 鑄字跋(癸未字/權近, 庚子字/卞季良, 甲寅字/金嬪)

刊　記: 正統六年(1441, 세종 23)八月日印出

印　文: 宣賜之記

鑄字跋(癸未字): 永樂元年春二月 殿下謂左右曰 凡欲爲治 必須博觀典籍 然後可以窮理正心 而致修齊治平之效也 吾東方在海外 中國之書罕至 板刻之本 易以剜缺 且難盡刊天下之書也 予欲範銅爲字 隨所得書 必就而印之 以廣其傳 誠爲無窮之利 然其供費 不宜斂民 予與親勳臣僚有志者共之 庶有成乎 於是悉出內帑 命判司平府事臣李稷 驪城君臣閔無疾 知申事臣朴錫命　右代言臣李膺等監之　軍資監臣姜天霆　長興庫使臣金莊侃 代言司注書臣柳荑 壽寧府丞臣金爲民 校書著作郞臣朴允英等掌之 又出經筵古注詩書左氏傳以爲字本 自其月十有九日而始鑄 數月之間 多至數十萬字 恭惟我殿下濬哲之資 文明之德 萬機之暇 留神經史 孜孜無倦 以濬出治之源 而闡修文之化 思廣德敎 以淑當時而傳後世 拳拳焉爲鑄是字 以印群書 可至於萬卷 可傳於萬世 規模宏大 思慮深長如此 王敎

之傳 聖曆之永 固當並久而彌堅矣 是年後十一月初吉 推忠翊戴佐命功臣 正憲大夫 參贊議政府事 判禮曺事 寶文閣大提學 知經筵春秋成均館事 吉昌君 臣權近 拜手稽首敬跋

鑄字跋(庚子字): 鑄字之設 可印群書以傳永世 誠爲無窮之利矣 然其始鑄字樣有未盡善者 印書者病其功不易就 永樂庚子冬十有一月 我殿下發於宸衷命工曺參判臣李蕆新鑄 字樣極爲精緻 命知申事臣金益精 左代言臣鄭招等監掌其事 七閱月而功訖 印者便之 而一日所印 多至二十餘紙矣 恭惟我恭定大王作之於前 今我主上殿下述之於後 而條理之密 又有加焉者由是而無書不印 無人不學 文敎之興當日進 而世道之隆當益盛矣 視彼漢·唐人主規規於財利兵革 以爲國家之先務者 不啻霄壤矣 實我朝鮮萬世無疆之福也 永樂二十年 冬十月 甲午 正憲大夫議政府參贊 集賢殿大提學 知經筵同知春秋館事 兼成均館大司成 臣卞季良 拜手稽首敬跋

鑄字跋(甲寅字): 宣德九年 秋七月 殿下謂知中樞院事臣李蕆曰 卿所嘗監造鑄字 印本固爲精好矣 第恨字體纖密 雖於閱覽 更用大字本 重鑄之尤佳也仍命監其事 集賢殿直提學臣金墩直 集賢殿臣金鎭 護軍臣蔣英實 僉知司譯院事臣李世衡 議政府舍人臣鄭陟 奉常注簿臣李純之 訓練觀參軍臣李義長等 掌之 出經筵所藏孝順事實 爲善陰騭論語等書 爲資本 其所不足 命晉陽大君臣琰書之 自其月十有二日始事 再閱月而所鑄 至二十有餘萬字 越九月初九日 始用以印書 一日所印 可至四十餘紙 字體之明正功課之易就 比舊爲倍矣 恭惟我殿下 聖學無厭 萬機之暇 潛心載籍 思欲便利於用 廣布於下俾人 人皆得以講明焉 凡再變而鑄字之文 尤爲盡美 誠我朝鮮萬世之寶也哉 宣德九年九月日 中訓大夫試集賢殿直提學知製敎經筵侍讀官 臣金鎭 拜手稽首 敬跋 正統六年八月日印出

表 紙: 갈색비단(紋緞)

狀 態: 1998년 4월 묘지 정지작업 중 발굴된 이후 保存處理를 실시하여, 保存狀態는 매우 良好한 편임

所 藏: 高靈申氏安峽公派宗中이 2013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기탁함에 따라 현재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번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傳來歷: 1998년 4월에 京畿道 楊州郡 長興面 三上里 소재 高靈申氏의 묘지 정지작업 중 持正公 申彦暹(1519~1582)의 묘에서 服飾遺物과 함께 발굴되었음

規 格: 冊1, 세로 34.4 × 가로 21.9 ㎝, 冊2, 세로 34.4 × 가로 21.7 ㎝

旣指定: 없음

▢ 現狀 : 조사본 「周易參同契」는 1998년 4월에 京畿道 楊州郡 長興面 三上里 소

재 高靈申氏의 묘지 정지작업 중 持正公 申彦滉(1519~1582)의 墓에서 服飾遺物과 함께 발굴된 것으로, 2013년에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11-14의 高靈申氏安峽公派 宗中이 國立中央博物館에 기탁하여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수장, 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周易參同契」는 1998년 4월에 발굴되었으며,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ㅇ 내용 및 특징

「周易參同契」는 중국 後漢代에 眞人이라 불리던 魏伯陽(100~170)의 저술로 丹學 및 道家의 대표적인 경전이다. 「周易」이 鍊丹術과 老子의 道와 서로 섞여 통한다는 의미로 초기 道敎思想을 「易經」의 형식을 빌어서 內丹과 外丹의 煉丹과 養性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체제는 상중하 3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道家의 心身修練 방식과 장생불노를 위해 복용하는 丹藥의 제조법에 관하여 四言과 五言의 韻文 형식으로 저술되어 있는데, 상편은 주역의 도에 중편은 內養, 하편은 爐火에 중점을 두어 기술했다. 魏伯陽은 사후 '萬古丹經王'이라 불릴 정도로 이 책은 丹經의 으뜸으로 평가되며 후세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周易參同契」는 내용이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많은 주석서가 나왔는데, 최고의 주석서로 평가받는 五代 彭曉(?~?)의 「周易參同契通眞義序」, 南宋 朱子(朱熹, 1130~1200)의 「周易參同契考異」, 宋代 陳顯微(?~?)의 「周易參同契解」, 宋末元初 兪琰(1258~1327)의 「周易參同契發揮」(3卷) 등이 있다.

조사본은 宋末元初에 兪琰(1258~1327)이 저술한 「周易參同契發揮」(3篇)와 「周易參同契釋疑」(3篇)의 合本을 明代 初에 張本鎭(?~?)이 간행한 것을 저본으로 조선 세종 23(1441)년에 初鑄甲寅字로 印出된 것이다.

冊1에는 <周易參同契發揮序(至元甲申四月十四日林屋山人全陽子兪琰玉吳自序, 朝請郎秘書監兼尙書左右司阮登炳七十歲書)>, <序(至大三年歲庚戌臘嗣天師張與材題, 南谷子杜道堅)>, <周易參同契釋疑([序]…時五星聚丑之年金精滿鼎之日林屋洞天紫庭眞逸全陽子書, 上篇釋疑, 中篇釋疑, 下篇釋疑, 鼎器歌釋疑, 序釋疑, 讚序釋疑)>, <周易參同契(上篇)> 등이 수록되어 있다. 冊2에는 <周易參同契(中篇)>, <周易參同契(下篇, 讚序)> 에 이어 末尾에는 權近(1352~1409)의 <癸未字跋>과 卞季良(1369~1430)의 <庚子字跋> 및 金鎔(?~1455)의 <甲寅字跋>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金鎔의 <甲寅字跋> 끝에 "正統六年八月日印出"이라 기록되어 있어 조사본이 세종 23(1441)년 8월에 印出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본에 頒賜記는 없으나, 冊1 序文 첫째 면에 朱印의 "宣賜之記"가 있어 국왕의 반사본임을 알 수 있다. 墓主인 申彦滉(1519~1582)이 申叔舟(1417~1475)의

아우인 申末舟(1429~1503)의 현손으로 중종 14(1514)년에 출생하여 선조 15(1582)년에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世宗朝에 頒賜되어 전해오던 이 책을 장례 때에 副葬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하는 「周易參同契」 중에는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인, 조선 光海年刊(1608~1623)에 訓鍊都監字로 간행된 자료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周易參同契」가 初鑄甲寅字로 간행되었다는 기록이나 실물은 지금까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 조사본은 처음으로 소개되는 유일본이며, 조선 전기의 道家思想과 서적을 연구할 수 있는 學術的, 文化財的 가치가 매우 높은 귀중본이다.

특히 조사본은 무덤의 副葬品에서 발견됨으로써 조선시대 葬禮風俗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며, 현존하는 唯一本이라는 점에서 조선 전기의 印刷文化史 및 書誌學 연구를 위해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사본 「周易參同契」는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硏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자료로 판단된다.

ㅇ 참고문헌

- 서울특별시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등의 指定·認定 資料報告書 (辛承云·吳龍燮·朴相國의 調査報告書). 서울 : 서울특별시文化財委員會, 2013.
- 申春植 編, 『周易參同契』. 影印本. 서울 : 高靈申氏安峽公派宗中會, 2013.
- 국립중앙박물관 편, 「한국의 도교문화=Taoist culture in Korea : the road to happiness : 행복으로 가는 길」. 서울 : 국립중앙박물관,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rcis)

안건번호 동산 2016-02-005

5. 조선왕조의궤(朝鮮王朝儀軌)

가. 심의사항

"조선왕조의궤"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07년 6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이래, 국민적 관심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일제조사('11~'13)를 실시하고, 지정신청 대상목록 작성팀과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지정대상 선정 및 검토('14. 9월~'15. 11월)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5년 제6차 회의(12.10)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12.31~16.1.29)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조선왕조의궤(朝鮮王朝儀軌)
○ 소유자(관리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12개처
○ 소 재 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12개처
○ 수　　량: 총 573종 1,757건 2,751책
○ 재　　질: 저지(楮紙)
○ 판　　종: 필사본(筆寫本), 활자본(活字本)
○ 형　　식: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조선후기

라. 조사자 검토 의견

종합의견 : 국왕이 수행하는 국정 가운데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국가 행사나 사업을 대상으로 제작되었던 의궤는, 행사나 사업의 내역 일체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공개함으로써 철저했던 조선시대 기록정신의 단면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즉, 행사나 사업기간 중에 국왕이 내린 명령서, 업무를 분장한 관청 간에 오간

공문서, 업무의 분장 상황, 업무 담당자의 명단, 행사 또는 공사에 동원된 인원, 소요 물품, 경비의 지출 내역, 유공자에 대한 포상 상황이 모두 기록됨으로써 국가의 재정이 낭비되거나 딴 곳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사본 의궤 573종 1,757건 2,751책은 향후 관련분야의 연구에 귀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학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의궤 573종 1,757건 2,751책은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현 상

현재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한국순교자박물관, 삼척시립박물관, 사천시청,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청주시청 등 12개처에 모두 1,757건 2,751책이 보관, 관리되고 있다. 조사본의 현재 상태는 거의 대부분 양호한 편이며 일부 표지는 후대에 개장되었다.

○ 내용 및 특징

의궤는 왕조의 국가적인 행사를 문자와 그림으로 남긴 文獻이다. 이는 "萬世의 거울이 되는 것"으로서 후대에 하나의 표준으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는 행사의 논의와 준비 과정, 주관 기구의 조직과 인원, 의식 절차, 소요 물품과 비용, 행사 장면과 주요 물품의 그림(기록화),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의궤는 왕실의 冠婚喪祭 관련 의례 기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밖에도 궁궐과 성곽의 건축, 陵墓의 축조와 개수, 戰船과 무기의 제조, 실록과 왕실 족보의 편찬 등 국가적 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들을 기록한 것도 있다.

조선왕조의궤는 태조 때 최초로 편찬하기 시작하여(『세종실록』 권55, 세종 14년 3월 癸亥條에 정도전, 권근 등이 찬수한 종묘 제사 때의 춤에 관한 의궤와 『성종실록』 권172, 성종 15년 11월 丁亥條에 태조4년 경복궁 창건시 그 건설과

정을 기록한 『景福宮造成儀軌』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일제강점기까지 계속 되었다. 그러나 조선전기의 의궤들은 임진왜란 때 대부분 소실되어 남아있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모두 임진왜란 이후에 제작한 것이다.

지정 대상 의궤는 모두 1,757건 2,751책이다. 이 중에 선조 34년(1601) 3월에 작성된 사천시청 소장의『世宗大王胎室石欄干修改儀軌』와 선조 34년(1601) 6월에 작성된 규장각소장의『[懿仁王后] 殯殿魂殿都監儀軌』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며, 1910년의 『興王冊封儀軌』가 가장 후대의 것이다.

의궤에 기록된 주요 행사는 왕실의 혼인을 비롯하여 왕과 왕세자의 책봉, 왕실의 장례, 제사, 궁중 잔치, 활쏘기, 胎의 봉안, 국왕의 행차, 궁궐 건축, 親農·親蠶 행사, 사신의 영접 등 국가나 왕실 행사 전반에 관한 것으로 행사의 과정을 날짜에 따라 기록한 각종 공문서를 비롯하여 업무의 분담, 담당자의 명단, 동원된 인원, 소요된 물품, 경비의 지출, 유공자 포상 등에 관한 것들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행사의 가장 중요한 행렬은 班次圖를 통해 표현했다.

이러한 국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都監이나 廳으로 불리는 임시 기구가 설치되어 모든 행사를 주관하였다. 도감은 행사의 명칭에 따라 冊禮都監, 嘉禮都監, 國葬都監, 山陵都監, 祔廟都監, 尊崇都監, 營建都監, 錄勳都監, 祭器都監, 迎接都監, 金寶改造都監 등으로 호칭되었다. 도감의 직제는 보통 의정급이 겸하는 都提調 1명, 판서급이 겸하는 提調 3-4명, 당하관들로 임명하는 都廳 2-3명, 郎廳 4-8명, 監造官 5-6명 등이 있고 그 아래에 실무를 담당한 算員·錄事·書吏·書寫·庫直·使令 등이 각각 임명되었다. 이밖에 嘉禮都監의 경우에는 正使(정1품) 1인, 부사(정2품) 1인, 傳敎官(승지) 1인 등이 더 임명되기도 하였다. 중국에서 오는 勅使를 영접하기 위해 설치한 영접도감의 경우에는 총괄부서인 도청에 판서 급의 遠接使·館伴 등의 당상과 낭청 2~3명, 그리고 업무 분장 담당하는 부서마다에는 낭청 2~3명이 임명되었다.

각 도감에서는 행사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일체 과정을 날짜순으로 기록한 등록을 만들고, 이를 다시 주제별로 분류 정리하여 훗날의 교범이나 참고용으로 삼기 위하여 의궤를 만들었다. 의궤는 보통 국왕의 傳敎, 도담의 啓辭와 移文·來關·甘結 등 각종 수발공문서, 도감의 조직과 업무 분장, 인원·물자의 조달과 배정, 경비의 收支, 건축물의 營造, 器物의 설계도와 각종 班次圖, 행사 후 유공자의 포상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의궤는 배부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필사본으로 만들어졌으며 정조이후에는 일부의궤가 금속활자본으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필사본은 임금이 보기 위한 御覽用 1부와 의정부·예조·춘추관·강화부·태백산사고·오대산사고·적상산사고·정족산사고 등에 각 1부씩 수장하기 위하여 8-9부가 만들어졌다. 간단한 행사의 경우에는 2부만 만들기도 하였는데 이는 어람용과 예조 참고용이었다. 의궤는 대개 필사본으로 되어 있으며 부수도 많지 않고, 일부는 탈락·落張 등으로

인해 改裝하거나 장황을 다시 한 경우도 있다.

의궤의 체제는 의례의 전 일정을 일자별로 정리한 時日, 의례의 주요장면이나 주요도구의 그림을 실은 圖式, 圖說, 업무시 오고간 문서들을 기록한 敎旨, 上奏文, 인건비 등의 각종 비용을 적은 財用, 물품을 제조한 각종 기술자의 명단인 工匠, 의례 집행시 유공자 포상 내용을 적은 賞典 등의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의궤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조선만의 독특한 전통으로서 예법을 중시하고 기록을 철저히 보존하려는 조선시대의 우수한 기록문화 중 하나이다.

ㅇ 지정기준

조선왕조의궤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정 명칭은 조선왕조의궤로 한다.

2) 1)항에 의거 의궤 작성 시기의 하한은 1910년까지로 하며, 일제강점기 제작된 의궤, 분상처가 확인되지 않는 활자본(완질/비완질), 고본 등의 의궤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총 조사대상 2,067건 3,832책 중 ①일제강점기 의궤 35건 53책, ②분상용-비유일본-완질-활자본(분상처無) 201건 865책, ③분상용-비유일본-비완질-활자본(분상처無) 68건 155책, ④ 고본용 3건 3책, ⑤ 휘경원원소도감의궤 1건 1책(국외 소유), ⑥ 의궤로 보기 어려운 황단의, 황단중수의 2건 4책 을 제외하였다.

3) 1)항과 2)항에 따라 지정 대상을 검토한 결과, 총 수량은 573종 1,757건 2,751책으로 현재 12개처에 보관 중이다.

의궤의 서명 작성 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였다.

1) 표제를 기준으로 삼고, 행사의 주인공이나 陵의 주인공, 기타 참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 ], 또는 [( )] 부호 안에 명시해주었다.

예시1) [景宗] 冊禮都監儀軌

예시2) [長陵(仁祖)] 遷奉都監儀軌

2) 행사의 주인공이 2인 이상일 경우 가운데 점(·) 으로 구분하였다. 왕후가 2인 이상일 경우 호칭은 마지막 인물에만 붙였다.

3) 표지에 제목이 없거나 낙장된 경우 內題 또는 版心題를 기준으로 삼았다.

4) 국한문혼용서명 또는 한글서명은 원명 그대로 기입하였다.

5) 2건 이상의 의궤가 합철된 경우 각각 별도의 카드로 작성한다. 내용이 유사성이 있더라도 별도의 건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각각 카드를 작성하였다.

[표 1] 유형별 현황

용도	유일본	완질/비완질	분상처 유/무	판종	수량			
					기관(처)	종	건	책
어람용	유일본				1	11	11	15
	유일본 소계						11	15
	비유일본	완질			5	101	159	265
		비완질			2	6	8	23
	비유일본 소계						167	288
어람용 소계							178	303
분상용	유일본	완질			6	145	145	173
		비완질			2	6	6	6
	유일본 소계						151	179
	비유일본	완질	유	필사본	6	364	1157	1809
				활자본	5	12	23	128
			분상처 기록이 있는 소계				1,180	1,937
			무	필사본	5	86	151	179
			분상처 기록이 없는 소계				151	179
		완질본 소계					1,331	2,116
		비완질	유	필사본	2	40	53	81
				활자본	2	1	4	22
			분상처 기록이 있는 소계			41	57	103
			무	필사본	3	35	40	50
			분상처 기록이 없는 소계			35	40	50
		비완질본 소계					97	153
	비유일본 소계						1,428	2,269
분상용 소계							1,579	2,448
국가지정 대상 조선왕조의궤 합계					12	573	1,757	2,751

[표 2] 소장처별 현황

연번	기관명	분류											계(건)
		어람용			분상용								
		유일본	비유일본		유일본		비유일본						
			완질	비완질	완질	비완질	완질			비완질			
							분상처 유		분상처 무	분상처 유		분상처 무	
							필사본	활자본	필사본	필사본	활자본	필사본	
1	규장각	11	141	7	111	4	883	7	131	48	2	28	1,373
2	장서각		13	1	26	2	207	13	11	5	2	11	291
3	국립 고궁 박물관		2		4		65	1	8				80
4	국립 중앙 박물관							1					1
5	국립 중앙 도서관						1					1	2
6	서울 역사 박물관		1										1
7	삼척 시립 박물관						1						1
8	한국 순교자 박물관		2										2
9	연세 대학교							1					1
10	이화여자 대학교								1				1
11	사천시청				3								3
12	청주시청				1								1
계(12기관)		11	159	8	145	6	1157	23	151	53	4	40	1,757

○ 상세목록 : 붙임1 참조

ㅇ 문헌자료

김문식, 신병주, 『조선 왕실기록문화의 꽃, 의궤』, 돌베개, 2005.

박정혜, 「의궤를 통해 본 조선시대의 화원」, 『美術史硏究』 第9號(미술사연구회, 1995).

서울대 규장각. 『규장각소장 의궤 해제집』 1-4,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3-2005.

서울대 규장각. 『규장각소장 의궤목록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신명호, 『조선 왕실의 의례와 생활, 궁중문화』, 돌베개, 2002.

신승운, 「조선왕조 의궤의 조사연구와 정리방안」, 『조선왕조 의궤의 번역현황과 과제』 발표자료집, 한국고전번역원, 2009.

심재우,「조선왕조의궤의 현존상황과 보존방안」, 『조선왕조 기록문화의 꽃 의궤』 발표자료집, 문화재청, 2007.

옥영정, 「의궤의 서지학적연구성과와 편찬 간행관련 기록의 활용」, 『조선왕조의궤 현황과 전망』, 국립중앙박물관 (2012.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소장의궤해제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200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소장 의궤목록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7.

한영우, 『조선왕조 의궤』, 일지사, 2005.

【붙임 1】 조선왕조의궤-규장각(1373건 2203책)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의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601	불분권	1	규14845
[의인왕후]산릉도감의궤	1601	불분권	1	규14826
존숭도감의궤	1604	불분권	1	규14899
[호성선무청난삼]공신도감의궤	1604	불분권	1	규14924
사직종묘문묘제기도감의궤	1605	불분권	1	규14930
[호성선무원종삼]공신도감의궤	1605	불분권	1	규14923
선종소경대왕국장도감일방의궤	1608	불분권	1	규14861-1
선종소경대왕국장도감이방의궤	1608	불분권	1	규13511
선종소경대왕국장도감이방의궤	1608	불분권	1	규14861-2
목릉수개의궤	1609	불분권	1	규13514
영접도감사제청의궤	1609	불분권	1	규14556
영접도감사제청의궤	1609	불분권	1	규14557
영접도감도청의궤	1610	불분권	1	규14545
영접도감도청의궤	1610	불분권	1	규14546
선종대왕의인왕후부묘도감이방의궤	1610	불분권	1	규13512-2
선종대왕의인왕후부묘도감일방의궤	1610	불분권	1	규13512-1
선종대왕의인왕후부묘도감이방의궤	1610	불분권	1	규14878-2
선종대왕의인왕후부묘도감삼방의궤	1610	불분권	1	규13513
선종대왕의인왕후부묘도감삼방의궤	1610	불분권	1	규13512-3
선종대왕의인왕후부묘도감삼방의궤	1610	불분권	1	규14878-1
의인왕후상존호대비전상존호중궁전책례왕세자책례관례시책례도감의궤	1610	불분권	1	규13196
추숭도감의궤	1610	불분권	1	규14880
영접도감미면색의궤	1610	불분권	1	규14551
제기도감의궤	1612	불분권	1	규14931
화기도감의궤	1615	불분권	1	규14596
공성왕후부묘도감의궤	1616	불분권	1	규14939
동국신속삼강행실찬집청의궤	1616	불분권	1	규14936
동국신속삼강행실찬집청의궤	1616	불분권	1	규14207
동국신속삼강행실찬집청의궤	1616	불분권	1	규14208
지석도감의궤	1618	불분권	1	규14894
선조이선후추숭도감의궤	1618	불분권	1	규13244
[선조·의인왕후]존호도감의궤	1621	불분권	1	규14895
존숭도감의궤	1621	불분권	1	규14891
존숭의궤	1624	불분권	1	규13245
제기악기도감의궤	1624	불분권	1	규14932
제기악기도감의궤	1624	불분권	1	규13734
반선색의궤	1626	불분권	1	규14574
반선색의궤	1626	불분권	1	규14575
반선색의궤	1626	불분권	1	규14573
예장도감의궤	1627	불분권	1	규13518
왕세자가례[교시시응행제사마련]도감의궤	1628	불분권	1	규13198
왕세자가례[교시시응행제사마련]도감의궤	1628	불분권	1	규13197
[소무녕사]녹훈도감의궤	1629	불분권	1	규14583
천봉시산릉도감의궤	1630	불분권	1	규13515
[선조목릉]천봉도감의궤	1630	불분권	1	규15070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인목왕후]국장도감의궤	1632	불분권	1	규13516
산릉도감의궤	1632	불분권	1	규14822
산릉도감의궤	1632	불분권	1	규13517
창경궁수리소의궤	1633	불분권	1	규14915
창경궁수리소의궤	1633	불분권	1	규14322
찬수청의궤	1634	불분권	1	규14157
군색의궤	1634	불분권	1	규14565
군색의궤	1634	불분권	1	규14566
반선색의궤	1634	불분권	1	규14564
반선색의궤	1634	불분권	1	규14563
영접도감연향색의궤	1634	불분권	1	규14568
잡물색의궤	1634	불분권	1	규14572
잡물색의궤	1634	불분권	1	규14571
영접도감연향색의궤	1634	불분권	1	규14567
미면색의궤	1634	불분권	1	규14569
미면색의궤	1634	불분권	1	규14570
영접도감도청의궤	1634	불분권	1	규14560
영접도감도청의궤	1634	불분권	1	규14559
영접도감응판색의궤	1634	불분권	1	규14561
영접도감응판색의궤	1634	불분권	1	규14562
원종대왕인헌왕후부묘도감의궤	1635	불분권	1	규13519
원종대왕인헌왕후부묘도감의궤	1635	불분권	1	규13520
군색의궤	1635	불분권	1	규14577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1638	불분권	1	규13061
연향색의궤	1643	불분권	1	규14579
응판색의궤	1643	불분권	1	규14578
잡물색의궤	1643	불분권	1	규14580
반선색의궤	1643	불분권	1	규14576
묘소도감의궤	1645	불분권	1	규14833
예장도감도청의궤	1645	불분권	1	규13918
묘소도감의궤	1645	불분권	1	규13920
[소현세자]빈궁도감의궤	1645	불분권	1	규13919
왕세자급빈궁책례도감의궤	1645	불분권	1	규13062
왕세자급빈궁책례도감의궤	1645	불분권	1	규13063
녹훈도감의궤	1646	불분권	1	규14584
녹훈도감의궤	1646	불분권	1	규14946
왕세손책례도감의궤	1649	불분권	1	규13067
국장도감도청의궤	1649	불분권	1	규13521
빈전도감의궤	1649	불분권	1	규14855
[인조장릉]산릉도감의궤	1649	불분권	1	규15074
존숭도감도청의궤	1651	불분권	1	규14888
인조대왕인열왕후부묘도감도청의궤	1651	불분권	1	규13524
인조대왕인열왕후부묘도감도청의궤	1651	불분권	1	규13523
인조대왕인열왕후부묘도감도청의궤	1651	불분권	1	규13522
존숭도감도청의궤	1651	불분권	1	규13253
존숭도감도청의궤	1651	불분권	1	규13252
존숭도감도청의궤	1651	불분권	1	규13254
중궁전책례도감도청의궤	1651	불분권	1	규13066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중궁전책례도감도청의궤	1651	불분권	1	규14907
중궁전책례도감도청의궤	1651	불분권	1	규13064
중궁전책례도감도청의궤	1651	불분권	1	규13065
세자책례도감도청의궤	1651	불분권	1	규13070
세자책례도감도청의궤	1651	불분권	1	규13068
세자책례도감도청의궤	1651	불분권	1	규13069
왕세자가례시도청의궤	1652	불분권	1	규13072
왕세자가례시도청의궤	1652	불분권	1	규13071
창덕창경양궁수리도감의궤	1652	불분권	1	규14912
인조대왕실록찬수청의궤	1653	불분권	1	규14158
인조대왕실록찬수청의궤	1653	불분권	1	규14159
선조대왕실록수정청의궤	1657	불분권	1	규14155
선조대왕실록수정청의궤	1657	불분권	1	규14156
추쇄도감의궤	1657	불분권	2	규14934 규14933
국장도감도청의궤	1659	불분권	2	규13527
국장도감도청의궤	1659	불분권	1	규14866
빈전도감의궤	1659	불분권	1	규15072
빈전도감의궤	1659	불분권	1	규13528
[영릉]산릉도감의궤	1659	불분권	1	규15075
대왕대비전왕대비전존숭도감도청의궤	1661	불분권	1	규13257
부묘도감도청의궤	1661	불분권	1	규14876
부묘도감도청의궤	1661	불분권	1	규13531
부묘도감도청의궤	1661	불분권	1	규13530
부묘도감도청의궤	1661	불분권	1	규13529
[대왕대비전왕대비전]존숭도감도청의궤	1661	불분권	1	규14893
대왕대비전왕대비전존숭도감도청의궤	1661	불분권	1	규13256
대왕대비전왕대비전존숭도감도청의궤	1661	불분권	1	규13255
[책례]도감도청의궤	1661	불분권	1	규13075
책례도감도청의궤	1661	불분권	1	규13073
책례도감도청의궤	1661	불분권	1	규13074
효종대왕실록찬수청의궤	1661	불분권	1	규14160
책례도감의궤	1667	불분권	1	규13076
책례도감의궤	1667	불분권	1	규13077
영녕전개수도감의궤	1667	불분권	1	규14224
부묘도감도청의궤	1670	불분권	1	규13497
부묘도감도청의궤	1670	불분권	1	규13496
부묘도감도청의궤	1670	불분권	1	규13498
왕세자가례시도청의궤	1671	불분권	1	규13081
왕세자가례시도청의궤	1671	불분권	1	규13080
왕세자가례시도청의궤	1671	불분권	1	규13078
왕세자가례시도청의궤	1671	불분권	1	규13079
천릉도감의궤	1673	불분권	1	규15071
천릉도감도청의궤	1673	불분권	1	규14885
천릉도감도청의궤	1673	불분권	3	규13532
천릉도감빈전소의궤	1673	불분권	1	규13533
부묘도감도청의궤	1674	불분권	1	규14883
빈전혼전도감의궤	1674	불분권	1	규13535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국장도감도청의궤	1674	불분권	2	규13534
국장도감도청의궤	1674	불분권	3	규14865
국장도감도청의궤	1675	불분권	2	규13539
국장도감도청의궤	1675	불분권	1	규15077
빈전혼전도감의궤	1675	불분권	1	규14842
빈전혼전도감의궤	1675	불분권	1	규13540
산릉도감의궤	1675	불분권	1	규15076
부묘도감도청의궤	1676	불분권	1	규13538
부묘도감도청의궤	1676	불분권	1	규13537
부묘도감도청의궤	1676	불분권	1	규14884
부묘도감도청의궤	1676	불분권	1	규13536
책례도감도청의궤	1677	불분권	1	규14908
책례도감도청의궤	1677	불분권	1	규13083
책례도감도청의궤	1677	불분권	1	규13082
부묘도감도청의궤	1677	불분권	1	규13541
부묘도감도청의궤	1677	불분권	1	규13543
부묘도감도청의궤	1677	불분권	1	규13542
존숭도감도청의궤	1677	불분권	1	규14896
존숭도감도청의궤	1677	불분권	1	규13259
존숭도감도청의궤	1677	불분권	1	규13258
존숭도감도청의궤	1677	불분권	1	규13260
남별전중건청의궤	1677	불분권	1	규14353
현종대왕실록찬수청의궤	1677	불분권	1	규14161
현종대왕실록찬수청의궤	1677	불분권	1	규14163
선원록이정청의궤	1680	불분권	3	규14006
선원록이정청의궤	1680	불분권	3	규14010
선원록이정청의궤	1680	불분권	3	규14011
빈전혼전도감의궤	1681	불분권	1	규13554
국장도감도청의궤	1681	불분권	2	규13553
가례도감도청의궤	1681	불분권	1	규13084
가례도감도청의궤	1681	불분권	1	규13085
선원록교정청의궤	1681	불분권	1	규14005
선원록교정청의궤	1681	불분권	1	규14008
선원록교정청의궤	1681	불분권	1	규14009
시호도감도청의궤	1681	불분권	1	규13243
현종대왕실록개수청의궤	1683	불분권	1	규14164
현종대왕실록개수청의궤	1683	불분권	1	규14162
시호도감의궤	1683	불분권	1	규14927
선원보략개간의궤	1684	불분권	1	규14002
선원보략개간의궤	1684	불분권	1	규14003
선원보략개간의궤	1684	불분권	1	규14004
[명성왕후]국장도감이방의궤	1684	불분권	1	규14869
빈전혼전도감의궤	1684	불분권	1	규13544
빈전혼전도감의궤	1684	불분권	1	규14841
산릉도감의궤	1684	불분권	1	규14832
선원보략개간의궤	1684	불분권	1	규13390
존숭도감도청의궤	1686	불분권	1	규14889
존숭도감도청의궤	1686	불분권	1	규13261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존숭도감도청의궤	1686	불분권	1	규13262
존숭도감도청의궤	1686	불분권	1	규13263
부묘도감도청의궤	1686	불분권	1	규14879
부묘도감도청의궤	1686	불분권	1	규13547
부묘도감도청의궤	1686	불분권	1	규13546
부묘도감도청의궤	1686	불분권	1	규13545
책보개수도감의궤	1688	불분권	1	규14210
책보개수도감의궤	1688	불분권	1	규14911
영정모사도감도청의궤	1688	불분권	1	규13979
영정모사도감도청의궤	1688	불분권	1	규14921
영정모사도감도청의궤	1688	불분권	1	규13978
국장도감도청의궤	1688	불분권	1	규14867
책례도감도청의궤	1690	불분권	1	규13091
책례도감도청의궤	1690	불분권	1	규14902
책례도감도청의궤	1690	불분권	1	규13202
책례도감도청의궤	1690	불분권	1	규13201
부묘도감도청의궤	1691	불분권	1	규14882
부묘도감도청의궤	1691	불분권	1	규13525
부묘도감도청의궤	1691	불분권	1	규13526
책례도감도청의궤	1694	불분권	1	규13088
책례도감도청의궤	1694	불분권	1	규13087
책례도감도청의궤	1694	불분권	1	규13086
헌릉비석중건청의궤	1695	불분권	1	규13501
왕세자가례시도청의궤	1696	불분권	1	규13093
왕세자가례시도청의궤	1696	불분권	1	규13092
복위부묘도감의궤	1699	불분권	1	규13504
복위부묘도감의궤	1699	불분권	1	규13502
사릉봉릉도감의궤	1699	불분권	1	규14821
장릉봉릉도감의궤	1699	불분권	1	규14830
장릉수개도감의궤	1699	불분권	1	규13505
복위부묘도감의궤	1699	불분권	1	규13503
선원보략교정청의궤	1700	불분권	1	규12985
빈전도감의궤	1701	불분권	1	규13556의1
선원보략교정청의궤	1702	불분권	1	규14012
선원보략교정청의궤	1702	불분권	1	규14013
산릉도감의궤	1702	불분권	1	규14824
혼전도감의궤	1702	불분권	1	규13556의2
국장도감이방의궤	1702	불분권	1	규14864
국장도감이방의궤	1702	불분권	2	규13555-1-2
가례도감대전가례의궤	1702	불분권	1	규13089
가례도감대전가례의궤	1702	불분권	1	규13090
선원보략교정청의궤	1702	불분권	1	규14007
단종대왕실록부록찬집청의궤	1704	불분권	1	규14153
금보개조도감의궤	1705	불분권	2	규14598 규14211
금보개조도감도청추부의궤	1705	불분권	1	규14209
금보개조도감의궤	1705	불분권	2	규14948 규14949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종묘의궤	1706	불분권	4	규14220
존숭도감의궤	1713	불분권	2	규13267
존숭도감의궤	1713	불분권	2	규13268
존숭도감의궤	1713	불분권	1	규14900
어용도사도감의궤	1713	불분권	1	규13996
어용도사도감의궤	1713	불분권	1	규13995
빈궁도감의궤	1718	불분권	1	규14852
혼궁도감의궤	1718	불분권	1	규14849
빈궁도감의궤	1718	불분권	1	규13575
혼궁도감의궤	1718	불분권	1	규13574
예장도감의궤	1718	불분권	2	규13573 규13572
복위선시도감의궤	1718	불분권	1	규14928
복위선시도감의궤	1718	불분권	1	규13494
민회빈봉묘도감의궤	1719	불분권	2	규14837-1-2
왕세자가례시도청의궤	1719	불분권	1	규13095
왕세자가례시도청의궤	1719	불분권	1	규13096
왕세자가례시도청의궤	1719	불분권	1	규13094
진연청의궤	1719	불분권	1	규14357
진연청의궤	1719	불분권	2	규14358-1-2
빈전도감의궤	1720	불분권	1	규13549
빈전도감의궤	1720	불분권	1	규14839
혼전도감의궤	1720	불분권	1	규13550
혼전도감의궤	1720	불분권	1	규14856
선원보략교정청의궤	1721	불분권	1	규14015
국장도감도청의궤	1721	불분권	1	규14862
국장도감도청의궤	1721	불분권	2	규13548-1-2
책례도감의궤	1721	불분권	1	규13099
책례도감의궤	1721	불분권	1	규14903
선원보략교정청의궤	1721	불분권	1	규14014
혜릉석물추배도감의궤	1722	불분권	1	규14940
존숭도감도청의궤	1723	불분권	1	규13279
존숭도감도청의궤	1723	불분권	1	규13277
존숭도감도청의궤	1723	불분권	1	규13278
책례도감의궤	1723	불분권	1	규14905
책례도감의궤	1723	불분권	1	규13097
책례도감의궤	1723	불분권	1	규13098
부묘도감도청의궤	1723	불분권	1	규13551
부묘도감도청의궤	1723	불분권	1	규13552
빈전도감의궤	1724	불분권	1	규13567
빈전도감의궤	1724	불분권	1	규14854
선원보략어첩수개시의궤	1724	불분권	1	규14016
혼전도감의궤	1725	불분권	1	규13568
혼전도감의궤	1725	불분권	1	규14844
책례도감의궤	1725	불분권	1	규14909
국장도감도청의궤	1725	불분권	1	규14871
국장도감도청의궤	1725	불분권	2	규13566-1-2
선원보략개수시의궤	1725	불분권	1	규14019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선원보략수개시의궤	1725	불분권	1	규14018
선원보략개수시의궤	1725	불분권	1	규14017
종묘개수도감의궤	1726	불분권	2	규14225-1-2
부묘도감도청의궤	1727	불분권	1	규13571
부묘도감도청의궤	1727	불분권	1	규13569
부묘도감도청의궤	1727	불분권	1	규13570
존숭도감도청의궤	1727	불분권	1	규14898의2
존숭도감도청의궤	1727	불분권	1	규13282
존숭도감도청의궤	1727	불분권	1	규13280
존숭도감도청의궤	1727	불분권	1	규13281
책례도감도청의궤	1727	불분권	1	규14904
책례도감도청의궤	1727	불분권	1	규13100
책례도감도청의궤	1727	불분권	1	규13101
가례도감왕세자가례시의궤	1727	불분권	1	규13106
가례도감왕세자가례시의궤	1727	불분권	1	규13105
가례도감왕세자가례시의궤	1727	불분권	1	규13107
선원보략수개시의궤	1728	불분권	1	규14020
선원보략수개시의궤	1728	불분권	1	규14022
선원보략수개시의궤	1728	불분권	1	규14021
예장도감이방의궤	1729	불분권	1	규14875
빈궁도감의궤	1729	불분권	1	규14857
묘소도감의궤	1729	불분권	1	규14835
분무녹훈도감의궤	1729	불분권	1	규14935
빈전도감의궤	1730	불분권	1	규13577
빈전도감의궤	1730	불분권	1	규14853
국장도감의궤	1730	불분권	1	규14863
국장도감의궤	1730	불분권	2	규13576-1-2
혼전도감의궤	1731	불분권	1	규13578
산릉도감의궤	1731	불분권	2	규14823-1-2
천릉도감도청의궤	1731	불분권	7	규14597-1-7
숙종대왕실록찬수청의궤	1731	불분권	2	규14168-1-2
숙종대왕실록찬수청의궤	1731	불분권	1	규14165
숙종대왕실록찬수청의궤	1731	불분권	1	규14166
숙종대왕실록찬수청의궤	1731	불분권	2	규14167-1-2
천릉도감도청의궤	1732	불분권	1	규14886
천릉도감도청의궤	1732	불분권	5	규14887
부묘도감도청의궤	1732	불분권	1	규14877
부묘도감도청의궤	1732	불분권	1	규13579
부묘도감도청의궤	1732	불분권	1	규13580
선원보략수정시종부시의궤	1735	불분권	1	규14023
교정청등록	1735	불분권	1	규14025
종부시선원보략수정시등록	1735	불분권	1	규14024
영정모사도감의궤	1735	불분권	1	규14922
옥인조성도감도의궤	1735	불분권	1	규14947
책례도감의궤	1736	불분권	1	규13108
선원보략개장시의궤	1736	불분권	1	규14026
선원보략개장시의궤	1736	불분권	1	규14027
선원보략개장시의궤	1736	불분권	1	규14028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선농단친경의궤	1739	불분권	1	규14537
선농단친경의궤	1739	불분권	1	규14937
복위부묘도감의궤	1739	불분권	1	규14881
복위부묘도감의궤	1739	불분권	1	규13508
복위부묘도감의궤	1739	불분권	1	규13507
복위부묘도감의궤	1739	불분권	1	규13506
선원보략개수정시교정청의궤	1739	불분권	1	규14030
온릉봉릉도감의궤	1739	불분권	1	규14831
선원보략개수정시교정청의궤	1739	불분권	1	규14029
존숭도감도청의궤	1740	불분권	1	규13283
존숭도감도청의궤	1740	불분권	1	규13285
존숭도감도청의궤	1740	불분권	1	규13284
가상시호도감의궤	1740	불분권	1	규13264
존숭도감의궤	1740	불분권	2	규13287-1-2
존숭도감의궤	1740	불분권	2	규13286-1-2
선원보략수정시종부시의궤	1740	불분권	1	규14031
종묘의궤속록	1741	불분권	2	규14221-1-2
대사례의궤	1743	불분권	1	규14941
[장조·헌경왕후]가례도감의궤	1744	불분권	1	규13109
[장조·헌경왕후]가례도감의궤	1744	불분권	1	규13111
[장조·헌경왕후]가례도감의궤	1744	불분권	1	규13110
[숙종]명릉개수도감의궤	1744	불분권	1	규13563
[숙종]명릉개수도감의궤	1744	불분권	1	규13565
[숙종]명릉개수도감의궤	1744	불분권	1	규13564
[영조갑자]진연의궤	1744	불분권	2	규14360-1-2
선원보략수정시교정청의궤	1744	불분권	1	규14034
선원보략수정시종부시의궤	1744	불분권	1	규14033
[영조갑자]진연의궤	1744	불분권	1	규14359
선원보략수정시교정청의궤	1744	불분권	1	규14032
악기조성청의궤	1745	불분권	1	규14264
선원보략수정시교정청의궤	1747	불분권	1	규14035
선원보략수정시교정청의궤	1747	불분권	1	규14036
선원보략수정시교정청의궤	1748	불분권	1	규14038
진전중수도감도청의궤	1748	불분권	1	규14913
영정모사도감의궤	1748	불분권	1	규13997
선원보략수정시교정청의궤	1748	불분권	1	규14037
대보단증수소의궤	1749	불분권	1	규14315
[인원왕후칠존호]존숭도감의궤	1751	불분권	1	규14897
[인원왕후칠존호]존숭도감의궤	1751	불분권	1	규14898-1
[인원왕후칠존호]존숭도감의궤	1751	불분권	1	규13290
[인원왕후칠존호]존숭도감의궤	1751	불분권	1	규13291
[인원왕후육존호]존숭도감의궤	1751	불분권	1	규13288
[인원왕후육존호]존숭도감의궤	1751	불분권	1	규13289
선원보략수정시종부시의궤	1751	불분권	1	규14040
선원보략수정시종부시의궤	1751	불분권	1	규14042
선원보략수정시종부시의궤	1751	불분권	1	규14041
[의소세손]책례도감의궤	1751	불분권	1	규13199
선원보략수정시종부시의궤	1751	불분권	1	규14039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효순현빈]예장도감의궤	1752	불분권	1	규14874
[효순현빈]빈궁혼궁양도감의궤	1752	불분권	2	규14848
[의소세손]빈궁혼궁양도감의궤	1752	불분권	2	규14838-1-2
선원보략수정시종부시의궤	1752	불분권	1	규14044
[효순현빈]묘소도감의궤	1752	불분권	2	규14836-1-2
선원보략수정시종부시의궤	1752	불분권	1	규14045
선원보략수정시종부시의궤	1752	불분권	1	규14043
[인원왕후]존숭도감의궤	1752	불분권	2	규13292-1-2
[인원왕후]존숭도감의궤	1752	불분권	2	규13293-1-2
[인원왕후]존숭도감의궤	1752	불분권	2	규15073 규14901
[의소묘]영건청의궤	1752	불분권	1	규14259
[육상궁]상시봉원도감의궤	1753	불분권	2	규14926 규14925
선원보략수정시교정청의궤	1753	불분권	1	규14047
선원보략수정시교정청의궤	1753	불분권	1	규14048
선원보략수정시교정청의궤	1753	불분권	1	규14046
선원보략수정시교정청의궤	1754	불분권	1	규14050
선원보략수정시교정청의궤	1754	불분권	1	규14052
선원보략수정시교정청의궤	1754	불분권	1	규14051
[숙종·인경·인현·인원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1754	불분권	2	규13294-1-2
[숙종·인경·인현·인원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1754	불분권	2	규13270 규13271
선원보략수정시교정청의궤	1754	불분권	1	규14049
적상산성봉안국조어첩개수의궤	1755	불분권	1	규14154
적상산성봉안국조어첩개수의궤	1755	불분권	1	규14152
풍양수립비석의궤	1755	불분권	1	규14263
[인빈]상시봉원도감의궤	1755	불분권	1	규13493
선원보략수정시종부시의궤	1755	불분권	1	규14054
선원보략수정시종부시의궤	1755	불분권	1	규14055
선원보략수정시종부시의궤	1755	불분권	1	규14053
천의소감찬수청의궤	1756	불분권	1	규14206
[인원왕후·화경숙빈·영조·정성왕후]존숭도감의궤	1756	불분권	2	규13295-1-2
[인원왕후·화경숙빈·영조·정성왕후]존숭도감의궤	1756	불분권	2	규13269-1-2
[인원왕후·화경숙빈·영조·정성왕후]존숭도감의궤	1756	불분권	1	규14890
[국조어첩팔고조도]선원보략수정시종부시의궤	1756	불분권	1	규14057
[국조어첩팔고조도]선원보략수정시종부시의궤	1756	불분권	1	규14056
[국조어첩팔고조도]선원보략수정시종부시의궤	1756	불분권	1	규14058
열성어제리정경간시자본사수정의궤	1757	불분권	1	규14201
선원보략수정본청의궤	1757	불분권	1	규14065
선원보략수정의궤	1757	불분권	1	규14066
[인원왕후]빈전도감의궤	1757	불분권	1	규13559의1
[정성왕후]빈전도감의궤	1757	불분권	2	규13590의1 규13590의2
[정성왕후]국장도감도청의궤	1757	불분권	2	규13589-1-2
[인원왕후]국장도감의궤	1757	불분권	2	규13557 규13558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정성왕후]산릉도감의궤	1757	불분권	2	규13591-1-2
[인원왕후]산릉도감의궤	1757	불분권	2	규13560-1-2
[인원왕후]혼전도감의궤	1757	불분권	1	규13559의2
선원보략자본시수정의궤	1757	불분권	1	규14062
선원보략수정시경상도의궤	1757	불분권	1	규14061
선원보략수정시본청의궤	1757	불분권	1	규14060
선원보략수정시본청의궤	1757	불분권	1	규14059
선원보략수정경상도의궤	1758	불분권	1	규14063
선원보략수정시강화봉안의궤	1758	불분권	1	규14064
열성지장수정시본시의궤	1758	불분권	1	규14200
선원보략본사수정의궤	1759	불분권	1	규14068
선원보략본사수정의궤	1759	불분권	1	규14067
[인원왕후]부묘도감도청의궤	1759	불분권	1	규13561
[인원왕후]부묘도감도청의궤	1759	불분권	1	규13562
[정조왕세손]책례도감의궤	1759	불분권	1	규13113
[정조왕세손]책례도감의궤	1759	불분권	1	규13112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도청의궤	1759	불분권	2	규13103-1-2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도청의궤	1759	불분권	1	규13104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도청의궤	1759	불분권	2	규13102-1-2
선원보략수정강원도강릉오대산봉안의궤	1759	불분권	1	규14069
선원보략수정시교정청의궤	1760	불분권	1	규14070
선원보략수정시교정청의궤	1760	불분권	1	규14071
[정조·효의왕후]가례청도청의궤	1762	불분권	2	규13114-1-2
[정조·효의왕후]가례청도청의궤	1762	불분권	2	규13115-1-2
[사도세자]예장도감도청의궤	1762	불분권	2	규13605-1-2
[사도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	1762	불분권	2	규13606-1-2
[장조영우원]묘소도감의궤	1762	불분권	2	규13607
선원보략수정본청의궤	1764	불분권	1	규14073
선원보략수정의궤	1764	불분권	1	규14074
선원보략수정본청의궤	1764	불분권	1	규14075
선원보략수정본청의궤	1764	불분권	1	규14072
[건원릉정자각]중수도감의궤	1764	불분권	1	규13896-2
[건원릉정자각]중수도감의궤	1764	불분권	1	규13500
[수은묘]영건청의궤	1764	불분권	1	규13631
수작의궤	1765	불분권	2	규14361-1-2
친잠의궤	1767	불분권	1	규14543
친경의궤	1767	불분권	1	규14539
친경의궤	1767	불분권	1	규14540
친경의궤	1767	불분권	1	규14542
친경의궤	1767	불분권	1	규14538
장종수견의궤	1767	불분권	1	규14544
친경의궤	1767	불분권	1	규14541
[헌릉석물]중수도감의궤	1768	불분권	1	규13896-1
[정릉표석]영건청의궤	1770	불분권	1	규13499
위판조성도감의궤	1771	불분권	1	규14250
선원보략수정의궤	1772	불분권	1	규14076
선원보략수정의궤	1772	불분권	1	규14077
선원보략수정의궤	1772	불분권	1	규14078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진전중수도감도청의궤	1772	불분권	1	규14237
[육상궁]상시도감의궤	1772	불분권	1	규13490
[육상궁]상시도감의궤	1772	불분권	1	규13492
[육상궁]상시도감의궤	1772	불분권	1	규13491
선원보략수정시교정청의궤	1772	불분권	1	규14082
선원보략수정시교정청의궤	1772	불분권	1	규14084
선원보략수정시교정청의궤	1772	불분권	1	규14080
선원보략수정본청의궤	1773	불분권	1	규14079
선원보략수정본청의궤	1773	불분권	1	규14081
선원보략수정본청의궤	1773	불분권	1	규14083
[현종·명성왕후·영조·정성왕후·정순왕후]상호도감의궤	1773	불분권	1	규13266
[현종·명성왕후·영조·정성왕후·정순왕후]상호도감의궤	1773	불분권	1	규13265
[현종·명성왕후·영조·정성왕후·정순왕후]상호도감의궤	1773	불분권	2	규13296-1-2
선원보략수정의궤	1776	불분권	1	규14085
[영조]빈전도감의궤	1776	불분권	1	규13583의1
[영조]빈전도감의궤	1776	불분권	1	규13584의1
[영조]혼전도감의궤	1776	불분권	1	규13584의2
[영조]국장도감도청의궤	1776	불분권	2	규13581-1-2
[영조]국장도감도청의궤	1776	불분권	2	규13582-1-2
[영조]혼전도감의궤	1776	불분권	1	규13583의2
[영조]원릉산릉도감의궤	1776	불분권	2	규13586-1-2
[영조]원릉산릉도감의궤	1776	불분권	2	규13585-1-2
[장조]상시봉원도감의궤	1776	불분권	1	규13337
[장조]상시봉원도감의궤	1776	불분권	1	규13338
[진종]추숭도감의궤	1776	불분권	1	규13329
[진종]추숭도감의궤	1776	불분권	1	규13327
[진종]추숭도감의궤	1776	불분권	1	규13328
[경모궁]개건도감의궤	1777	불분권	1	규13633
악기조성청의궤	1777	불분권	1	규14265
[영종·정성왕후·진종·효순왕후]부묘도감도청의궤	1778	불분권	1	규13588
[영종·정성왕후·진종·효순왕후]부묘도감도청의궤	1778	불분권	1	규13587
[정순왕후]존숭도감도청의궤	1778	불분권	1	규13306
[정순왕후]존숭도감도청의궤	1778	불분권	1	규13309
[헌경왕후]진호도감도청의궤	1778	불분권	1	규13307
[헌경왕후]진호도감도청의궤	1778	불분권	1	규13308
[효의왕후]책례도감도청의궤	1778	불분권	1	규13118
[효의왕후]책례도감도청의궤	1778	불분권	1	규13117
[효의왕후]책례도감도청의궤	1778	불분권	1	규13116
선원보략수정의궤	1780	불분권	1	규14086
[영종대왕]실록청의궤	1781	불분권	2	규14173-1-2
[경종대왕수정]실록의궤	1781	불분권	1	규14170
[경종대왕수정]실록의궤	1781	불분권	1	규14169
[영종대왕]실록청의궤	1781	불분권	2	규14172-1-2
[영종대왕]실록청의궤	1781	불분권	2	규14171-1-2
국조보감감인청의궤	1783	불분권	1	규14187
국조보감감인청의궤	1783	불분권	1	규14188
국조보감감인청의궤	1783	불분권	1	규14189
국조보감감인청의궤	1783	불분권	1	규14938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정순왕후·장조·헌경왕후]존호도감의궤	1783	불분권	1	규13312
[정순왕후·장조·헌경왕후]존호도감의궤	1783	불분권	1	규13311
[정순왕후·장조·헌경왕후]존호도감의궤	1783	불분권	1	규13313
[정순왕후·장조·헌경왕후]존호도감의궤	1783	불분권	1	규13310
선원보략수정의궤	1783	불분권	1	규14087
[원릉]개수도감의궤	1783	불분권	1	규13601
경모궁의궤	1784	4권	3	규13632
존숭도감의궤	1784	7권	7	규13495-1-7
선원보략수정의궤	1784	불분권	1	규14089
[문효세자]책례도감의궤	1784	불분권	1	규13200
선원보략수정의궤	1784	불분권	1	규14088
[영조·정성왕후·정순왕후·장조·헌경왕후]존호도감의궤	1784	불분권	2	규13297-1-2
[영조·정성왕후·정순왕후·장조·헌경왕후]존호도감의궤	1784	불분권	2	규13299-1-2
[영조·정성왕후·정순왕후·장조·헌경왕후]존호도감의궤	1784	불분권	1	규13298
선원보략개장의궤	1786	불분권	1	규14090
[문효세자]예장도감도청의궤	1786	불분권	2	규13921-1-2
[문효세자]묘소도감의궤	1786	불분권	2	규13925
[문효세자]묘소도감의궤	1786	불분권	1	규13924
[문효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	1786	불분권	2	규13923
[문효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	1786	불분권	1	규13922
[정순왕후]존호도감의궤	1787	불분권	1	규13315
[정순왕후]존호도감의궤	1787	불분권	1	규13314
선원보략개장세보의궤	1789	불분권	1	규14091
선원보략수정의궤	1789	불분권	1	규14092
[장조]현륭원천원의궤	1789	불분권	3	규13629
[장조]현륭원원소도감의궤	1789	불분권	2	규13627
[장조]현륭원원소도감의궤	1789	불분권	2	규13628
[장조]현륭원원소도감의궤	1789	4권	4	규13630
[장조]영우원천봉도감도청의궤	1789	불분권	7	규13626
[장조]영우원천봉도감도청의궤	1789	불분권	3	규13625
[장조]영우원천봉도감도청의궤	1789	불분권	7	규13624
선원보략수정의궤	1790	불분권	1	규14093
선원보략수정의궤	1795	불분권	1	규14094
[정순왕후·장조·헌경왕후]존호도감의궤	1795	불분권	2	규13317
[정순왕후·장조·헌경왕후]존호도감의궤	1795	불분권	1	규13318
[정순왕후·장조·헌경왕후]존호도감의궤	1795	불분권	2	규13316
원행을묘정리의궤	1797	10권	8	규14534
원행을묘정리의궤	1797	10권	8	규14518
원행을묘정리의궤	1797	10권	8	규14524
원행을묘정리의궤	1797	10권	8	규14527
원행을묘정리의궤	1797	10권	8	규14529
[정조]국장도감의궤	1800	불분권	4	규13634
[정조]국장도감의궤	1800	불분권	4	규13636
[정조]국장도감의궤	1800	불분권	4	규13635
[순조]왕세자관례책저도감의궤	1800	불분권	1	규13121
[순조]왕세자관례책저도감의궤	1800	불분권	1	규13120
[순조]왕세자관례책저도감의궤	1800	불분권	1	규13119
원행을묘정리의궤	1800	1권	8	규14522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원행을묘정리의궤	1800	8권	6	규14530
[정조]건릉산릉도감의궤	1801	불분권	2	규13640
[정조]건릉산릉도감의궤	1801	불분권	2	규13641
[정조]건릉산릉도감의궤	1801	불분권	2	규13642
[정종대왕]빈전혼전도감의궤	1801	3권	3	규13637
[정종대왕]빈전혼전도감의궤	1801	2권	2	규13638
[정종대왕]빈전혼전도감의궤	1801	2권	2	규13639
[정종대왕]태실석란간조배의궤	1801	불분권	1	규13967
화성성역의궤	1801	10권	9	규14590
[정조]부묘도감의궤	1802	불분권	1	규13645
[정조]부묘도감의궤	1802	불분권	1	규13646
[정조]부묘도감의궤	1802	불분권	1	규13644
[정조]부묘도감의궤	1802	불분권	1	규13643
[정순왕후·효의왕후]존숭도감의궤	1802	불분권	1	규13321
[정순왕후·효의왕후]존숭도감의궤	1802	불분권	1	규13320
[정순왕후·효의왕후]존숭도감의궤	1802	불분권	1	규13319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	1802	불분권	2	규13124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	1802	불분권	2	규13122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	1802	불분권	2	규13123
사직서의궤	1804	6권	3	규14229-1-3
[정순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1804	불분권	1	규13322
[정순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1804	불분권	1	규13324
[정순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1804	불분권	1	규13323
악기조성청의궤	1804	불분권	1	규14266
[건릉]개수도감의궤	1804	불분권	1	규13666
[건릉]개수도감의궤	1804	불분권	1	규13667
[인정전]영건도감의궤	1805	불분권	1	규14337
[인정전]영건도감의궤	1805	불분권	1	규14336
[인정전]영건도감의궤	1805	불분권	1	규14334
[인정전]영건도감의궤	1805	불분권	1	규14335
[정순왕후]존호도감의궤	1805	불분권	1	규13326
[정순왕후]존호도감의궤	1805	불분권	1	규13325
[정순왕후]국장도감우주소의궤	1805	불분권	4	규13592
[정순왕후]국장도감우주소의궤	1805	불분권	4	규13593
[정순왕후]원릉산릉도감의궤	1805	불분권	2	규13596
[정순왕후]원릉산릉도감의궤	1805	불분권	2	규13597
선원보략수정의궤	1805	불분권	1	규14095
[정순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05	4권	4	규13594
[정순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05	4권	4	규13595
[정종대왕]실록산절청의궤	1806	불분권	1	규14174
[정종대왕]실록산절청의궤	1806	불분권	1	규14175
[정종대왕]실록산절청의궤	1806	불분권	1	규14176
[순조]태실석란간조배의궤	1806	불분권	1	규13968
[강릉]개수도감의궤	1807	불분권	1	규13509
[강릉]개수도감의궤	1807	불분권	1	규13510
[정순왕후]부묘도감의궤	1807	불분권	1	규13600
[정순왕후]부묘도감의궤	1807	불분권	1	규13598
[정순왕후]부묘도감의궤	1807	불분권	1	규13599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선원보략수정의궤	1809	불분권	1	규14096
원자아기씨장태의궤	1809	불분권	1	규13969
[원릉]개수도감의궤	1810	불분권	1	규13603
[원릉]개수도감의궤	1810	불분권	1	규13604
[원릉]개수도감의궤	1810	불분권	1	규13602
선원보략수정의궤	1812	불분권	1	규14097
[문조]왕세자책례도감도청의궤	1812	불분권	1	규14906
[문조]왕세자책례도감도청의궤	1812	불분권	1	규13126
[문조]왕세자책례도감도청의궤	1812	불분권	1	규13127
[문조]왕세자책례도감도청의궤	1812	불분권	1	규13129
[문조]왕세자책례도감도청의궤	1812	불분권	1	규13128
[문조]왕세자책례도감도청의궤	1812	불분권	1	규13125
[헌경혜빈]상례도감의궤	1816	5권	4	규13608
[헌경혜빈]상례도감의궤	1816	5권	4	규13610
[헌경혜빈]상례도감의궤	1816	5권	4	규13611
[헌경혜빈]상례도감의궤	1816	4권	3	규13609
[헌경혜빈]빈궁혼궁도감의궤	1816	3권	3	규13613
[헌경혜빈]빈궁혼궁도감의궤	1816	3권	3	규13615
[헌경혜빈]빈궁혼궁도감의궤	1816	3권	3	규13614
[헌경혜빈]빈궁혼궁도감의궤	1816	2권	2	규13612
[헌경왕후]현륭원원소도감의궤	1816	불분권	2	규13617
[헌경왕후]현륭원원소도감의궤	1816	불분권	2	규13616
[헌경왕후]현륭원원소도감의궤	1816	불분권	2	규13619
[헌경왕후]현륭원원소도감의궤	1816	불분권	1	규13618
선원보략수정의궤	1817	불분권	1	규14098
[헌경혜빈]부궁도감의궤	1818	불분권	1	규13621
[헌경혜빈]부궁도감의궤	1818	불분권	1	규13622
[헌경혜빈]부궁도감의궤	1818	불분권	1	규13623
[헌경혜빈]부궁도감의궤	1818	불분권	1	규13620
[문조·신정왕후]가례도감의궤	1819	불분권	2	규13131
[문조·신정왕후]가례도감의궤	1819	불분권	2	규13132
[문조·신정왕후]가례도감의궤	1819	불분권	2	규13133
[문조·신정왕후]가례도감의궤	1819	불분권	2	규13130
종묘의궤	1820	불분권	1	규14222
선원보략교정의궤	1821	불분권	1	규14099
[정조]건릉천봉도감의궤	1822	8권	7	규13659
[정조]건릉천봉도감의궤	1822	8권	7	규13660
[정조]건릉천봉도감의궤	1822	8권	7	규13658
[정조]건릉천봉도감의궤	1822	8권	7	규13661
[효의왕후]국장도감의궤	1822	5권	4	규13649
[정조]건릉산릉도감의궤	1822	불분권	2	규13664
[효의왕후]국장도감의궤	1822	5권	4	규13648
[효의왕후]국장도감의궤	1822	5권	4	규13647
[효의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22	2권	2	규13652
[정조]건릉산릉도감의궤	1822	불분권	2	규13665
[정조]건릉산릉도감의궤	1822	불분권	2	규13663
[정조]건릉산릉도감의궤	1822	불분권	1	규13662
황단종향의궤	1822	불분권	1	고 5123-4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황단종향의궤	1822	불분권	1	규14316
[효의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22	3권	3	규13651
[효의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22	3권	3	규13653
[효의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22	3권	3	규13650
[수빈]빈궁혼궁도감의궤	1823	3권	3	규13934
[수빈]빈궁혼궁도감의궤	1823	3권	3	규13933
[수빈]빈궁혼궁도감의궤	1823	3권	3	규13931
[수빈]빈궁혼궁도감의궤	1823	3권	3	규13932
선원보략교정의궤	1823	불분권	1	규14100
[수빈]휘경원원소도감의궤	1823	불분권	2	규13935
[수빈]휘경원원소도감의궤	1823	불분권	2	규13936
[수빈]휘경원원소도감의궤	1823	불분권	2	규13937
[수빈]휘경원원소도감의궤	1823	불분권	1	규13938
[성종대왕]태실비석개수의궤	1823	불분권	1	규13964
[현목수빈]장례도감의궤	1823	4권	4	규13927
[현목수빈]장례도감의궤	1823	4권	4	규13928
[현목수빈]장례도감의궤	1823	4권	4	규13930
[현목수빈]장례도감의궤	1823	2권	2	규13929
[효의왕후]부묘도감의궤	1823	불분권	1	규13657
[효의왕후]부묘도감의궤	1823	불분권	1	규13656
[효의왕후]부묘도감의궤	1823	불분권	1	규13654
[효의왕후]부묘도감의궤	1823	불분권	1	규13655
[현사궁별묘]영건도감의궤	1824	불분권	1	규14261
[현사궁별묘]영건도감의궤	1824	불분권	1	규14262
[현사궁별묘]영건도감의궤	1824	불분권	1	규14260
[현목수빈]입묘도감의궤	1825	불분권	1	규13942
[현목수빈]입묘도감의궤	1825	불분권	1	규13943
[현목수빈]입묘도감의궤	1825	불분권	1	규13941
[현목수빈]입묘도감의궤	1825	불분권	1	규13940
[현목수빈]입묘도감의궤	1825	불분권	1	규13939
자경전진작정례의궤	1827	3권	3	고4256.5-2-1-3
[순조·순원왕후]상호도감의궤	1827	불분권	1	규13347
[순조·순원왕후]상호도감의궤	1827	불분권	2	규13346
[순조·순원왕후]상호도감의궤	1827	불분권	2	규13345
선원보략수정의궤	1827	불분권	1	규14101
[순조·순원왕후]상호도감의궤	1827	불분권	2	규13344
[자경전]진작의궤	1827	3권	1	규14362
진작의궤	1828	3권	1	규14363
왕세손책저도감의궤	1830	6권	1	규13137
왕세손책저도감의궤	1830	6권	1	규13138
왕세손책저도감의궤	1830	6권	1	규13136
왕세손책저도감의궤	1830	6권	1	규13134
왕세손책저도감의궤	1830	6권	1	규13135
왕세손책저도감의궤	1830	6권	1	규14910
효명세자예장도감의궤	1830	4권	4	규13717
효명세자예장도감의궤	1830	4권	4	규13716
효명세자예장도감의궤	1830	4권	4	규13715
효명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	1830	3권	3	규13723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효명세자예장도감의궤	1830	4권	4	규13718
효명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	1830	3권	3	규13721
선원보략수정의궤	1830	불분권	1	규14103
연경묘묘소도감의궤	1830	2권	2	규13725
연경묘묘소도감의궤	1830	2권	2	규13726
연경묘묘소도감의궤	1830	2권	2	규13727
연경묘묘소도감의궤	1830	2권	2	규13728
선원보략수정의궤	1830	불분권	1	규14102
[순조 기축]진찬의궤	1830	3권	3	규14367의2
효명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	1830	3권	3	규13722 규13719
효명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	1830	3권	3	규13720 규13724
경종대왕태실석물수개의궤	1832	불분권	1	규13965
경종대왕태실석물수개의궤	1832	불분권	1	규13966
서궐영건도감의궤	1832	불분권	1	규14352
서궐영건도감의궤	1832	불분권	1	규14351
서궐영건도감의궤	1832	불분권	1	규14350
효명세자입묘도감의궤	1832	불분권	1	규13731
효명세자입묘도감의궤	1832	불분권	1	규13732
효명세자입묘도감의궤	1832	불분권	1	규13733
효명세자입묘도감의궤	1832	불분권	1	규13730
효명세자입묘도감의궤	1832	불분권	1	규13729
창경궁영건도감의궤	1834	불분권	1	규14325
창경궁영건도감의궤	1834	불분권	1	규14326
창경궁영건도감의궤	1834	불분권	1	규14327
창덕궁영건도감의궤	1834	불분권	1	규14318
창덕궁영건도감의궤	1834	불분권	1	규14319
창덕궁영건도감의궤	1834	불분권	1	규14320
창경궁영건도감의궤	1834	불분권	1	규14324
창덕궁영건도감의궤	1834	불분권	1	규14321
선원보략수정의궤	1835	불분권	1	규14104
추숭도감의궤	1835	2권	2	규13397
추숭도감의궤	1835	2권	2	규13396
순조대왕국장도감의궤	1835	4권	4	규13670
순조대왕국장도감의궤	1835	4권	4	규13668
순조대왕국장도감의궤	1835	4권	4	규13671
순조대왕빈전혼전도감의궤	1835	3권	3	규13675
순조대왕빈전혼전도감의궤	1835	3권	3	규13676
순조대왕빈전혼전도감의궤	1835	3권	3	규13672
순조대왕국장도감의궤	1835	4권	4	규13669
인릉산릉도감의궤	1835	2권	2	규13680
인릉산릉도감의궤	1835	2권	2	규13677
인릉산릉도감의궤	1835	2권	2	규13679
인릉산릉도감의궤	1835	2권	2	규13678
추숭도감의궤	1835	2권	2	규13398 규13399
순조대왕빈전혼전도감의궤	1835	3권	2	규13673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규13674
익종대왕태실가봉석란간조배의궤	1836	불분권	1	규13970
종묘영녕전증수도감의궤	1836	2권	2	규14227
종묘영녕전증수도감의궤	1836	2권	2	규14226
종묘영녕전증수도감의궤	1836	1권	1	규14228
선원보략수정의궤	1837	불분권	1	규14105
순종대왕익종대왕부묘도감의궤	1837	불분권	1	규13682
순종대왕익종대왕부묘도감의궤	1837	불분권	1	규13681
[순원왕후·신정왕후]존숭도감의궤	1837	불분권	1	규13378
[순원왕후·신정왕후]존숭도감의궤	1837	불분권	1	규13380
[순원왕후·신정왕후]존숭도감의궤	1837	불분권	1	규13379
[순원왕후·신정왕후]존숭도감의궤	1837	불분권	1	규13377
[순원왕후·신정왕후]존숭도감의궤	1837	불분권	1	규13376
[헌종·효현왕후]가례도감의궤	1837	2권	2	규13141
[헌종·효현왕후]가례도감의궤	1837	2권	2	규13140
[헌종·효현왕후]가례도감의궤	1837	2권	2	규13139
순종대왕익종대왕부묘도감의궤	1837	불분권	1	규25039
순종대왕실록산절청의궤	1838	불분권	1	규14180
순종대왕실록산절청의궤	1838	불분권	1	규14177
순종대왕실록산절청의궤	1838	불분권	1	규14178
순종대왕실록산절청의궤	1838	불분권	1	규14179
영정모사도감도청의궤	1838	불분권	1	규13980
영정모사도감도청의궤	1838	불분권	1	규13981
[순원왕후]존호도감의궤	1841	불분권	1	규13382
[순원왕후]존호도감의궤	1841	불분권	1	규13383
[순원왕후]존호도감의궤	1841	불분권	1	규13384
[순원왕후]존호도감의궤	1841	불분권	1	규13381
종묘의궤속록	1842	2권	2	규14223
선원보략수정의궤	1844	불분권	1	규14106
효현왕후국장도감의궤	1844	4권	4	규13803
효현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44	3권	3	규13807
효현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44	3권	3	규13805
효현왕후국장도감의궤	1844	4권	4	규13802
효현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	1844	2권	2	규13812
효현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	1844	2권	2	규13810
효현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	1844	2권	2	규13809
선원보략수정의궤	1844	불분권	1	규14107
효현왕후국장도감의궤	1844	3권	3	규13804
효현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44	불분권	1	규13808
효현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44	2권	2	규13806
[효현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	1844	1권	1	규13811
가례도감의궤	1845	2권	2	규13145
가례도감의궤	1845	2권	2	규13142
가례도감의궤	1845	2권	2	규13144
가례도감의궤	1845	2권	2	규13146
가례도감의궤	1845	2권	2	규13143
선원보략수정의궤	1846	불분권	1	규14108
수릉천봉도감도청의궤	1846	7권	7	규13761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수릉천봉도감도청의궤	1846	7권	7	규13762
수릉천봉도감도청의궤	1846	7권	7	규13763 규13759
수릉천봉도감도청의궤	1846	7권	7	규13760
수릉산릉도감의궤	1846	2권	2	규13766
수릉산릉도감의궤	1846	2권	2	규13765
수릉산릉도감의궤	1846	2권	2	규13767
수릉산릉도감의궤	1846	2권	2	규13764 규13768
성상태실가봉석란간조배의궤	1847	불분권	1	규13973
상호도감의궤	1848	2권	2	규13350
상호도감의궤	1848	2권	2	규13349
상호도감의궤	1848	2권	2	규13351
상호도감의궤	1848	2권	2	규13348
선원보략수정의궤	1848	불분권	1	규14109
상호도감의궤	1848	1권	1	규13400
감인청의궤	1849	불분권	1	규14196
감인청의궤	1849	불분권	1	규14194
감인청의궤	1849	불분권	1	규14190
감인청의궤	1849	불분권	1	규14192
감인청의궤	1849	불분권	1	규14195
감인청의궤	1849	불분권	1	규14191
감인청의궤	1849	불분권	1	규14197
감인청의궤	1849	불분권	1	규14193
경릉산릉도감의궤	1849	2권	2	규13794
경릉산릉도감의궤	1849	2권	2	규13793
경릉산릉도감의궤	1849	2권	2	규13791
진찬의궤	1849	4권	3	규14371
[헌종]경릉산릉도감의궤	1849	1권	1	규13795
헌종대왕국장도감의궤	1850	4권	4	규13787
헌종대왕국장도감의궤	1850	4권	4	규13785
헌종대왕국장도감의궤	1850	4권	4	규13786
헌종대왕빈전혼전도감의궤	1850	5권	5	규13790
헌종대왕빈전혼전도감의궤	1850	3권	3	규13792
헌종대왕빈전혼전도감의궤	1850	3권	3	규13788
헌종대왕빈전혼전도감의궤	1850	3권	3	규13789
헌종대왕국장도감의궤	1850	4권	4	규13784
선원보략수정의궤	1850	불분권	1	규14110
헌종대왕빈전혼전도감의궤	1850	2권	2	규14840
대왕대비전왕대비전대비전존숭도감의궤	1851	불분권	1	규13389
가례도감의궤	1852	2권	2	규13149
가례도감의궤	1852	2권	2	규13148
가례도감의궤	1852	2권	2	규13151
가례도감의궤	1852	2권	2	규13150
선원보략수정의궤	1852	불분권	1	규14111
헌종대왕효현왕후부묘도감의궤	1852	2권	2	규13799
헌종대왕효현왕후부묘도감의궤	1852	1권	1	규13798-2
존숭도감의궤	1852	1권	1	규13798-1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헌종대왕효현왕후부묘도감의궤	1852	2권	2	규13800
헌종대왕효현왕후부묘도감의궤	1852	2권	2	규13801
헌종대왕효현왕후부묘도감의궤	1852	2권	2	규13797
대왕대비전왕대비전대비전존숭도감의궤	1852	불분권	1	규13386
대왕대비전왕대비전대비전존숭도감의궤	1852	불분권	1	규13387
대왕대비전왕대비전대비전존숭도감의궤	1852	불분권	1	규13388
헌종대왕효현왕후부묘도감의궤	1852	2권	2	규13796
대왕대비전왕대비전대비전존숭도감의궤	1852	불분권	1	규13385
대왕대비전가상존호도감의궤	1852	불분권	1	규13393
대왕대비전가상존호도감의궤	1852	불분권	1	규13394
대왕대비전가상존호도감의궤	1852	불분권	1	규13392
대왕대비전가상존호도감의궤	1852	불분권	1	규13395
대왕대비전가상존호도감의궤	1852	불분권	1	규13391
실록청의궤	1852	불분권	1	규14183
실록청의궤	1852	불분권	1	규14181
실록청의궤	1852	불분권	1	규14182
가례도감의궤	1852	2권	2	규13147
선원보략수정의궤	1853	불분권	1	규14112
순종대왕추상존호대왕대비전가상존호도감의궤	1853	불분권	1	규13352
순종대왕추상존호대왕대비전가상존호도감의궤	1853	불분권	1	규13353
순종대왕추상존호대왕대비전가상존호도감의궤	1853	불분권	1	규13354
순종대왕추상존호대왕대비전가상존호도감의궤	1853	불분권	1	규13355
순종대왕추상존호대왕대비전가상존호도감의궤	1853	불분권	1	규13356
선원보략수정의궤	1853	불분권	1	규14113
익종대왕존호왕대비전가상존호헌종대왕추상존호효현왕후추상존호대비전가상존호도감의궤	1854	2권	2	규13404
익종대왕존호왕대비전가상존호헌종대왕추상존호효현왕후추상존호대비전가상존호도감의궤	1854	2권	2	규13406
익종대왕존호왕대비전가상존호헌종대왕추상존호효현왕후추상존호대비전가상존호도감의궤	1854	2권	2	규13405
익종대왕존호왕대비전가상존호헌종대왕추상존호효현왕후추상존호대비전가상존호도감의궤	1854	2권	2	규13402 규13401
익종대왕존호왕대비전가상존호헌종대왕추상존호효현왕후추상존호대비전가상존호도감의궤	1854	2권	2	규13403
장헌세자추상존호혜빈추상존호도감의궤	1855	불분권	1	규13341
장헌세자추상존호혜빈추상존호도감의궤	1855	불분권	1	규13342
장헌세자추상존호혜빈추상존호도감의궤	1855	불분권	1	규13340
장헌세자추상존호혜빈추상존호도감의궤	1855	불분권	1	규13343
장헌세자추상존호혜빈추상존호도감의궤	1855	불분권	1	규13339
휘경원천봉원소도감의궤	1855	2권	2	규13953
휘경원천봉원소도감의궤	1855	2권	2	규13952
휘경원천봉원소도감의궤	1855	2권	2	규13950
휘경원천봉원소도감의궤	1855	2권	2	규13951
선원보략수정의궤	1856	불분권	1	규14114
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	1857	2권	2	규13775
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	1857	2권	2	규13778
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	1857	2권	2	규13777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인릉천봉산릉도감의궤	1857	2권	2	규13711
인릉천봉산릉도감의궤	1857	2권	2	규13710
인릉천봉산릉도감의궤	1857	2권	2	규13714
인릉천봉산릉도감의궤	1857	2권	2	규13712
인릉천봉산릉도감의궤	1857	2권	2	규13706
인릉천봉도감의궤	1857	7권	7	규13708
인릉천봉도감의궤	1857	7권	7	규13709
인릉천봉도감의궤	1857	7권	7	규13705
인릉천봉도감의궤	1857	7권	7	규13713
인릉천봉도감의궤	1857	7권	7	규13707
[인정전]중수도감의궤	1857	불분권	1	규14342
[인정전]중수도감의궤	1857	불분권	1	규14341
[인정전]중수도감의궤	1857	불분권	1	규14338
[인정전]중수도감의궤	1857	불분권	1	규14339
[인정전]중수도감의궤	1857	불분권	1	규14340
인정전중수의궤	1857	불분권	1	규14343
휘경원천봉도감의궤	1857	4권	4	규13944
휘경원천봉도감의궤	1857	4권	4	규13947
휘경원천봉도감의궤	1857	4권	4	규13945
휘경원천봉원소도감의궤	1857	2권	2	규13949
휘경원천봉도감의궤	1857	4권	4	규13946
수릉천봉도감의궤	1857	7권	7	규13771
수릉천봉도감의궤	1857	7권	7	규13772
수릉천봉도감의궤	1857	7권	7	규13774
수릉천봉도감의궤	1857	7권	7	규13773
수릉천봉도감의궤	1857	7권	7	규13769
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	1857	1권	1	규13776
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	1857	2권	2	규13770
휘경원천봉도감의궤	1857	3권	3	규13948
선원보략수정의궤	1858	불분권	1	규14945
순원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58	3권	3	규13691
순원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58	3권	3	규13693
[순원왕후]인릉산릉도감의궤	1858	2권	2	규13696
[순원왕후]인릉산릉도감의궤	1858	2권	2	규13695
순원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58	3권	3	규13692
[순원왕후]인릉산릉도감의궤	1858	2권	2	규13697
순원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58	3권	3	규13688
인릉산릉도감의궤	1858	2권	2	규13694
순조대왕개상시호묘호추상존호순원왕후추상존호도감의궤	1858	2권	2	규13372
순조대왕개상시호묘호추상존호순원왕후추상존호도감의궤	1858	2권	2	규13374
순조대왕개상시호묘호추상존호순원왕후추상존호도감의궤	1858	2권	2	규13375
순조대왕개상시호묘호추상존호순원왕후추상존호도감의궤	1858	2권	2	규13373
순조대왕개상시호묘호추상존호순원왕후추상존호도감의궤	1858	2권	2	규13371
순원왕후국장도감의궤	1858	4권	4	규13683
순원왕후국장도감의궤	1858	4권	4	규13687
순원왕후국장도감의궤	1858	4권	4	규13684
순원왕후국장도감의궤	1858	4권	4	규13686
선원보략수정의궤	1858	불분권	1	규14115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순조대왕추상존호순원왕후]추상존호도감의궤	1858	불분권	1	규13360
[순조대왕추상존호순원왕후]추상존호도감의궤	1858	불분권	1	규13361
[순조대왕추상존호순원왕후]추상존호도감의궤	1858	불분권	1	규13357
[순조대왕추상존호순원왕후]추상존호도감의궤	1858	불분권	1	규13358
순조대왕추상존호순원왕후추상존호도감의궤	1858	불분권	1	규13359
[순원왕후]인릉산릉도감의궤	1858	1권	1	규13698
순원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58	1권	1	규14851
순원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58	2권	2	규13689
순원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58	2권	2	규13690
[순원왕후]인릉산릉도감의궤	1858	1권	1	규14825
순원왕후국장도감의궤	1858	1권	1	규14872
순원왕후국장도감의궤	1858	3권	3	규13685
[남전]증건도감의궤	1859	불분권	1	규14920
[남전]증건도감의궤	1859	불분권	1	규14356
[남전]증건도감의궤	1859	불분권	1	규14355
남전증건도감의궤	1859	불분권	1	규14354
선원보략수정의궤	1859	불분권	1	규14116
선원보략수정의궤	1859	불분권	1	규14117
[신정왕후·효정왕후]존숭도감의궤	1860	불분권	1	규13438
[신정왕후·효정왕후]존숭도감의궤	1860	불분권	1	규13442
[신정왕후·효정왕후]존숭도감의궤	1860	불분권	1	규13440
[신정왕후·효정왕후]존숭도감의궤	1860	불분권	1	규13439
[신정왕후·효정왕후]존숭도감의궤	1860	불분권	1	규13441
[신정왕후·효정왕후]존숭도감의궤	1860	불분권	1	규13437
[순원왕후]부묘도감의궤	1860	불분권	1	규13704
[순원왕후]부묘도감의궤	1860	불분권	1	규13701
[순원왕후]부묘도감의궤	1860	불분권	1	규13700
[순원왕후]부묘도감의궤	1860	불분권	1	규13699
[순원왕후]부묘도감의궤	1860	불분권	1	규13702
순원왕후부묘도감의궤	1860	불분권	1	규13703
선원보략수정의궤	1861	불분권	1	규14118
[순조대왕추상존호순원왕후]추상존호도감의궤	1861	불분권	1	규13364
[순조대왕추상존호순원왕후]추상존호도감의궤	1861	불분권	1	규13363
순조대왕추상존호순원왕후추상존호도감의궤	1861	불분권	1	규13365
[순조대왕추상존호순원왕후]추상존호도감의궤	1861	1권	1	규13362-1
[순조대왕추상존호순원왕후]추상존호도감의궤	1861	1권	1	규13362-2
선원보략수정의궤	1862	불분권	1	규14119
[순조·순원왕후]존호도감의궤	1862	불분권	1	규13370
[순조·순원왕후]존호도감의궤	1862	불분권	1	규13366
[순조·순원왕후]존호도감의궤	1862	불분권	1	규13367
[순조·순원왕후]존호도감의궤	1862	불분권	1	규13369
순조대왕추상존호순원왕후추상존호도감의궤	1862	불분권	1	규13368
선원보략수정의궤	1863	불분권	1	규14120
[현목수빈]휘경원천봉원소도감의궤	1863	2권	2	규13959-1~2
[현목수빈]휘경원천봉원소도감의궤	1863	2권	2	규13961
[현목수빈]휘경원천봉원소도감의궤	1863	2권	2	규13960
휘경원천봉원소도감의궤	1863	2권	2	규13962
[철종·철인왕후]상존호도감의궤	1863	불분권	1	규13482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철종·철인왕후]상존호도감의궤	1863	불분권	1	규13483
[철종·철인왕후]상존호도감의궤	1863	불분권	1	규13481
[철종·철인왕후]상존호도감의궤	1863	불분권	1	규13480
[철종·철인왕후]상존호도감의궤	1863	불분권	1	규13479
[현목수빈]휘경원천봉도감의궤	1864	4권	4	규13956
[현목수빈]휘경원천봉도감의궤	1864	4권	4	규13955
[휘경원]천봉도감의궤	1864	4권	4	규13958
휘경원천봉도감의궤	1864	4권	4	규13954
[철종]예릉산릉도감의궤	1864	2권	2	규13851-1~2
[철종]예릉산릉도감의궤	1864	2권	2	규14827-1~2
[철종]예릉산릉도감의궤	1864	2권	2	규13853-1~2
예릉산릉도감의궤	1864	2권	2	규13852-1~2
[신정왕후·효정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1864	불분권	1	규13447
[신정왕후·효정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1864	불분권	1	규13446
[신정왕후·효정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1864	불분권	1	규13443
[신정왕후·효정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1864	불분권	1	규13445
[신정왕후·효정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1864	불분권	1	규13444
[현목수빈]휘경원천봉도감의궤	1864	1권	1	규13957
[현목수빈]휘경원천봉원소도감의궤	1864	1권	1	규13963
[철종]빈전혼전도감의궤	1865	5권	3	규14850-1~3
[철종]빈전혼전도감의궤	1865	5권	3	규13847-1~3
[철종]국장도감의궤	1865	4권	4	규14870-1~4
[철종]국장도감의궤	1865	4권	4	규13845
[철종]국장도감의궤	1865	4권	4	규13843
[철종]빈전혼전도감의궤	1865	5권	3	규13849-1~3
철종대왕빈전혼전도감의궤	1865	5권	3	규13846-1~3
철종대왕국장도감의궤	1865	4권	4	규13844
[철종]실록청의궤	1865	불분권	1	규14185
[철종]실록청의궤	1865	불분권	1	규14186
[철종]실록청의궤	1865	불분권	1	규14184
친임정부시의궤	1865	불분권	1	규14944
태조대왕태실수개의궤	1866	불분권	1	규14942
[익종·헌종·철종]존호도감의궤	1866	불분권	1	규13410
[고종·명성왕후]가례도감의궤	1866	2권	2	규13156-1~2
[고종·명성왕후]가례도감의궤	1866	2권	2	규13155-1~2
[고종·명성왕후]가례도감의궤	1866	1권	1	규13157
가례도감의궤	1866	2권	2	규13153-1~2
[철종]부묘도감의궤	1866	불분권	1	규13857
[철종]부묘도감의궤	1866	불분권	1	규13856
[철종]부묘도감의궤	1866	불분권	1	규13858
[문조·신정왕후팔 헌종·효정왕후육 철종·철인왕후삼]존숭도감의궤	1866	불분권	1	규13453
[문조·신정왕후팔 헌종·효정왕후육 철종·철인왕후삼]존숭도감의궤	1866	불분권	1	규13449
[문조·신정왕후팔헌종·효정왕후육철종·철인왕후삼]존숭도감의궤	1866	불분권	1	규13450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문조·신정왕후팔헌종·효정왕후육철종·철인왕후삼]존숭도감의궤	1866	불분권	1	규13452
[익종·헌종·철종]존호도감의궤	1866	불분권	1	규13411
[익종·헌종·철종]존호도감의궤	1866	불분권	1	규13409
대왕대비전왕대비전대비전존숭도감의궤	1866	불분권	1	규13448
철종대왕부묘도감의궤	1866	불분권	1	규13854
[익종·헌종·철종]존호도감의궤	1866	불분권	1	규13408
[고종·명성왕후]가례도감의궤	1866	1권	1	규15078
내진찬의궤	1869	3권	3	규14374-1~3
어진이모도감청의궤	1872	불분권	1	규13999
어진이모도감청의궤	1872	불분권	1	규13998
[고종계유]진작의궤	1873	1권	1	규14375
원자아기씨장태의궤	1874	불분권	1	규13975
선원보략수정의궤	1874	불분권	1	규14121
선원보략수정의궤	1875	불분권	1	규14122
[순종왕세자수책시]책례도감의궤	1875	불분권	1	규13171
[순종왕세자수책시]책례도감의궤	1875	불분권	1	규13172
[순종왕세자수책시]책례도감의궤	1875	불분권	1	규13170
[순종왕세자수책시]책례도감의궤	1875	불분권	1	규13168-1
[순종왕세자수책시]책례도감의궤	1875	불분권	1	규13168-2
[순종왕세자수책시]책례도감의궤	1875	불분권	1	규13169
[익종·신정왕후]상존호도감의궤	1875	불분권	1	규13414
[익종·신정왕후]상존호도감의궤	1875	불분권	1	규13413
[익종·신정왕후]상존호도감의궤	1875	불분권	1	규13415
[익종·신정왕후]상존호도감의궤	1875	불분권	1	규13416
[익종·신정왕후]상존호도감의궤	1875	불분권	1	규13417
[익종·신정왕후]상존호도감의궤	1875	불분권	1	규13412
선원보략수정의궤	1876	불분권	1	규14123
선원보략수정의궤	1877	불분권	1	규14124
[신정왕후·효정왕후·철인왕후·고종·명성황후]상존호도감의궤	1877	불분권	1	규13456
[신정왕후·효정왕후·철인왕후·고종·명성황후]상존호도감의궤	1877	불분권	1	규13454
존호도감의궤	1877	2권	2	고4206-19-1~2
[신정왕후·효정왕후·철인왕후·고종·명성황후]상존호도감의궤	1877	불분권	1	규13459
[신정왕후·효정왕후·철인왕후·고종·명성황후]상존호도감의궤	1877	불분권	1	규13458
[신정왕후·효정왕후·철인왕후·고종·명성황후]상존호도감의궤	1877	불분권	1	규13455
선원보략수정의궤	1878	불분권	1	규14125
[신정왕후]진찬의궤	1878	3권	3	규14378-1~3
[철인왕후]예릉산릉도감의궤	1878	불분권	2	규13871-1~2
선원보략수정의궤	1878	불분권	1	규14126
보인소의궤	1878	불분권	1	규14215
보인소의궤	1878	불분권	1	규14214
보인소의궤	1878	불분권	1	규14216
보인소의궤	1878	불분권	1	규14219
보인소의궤	1878	불분권	1	규14218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보인소의궤	1878	불분권	1	규14217
보인소의궤	1878	불분권	1	규14212
[철인왕후]국장도감의궤	1878	2권	2	규13863-1~2
[고종정축]진찬의궤	1878	1권	1	규14400
[철인왕후]예릉산릉도감의궤	1878	1권	1	규13872
선원보략수정의궤	1879	불분권	1	규14127
예릉산릉도감의궤	1880	2권	2	규13873-1~2
[철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80	5권	5	규13865-1~5
[철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80	5권	3	규13869-1~3
[철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80	5권	3	규14846-1~3
[철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80	5권	3	규13867-1~3
[철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80	5권	3	규13866-1~3
[철인왕후]국장도감의궤	1880	4권	4	규13861-1~4
[철인왕후]국장도감의궤	1880	4권	4	규13859-1~4
철인왕후국장도감의궤	1880	4권	4	규13860-1~4
[철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80	1권	1	규13868-1~3
[철인왕후]부묘도감의궤	1881	불분권	1	규13876
[철인왕후]부묘도감의궤	1881	불분권	1	규13878
[철인왕후]부묘도감의궤	1881	불분권	1	규13875
철인왕후부묘도감의궤	1881	불분권	1	규13874
선원보략수정의궤	1882	불분권	1	규14128
선원보략수정의궤	1883	불분권	1	규14129
[순종·순명왕후]가례도감의궤	1884	2권	2	규13176-1~2
[순종·순명왕후]가례도감의궤	1884	2권	2	규13175-1~2
[순종·순명왕후]가례도감의궤	1884	불분권	2	규13177-1~2
[순종·순명왕후]가례도감의궤	1884	불분권	2	규13178-1~2
왕세자가례도감의궤	1884	2권	2	규13174-1~2
선원보략수정의궤	1888	불분권	1	규14131
선원보략수정의궤	1888	불분권	1	규14130
[고종정해]진찬의궤	1890	4권	4	규14416-1~4
선원보략수정의궤	1890	불분권	1	규14132
선원보략수정의궤	1890	불분권	1	규14134
[영조]묘호도감의궤	1891	불분권	1	규13300
[영조]묘호도감의궤	1891	불분권	1	규13304
[영조]묘호도감의궤	1891	불분권	1	규13303
[영조·정성왕후·정순왕후]묘호도감의궤	1891	불분권	1	규13302
묘호도감의궤	1891	불분권	1	규13301
[신정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1891	불분권	1	규13464
[신정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1891	불분권	1	규13462
[신정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1891	불분권	1	규13463
[신정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1891	불분권	1	규13466
[신정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1891	불분권	1	규13460
[신정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1891	불분권	1	규13461
[고종·신정왕후·효정왕후·명성왕후]존호도감의궤	1891	불분권	1	규13467
[고종·신정왕후·효정왕후·명성왕후]존호도감의궤	1891	불분권	1	규13468
[고종·신정왕후·효정왕후·명성왕후]존호도감의궤	1891	불분권	1	규13471
[고종·신정왕후·효정왕후·명성왕후]존호도감의궤	1891	불분권	1	규13472
[고종·신정왕후·효정왕후·명성왕후]존호도감의궤	1891	불분권	1	규13475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고종·신정왕후·효정왕후·명성왕후]존호도감의궤	1891	불분권	1	규13476
[고종·신정왕후·효정왕후·명성왕후]존호도감의궤	1891	불분권	1	규13469
[고종·신정왕후·효정왕후·명성왕후]존호도감의궤	1891	불분권	1	규13470
[고종·신정왕후·효정왕후·명성왕후]존호도감의궤	1891	불분권	1	규13474
[고종·신정왕후·효정왕후·명성왕후]존호도감의궤	1891	불분권	1	규13478
선원보략수정의궤	1891	불분권	1	규14133
가상존호도감의궤	1891	불분권	1	규13473
[신정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92	5권	3	규14847-1~3
[신정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92	5권	3	규13742-1~3
[신정왕후]수릉산릉도감의궤	1892	2권	2	규14829-1~2
[신정왕후]수릉산릉도감의궤	1892	2권	2	규13752-1~2
[신정왕후]수릉산릉도감의궤	1892	2권	2	규13751-1~2
[신정왕후]수릉산릉도감의궤	1892	2권	2	규13753-1~2
수릉산릉도감의궤	1892	2권	2	규13749-1~2
[신정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92	4권	2	규13746-1~2
[신정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92	5권	3	규13745-1~3
[신정왕후]수릉산릉도감의궤	1892	2권	2	규13750-1~2
신정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92	5권	3	규13747-1~3
[신정왕후]국장도감의궤	1892	4권	4	규13740-1~4
[신정왕]후국장도감의궤	1892	4권	4	규13739-1~4
[신정왕후]국장도감의궤	1892	4권	4	규13737-1~4
[신정왕후]국장도감의궤	1892	4권	4	규13738-1~4
신정왕후국장도감의궤	1892	4권	4	규13736-1~4
선원보략수정의궤	1892	불분권	1	규14136
선원보략수정의궤	1892	불분권	1	규14135
[신정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92	1권	1	규13744
[신정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92	4권	2	규13743-1~2
[신정왕후]부묘도감의궤	1893	불분권	1	규13757
[신정왕후]부묘도감의궤	1893	불분권	1	규13758
신정왕후부묘도감의궤	1893	불분권	1	규13754
[신정왕후]부묘도감의궤	1893	불분권	1	규13755
[익종·신정왕후·고종·명헌왕후·명성왕후]상호도감의궤	1894	불분권	1	규13426
[익종·신정왕후·고종·명헌왕후·명성왕후]상호도감의궤	1894	불분권	1	규13429
상호도감의궤	1894	불분권	1	규13425
[익종·신정왕후·고종·명헌왕후·명성왕후]상호도감의궤	1894	불분권	1	규13427
[익종·신정왕후]존호도감의궤	1894	불분권	1	규13420
[익종·신정왕후]존호도감의궤	1894	불분권	1	규13421
[익종·신정왕후]존호도감의궤	1894	불분권	1	규13424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왕후]추상존호도감의궤	1894	불분권	1	규13276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왕후]추상존호도감의궤	1894	불분권	1	규13275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왕후]추상존호도감의궤	1894	불분권	1	규13274
추상존호도감의궤	1894	불분권	1	규13422
추상존호도감의궤	1894	불분권	1	규13272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왕후]추상존호도감의궤	1894	불분권	1	규13273
[익종·신정왕후]존호도감의궤	1894	불분권	1	규13423
[명성황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98	5권	3	규14858-1~3
[명성황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98	5권	3	규13888-1~3
[명성황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98	5권	3	규13889-1~3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명성황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98	5권	3	규13885-1~3
[명성황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98	5권	3	규13887-1~3
명성황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98	5권	3	규13890-1~3
[명성황후]홍릉산릉도감의궤	1898	2권	2	규13893-1~2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	1898	4권	4	규13881-1~4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	1898	5권	5	규13879-1~5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	1898	5권	5	규13880-1~5
[명성황후]홍릉산릉도감의궤	1898	2권	2	규13892-1~2
[명성황후]홍릉산릉도감의궤	1898	2권	2	규13894-1~2
홍릉산릉도감의궤	1898	2권	2	규13891-1~2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	1898	4권	4	규13883-1~4
[고종]대례의궤	1898	불분권	1	규13489-1
[고종]대례의궤	1898	불분권	1	규13487
[고종]대례의궤	1898	불분권	1	규13484
[고종]대례의궤	1898	불분권	1	규13488
[고종]대례의궤	1898	불분권	1	규13489-2
대례의궤	1898	불분권	1	규13486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	1898	3권	3	규14868-1~4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	1898	3권	3	규13884-1~3
[조경단]영건청의궤초	1899	불분권	1	고4256.5-1
[수릉릉상사초]개수도감의궤	1899	불분권	1	규13780
[수릉릉상사초]개수도감의궤	1899	불분권	1	규13779
[수릉릉상사초]개수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규13783
수릉릉상사초개수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규13781
[인조·인열왕후·장열왕후·효종·인선왕후·고종·명헌태후·명성왕후]존호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규13247
[인조·인열왕후·장열왕후·효종·인선왕후·고종·명헌태후·명성왕후]존호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규13250
[인조·인열왕후·장열왕후·효종·인선왕후·고종·명헌태후·명성왕후]존호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규13248
[인조·인열왕후·장열왕후·효종·인선왕후·고종·명헌태후·명성왕후]존호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규13249
[인조·인열왕후·장열왕후·효종·인선왕후·고종·명헌태후·명성왕후]존호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규13246
영정모사도감보완의궤	1900	불분권	1	규13984
[의왕영왕]책봉의궤	1900	불분권	1	규13228
[의왕영왕]책봉의궤	1900	불분권	1	규13229
[의왕영왕]책봉의궤	1900	불분권	1	규13230
[의왕영왕]책봉의궤	1900	불분권	1	규13231
[의왕영왕]책봉의궤	1900	불분권	1	규13232
의왕영왕책봉의궤	1900	불분권	1	규13226
[경복궁창덕궁]증건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규14232
[경복궁창덕궁]증건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규14233
[경복궁창덕궁]증건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규14919
[경복궁창덕궁]증건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규14231
[경복궁창덕궁]증건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규14234
[경복궁창덕궁]증건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규14235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증건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규14230
[영희전]영건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규14248
[영희전]영건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규14249
[영희전]영건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규14916
[영희전]영건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규14246
[영희전]영건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규14244
영희전영건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규14243
[영희전]영건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규14247
영정모사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규13989
영정모사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규15069
영정모사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규13988
영정모사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규13986
영정모사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규13982
영정모사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규13983
[태조·장조·정조·순조·익종]추존시의궤	1901	불분권	1	규13238
[태조·장조·정조·순조·익종]추존시의궤	1901	불분권	1	규13239
[태조·장조·정조·순조·익종]추존시의궤	1901	불분권	1	규13242
[태조·장조·정조·순조·익종]추존시의궤	1901	불분권	1	규13241
[태조·장조·정조·순조·익종]추존시의궤	1901	불분권	1	규13240
추존시의궤	1901	불분권	1	규13236
진전중건도감의궤	1901	불분권	1	규14917
진전중건도감의궤	1901	불분권	1	규14239
진전중건도감의궤	1901	불분권	1	규14238
진전중건도감의궤	1901	불분권	1	규14241
진전중건도감의궤	1901	불분권	1	규14242
선원보략수정의궤	1901	불분권	1	규14139
선원보략수정의궤	1901	불분권	1	규14140
선원보략수정의궤	1901	불분권	1	규14141
선원보략수정의궤	1901	불분권	1	고4650-149
선원보략수정의궤	1901	불분권	1	규14138
[순비]책봉의궤	1901	불분권	1	규13206
[순비]책봉의궤	1901	불분권	1	규13209
[순비]책봉의궤	1901	불분권	1	규13203
순비책봉의궤	1901	불분권	1	규13204
[순비]책봉의궤	1901	불분권	1	규13205
영정모사도감의궤	1901	불분권	1	규13992
영정모사도감의궤	1901	불분권	1	규13994
영정모사도감의궤	1901	불분권	2	규13990-1~2
영정모사도감의궤	1901	불분권	2	규13991-1~2
[조경단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	1901	2권	2	규14258-1~2
조경단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	1901	2권	2	규14251-1~2
[조경단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	1901	2권	2	규14253-1~2
[조경단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	1901	2권	2	규14256-1~2
[조경단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	1901	2권	2	규14254-1~2
[조경단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	1901	2권	2	규14257-1~2
[조경단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	1901	2권	2	규14255-1~2
[문조·신정황후·고종·명헌태후·명성황후]상호도감의궤	1902	불분권	1	규13433
[문조·신정황후·고종·명헌태후·명성황후]상호도감의궤	1902	불분권	1	규13432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어진도사도감의궤	1902	불분권	1	규14001
어진도사도감의궤	1902	불분권	1	규14000
[문조·신정황후·고종·명헌태후·명성황후]상호도감의궤	1902	불분권	1	규13431
[문조·신정황후·고종·명헌태후·명성황후]상호도감의궤	1902	불분권	1	규13434
[문조·신정황후·고종·명헌태후·명성황후]상호도감의궤	1902	불분권	1	규13435
[문조·신정황후·고종·명헌태후·명성황후]상호도감의궤	1902	불분권	1	규13430
선원보략수정의궤	1902	2권	2	규14137-1~2
[순비]진봉황귀비의궤	1903	불분권	1	규13212
[순비]진봉황귀비의궤	1903	불분권	1	규13213
[순비]진봉황귀비의궤	1903	불분권	1	규13216
[순비]진봉황귀비의궤	1903	불분권	1	규13214
[순비]진봉황귀비의궤	1903	불분권	1	규13215
진봉황귀비의궤	1903	불분권	1	규13211
선원보략수정의궤	1905	불분권	1	규14144
선원보략수정의궤	1905	불분권	1	규14145
선원보략수정의궤	1905	불분권	1	규14146
[순명비]빈전혼전도감의궤	1905	5권	5	규14859-1~5
[순명비]빈전혼전도감의궤	1905	5권	5	규13908-1~5
[순명비]빈전혼전도감의궤	1905	5권	5	규13909-1~5
[효정왕후]국장도감의궤	1905	4권	4	규14860-1~4
[효정왕후]국장도감의궤	1905	4권	4	규13814-1~4
[효정왕후]국장도감의궤	1905	4권	4	규13815-1~4
[효정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905	5권	5	규14843-1~5
[효정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905	5권	5	규13824-1~5
[효정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905	5권	5	규13822-1~5
[순명비]빈전혼전도감의궤	1905	5권	3	규13910-1~3
[순명비]빈전혼전도감의궤	1905	5권	3	규13911-1~3
[효정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905	3권	3	규13819-1~3
[효정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905	3권	3	규13828-1~3
[효정왕후]국장도감의궤	1905	4권	4	규13818-1~4
[효정왕후]국장도감의궤	1905	4권	4	규13817-1~4
순명비빈전혼전도감의궤	1905	5권	5	규13906-1~5
효정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905	5권	5	규13823-1~5
효정왕후국장도감의궤	1905	4권	4	규13816-1~4
[순명황후]유강원원소도감의궤	1905	2권	2	규14834-1~2
[순명황후]유강원원소도감의궤	1905	2권	2	규13916-1~2
[순명황후]유강원원소도감의궤	1905	2권	2	규13915-1~2
[순명황후]유강원원소도감의궤	1905	2권	2	규13914-1~2
[순명황후]유강원원소도감의궤	1905	2권	2	규13913-1~2
유강원원소도감의궤	1905	2권	2	규13917-1~2
[순명왕후]국장도감의궤	1905	4권	4	규14873-1~4
[순명왕후]국장도감의궤	1905	4권	4	규13903-1~4
[순명왕후]국장도감의궤	1905	4권	4	규13900-1~4
[효정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	1905	2권	2	규14828-1~2
[효정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	1905	2권	2	규13833-1~2
[효정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	1905	2권	2	규13831-1~2
[효정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	1905	2권	2	규13832-1~2
명성황후홍릉석의중수도감의궤	1905	불분권	1	규13898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명성황후홍릉석의중수도감의궤	1905	불분권	1	규13897
[효정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	1905	2권	2	규13834-1~2
[효정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	1905	2권	2	규13829-1~2
명성황후홍릉석의중수도감의궤	1905	불분권	1	규13895
명성황후홍릉석의중수도감의궤	1905	불분권	1	규13899
[순명왕후]국장도감의궤	1905	4권	4	규13904-1~4
[순명왕후]국장도감의궤	1905	4권	4	규13901-1~4
순명비국장도감의궤	1905	4권	4	규13902-1~4
선원보략수정의궤	1905	불분권	1	규14143
[효정왕후]부묘도감의궤	1906	불분권	1	규13837
[효정왕후]부묘도감의궤	1906	불분권	1	규13838
[효정왕후]부묘도감의궤	1906	불분권	1	규13839
[효정왕후]부묘도감의궤	1906	불분권	1	규13841
효정왕후부묘도감의궤	1906	불분권	1	규13835
[효정왕후]부묘도감의궤	1906	불분권	1	규13836
[순종·순종비]가례도감의궤	1907	2권	2	규13181-1~2
[순종·순종비]가례도감의궤	1907	2권	2	규13184-1~2
[순종·순종비]가례도감의궤	1907	2권	2	규13186-1~2
[순종·순종비]가례도감의궤	1907	2권	2	규13180-1~2
[순종·순종비]가례도감의궤	1907	2권	2	규13183-1~2
[순종·순종비]가례도감의궤	1907	2권	2	규13179-1~2
[순종·순종비]가례도감의궤	1907	2권	2	규13182-1~2
[융희양황후복위시]책례도감의궤	1907	불분권	1	규13192
[융희양황후복위시]책례도감의궤	1907	불분권	1	규13195
[융희양황후복위시]책례도감의궤	1907	불분권	1	규13193
[융희양황후복위시]책례도감의궤	1907	불분권	1	규13194
[융희양황후부위시]책례도감의궤	1907	불분권	1	규13187
[융희양황후부위시]책례도감의궤	1907	불분권	1	규13189
[융희양황후부위시]책례도감의궤	1907	불분권	1	규13188
[융희양황후복위시]책례도감의궤	1907	불분권	1	규13190
중화전영건도감의궤	1907	불분권	1	규14345
[경운궁]중건도감의궤	1907	2권	2	규14918-1~2
[경운궁]중건도감의궤	1907	2권	2	규14329-1~2
[경운궁]중건도감의궤	1907	2권	2	규14332-1~2
[경운궁]중건도감의궤	1907	2권	2	규14333-1~2
[경운궁]중건도감의궤	1907	2권	2	규14330-1~2
중화전영건도감의궤	1907	불분권	1	규14914
중화전영건도감의궤	1907	불분권	1	규14348
중화전영건도감의궤	1907	불분권	1	규14346
중화전영건도감의궤	1907	불분권	1	규14349
중화전영건도감의궤	1907	불분권	1	규14347
경운궁중건도감의궤	1907	2권	2	규14328-1~2
[헌의대원왕·순목대원비·완효헌왕·의왕비]추봉책봉의궤	1907	불분권	1	규13217
[헌의대원왕·순목대원비·완효헌왕·의왕비]추봉책봉의궤	1907	불분권	1	규13219
[헌의대원왕·순목대원비·완효헌왕·의왕비]추봉책봉의궤	1907	불분권	1	규13222
[헌의대원왕·순목대원비·완효헌왕·의왕비]추봉책봉의궤	1907	불분권	1	규13218
[헌의대원왕·순목대원비·완효헌왕·의왕비]추봉책봉의궤	1907	불분권	1	규13224
[헌의대원왕·순목대원비·완효헌왕·의왕비]추봉책봉의궤	1907	불분권	1	규13225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헌의대원왕·순목대원비·완효헌왕·의왕비]추봉책봉의궤	1907	불분권	1	규13223
[헌의대원왕·순목대원비·완효헌왕·의왕비]추봉책봉의궤	1907	불분권	1	규13220
[고종·영친왕]존봉도감의궤	1907	불분권	1	규13159
[고종·영친왕]존봉도감의궤	1907	불분권	1	규13158
[고종·영친왕]존봉도감의궤	1907	불분권	1	규13162
[고종·영친왕]존봉도감의궤	1907	불분권	1	규13160
[고종·영친왕]존봉도감의궤	1907	불분권	1	규13165
[고종·영친왕]존봉도감의궤	1907	불분권	1	규13166
[고종·영친왕]존봉도감의궤	1907	불분권	1	규13164
존봉도감의궤	1907	불분권	1	규13163
선원보략수정의궤	1908	불분권	1	규14148
선원보략수정의궤	1908	불분권	1	규14149
선원보략수정의궤	1908	불분권	1	규14150
선원보략수정의궤	1908	불분권	1	규14151
[진종·헌종·철종·효순왕후·효현왕후·효정왕후·철인왕후]추존시의궤	1908	불분권	1	규13335
[진종·헌종·철종·효순왕후·효현왕후·효정왕후·철인왕후]추존시의궤	1908	불분권	1	규13336
[진종·헌종·철종·효순왕후·효현왕후·효정왕후·철인왕후]추존시의궤	1908	불분권	1	규13332
[진종·헌종·철종·효순왕후·효현왕후·효정왕후·철인왕후]추존시의궤	1908	불분권	1	규13334
추존시의궤	1908	불분권	1	규13330
[진종·헌종·철종·효순왕후·효현왕후·효정왕후·철인왕후]추존시의궤	1908	불분권	1	규13331
국조보감감인소의궤	1909	불분권	1	규14950
감인소의궤	1909	불분권	1	규14198

조선왕조의궤-장서각(291건 384책)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동국신속삼강행실찬집청의궤	1616	불분권	1	2-3641
왕세자가례[교시시응행제사마련]도감의궤	1628	불분권	1	2-2592
[영접도감]도청의궤	1634	불분권	1	2-2722
사전별의궤	1643	불분권	2	2-2537
녹훈도감의궤	1646	불분권	1	2-2857
저승전의궤	1648	불분권	1	2-2485
[장릉(인조)]산릉도감의궤	1649	불분권	1	2-2367
인조대왕인열왕후부묘도감도청의궤	1651	불분권	1	2-2256
인조대왕인열왕후부묘도감도청의궤	1651	불분권	1	2-2255
존숭도감도청의궤	1651	불분권	1	2-2828
왕세자가례시도청의궤	1652	불분권	1	2-2684
인조대왕실록찬수청의궤	1653	불분권	1	2-3775
추쇄도감의궤	1657	불분권	2	2-3671
선조대왕실록수정청의궤	1657	불분권	1	2-3722
[영릉]산릉도감의궤	1659	불분권	1	2-2320
수개도감의궤	1660	불분권	1	2-3566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부묘도감도청의궤	1661	불분권	1	2-2274
부묘도감도청의궤	1661	불분권	1	2-2240
효종대왕실록찬수청의궤	1661	불분권	1	2-3798
대왕대비전왕대비전존숭도감도청의궤	1661	불분권	1	2-2805
책례도감도청의궤	1661	불분권	1	2-2717
영녕전수개도감의궤	1667	불분권	1	2-3572
부묘도감도청의궤	1670	불분권	1	2-2225
부묘도감도청의궤	1670	불분권	1	2-2224
왕세자가례시도청의궤	1671	불분권	1	2-2589
산릉도감의궤	1674	불분권	1	2-2321
산릉도감의궤	1674	불분권	1	2-2322
산릉도감의궤	1675	불분권	1	2-2323
부묘도감도청의궤	1676	불분권	1	2-2226
부묘도감도청의궤	1676	불분권	1	2-2241
현종대왕실록찬수청의궤	1677	불분권	1	2-3795
숭릉수개도감의궤	1677	불분권	1	2-3568
존숭도감의궤	1677	불분권	1	2-2830
책례도감의궤	1677	불분권	1	2-2718
부묘도감도청의궤	1677	불분권	1	2-2228
부묘도감도청의궤	1677	불분권	1	2-2227
선원록이정청의궤	1680	불분권	3	2-3834
산릉도감의궤	1681	불분권	2	2-2324
가례도감도청의궤	1681	불분권	1	2-2590
현종대왕실록개수청의궤	1683	불분권	1	2-3794
산릉도감의궤	1684	불분권	1	2-2325
[명성왕후]국휼의궤	1684	불분권	1	2-2946
선원보략개간의궤	1684	불분권	1	2-3837
부묘도감도청의궤	1686	불분권	1	2-2245
부묘도감도청의궤	1686	불분권	1	2-2229
존숭도감도청의궤	1686	불분권	1	2-2834
산릉도감의궤	1689	불분권	1	2-2326
책례도감도청의궤	1690	불분권	1	2-2721
부묘도감도청의궤	1691	불분권	1	2-2231
부묘도감도청의궤	1691	불분권	1	2-2230
책례도감도청의궤	1694	불분권	1	2-2715
왕세자가례시도청의궤	1696	불분권	1	2-2685
복위부묘도감의궤	1699	불분권	1	2-2259
복위부묘도감의궤	1699	불분권	1	2-2223
장릉봉릉도감의궤	1699	불분권	1	2-2368
사릉봉릉도감의궤	1699	불분권	1	2-2318
선원보략교정청의궤	1702	불분권	1	2-3840
산릉도감의궤	1702	불분권	2	2-2327
가례도감대전가례의궤	1702	불분권	1	2-4754
종묘의궤	1706	불분권	1	2-2194
존숭도감의궤	1713	불분권	2	2-2835
묘소도감의궤	1718	불분권	2	2-2312
왕세자가례시도청의궤	1719	불분권	1	2-2593
민회빈봉묘도감의궤	1719	불분권	2	2-2317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선원보략교정청의궤	1721	불분권	1	2-3841
산릉도감의궤	1721	불분권	2	2-2328
부묘도감도청의궤	1723	불분권	1	2-2232
부묘도감도청의궤	1723	불분권	1	2-2233
존숭도감도청의궤	1723	불분권	1	2-2831
책례도감의궤	1723	불분권	1	2-2719
선원보략수정시교정청의궤	1724	불분권	1	2-3847
산릉도감의궤	1725	불분권	2	2-2329
책례도감의궤	1725	불분권	1	2-2720
선원보략개수시의궤	1725	불분권	1	2-3838
종묘개수도감의궤	1726	불분권	2	2-3585(上) 2-3586(下)
부묘도감도청의궤	1727	불분권	1	2-2234
존숭도감도청의궤	1727	불분권	1	2-2836
책례도감도청의궤	1727	불분권	1	2-2716
묘소도감의궤	1729	불분권	1	2-2313
묘소도감의궤	1729	불분권	2	2-2314
효장세자상례의궤	1729	불분권	1	2-3050
빈궁도감의궤	1729	불분권	1	2-2951
산릉도감의궤	1731	불분권	2	2-2362
장릉천릉시산릉도감의궤	1732	불분권	3	2-4803
지릉정자각개건의궤	1732	불분권	1	2-3593
부묘도감도청의궤	1732	불분권	1	2-2235
부묘도감도청의궤	1732	불분권	1	2-2236
선원보략수정시교정청의궤	1735	불분권	1	2-3845
선원보략개장시의궤	1736	불분권	1	2-3839
복위부묘도감의궤	1739	불분권	1	2-2624
복위부묘도감의궤	1739	불분권	1	2-2242
온릉봉릉도감의궤	1739	불분권	1	2-2351
존숭도감도청의궤	1740	불분권	1	2-2832
존숭도감도청의궤	1740	불분권	2	2-2837
선원보략수정시종부시의궤	1740	불분권	1	2-3850
[영조갑자]선원보략수정시교정청의궤	1744	불분권	1	2-3842
[영조정묘]선원보략수정시교정청의궤	1747	불분권	1	2-3846
[영조무진]선원보략수정의궤	1748	불분권	1	2-3854
[진전[영희전]]중수도감의궤	1748	불분권	1	2-3595
[인원왕후]존숭도감도청의궤	1751	불분권	1	2-2839
[인원왕후]존숭도감의궤	1751	불분권	1	2-2838
[의소세손궁]예장의궤	1752	불분권	1	2-2994
[영조·인원·정성왕후]존숭도감도청의궤	1752	불분권	2	2-2840
[영조임신]선원보략수정시종부시의궤	1752	불분권	1	2-3851
[육상궁]상시봉원도감의궤	1753	불분권	2	2-3069
[영조계유]선원보략수정시교정청의궤	1753	불분권	1	2-3843
[숙종·인경·인현·인원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1754	2권	2	2-2790
[영조계유]선원보략수정시교정청의궤	1754	불분권	1	2-3844
[영조을해]선원보략수정시종부시의궤	1755	불분권	1	2-3852
[영조·인원·숙빈·정성왕후]존숭도감의궤	1756	불분권	2	2-2842
[영조·인원·숙빈·정성왕후]존숭도감의궤	1756	불분권	2	2-2841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영조병자]선원보략수정시종부시의궤	1756	불분권	1	2-3853
[영조정축]선원보략수정시전라도적상산성봉안의궤	1757	불분권	1	2-3848
[정성왕후]국휼의궤	1757	불분권	1	2-3008
[영조무인]선원보략수정전라도무주적상산봉안의궤	1758	불분권	1	2-3858
[인원왕후]부묘도감도청의궤	1759	불분권	1	2-2237
[인원왕후]부묘도감도청의궤	1759	불분권	1	2-2238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1759	불분권	1	2-2591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1759	불분권	1	2-4755
[왕세손(정조·효의왕후)]가례청도청의궤	1762	1권	1	2-2602
[영조갑신]선원보략수정의궤	1764	불분권	1	2-3855
[은언군은신군]관례의궤	1767	불분권	1	2-2702
친경의궤	1767	불분권	1	2-2905
친잠의궤	1767	불분권	1	2-2906
[영조신묘]선원보략수정의궤	1772	불분권	1	2-3856
[청근현주]가례의궤	1772	불분권	1	2-2725
[영종임진]선원보략수정의궤	1772	불분권	1	2-3857
[육상궁]상시도감의궤	1772	불분권	2	2-3066
[육상궁]상시도감의궤	1772	불분권	1	2-3065
[현종·명성왕후·영조·정성왕후]상호도감의궤	1773	불분권	1	2-2808
[영조경인]종묘의궤속록	1776	불분권	1	2-2203
[진종·효순왕후·장헌세자·혜빈]상시봉원도감의궤	1776	불분권	1	2-3070
[경모궁]개건도감의궤	1776	불분권	1	2-3556
[진종·효순왕후]추숭도감의궤	1776	불분권	1	2-2850
[영조·정성왕후·진종·효순왕후]부묘도감도청의궤	1778	불분권	1	2-4769
[영조·정성왕후·진종·효순왕후]부묘도감도청의궤	1778	불분권	1	2-2239
[정성·정순왕후·혜경궁]존숭도감도청의궤	1778	불분권	1	2-2833
[정성·정순왕후·혜경궁]진호도감의궤	1778	불분권	1	2-2846
[효의왕후]책례도감의궤	1778	불분권	1	2-4824
[인숙원빈]예장의궤	1779	불분권	1	2-2998
[영조대왕]실록청의궤	1781	불분권	2	2-3772
[경종대왕]수정실록의궤	1781	불분권	1	2-3691
국조보감감인청의궤	1783	불분권	1	2-3684
국조보감감인소의궤	1783	불분권	1	2-3685
[정순왕후·경모궁·혜경궁]상호도감의궤	1783	불분권	1	2-2809
[(숙종)병술~(영종)신축]종묘의궤속록	1784	불분권	1	2-2202
[영조·정성·정순왕후·경모궁·혜경궁]상호도감의궤	1784	불분권	2	2-2810
[정종을사]종묘의궤속록	1784	불분권	1	2-2196
경모궁의궤	1784	4권	3	2-2410
경모궁의궤	1784	3권	2	2-2411
[정순왕후]상호도감의궤	1787	불분권	1	2-2811
[정조계축]종묘의궤별록	1793	불분권	1	2-5210
[정종계축]종묘의궤속록	1793	불분권	1	2-2197
[정순왕후·경모궁·혜경궁]상존호도감의궤	1795	불분권	1	2-2812
원행을묘정리의궤	1797	10권	8	2-2898
원행을묘정리의궤	1800	9권	7	2-2897-A
원행을묘정리의궤	1800	1권	1	2-2897-B8-8
[숙종병술]종묘의궤	1800	2권	2	2-2195-1,2
[정종갑인]종묘의궤속록	1800	불분권	1	2-2195-3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정조]부묘도감의궤	1802	불분권	1	2-2261
[정조]부묘도감의궤	1802	불분권	1	2-2260
[정조]부묘도감의궤	1802	불분권	1	2-4770
[정순·효의왕후]존숭도감의궤	1802	불분권	1	2-2843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	1802	2권	2	2-2595
[정순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1804	불분권	1	2-2797
[정순왕후]상존호도감의궤	1805	불분권	1	2-2813
[정조대왕]실록산절청의궤	1806	불분권	1	2-3787
[정순왕후]부묘도감도청의궤	1807	불분권	1	2-2257
[정순왕후]부묘도감도청의궤	1807	불분권	1	2-2258
[혜경궁]진찬소의궤	1809	불분권	1	2-2882
[왕세자(효명세자)]책례도감도청의궤	1812	불분권	1	2-2690
[헌경혜빈]부궁도감의궤	1818	불분권	1	2-2268
[헌경혜빈]부궁도감의궤	1818	불분권	1	2-2267
[문조·신정왕후]가례도감의궤	1819	2권	2	2-2677
[(순종)신유~경신]종묘의궤	1820	불분권	1	2-2199
[효의왕후]국휼의궤	1822	불분권	1	2-3046
[건릉]산릉도감의궤	1822	불분권	1	2-2277
[효의왕후]부묘도감의궤	1823	불분권	1	2-2270
[효의왕후]부묘도감의궤	1823	불분권	1	2-2271
[현목수빈]휘경원원소도감의궤	1823	1권	1	2-2398
[현사궁별묘]영건도감의궤	1824	불분권	1	2-3602
[현목수빈]입묘도감의궤	1825	불분권	1	2-2215
[현목수빈]입묘도감의궤	1825	불분권	1	2-2214
[순조·순원왕후]상존호도감의궤	1827	불분권	2	2-2814
자경전진작정례의궤	1827	3권	1	2-2858
[순조 무자]진작의궤	1828	3권	2	2-2860
[순조무자]진작의궤	1828	3권	2	2-2859
왕세손책저도감의궤	1830	6권	1	2-2724
서궐영건도감의궤	1832	불분권	1	2-3564
효명세자입묘도감의궤	1832	불분권	1	2-2216
추숭도감의궤	1835	2권	2	2-2851
종묘영녕전증수도감의궤	1836	2권	2	2-3588
종묘영녕전증수도감의궤	1836	2권	2	2-3589
종묘영녕전증수도감의궤	1836	1권	1	2-2189
순종대왕익종대왕부묘도감의궤	1837	불분권	1	2-2249
순종대왕익종대왕부묘도감의궤	1837	불분권	1	2-2243
[순원왕후·신정왕후]존숭도감의궤	1837	불분권	1	2-2844
[헌종·효현왕후]가례도감의궤	1837	2권	2	2-2596
순종대왕실록산절청의궤	1838	불분권	1	2-3725
[순원왕후]존호도감의궤	1841	불분권	1	2-2815
사직서의궤	1842	5권	5	2-2157
종묘의궤속록	1842	불분권	1	2-2200
[헌종·효정왕후]가례도감의궤	1845	1권	1	2-2597
상호도감의궤	1848	2권	2	2-2816
감인청의궤	1849	불분권	1	2-3687
감인청의궤	1849	불분권	1	2-3686
[헌종 무신]진찬의궤	1849	4권	4	2-2874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헌종대왕효현왕후부묘도감의궤	1852	2권	2	2-2269
대왕대비전왕대비전대비전존숭도감의궤	1852	불분권	1	2-2796
가례도감의궤	1852	2권	2	2-2598
실록청의궤	1852	불분권	1	2-3739
헌종대왕효현왕후부묘도감의궤	1852	1권	1	2-2244
대왕대비전가상존호도감의궤	1852	불분권	1	2-2798
순종대왕추상존호대왕대비전가상존호도감의궤	1853	불분권	1	2-2817
익종대왕존호왕대비전가상존호헌종대왕추상존호효현왕후추상존호대비전가상존호도감의궤	1854	불분권	2	2-2818
장헌세자추상존호혜빈추상존호도감의궤	1855	불분권	1	2-2819
[인정전]중수의궤	1857	불분권	1	2-3577
순조대왕개상시호묘호추상존호순원왕후추상존호도감의궤	1858	2권	2	2-3073
[순조·순원왕후]추상존호도감의궤	1858	불분권	1	2-2847
[순원왕후]부묘도감의궤	1860	불분권	1	2-2248
[순원왕후]부묘도감의궤	1860	불분권	1	2-2247
[신정·효정왕후]존숭도감의궤	1860	불분권	1	2-2804
[순조·순원왕후]추상존호도감의궤	1861	불분권	1	2-2825
[순조·순원왕후]추상존호도감의궤	1862	불분권	1	2-2826
[철종·철인왕후]상존호도감의궤	1863	불분권	1	2-2806
[현목수빈]휘경원천봉도감의궤	1863	3권	3	2-2400-4-2~4
[현목수빈]휘경원천봉원소도감의궤	1864	1권	1	2-2400-4-1
[신정·명헌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1864	불분권	1	2-2791
[철종대왕]빈전혼전도감의궤	1864	1권	1	2-3026
[철종대왕]빈전혼전도감의궤	1864	1권	1	2-3027
[철종대왕]국장도감의궤	1865	1권	1	2-3022
[철종대왕]실록청의궤	1865	불분권	1	2-3738
[철종]부묘도감의궤	1866	불분권	1	2-2265
[철종]부묘도감의궤	1866	불분권	1	2-2266
[철종]부묘도감의궤	1866	불분권	1	2-2264
[신정·효정·철인왕후]존숭도감의궤	1866	불분권	1	2-2803
[익종·등칠위]상호도감의궤	1866	불분권	1	2-2820
[고종·명성왕후]가례도감의궤	1866	2권	2	2-2599
[왕세자(순종)]책례도감의궤	1875	불분권	1	2-2691
[익종·신정왕후]상호도감의궤	1875	불분권	1	2-2821
보인소의궤	1878	불분권	1	2-568
[고종정축]진찬의궤	1878	4권	4	2-2880-C
[철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80	2권	2	2-3021
[철인왕후]부묘도감의궤	1881	불분권	1	2-2263
[철인왕후]부묘도감의궤	1881	불분권	1	2-2262
[왕세자(순종·순명왕후)]가례도감의궤	1884	2권	2	2-2678
[고종정해]진찬의궤	1890	4권	4	2-2880-B4
[신정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1891	불분권	1	2-2792
[고종·신정·명헌·명성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1891	불분권	1	2-2793
[고종·신정·명헌·명성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1891	불분권	1	2-2794
[영조·정성·정순왕후]묘호도감의궤	1891	불분권	1	2-3062
[신정왕후]부묘도감의궤	1893	불분권	1	2-2253
[신정왕후]부묘도감의궤	1893	불분권	1	2-2254
[고종임진]진찬의궤	1893	4권	4	2-2880A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고종임진]진찬의궤	1893	4권	4	2-2879-C
[익종·신정왕후]추상호도감의궤-존호	1894	불분권	1	2-2848
[숙종·인경·인현·인원왕후]추상존호도감의궤	1894	불분권	1	2-2849
[익종·신정왕후·고종·효정·명성왕후]상존호도감의궤	1894	불분권	1	2-2822
[고종]대례의궤	1898	불분권	1	2-2626
[고종]대례의궤	1898	불분권	1	2-2627
[태조고황제·고황후등칠위]추존시의궤	1899	불분권	1	2-2855
[태조·고황제]영정모사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2-2766
[영희전]영건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2-3575
[영희전]영건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2-3576
[인조·인열왕후·장열왕후·효종·인선왕후·고종·명헌태후·명성왕후]상존호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2-2823
[선원전]증건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2-3558
[의왕영왕]책봉의궤	1900	불분권	1	2-2704
[태조고황제·고황후등칠위]추존시의궤	1901	불분권	1	2-2854
[고종임인]선원보략수정의궤	1901	불분권	1	2-3849
[태조·숙종등]영정모사도감의궤	1901	불분권	1	2-2768
[조경단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	1901	2권	2	2-3581
[경운궁]진전중건도감의궤	1901	불분권	1	2-3594
[순비]책봉의궤	1901	불분권	1	2-2654
[순비]책봉의궤	1901	불분권	1	2-2655
[광무신축]진연의궤	1902	4권	4	2-2868
[고종신축]진찬의궤	1902	4권	4	2-2881
[문조·신정왕후·고종·명헌태후·명성황후]상[존]호도감의궤	1902	불분권	1	2-2824
[고종·순종]어진도사도감의궤	1902	불분권	1	2-2757
[고종·순종]어진도사도감의궤	1902	불분권	1	2-2758
[광무임인]진연의궤	1903	4권	4	2-2869-B4-1~4
[고종임인]진연의궤	1903	4권	4	2-2869-A4-1~4
진봉황귀비[엄비]의궤	1903	불분권	1	2-2712
진봉황귀비[엄비]의궤	1903	불분권	1	2-2713
창덕궁영건도감의궤	1905	불분권	1	2-3600
[효정왕후]부묘도감의궤	1906	불분권	1	2-2272
[효정왕후]부묘도감의궤	1906	불분권	1	2-2273
[헌의대원왕·순목대원비·완효헌왕·의왕비]추봉책봉의궤	1907	불분권	1	2-5073
[진종소황제·황후등칠위]추존시의궤	1908	불분권	1	2-4830
국조보감감인소의궤	1909	불분권	1	2-3682
국조보감감인소의궤	1909	불분권	1	2-3680
국조보감감인소의궤	1909	불분권	1	2-3683

조선왕조의궤-국립고궁박물관(80건 133책)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창덕궁수리도감의궤	1647	불분권	1	고궁2014
창덕궁만수전수리도감의궤	1657	불분권	1	고궁2013
혜능석물추배도감의궤	1722	불분권	1	고궁2015
종묘개수도감의궤	1726	불분권	2	고궁2009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영정모사도감의궤(세종)	1735	불분권	1	고궁2006-1
영정모사도감의궤(숙종)	1748	불분권	1	고궁2006-2
진전중수영건청의궤	1772	불분권	1	고궁2011
선원보략수정의궤	1776	불분권	1	고궁2002
원행을묘정리의궤	1797	10권	8	朝14523-8
황단종향의궤	1822	불분권	1	朝14317
창경궁영건도감의궤	1834	불분권	1	朝14323
창경궁영건도감의궤	1834	불분권	1	고궁2012
[철종]예릉산릉도감의궤	1864	2권	2	朝13850
[철종]국장도감의궤	1865	4권	4	朝13842
[철종]빈전혼전도감의궤	1865	5권	3	朝13848
[철종]부묘도감의궤	1866	불분권	1	朝13855
[신정·효정·철인왕후]존숭도감의궤	1866	불분권	1	朝13451
[익종·헌종·철종]존호도감의궤	1866	불분권	1	朝13407
[고종·명성왕후]가례도감의궤	1866	2권	2	朝13154
어진이모도감의궤	1872	불분권	1	고궁2005
[순종]원자아기씨장태의궤	1874	불분권	1	朝49975
[순종왕세자]책례도감의궤	1875	불분권	1	朝13167
[익종·신정왕후]상존호도감의궤	1875	불분권	1	朝13418
[신정왕후·효정왕후·철인왕후·고종·명성황후]상존호도감의궤	1877	불분권	1	朝13457
보인소의궤	1878	불분권	1	朝14213
[철인왕후]국장도감의궤	1880	4권	4	朝13862
[철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80	5권	3	朝13864
[철인왕후]예릉산릉도감의궤	1880	2권	2	朝13870
[철인왕후]부묘도감의궤	1881	불분권	1	朝13877
[왕세자]가례도감의궤	1884	2권	2	朝13173
일기청의궤	1890	불분권	1	朝14204
[신정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1891	불분권	1	朝13465
[고종·신정왕후·효정왕후·명성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1891	불분권	1	朝-탈락
[영조]묘호도감의궤	1891	불분권	1	朝13305
[신정왕후]국장도감의궤	1892	4권	4	朝13735
[신정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92	5권	3	朝13741
[신정왕후]수릉산릉도감의궤	1892	2권	2	朝13748
[신정왕후]부묘도감의궤	1893	불분권	1	탈락됨
[익종·신정후]추상존호도감의궤	1894	불분권	1	朝13419
[익종·신정왕후·고종·명헌왕후·명성왕후]상호도감의궤	1894	불분권	1	朝13428
[명성황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98	5권	3	朝13886
[명성황후]홍릉산릉도감의궤	1898	2권	2	朝13891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	1898	4권	4	朝13882
[고종]대례의궤	1898	불분권	1	朝13485
[태조고황제]영정모사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朝13987
[순조문조]영정모사도감보완의궤	1900	불분권	1	朝13985
[수릉릉상사초]개수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朝13782
[영희전]영건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朝14245
[인조·인열왕후·장열왕후·효종·인선왕후·고종·명헌태후·명성왕후] 존호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朝13251
[경복궁창덕궁]증건도감의궤	1900	불분권	1	朝-탈락
[의왕영왕]책봉의궤	1900	불분권	1	朝13227
증건도감의궤	1900	1권	1	고궁2010

서명	제작 시기	권	책	관리번호
영정모사도감의궤(태조)	1900	불분권	1	고궁2007
[태조·장조·정조·순조·익종]추존의궤	1901	불분권	1	朝13237
[태조숙종영조정조문조헌종]영정모사도감의궤	1901	불분권	1	朝13993
[조경단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	1901	2권	2	朝14245
진전중건도감의궤	1901	불분권	1	朝14240
[순비]책봉의궤	1901	불분권	1	朝13208
영정모사도감의궤	1901	불분권	1	고궁2006-3
[문조·신정황후·고종·명헌태후·명성황후]상호도감의궤	1902	불분권	1	朝13436
어진도사도감의궤(고종•순종)	1902	불분권	1	고궁2004
[순비]진봉황귀비의궤	1903	불분권	1	朝13210
[순명왕후]국장도감의궤	1905	4권	4	朝13905
[순명비]빈전혼전도감의궤	1905	5권	5	朝13907
[효정왕후]국장도감의궤	1905	4권	4	朝13813
[효정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905	5권	5	朝13820 朝13821
[효정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	1905	2권	2	朝13830
[[명성황후]홍릉석의]중수도감의궤	1905	불분권	1	朝13896
선원보략수정의궤	1905	불분권	1	朝14142
[순명황후]유강원원소도감의궤	1905	2권	2	朝13916
[효정왕후]부묘도감의궤	1906	불분권	1	朝13840
[순종·순종비]가례도감의궤	1907	2권	2	朝13185
[경운궁]중건도감의궤	1907	2권	2	朝14331
중화전영건도감의궤	1907	불분권	1	朝14344
[고종·영친왕]책례존봉도감의궤	1907	불분권	1	朝13161
[순명왕후·순정왕후]추봉황후진봉황후의궤	1907	불분권	1	朝13191
[헌의대원왕·순목대원비·완효헌왕·의왕비]추봉책봉의궤	1907	불분권	1	朝13221
선원보략수정의궤	1908	불분권	1	朝14147
[진종·헌종·철종·효순왕후·효현왕후·효정왕후·철인왕후]추존시의궤	1908	불분권	1	朝13333
국조보감감인소의궤	1909	불분권	1	朝14199

조선왕조의궤-경남 사천시청(3건 3책)

서명	제작시기	권	책	관리번호
세종대왕태실석난간수개의궤	1601	불분권	1	경남 유형문화재 제404호
세종대왕단종대왕태실수개의궤	1730	불분권	1	
세종대왕단종대왕태실표석견립시의궤	1734	불분권	1	

조선왕조의궤-국립중앙도서관(2건 3책)

서 명	제작시기	권	책	관리번호
[조경단 준경묘 영경묘]영건청의궤	1901	1권	1	韓 古朝 71-5
[조경단 준경묘 영경묘]영건청의궤	1901	2권	2	韓 古朝 29-95

조선왕조의궤-한국순교자박물관(2건 2책)

서 명	제작시기	권	책	관리번호
[의왕영왕]책봉의궤	1900	불분권	1	1533
[헌의대원왕·순목대원비·완효헌왕·의왕비]추봉책봉의궤	1907	불분권	1	1532

조선왕조의궤-국립중앙박물관(1건 9책)

서 명	제작시기	권	책	관리번호
화성성역의궤	1801	10권	9	신수20000

조선왕조의궤-서울역사박물관(1건 1책)

서 명	제작시기	권	책	관리번호
[현의대원왕.순목대원비. 완효헌왕. 의왕비]추봉책봉의궤	1907	불분권	1	운1132

조선왕조의궤-삼척시립박물관(1건 2책)

서 명	제작시기	권	책	관리번호
[조경단 준경묘 영경묘]영건청의궤	1901	2권	2	삼척시립451, 452 壇所(上), 兩墓所(下)

조선왕조의궤-연세대학교(1건 9책)

서명	제작시기	권	책	관리번호
화성성역의궤	1801	10권	9	728.81 화성성 1~4

조선왕조의궤-이화여자대학교(1건 1책)

서명	제작시기	권	책	관리번호
[고종•명성왕후•신정왕후•효정왕후•철인왕후]상호도감의궤-존호	1877	불분권	1	고서 390.22 상 95l

조선왕조의궤-청주시청(1건 1책)

서명	제작시기	권	책	관리번호
영조대왕태실난간조배의궤	1729	불분권	1	충북 유형문화재 제170호

Ⅱ. 국가지정문화재(보물) 국외반출

안건번호 동산 2016-02-006

1. 국보 제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국외반출

가. 심의사항

2015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한일 양국에서 반가사유상을 주제로 공동 개최 예정인 <한일 반가사유상(가제)> 전시와 관련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신청한 국보 제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에 대한 국외반출 허가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39조에 의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신청한 국보 제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1건에 대한 국외반출 허가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신청 기관 : 국립중앙박물관

○ 대상문화재 및 수량

- 국보 제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1건 1점

○ 장소 및 기간

- 반출기간 : 2016년 6월 14일 ~ 7월 16일
- 전시기간
  ·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 2016년 5월 23일 ~ 2016년 6월 12일
  ·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2016년 6월 21일 ~ 2016년 7월 10일

○ 전시 명칭 : 한일 반가사유상(가제)

라. 국외반출 대상 조사 결과

○ 목 적 : 반출대상 유물 보존 상태 등 조사

○ 조사일자 : 2016. 3. 17(수)

○ 조사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 조사자 의견

- 국보 제78호 반가상 후면의 의습 자락 부분은 원래부터 절단된 것을 후에 보수하여 유물 이동과 전시에는 큰 문제점이 없음. 또한 포장은 원래 제작된 포장 상자와 내피 등에 그대로 삽입하여 이동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 있음. 포장 및 이송 역시 유물관리부의 책임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되었음. 이송과 전시과정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 관리 감독하고 전시의 결과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지시함. 이에 유물 출품과 반출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 신청 목록 사진 및 세부사항

허가신청목록		
① 지 정 번 호	국보 제 78호	
② 명 칭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③ 수 량	1점	
④ 규 격	높이 80.0cm	
⑤ 보 관 장 소	국립중앙박물관	

Ⅲ. 국가지정문화재(보물 · 보물) 현상변경

안건번호 동산 2016-02-007

1. 보물 제1783호 '청자상감국화모란유로죽문매병 및 죽찰' 보존처리 현상변경

가. 심의사항

보물 제1783호 '청자상감국화모란유로죽문매병 및 죽찰'의 죽찰 표면 세척 및 치수안정화 등 보존처리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부터 보물 제1783호 '청자상감국화모란유로죽문매병 및 죽찰'의 현상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다. 문화재현황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수　　량** : 1점
○ **규　　격** : 길이 13.4cm×폭 1.4cm, 두께 0.4cm, 무게 5.6g
○ **재　　질** : 목재(木材)
○ **제작연대** : 고려시대(12세기 말~13세기 초)
○ **지 정 일** : 2012. 12. 27.
○ **문화재내용**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도에서 고려시대 선박(마도 2호선)에서 청자상감국화모란유로죽문매병과 함께 출토된 죽찰이다. 죽찰에는 '준(樽)'이라는 기명의 명칭과 내용물이 기재되어 있다. 죽찰의 앞면은 8자, 뒷면은 6자 총 14자의 글자가 적혀있다. 앞면에는 "중방도장교오문부(重房都將校吳文富)"가 적혀 있는데 수취인을 적은 것이다. 뒷면에는 "택상진성준봉(宅上眞盛樽封)"이라고 쓰여 있어 준(樽)에 참기름을 담아 올린다는 내용이다.

라. 현 상태

○ 수중발굴된 이후 묵서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세척이 실시된 상태 (수침 보관 중)

사진 1. 마도 2호선 죽찰(보물 제1783호) 앞면 현황

사진 2. 마도 2호선 죽찰(보물 제1783호) 뒷면 현황

마. 현상변경 내용

○ 세척 및 치수안정화

- 대나무 섬유조직 강화처리 : 저농도 PEG(Poly Ethylene Glycol, 폴리에틸렌글리콜)법
- 수분 제거 : 진공동결건조

바. 보존처리 계획

○ 보존처리 전 상태 조사

- (수중) 발굴된 이후 묵서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세척 실시
  → 증류수에 침적하여 보관하고 있음

○ 추후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치수안정화(보존처리) 처리가 필요

○ 보존처리 기간 : 현상변경 허가 승인 후 1년 6개월 이내 예정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자문위원회 구성

안건번호 동산 2016-02-008

2. 보물 제1784호 '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 및 죽찰' 보존처리 현상변경

가. 심의사항

보물 제1784호 '청자 음각연화절지문 매병 및 죽찰'의 죽찰 표면 세척 및 치수안정화 등 보존처리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부터 보물 제1784호 '청자음각연화절지문 매병 및 죽찰'의 현상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다. 문화재현황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수　　량** : 1점
○ **규　　격** : 길이 14.2m×폭 1.6cm, 두께 0.4cm, 무게 6.8g
○ **재　　질** : 목재(木材)
○ **제작연대** : 고려시대(12세기 말~13세기 초)
○ **지 정 일** : 2012. 12. 27.
○ **문화재내용**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도에서 고려시대 선박(마도 2호선)에서 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과 함께 출토된 죽찰이다. 죽찰에는 '준(樽)'이라는 기명의 명칭과 내용물이 기재되어 있다. 죽찰의 앞면은 8자, 뒷면은 6자 총 14자의 글자가 적혀있다. 앞면에는 "중방도장교오문부(重房都將校吳文富)"가 적혀 있는데 수취인을 적은 것이다. 뒷면에는 "택상진성준봉(宅上眞盛樽封)"이라고 쓰여 있어 준(樽)에 참기름을 담아 올린다는 내용이다.

라. 현 상태

○ 수중발굴된 이후 묵서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세척이 실시된 상태 (수침보관 중)
○ 보물 제1784호는 몸통 중간의 將자 부분이 부러져 대나무 섬유로만 지지되고 있음

사진 1. 마도 2호선 죽찰(보물 제1784호) 앞면 현황

사진 2. 마도 2호선 죽찰(보물 제1784호) 뒷면 현황

사진 3. 마도 2호선 죽찰(보물
제1784호) 세부 현황

마. 현상변경 내용

○ 세척 및 치수안정화

- 대나무 섬유조직 강화처리 : 저농도 PEG(Poly Ethylene Glycol, 폴리에틸렌글리콜)법
- 수분 제거 : 진공동결건조

바. 보존처리 계획

○ 보존처리 전 상태 조사

- (수중) 발굴된 이후 묵서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세척 실시
  → 증류수에 침적하여 보관하고 있음

○ 추후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치수안정화(보존처리) 처리가 필요

○ 보존처리 기간 : 현상변경 허가 승인 후 1년 6개월 이내 예정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자문위원회 구성

안건번호 동산 2016-02-009

3. 국보 제303호 ‘승정원일기’ 보존처리 현상변경

가. 심의사항

국보 제303호 ‘승정원일기’의 자연열화로 인한 원형 손상부위를 보존처리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으로부터 국보 제303호 ‘승정원일기’의 현상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다. 문화재현황

○ **소유자(관리자)** :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수　　량** : 5책(冊)
○ **재　　질** : 저지(楮紙)
○ **제작연대** : 조선시대
○ **지 정 일** : 1999. 04. 09.
○ **문화재내용** :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의 왕명 출납기관이었던 승정원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취급하였던 제반문서들을 매일매일 기록한 것으로, 총 3,243책(冊)이 현존한다. 임진왜란과 이괄의 난 등으로 인해 인조(仁祖)이전의 일기는 모두 없어졌고, 그 이후인 인조 원년 계해(癸亥) (1623) 3월 12일부터 순종(純宗) 융희(隆熙) 4년(1910) 8월 29일까지 288년간의 일기만이 남아 있다.

라. 현 상태

○ 자연열화로 인한 원형 손상, 충해 및 습기로 인한 곰팡이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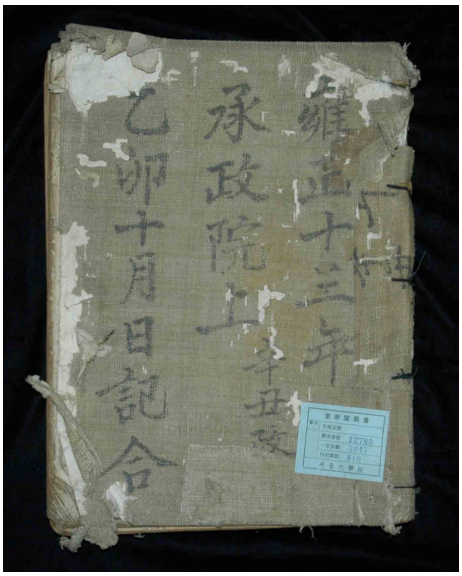

사진 1. 승정원 일기 현황(삼베표지 곤충 피해 모습)

마. 현상변경 내용

○ 표지 및 내부 크리닝

바. 보존처리 계획

○ 보존처리 전 상태 조사

- 손상 상태 관찰 및 처리 방안 결정
- 사진 촬영
- 조사 및 분석

조사 방법	조사 내용	기대 효과
사진촬영	표면 현미경	표면 관찰
	투과 촬영	섬유의 조성 확인
	c염색액 정색반응	섬유 형태 관찰 및 섬유 종류 판별
실측(종이)	크기, 두께, 무게	연구 자료로 활용
	평량, 밀도	도침 유무 판별
	색도	클리닝 전후 변화 파악
	산성도	〃
	발촉수 및 발끈 폭	연구 자료로 활용
XRF(무기물)	정성, 정량 분석	안료나 금속의 성분 파악

○ 재료 준비 :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유물의 수리복원에 적합한 전통재료를 준비한다.
○ 해체 : 전체 수리가 필요한 자료를 낱장으로 분리한다.
○ 안정화 처리
- 임시 표접 : 변형 및 추가 손상 방지
- 아교수용액 도포 : 안료의 박락 방지
- 섬유 부착 : 내지 표면의 섬유 흐트러짐 방지

○ 클리닝
- 건식 클리닝 : 부드러운 양모 붓과 떡지우개 사용
- 습식 클리닝
  · 물뿌리개 사용 : 지질, 서사재료가 안정적인 유물
  · 스프레이 사용 : 두께가 얇거나 지력이 약한 유물

○ 보강 처리
- 결손부 메움
- 부분 배접 : 지력이 약해진 부분은 얇은 닥지를 배접하여 균형을 맞춤

○ 표지 처리 및 제작
- 표지 보존처리 : 기존 표지의 배접지는 분리하여 따로 보관, 배접지에 원본 표지의 정보(문양 요철 등)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예외
- 표지 제작
  · 앞, 뒤가 모두 개장된 경우 : 같은 질의 모든 표지가 개장되어 원본의 형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의 표지를 보존처리 하여 재사용
  · 앞, 뒤의 재질과 문양이 상이한 경우 : 유물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쪽을 기준으로 다른 한쪽을 새롭게 제작
  · 앞, 뒤가 모두 결실된 경우 : 자문회의 결과에 따름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검 토 사 항

【검토사항】

Ⅰ.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6-02-010

1. 고려 수월관음보살도(高麗 水月觀音菩薩圖)

가. 검토사항

'고려 수월관음보살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고려 수월관음보살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4.1.14)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9.8)를 실시하고 2016년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16.2.4) 검토사항으로 부의, "취득 경위 관계 자료 보완"이라는 사유로 보류되었음

○ 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취득 경위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16.2.23)하였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관련자료(붙임 1)를 제출받았음('16.2.26)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고려 수월관음보살도(高麗 水月觀音菩薩圖)
○ 소유자(관리자): 성보문화재단(호림박물관)
○ 소 재 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2길53(미성동 1707)
○ 수　　량: 1폭
○ 규격(cm): 103.5×53.0
○ 재　　질: 견본채색
○ 제작연대: 고려후기(14세기)
○ 제 작 자: 미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ㅇ

특히 이 수월관음도는 베일의 당초원문, 치마의 귀갑문과 타원형의 연화문은 말 할 필요도 없고, 황토를 전면에 칠하고 바탕을 백색안료로 채워 넣는 치마 단의 채색법이야 말로 고려 수월관음도 전형의 표현과 기법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 생각한다.

이 그림은 당초원문, 소극적인 베일 마엽문의 표현 등에서 형식화 경향이 엿보여 제작 시기는 14세기 중반으로 짐작된다. 어찌되었든 이 그림은 전통 도상과 기법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는 아주 드문 고려 수월관음도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하여 보존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ㅇ

현존하는 고려불화의 수는 국·내외를 통틀어 160여점 정도로 그 수가 적고 대다수 해외에 유존하고 있다. 국내에 남아 있는 작품이 지극히 적다는 점에서 그 존재만으로도 고려불화의 가치는 지대하다. 비록 박락되고 손상된 부위가 수리되고 畵記를 남기고 있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흠잡을 데 없이 균형감 있게 묘사된 관음보살과 선재동자의 문답하는 극적인 구도와 형식, 수월관음도의 중요한 모티프를 이루는 청죽·바위·정병 등의 경물의 표현과 배치 등은 고려 후기 수월관음도상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려불화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된다.

이 작품은 굵고 가는 선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물 흐르듯 유려한 선묘를 보여주고, 다양하고 복잡·화려한 문양을 전신에 걸쳐 시문하였음에도 고귀한 품격을 느낄 수 있으며, 붉은색과 백색, 금색 등 고급스러운 색들이 상호 조화를 이루며 요란하지 않은 세련된 아름다움을 표출하고 있다. 이 작품은 고려시대 수준 높은 불교회화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ㅇ

이 수월관음도는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반측면관으로 투명한 베일을 걸친 채 물에 둘러싸인 암반 위에 오른발을 왼쪽 무릎에 올린 반가좌의 자세로 선재동자를 굽어보고 있는 전형적인 고려시대 도상을 따르고 있음. 이와 함께 오른손 옆쪽 암반 위에 버드나무 가지를 꽂은 정병과 광배 뒤쪽 대나무 등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의 특징이 잘 구현되어 있음.

따라서 이 그림은 고려시대 전형적인 수월관음도의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지정가치는 충분하다고 사료됨.

-근거기준

현재 국내외에 남아있는 고려불화는 약 160여 점. 그 중에 수월관음도가 무려 40여 점이나 될 정도로 많이 그려졌음. 그러나 국내에 있는 수월관음도는 약 3~4점정도로 매우 적은 수임.

국내에 있는 세 곳(소장처: 삼성미술관 리움,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우학문화재단)의 수월관음도는 모두 지정되었음(보물 926호, 1426호, 1286호). 이 수월관음도도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됨.

수리 및 복원을 거쳐 화면이 안정화되어 있음. 많은 부분에 발생된 안료박락 흔적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처리하여 원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 것임. 따라서 현재의 화면 상태는 양호하고, 수월관음도가 갖고 있는 특징적 요소들 또한 비교적 잘 드러나 있으므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예고 함.

조사보고서

□

○ 조사내용

이 그림은 관음보살이 바위 위에 약간 오른쪽을 향하여 반가좌하고, 오른손 앞쪽에는 정병, 화면을 향하여 왼쪽 아래에는 선재동자, 등 뒤 쪽에는 대나무가 묘사된, 고려불화 전형의 수월관음도상이다.

신체부분은 모두 금니金泥로 칠하고 윤곽선과 이목구비의 묘선을 엷은 먹선으로 표현하였다. 베일은 地文인 麻葉文을 백색안료로 그렸는데 박락 또는 소극적인 표현 때문인지 현재는 극히 일부에서 만 확인이 가능하다. 베일에는 직경 2.3센치 정도의 당초원문을 금니로 그려 넣었다. 치마는 전면에 朱를 칠하였고 그 위에 연잎과 연꽃이 좌우상하 대칭으로 구성 된 9개 정도의 타원형 무늬가 배치되어 있다. 치마의 바탕무늬는 귀갑문으로 윤곽선을 朱具로 표현하고 그 안에 백색 안료로 국화와 같은 꽃무늬를 그려 넣었다. 치마의 端은 황토를 전면에 칠하고 모란당초문의 윤곽과 세부를 금니선으로 나타내었으며, 바탕은 백색안료로 채워 넣었다. 선재동자는 약간 무릎을 굽히고 합장 한 채 관음보살을 올려다보는 듯 한 자세인데 신체이외의 윤곽선과 문양을 금니로 그렸으며 손톱과 발톱은 백색안료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이 그림은 대나무, 눈썹과 콧수염, 정병 등 안료가 떨어져 나간 부분이 많고 두광의 일부와 화면을 향하여 오른쪽 바위 부분 등에 보견을 하였고, 양 손으로 잡고 있는 염주 역시 후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존 고려 수월관음도의 대부분이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상당한 화면 손상과 그에 따른 수복 잡업을 거쳐 왔음을 염두에 두고 볼 때, 더구나 이 그림의 본존은 물론 선재동자의 형상이 매우 명료하고 수월관음도상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음을 고려 할 때 부분적인 안료의 박락과 보견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즉, 전체적으로 화면에 손상이 있어 아쉽기는 하지만 원래의 모습을 그다지 잃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

ㅇ 조사내용

이 작품은 2010년 10월 성보문화재재단에서 구입한 개인 소장자로 부터 수월관음보살도로, 현재 일본식 장황으로 되어 있다. 수월관음은 관음보살이 물에 비친 달을 보며 금강보석 위에 앉아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大方廣佛華嚴經』 入法戒品의 내용에 근거하며, 도설내용은 선재동자가 보타락가산 암굴에 계시는 관음보살을 찾아 보살도를 묻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대방광불화엄경』80권본 입법계품의 선재동자 남순여행 기록에는 관음보살이 상주하는 보타락가산의 정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선남자여 남방에 보달락가(補怛洛迦)산이 있는데 거기에 관자재라는 보살이 있다. 그대는 그를 찾아가 보살은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도를 닦는지를 물으라. 그리고 게송을 말하였다. 「바다 위에 산이 있고 성인 많으니 보배로 이루어져 매우 깨끗해 꽃과 과실나무들이 우거져 섰고 샘과 못과 시냇물이 갖추어 있는데 용맹하고 장부이신 관자재보살 중생을 이익하려 거기 계시니 너는 가서 모든 공덕 물어 보아라 그대에게 큰 방편을 일러 주리라.」 이때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절하고 한량없이 돌고 은근하게 앙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다.…문득 바라보니, 서쪽 골짜기에 시냇물이 굽이져서 흐르고 수목은 우거져 있으며 부드러운 향풀이 오른쪽으로 쓸려서 땅에 깔렸는데, 관자재보살이 금강석 위에서 가부하고 앉았고, 한량없는 보살들도 보석 위에 앉아서 공경하여 둘러 모셨으며, 관자재보살이 대자대비한 법을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든 중생을 거두어 주게 하고 계시었다 ….”[6] 라는 내용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 수월관음도의 도상적 근거로 화엄경 80권본에 ‘水月中’이라는 표현에 근거한다고 보기도 하는데, 이는 맑은 물이 있으면 달은 언제나 나타난다는 평등한 法性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물에 비친 달의 신체는 없다는 평등한 空사상을 담고

6) 번역은 동국대학교 한글대장경을 따름(http://abc.doungguk.edu/ebti/c2)

있다는 것이다.

이 그림은 측면관 한 관음보살이 보타락가산 금강바위 위에 반가좌로 앉아 菩薩道가 무엇인지를 청문하는 선재동자를 지긋이 내려다보는 모습이다. 청문하는 선재동자는 예의바르게 무릎을 반쯤 구부려 합장하고 관음보살을 우러러 보고 있는 모습이다. 관음보살상은 화면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로지르는 바위절벽을 대좌삼아 반가좌하였는데, 화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크게 표현하여 主尊으로서의 존격을 부각시켰다. 이에 비해 선재동자는 화면의 우측 한단에 지극히 작게 표현하여 두 주인광 사이의 무한한 거리감과 공간감을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구성 효과는 두 尊格 모두에게 시선이 집중되게끔 하는 효과를 성공적으로 거두고 있다.

관음보살은 고려 불화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원형의 두광과 함께 배후에 커다란 원광을 갖추고 있으며, 양감이 풍부한 중후하고 고귀한 모습이다. 목에는 두툼한 삼도의 윤곽이 분명하며, 가슴과 배에는 근육이 육감적으로 표현되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편안히 올려 염주를 쥐고 있다. 염주를 지물로 취하고 있는 수월관음도상은 일본 센오쿠하쿠코칸(泉屋博古館)의 수월관음도, 다이토쿠지(大德寺) 수월관음도, 단잔진자(談山神社) 수월관음도, 요주지(養壽寺) 수월관음도 등 몇 점 확인되지만, 이처럼 두 손으로 염주를 쥐고 있는 경우는 드문 사례이다. 선재동자는 귀엽고 통통한 아동의 모습이며, 얼굴과 피부에는 바림질하여 입체감을 주었다. 머리는 두 가닥으로 땋아 붉은색 띠로 묶었으며, 붉은색 천의와 주름이 잡혀 있는 바지를 입었고 허리에는 허리띠를 찼다.

머리에는 坐像의 化佛이 있는 보관을 썼고, 다시 보관에서부터 전신에 걸쳐 沙羅天衣를 걸쳤다. 사라천의에는 금니로 역동적인 唐草圓文과 흰색의 화문을 纖麗하게 시문하였다. 투명한 사라천의 속으로는 부드러운 관음보살의 금빛 속살이 은은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곳에서 표현된 사라천의와 문양은 고려 후기 수월관음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려불화의 특징이다. 흥미로운 점은 서산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상이나 서울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고려 후기 불상의 복장에서도 관음보살상이 착용한 사라천의같은 직물과 유사한 직물편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실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려불화를 통해 불화는 물론 고려의 직조기술 수준을 유추해 볼 수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가슴 좌우에는 화패장식을 맵시 있게 묶어 발아래까지 유려하게 늘어뜨렸으며, 목에는 낚시 바늘 같은 고리에 큼직한 타원형의 꽃무늬 장식과 3줄의 垂飾이 달려 있는 목걸이를 걸었다. 팔뚝에는 큼직한 완천을, 팔목에는 색 구슬 3개가 박혀 있는 넓은 띠 모양의 팔찌를 착용하였다. 이와 같은 장신구의 표현방식은 1310년 작 일본 가가미진자(鏡神社) 수월관음도를 비롯하여 고려 후기 보살상 등 불교미술

전반에 걸쳐 두루 나타나고 있다. 下衣는 고려 수월관음도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귀갑문을 시문한 붉은색 치마를 입었는데, 이곳에서의 특징은 귀갑문의 윤곽선을 바탕색 보다 몇 단계 짙은 붉은색으로 윤곽선을 그어 입체감을 주었고, 귀갑문의 바탕에는 다시 흰색으로 꽃무늬를 도장을 찍듯 쿡쿡 찍어 넣었다.

관음보살이 앉은 암반에서 우측으로 오솔길처럼 좁고 가파르게 연결된 바위 끝에는 수월관음의 상징과도 같은 버들가지를 꽂혀 있는 정병을 놓아 두었다. 정병은 긴 주구와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몸체를 가지고 있는데, 고려시대 정병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보살상의 등 뒤 모서리에는 거무스름한 바탕 위에 달빛에 비친 두 그루의 푸른 대나무를 그윽하게 그려 넣었다. 큰 암반 주변에는 작은 바위와 연꽃을 배치하고, 그곳에 사슴뿔 같이 瑞氣어린 화초를 그려 넣어 신령스러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

ㅇ 현　　상

수리 및 복원을 거쳐 화면이 안정화되어 있음. 많은 부분에 발생된 안료박락

흔적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처리하여 원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 것임.

ㅇ 내용 및 특징

고려 수월관음도의 내용은 『화엄경(華嚴經)』 「입법계품(入法界品)」에 근거하는데, 「입법계품」은 선재동자(善財童子)가 53인의 선지식(善知識)을 찾아 가는 과정을 담은 것임. 그 중에 28번째 방문한 곳이 관음보살이 살고 있는 보타락가산(補陀落迦山). 이처럼 선재동자가 깨달음을 찾아 보타락가산에 가서 관음보살을 만나는 장면이 고려 수월관음도의 주요 내용임. 이에 따라 고려 수월관음도의 도상은 관음이 천의를 걸치고 베일로 전신을 덮은 모습으로 약간 왼쪽(오른쪽)을 향하여 반가(半跏)한 자세로 바위 위에 앉아 있으며, 보관에는 화불(化佛), 등 뒤에는 대나무, 그리고 오른팔 옆쪽 바위 위에는 버드나무 가지가 꽂힌 정병이 있고 보살의 시선이 맞닿는 화면 아래에 선재동자가 표현되는 것이 특징적임.

안건번호 동산 2016-02-011

2.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金泉 葛項寺址 東·西 三層石塔 舍利莊嚴具)

가. 검토사항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사리장엄구'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 기관 업무협의(8.23)를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4.11.11)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대구박물관)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321(황금동 70)
○ 수　　량 : 사리기 4점, 준제다라니 1점
○ 규격(cm) : 동탑　청동사리호 전체높이 11.7, 최대폭 7.82, 구경 6.46, 저경 5.69
　　금동사리병 전체높이 9.1, 최대폭 4.60, 저경 2.6
　　서탑　청동사리호 전체높이 15.15, 최대폭 13.8, 구경 11.0, 저경 8.6
　　금동사리병 전체높이 8.3, 최대폭 4.66, 저경 2.73
○ 재　　질 : 금동, 청동
○ 제작연대 : 758년경(경덕왕 17)
○ 제 작 자 : 미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ㅇ

1916년에 갈항사 터의 동·서 삼층석탑을 경복궁으로 이건하던 중 발견되었다. 갈항사는 통일신라초 승전법사(勝詮法師)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절로 동탑(東塔)의 상층기단(上層基壇) 면석(面石)에 이 탑을 경덕왕(景德王) 17년(758) 언적법사(言寂法師)와 그의 두 누이가 함께 발원하여 건립한 사실이 적혀 있는데, 사리기도 탑의 건립 당시에 봉안된 것으로 생각된다.[7] 사리기는 동탑과 서탑 모두 동제 항아리 안에 금동병이 넣어진 상태로 기단 아래의 가공석에 마련된 사리공이 안치되어 있었다. 특히 동탑의 상층기단 면석에 천보(天寶) 17년(758)에 언적법사(言寂法師)가 그의 두 누이와 함께 발원하여 탑을 건립하였다는 기록이 새겨져 있는데, 이 사리기도 탑을 건립할 당시에 봉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리기는 통일신라 감은사 식의 전각형 사리기와 달리 호형의 외함 안에 정병과 유사한 금속제 병을 사리병으로 봉안한 독특한 형식의 사리기이다. 최근의 보존처리를 하면서 작은 크기의 금속제 병에서 준제진언(准提眞言) 다라니 1매가 발견되어 주목되었다.

특히 탑 바깥에 건립 년대를 기록하고 있어 여기에서 발견된 사리기 역시 동일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어 통일신라 사리기 연구의 귀중한 편년자료라는 점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o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사리기는 통일신라 758년에 경덕왕대의 명승 언적법사와 자매인 3인이 발원, 조성한 동서 탑의 사리공에서 1916년에 발견된 것이다. 동탑 탑신에는 이두가 섞인 조성기가 음각되어 있어 탑의 조성연대와 발원자, 사리기의 제작시기를 알려주고 있다.

이 사리기들은 제작시기가 분명할 뿐 아니라 발원자는 내물왕계인 원성왕의 친모와 외숙부, 이모인 외가였고, 당시 유행했던 造塔信仰뿐 아니라 공반된 준제다리니편은 밀교계 준제불모신앙의 유입을 전해주고 있어 통일신라 불교사 연구의 좋은 자료가 된다. 사리장엄은 통식대로 金銅材→靑銅材 순이며, 외호는 금속선으로 밀봉한 방식을 보여준다. 조형미가 뛰어난 금동사리병은 남북조 시기 북조계 정병인 광견형세장경병 형태를 따르고 있어 금속공예사적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갈항사지 동서탑 사리기는 통일신라 불교공예사, 불교사상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므로 보물로 지정, 시급한 보존처리를 한 후, 다양한 관점의 심도있는 연구가 요망된다. 지정 명칭은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사리기〉 또는 〈부여 왕흥사지 사리기 일괄〉(보물 제1767호)과 같이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사리기 일괄〉로 하는 것이 좋겠다.

o

7) 『佛舍利莊嚴』(국립중앙박물관, 1991), p.114.

이 사리장엄구는 1916년에 김천시 남면 오봉리에 소재하고 있는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에서 발견된 출토지가 분명히 밝혀져 있는 사리장엄구이다. 특히 동탑 기단부에 새겨진 조탑기에 의해 元聖王의 外叔인 言寂法師, 어머니인 照文皇太后 그리고 원성왕의 姨母 등 왕실 외척세력 3인의 發願에 의해 758년에 조성되었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리장엄구는 제작시기와 제작주체가 분명한 이 시기 사리장엄구 및 금속공예 연구에 절대적인 자료이다.

서탑에서 발견된 동제사리호는 뚜껑의 꼭지와 몸통의 두 귀를 銅線으로 연결하여 묶은 사리호로, 9세기 이후 뼈 항아리로 많이 사용된 연결고리유개호의 祖形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일부 결손이 있지만 현재까지도 사리호를 묶었던 청동 끈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어, 당시 이와 같은 유형의 사리장엄 차림새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사리병은 나팔형으로 벌어진 길고 아름다운 목과 세련되고 균형 잡힌 타원형의 몸매를 가졌는데, 이러한 병의 형태는 동시기 동아시아에서 유행한 국제적인 미감을 담아 낸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동탑의 사리병은 탑의 상륜처럼 죽절모양으로 주름 잡은 긴 목과 보주형의 꼭지, 그리고 타원형의 몸통 아래에 다섯 꽃잎의 아름다운 굽을 달아 신라인의 창의적인 미적 감각을 뚜렷하게 발휘하였다. 이를 통해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은 758년 신라 왕실에서 발원하여 제작한 당대 최고의 사리장엄구 중 하나이자 통일신라시대 금속공예를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예고 함.

조사보고서

□

○ 내용 및 특징

사리기는 바깥에 항아리 모습의 호형(壺形) 외함 안에 수병 형태의 내 사리병을 안치한 모습으로서 지금까지 삼국시대 이후 통일신라 8세기까지 사리를 넣은 방식은 대체로 유리제나 수정병으로 만들어져 왔는데, 이처럼 금속제 호 안에 금동 사리병을 넣는 경우는 처음으로 등장되는 예로서 주목된다.

청동 사리호는 두 점 모두 유사한 항아리 형태이지만 한 점은 구경이 넓고 조금 큰 편이며 다른 한 점은 그보다 폭이 좁고 특히 하부에 바깥으로 벌어진 높은

굽이 달렸다. 두 점 모두 뚜껑이 덮힌 형태로서 운두가 낮은 납작한 뚜껑 중앙에 구멍 뚫린 뉴가 솟아있고 이곳을 뚫어 호 몸체 양쪽에 연결된 금속제 손잡이를 달은 모습이다. 이 금속제 손잡이는 손상이 있거나 일부는 부러졌다.

또한 원래부터 금속병을 넣기 위해 뚫은 것인지 아니면 후대에 파손된 것인지 분명치 않지만 두 점 가운데 한점은 호 밑바닥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으며 사리병은 두점 모두 바닥에 구멍이 뚫린 상태이다.

금동 사리병 가운데 동탑의 것은 계란의 몸체와 목 부분에 7개의 돌대(突帶)가 둘려 있으며, 마개로 덮은 것이 아니라 뚜껑이 달려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몸체 아래로는 바깥으로 벌어진 굽이 달려있다. 사리호나 사리병의 이 같은 형태는 우리나라 고유의 기형이기보다는 중국 북방의 요소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서 양탑에 이처럼 사리기를 따로 봉안하는 경우는 이미 감은사지 사리기에서 시작된 양식이지만 동일한 형식이면서도 형태와 크기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서탑의 사리호도 청동 사리호 안에 금동사리병이 들어있는 형식이지만 몸체의 너비가 보다 크고 밑에 굽이 없는 점에서 구별된다. 서탑의 병은 동탑에 비해 조금 작은 크기로서, 목에 돌대가 없이 매끈하며 상부에도 뚜껑이 없이 밋밋하게 마감된 형식이다. 이러한 형식은 오히려 일본에 소장된 석류형수병(柘榴形水甁)과 유사한 점을 알 수 있다. 갈항사지 사리기처럼 유리제가 아닌 금동사리병(金銅舍利甁)이 안치되어 있는 금속병의 형태는 중국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북위(北魏) 때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러한 기형은 6세기 초반의 하북성 경현 봉마여묘(河北省景縣封魔如墓)에서 출토된 북위 정광(正光) 2년(521)의 자류형병(柘榴形甁)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금동사리병이 사리장엄구로 안치된 경우는 드물며, 일본의 경우 호류지 헌납보물(法隆寺 獻納寶物) 가운데 찾아볼 수 있다. 갈항사지 금제사리병은 호류지 헌납보물 중 당(唐)의 7~8세기로 편년되는 작품과 유사성 보인다. 일본에서는 이를 柘榴形水甁[8]이라고 명명하며 높이는 25.0cm 내외로서, 『法隆寺伽藍緣起幷流記資財帳』(747)과 『大安寺伽藍緣起幷流記資財帳』(747)을 통해 나라시대부터 사찰에서 공양구로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9]

이처럼 중국·한국·일본에서 동시대에 사용한 동일한 기형의 수병은 일반적으로 불교공예품의 성격을 갖지만 용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갈항사지에서처럼 석탑 내에 안치된 사리기의 특성상 크기가 작고 수병 자체의 용도가 아닌 장엄용의 사리구로 사용된 것에 비하여 일본은 사찰의 자재장(資財帳)에 적힌 소유물로서 불전(佛前)에서 공양구로 직접 사용된 것과 비교된다.

이 사리기는 출토지가 분명하면서도 동아시아 금속공예의 다양한 교류 양상을

8) 몸체의 형태를 통해 蕪形水甁으로 분류되는데 『大安寺伽藍緣起幷流記資財帳』(747)에 '柘榴甁'이라는 기재를 통해 일본미술사에서는 이와 같은 명칭을 따르고 있다.

9) 加島勝, 「柄香炉と水瓶」, 『日本の美術』540(至文堂, 2011), p.67.

밝혀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작 년대가 확실한 통일신라의 금속공예품의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

ㅇ 참고문헌

『국립대구박물관』, 2011.
『불사리장엄』, 국립중앙박물관, 1991년.

《삽도》 갈항사지 사리기와 法隆寺 獻納寶物 柘榴形水瓶 비교

<갈항사지 서탑 출토 金銅舍利甁>, 통일신라 758년, 높이 8.1cm, 국립경주박물관	<柘榴形水瓶>, 당7~8세기, 높이 25.1cm, 둘레 12.8cm, 호류지 헌납보물 246호, 東京國立博物館	<柘榴形水瓶>, 나라시대 8세기, 높이 23.4cm, 둘레 12.7cm, 호류지 헌납보물 244호, 東京國立博物館

□

ㅇ 현 상

국립대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葛項寺址 동서 삼층석탑 출토 사리기는 원래 경북 金陵郡(현 김천) 남면 오봉리에 있던 갈항사지 동, 서탑이 도굴범에 의해 倒壞되자 1916년에 경복궁으로 이건할 때 탑 基壇 아래에서 발견된 것이다.

갈항사는 통일신라 渡唐 求法僧 勝詮法師가 중국 화엄종 제2祖인 法藏 賢首大師의 문하에서 화엄을 배우고 692년에 귀국하여 창건한 화엄종 사찰이다. 승전은 義湘大師의 10대 제자 중 하나로 귀국 시 법장이 의상에게 보내는『探玄記』,

『敎分記』 등 법장의 저술과 그 내용을 적은 書信, 선물(西國 軍持)을 가져와 전한 승려이다.[10]

8세기 통일신라 석탑양식을 보여주는 동서 삼층석탑은 옥개석에 수십 개의 못 구멍이 있어 풍경 또는 판형 금속 장식물을 달았던 화려한 석탑이었을 것이라는

10)『三國遺事』卷 第四,「義解第五」,〈勝詮髑髏〉條 참조.

점과 탑신에 〈塔造成記〉가 음각되어 있어 1962년 12월 20일에 국보 제99호로 지정되어 있다.(도1) 즉 동탑 상층 기단 면석에 약 6cm 크기의 행서체로 758년(景德王 17)에 元聖王의 외가인 言寂법사 삼남매가 탑을 조성했다는 명문이 새겨져 있으나, 명문은 원성왕 이후에 새긴 것이다. 이 명문은 신라 금석학· 서지학· 吏讀文 등의 연구의 중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11]

석탑을 이전할 때, 양 쪽 탑의 기단 아래에 사방 75cm, 두께 33cm 크기의 자연석이 있었고, 그 아래에 같은 크기의 加工石材가 놓여있었는데, 그 상면 중앙에 마련된 사리공 안에서 사리장치가 수습되었다고 한다. 동탑에서는 청동사리호, 금동사리병, 紙片, 陶片, 灰 등이 발견되었고, 서탑에서도 청동사리호, 금동사리병, 紙片이 발견되었다.

ㅇ 내용 및 특징

갈항사지 동서탑에서 발견된 사리기는 각각 뚜껑이 있는 청동사리외호 안에 금동사리병이 內藏되었었고, 서탑 출토 금동사리병에 准提陀羅尼片이 나왔다고 한다.[12](도2) 이 사리기 일괄은 서탑 출토 청동사리호 외에 3점은 저부가 뚫려있는 상태이다.(도3) 사리기 일괄의 제작년대를 밝혀주는 동탑 상층 기단에 새겨진 조성기는 다음과 같다.[13]

<명문>
두 탑은 천보 17년 무술에 세우시니라(二塔天寶十七年戊戌中立在之)」
남자형제와 두 여자형제 모두 셋이 업으로 이루시니라(娚姉妹三人業以成在之)」
남자형제는 영묘사의 언적법사이며(娚者零妙寺言寂法師在旀)」
큰누이는 조문황태후님이시며(姉者照文皇太后君旀在旀)」
작은누이는 경신태왕이시니라.(妹者敬信太王旀在也)」

천보 17년인 경덕왕 17년(758)에 경덕왕대의 名僧인 영묘사 언적법사와 2명의 여형제가 발원하여 조성했는데, 큰 누이 조문황태후는 元聖王(785~799)의 생모 박씨로 아들이 즉위한 이후 책봉된 이름이고, 작은 누이 이름에 보이는 경신은 원성왕이다. 金敬信은 武烈王系가 아닌 奈勿王系로 처음 왕이 된 인물이다. 즉 元聖王의 외가인 박씨 3남매가 석탑을 세웠으나, 원성왕 모친의 추봉 칭호가 기록되어 있는 점, 원성왕의 시호가 아닌 諱가 써진 점으로 보아 조성기는 경덕왕대보다 30년쯤 후인 원성왕의 재위 기간에 後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갈항사지 동서탑 출토 사리기 일괄은 사리병을 정병의 형태로 제작했다는 점

11) 탁본된 명문은 성균관대학에 보존되어 있다.
12) 일반적으로 사리병 안에 사리가 봉안되었을 것이나 수습 시 사리에 대한 언급은 없고, 紙片은 양쪽에서 다 나왔다고 하므로 동탑 출토 사리병 안에도 준제다라니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13) 원문과 해석은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http://gsm.nricp.go.kr/)에 의함.

과 준제다라니가 함께 봉안된 점에서 주목된다. 준제다라니는 밀교계인 준제불모 신앙에 의한 것으로 准提神呪를 념송하면 능히 일체죄업을 소멸하고 온갖 善根 공덕을 성취한다는 의미이다. 所依경전은 당대에 漢譯된 金剛智(669~741) 역『佛說七俱胝佛母准提大明陀羅尼經』, 不空(705~774) 역『七俱胝佛母所說准提陀羅尼經』, 地婆訶羅(7세기, 武周) 역『佛說七俱胝佛母心大准提陀羅尼經』이다. 인도 출신 傳法僧들에 의해 당 8세기 전반에 간행된 밀교계 경전이 빠르게 신라에 전해서 갈항사 탑에 진언다라니가 봉안된 점은 통일신라 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도4)

정병 형태로 사리병을 만든 예는 이보다 앞선 7세기에 이미 출현한 바 있다. 舊 김동현 소장 상아제사리병으로 경남 동부 지역에서 7세기 작인 금동반가사유상(보물 643호, 1978.12.7 지정)과 함께 출토되었다고 전해진다.(도5) 이 상아제사리병은 어깨에 流(귀때)가 없는 軍持Ⅱ식인 吉字形 정병으로 재료로 보아 동남아 수입산으로 추정된다.

갈항사지 금동사리병들은 중국 남북조시기의 정병의 한 유형으로 북조에서 유행했던 廣肩形細長頸甁이다. 북위 封摩奴墓(484) 출토 청동광견형세장경병이나 북제 范粹墓(575) 출토 백자녹채광견형세장경병이 대표적이며,(도6) 백제에도 전해져 7세기작인 전남출토 녹유병이 이 유형을 보이고 있다.(도7) 이 유형은 통일신라시대에도 유행하여 금동은입사병이나 안압지 출토 토기인화문병에서도 확인된다.(도8) [삽도1 참조]

삽도 1. 삼국~통일신라 광견형세장경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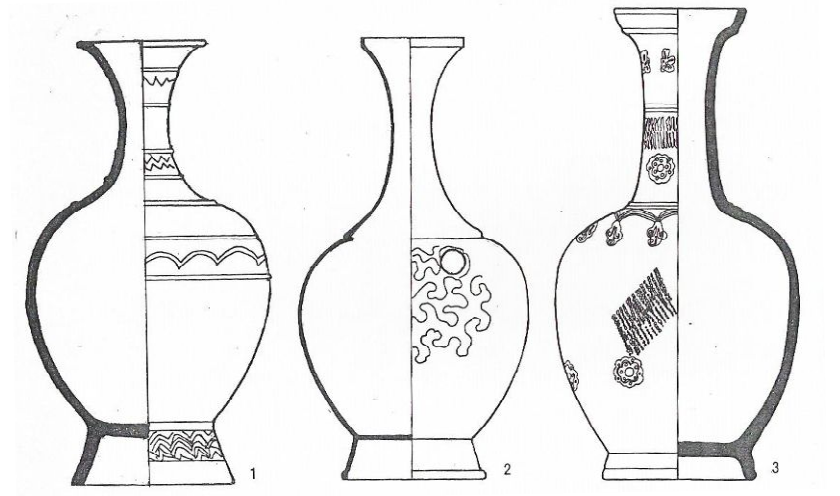

1. 녹유광견형세장경병, 7세기, 전 남원출토
2. 금동은입사병, 8세기
3. 토기인화문병, 8~9세기, 안압지 출토

갈항사지 동탑 출토 금동사리병은 가는 목에 팽창감 있는 몸체, 五菱形 굽을 보이는 병신에 뚜껑이 덮였으나, 저부는 원래부터 없는 듯하고, 뚜껑은 열리지 않

는다. 서탑 출토 금동사리병은 동탑 사리병과 같은 유형이지만 뚜껑에 꼭지가 없고 편평하며 몸체는 저부를 향해 완만하게 내려오는 외형선을 보이고 있어 팽창감이 덜한 편이다. 저부도 동탑 사리병처럼 뚫려있는데 준제다라니가 들어 있었다. 견부에는 횡으로 금이 갔으며 굽의 일부분도 떨어져 나갔다.(도9)

통일신라 병으로 가장 아름다운 조형미를 보이는 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동탑출토 금동사리병은 세장한 竹節形 경부에 마디선마다 [≒≒≒≒]식으로 상하 點文을 시문했다. 견부와 연결된 부분에는 四花形 구멍이 나있는데 단면을 보면 파손된 것이 아니라 제작 시부터 보석 嵌裝用으로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도10) 상하 점문은 서탑 출토 금동사리병의 목과 견부의 연결부분에도 시문되었는데, 이 기법은 처음 등장한 것이다. 각이 진 선의 상하에 간격이 일정하게 점을 찍은 수법은 마치 족집게 모양처럼 탄력 있는 2개의 뾰죽한 정으로 선을 찝듯이 찍어 나간 흔적이라 생각된다.[14](도11) 오화형 굽과 원형굽을 보이는 2개의 금동사리병은 특이하게 처음부터 저부가 뚫린 것으로 추정되며,(도12, 13) 동탑출토 금동사리병의 굽 접지면에는 살짝 뭔가 덧붙은 듯한 원형 흔적이 있는데, 미세하지만 일률적인 밀집사선형(▒)이어서 혹시 견직물을 오려서 접지면에 붙여 저부를 막은 것이 마모된 흔적이 아닐까 추정된다.(도14)

이러한 사리병들을 내장한 청동사리외호는 전체적으로 표면이 검푸른 빛을 띠고 있으며 청녹이 많이 슬어 있다. 크기는 2점이 확연히 다른데, 동탑 청동사리외호는 높이 11.7cm, 저경 5.69cm 규모인데 비해 서탑 청동사리외호는 높이 15.15cm, 저경 8.6cm 크기이다. 동탑 청동사리외호는 견부가 그다지 넓지 않은 몸체에 굽이 달려있고 뚜껑을 갖추고 있다. 뚜껑은 斜面이 한 단 있고 중앙에 꼭지가 있어 이 꼭지와 구연부를 철선으로 보이는 굵은 선으로 감아 密封했다.(도15) 저부는 단면을 보면 원래 있었으나 파손되어 바닥이 뚫린 상태이다. 서탑 출토 청동사리외호는 굽 없이 평편한 저부의 광견형 항아리 모양으로 견부에 작은 兩耳가 있으며, 납작한 뚜껑이 덮인 모양이다. 뚜껑의 꼭지는 고리형이어서 이 고리와 견부의 양이에 굵은 선으로 연결하여 밀봉하였고 현재는 선이 삭아서 끊어진 상태이다. 또한 한쪽 고리 옆에 알 수 없는 불규칙한 구멍이 뚫려있는 상태이다.(도16)

갈항사지 동서탑 사리기의 제작기법은 주조로 성형한 후 정으로 상하 점문을 시문하고 표면에 수은도금을 한 것이다.

14) 이 문양에 대해 어자문을 찍는 방울정을 2개로 갈라서 찍은 것이라는 설이 있으나 방울정을 가르면 반원이 되어 비늘정으로 찍은 문양처럼 된다.

[도판]

도1. 갈항사지 동서탑, 통일신라 758년, 동탑 높이 4.3m, 서탑 높이 4m, 국보 제99호, 국립중앙박물관

도2. 갈항사지 동서탑 출토 사리기(좌: 동탑출토 금동사리병과 청동사리호, 우: 서탑출토 금동사리병과 청동사리호)

도3. 동서탑 출토 금동사리기의 저부(좌→우: 동탑 금동사리병, 서탑 금동사리병, 동탑 청동사리호, 서탑 청동사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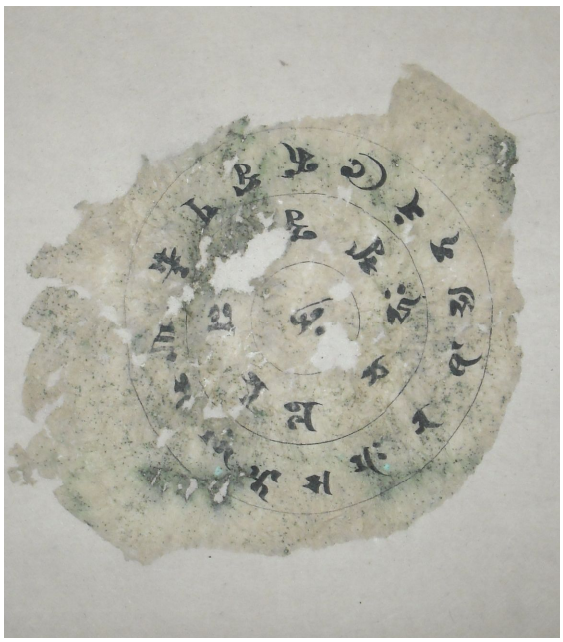

도4. 准提陀羅尼 片, 서탑 출토 금동사리병 內 발견

도5. 상아제사리병, 신라 7세기, 김동현 수집, 고 7.6cm, 저경 2.5cm, 호암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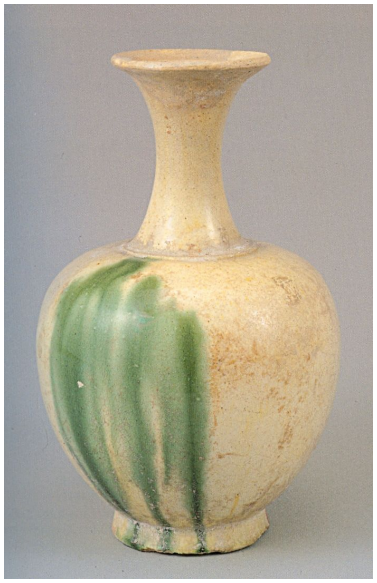

도6. 백자녹채광견형세장경병, 北齊 范粹墓(575) 출토, 중국 하남성 安陽

도7.녹유광견형세장경병, 7세기, 전 남원 출토

도8. 금동은입사병, 통일신라 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도9. 갈항사지 동서탑 출토 금동사리병(좌: 동탑, 우: 서탑), 통일신라 758년, 국립대구박물관

도10. 동탑 출토 금동사리병의 四花形 구멍(보석 嵌裝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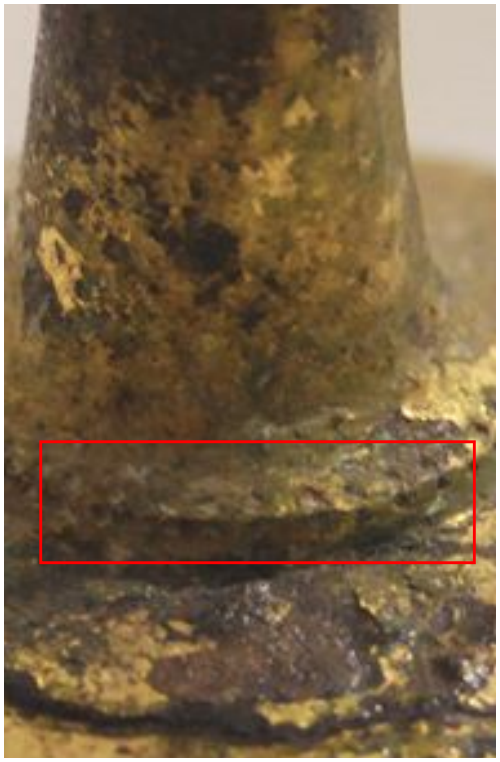

도11. 서탑 출토 금동사리병의 견부 장식수법(上下 點文)

도12. 동탑출토 금동사리병의 五菱形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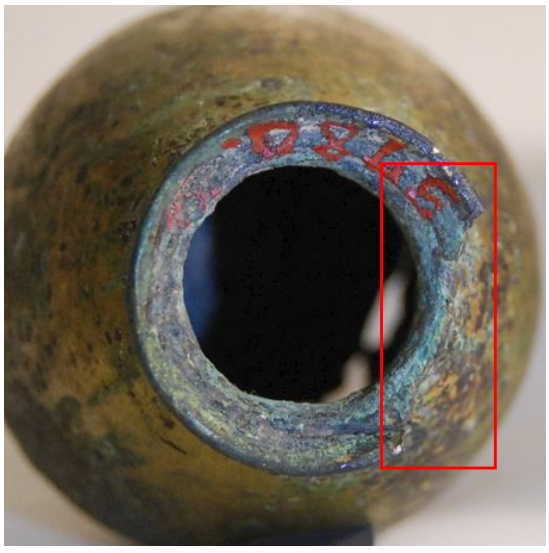

도13. 서탑 출토 금동사리병의 원형굽(缺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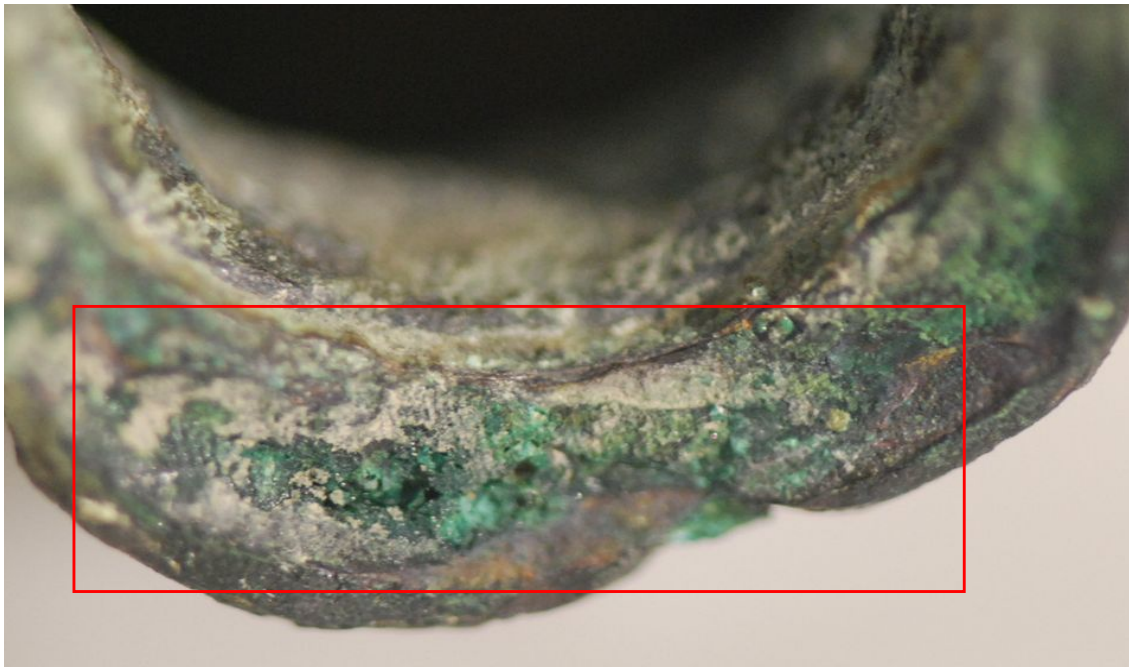

도14. 동탑 출토 금동사리병의 굽 표면의 밀집사선형(▒) 흔적

도15. 청동사리호, 동탑 출토

도16. 청동사리호, 서탑 출토(고정체인 끊어진 흔적, 불규칙한 구멍)

□

ㅇ 조사내용

지정대상 유물이 발견된 갈항사는 통일신라 초 勝詮法師가 창건하였다고 전하는 사찰이다. 『三國遺事』 卷第4 義解 第5 勝詮髑髏條에 따르면, 승전법사가 당나라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 義湘에게 法藏의 편지와 그의 저술 『探玄記』 20권(2권 未成), 『敎分記』 3권 등 7종을 전달했다는 내용과 상주 영내의 개령군 경계에 절을 짓고 돌 해골을 관속으로 삼아 『華嚴經』을 개강했다는 내용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9 開靈縣 佛宇條에 “葛項寺在金烏山西新羅高僧勝詮刱此寺…”라고 있어, 이 책이 편찬되던 1530년경까지는 廢寺되지 않고 法燈을 이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799년에 간행된 『梵宇攷』에는 “廢寺”되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아마도 임진왜란 이후 폐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寺址 일원은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758년경의 석조여래좌상(보물 제245호)과 통일신라 후기의 석조비로자나불상 등이 남아 있다. 특히 1916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경복궁으로 移建된 두 기의 석탑(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며, 이 탑을 이건하는 과정에서 조성 당시에 납입된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다. 석탑의 이건은 1916년 2월 12월 도굴범에 의해 탑이 도괴됨에 따라 보존관리 차원에서 그 해 6월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졌다.[15]

동·서탑의 사리장엄구는 모두 기단 밑의 가공석에 마련된 사리공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모두 銅壺 안에 金銅甁을 內舍利로 봉안하였다고 한다.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이 1916년 6월 경북궁 내로 옮겨지게 된 이유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大正5-8年 古跡調査關契綴」과 「大正6-10년 古跡補修工事施行の件」의 ‘葛項寺東塔及西塔址’에는 대정 5년(1916) 2월 탑이 도괴되어 그 해 6월에 박물관으로 옮겼다고 기록하고 있다.

「大正5-8년 古跡調査關契綴」의 ‘葛項寺址遺存ノ古石塔及塔出土物解說’의 기록에는 탑이 옮겨진 경위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확인된 사리공 및 사리장엄구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탑을 옮기던 중 기단의 저부에서 方 2척 5촌, 厚 1尺의 자연석이 나왔으며, 그 아래에 같은 寸尺의 가공된 석재가 있고 상면 중앙이 뚫려 진흙으로 채워져 있었다고 한다. 그 안에는 청동기와 陶器 파편이 확인되었는데, 동탑 출토 청동기는 口徑 1寸 8分, 低徑 1寸 8分, 高 3寸 8分으로 뚜껑이 달려 있고, 그 내부에는 높이 2寸8分의 鍍金 靑銅甁과 부패된 종이 편이 남아 있으며, 서탑 출토 청동기는 口徑 3寸 2分, 底徑 3寸, 高 4寸 8分으로 뚜껑이 달려 있고, 역시 내부에는 鍍金 靑銅甁과 부패된 종이가 남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16] 이 기록 외 大正 5년(1916) 8월에 발간된 『朝鮮彙報』에 수록된 小田幹治郎의 「葛項寺の塔」에는 탑에 기록된 명문의 분석과

15) 임재완, 「葛項寺址 東·西 三層石塔에 대한 考察」, 『東岳美術史學』 17(동악미술사학회, 2015), pp.654-655.
16) 임재완, 「앞의 글」, 『東岳美術史學』 17(동악미술사학회, 2015), pp.654-655.

사리장엄구의 출토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청동사리호에서 발견된 지편은 최근 보존처리결과 准提陀羅尼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陶片은 최근의 연구에서 금동사리호를 담았던 인화문토기로 밝혀졌다.[17] 이를 통해 갈항사지 석탑 사리장엄구는 석함을 포함하면, 인화문토기-청동사리호-금동사리병의 순으로 4겹 차림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리장엄구의 제작시기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동탑의 기단부에 새겨져 있는 '造塔記'이다.

二塔天寶十七年戊戌中立在之
娚姉妹三人業以成在之
娚者零妙寺言寂法師在旀
姉者 照文皇太后君妳在旀
妹者 敬信太王妳在也

위 기록에 따르면, 이 두 탑은 모두 天寶 17年 戊戌에 경신대왕의 외숙인 언적법사와 그의 어머님인 繼烏夫人朴氏(照文皇太后 追封), 그리고 그의 이모로 생각되는 분 등 세 형제가 조성한 것이다. 영묘사 언적법사는 신라 경덕왕 때에 명승으로 慶州 零妙寺(일명 靈廟寺라고도 한다)의 住持였고, 갈항사를 창건한 승전법사의 법맥을 계승한 승려가 아닌가 한다. 다음으로 조문황태후는 원성왕의 生母朴氏를 가리키는 것으로써 원성왕 즉위 후 추봉되어 照文太后라고 칭하였다는 것이 『三國史記』에 보인다. 다음으로 敬信太王은 원성왕 生時의 이름으로, 이곳에서 원성왕의 시호를 적지 않고 生時의 이름을 적은 점은 이 기록이 조성 당시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원성왕의 즉위 이후에 새겼음을 말하는 것이다.[18] 따라서 이 명문은 탑의 조성(758년)으로부터 원성왕의 재위기간(785-798) 사이인 약 27년 내지 40년 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17) 高正龍, 「葛項寺石塔と舍利容器」, 『조선고대연구』 2(2000).
18) 小田幹治郎, 「葛項寺の塔」, 『朝鮮彙報』, 1916.8.

그림 1김천 갈항사지 동·서삼층석탑, 국보 제99호,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2 1916년경 전경(『朝鮮彙報』 8에서 전재)

그림 3 동탑 기단 조탑기

그림 4 동탑 기단 조탑기 탁본(『朝鮮彙報』 8에서 전재)

그림 5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립대구박물관 제공

1) 동탑사리기

① 청동사리호

동탑 청동사리호는 뚜껑과 몸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탑의 청동사리호에 비해 어깨가 좁고 몸통이 길며 밖으로 벌어진 굽을 가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세장한 형태이다. 뚜껑의 중앙에는 보주형 꼭지가 달려 있으며, 구연부으로 이어지는 지점에 부드럽게 굴곡진 단을 만들었으며, 구연부는 개신에서 거의 90°로 꺾여서 직립하였다. 항아리의 목은 직립하여 뚜껑과 꼭 들어맞게 제작하였으며, 청동 끈으로 뚜껑의 꼭지와 항아리의 목을 結縛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하였다. 특히 꼭지와 목의 오목한 홈은 별도의 고리를 부착하기 않았기 때문에 뚜껑과 호를 단단하게 결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된 장치로 볼 수 있다. 지금도 뚜껑과 몸통의 목 부분에는 이를 단단히 묶었던 청동끈이 일부 구간에 걸쳐 남아 있다. 몸통은 어깨부위가 가장 넓고 底部로 내려가면서 조금씩 체감율을 줄여 나갔지만, 체감율이 그다지 크지 않아 전체적으로 세장한 항아리 형태를 띤다. 몸통의 지름이 가장 넓은 어깨 부분에는 얕고 두꺼운 돌기선을 돌려 포인트를 주었고, 바닥에는 높이 1.3cm, 지름 5.69cm의 밖으로 벌어진 굽을 달았다. 전반적인 형태는 766년에 제작된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와 흡사하다. 이 보다 뒤인 846년에 제작된 포항 법광사지 청동사리호는 짧은 동체를 가진 단동형으로, 시기가 내려 갈수록 점차 세장한 형태에서 볼륨감이 있는 단구적인 형태로 변모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

그림63 갈항사지 청동사리호(758년)

그림64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76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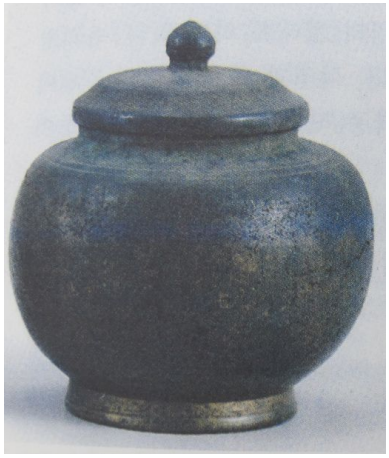

그림 65 법광사지 청동사리호(846년)

② 금동사리병

금동제 병으로 높이가 9.1cm, 최대 폭이 4.06cm 소형 사리병이다. 타원형의 동체에 목은 나팔모양으로 길게 벌어진 형태이다. 긴 목에는 9단의 죽절모양의 융기선대를 돌렸고, 뚜껑의 윗면에도 2단의 융기선대를 중첩하고 보주형 꼭지로 마감하였다. 뚜껑은 여닫을 수 없도록 몸통과 일체형으로 제작되었다. 목에 둘러진 여러 겹의 융기선대는 마치 석탑 相輪의 寶輪을 연상시키는데, 이는 진신사리를 봉안하는 사리병의 상징성에 잘 부합한다. 몸통은 부분에서 배부분으로 내려가면서 둥글게 몸통을 부풀렸다가 다시 굽으로 내려가면서 오므라들어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힌 모습이다. 몸통의 밑면에는 꽃잎모양의 굽을 달았는데, 마치 다섯 잎의 가진 꽃이 활짝 핀 모습이어서 죽절나팔형의 목과 함께 아름다운 조형성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감각적이고 세련된 모습을 통해 수준 높은 통일신라 금속공예의 기술을 엿 볼 수 있다. 밑면은 뚫려 있는데, 아마도 아래쪽으로 佛舍利 등 의식물을 납입하고 종이나 직물 등으로 막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와 같은 사리병은 唐代의 中國 西安 慶山寺 地宮 정병이나 日本 法隆寺 獻納 寶物 가운데 羅良時代의 정병에서 볼 수 있듯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행했던 병의 형태이다. 하지만 목부분을 탑의 상륜부처럼 죽절로 표현 한 예는 좀처럼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19) 韓政鎬, 「統一新羅 佛舍利莊嚴 硏究」(東亞大學校 大學院 考古美術史學科 博士學位論文, 2007), pp.135-137.

그림 66 갈항사지 동삼층석탑 사리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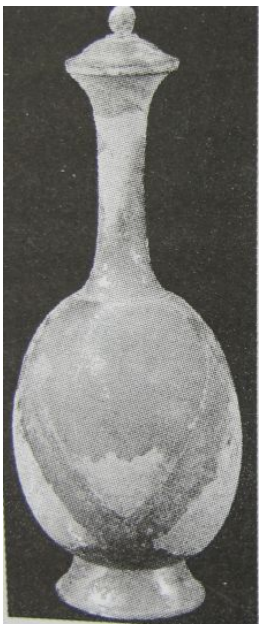

그림 67 西安 慶山寺 地宮 출토 정병, 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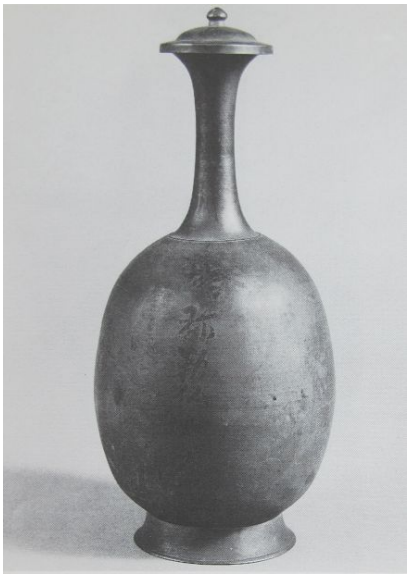

그림 68 청동정병, 법륭사헌납보물, 奈良時代((710-784)

2) 서탑출토 사리장엄구

① 청동사리호

서탑출토 청동사리호는 뚜껑과 몸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탑출토와 청동사리호와 달리 뚜껑과 몸통에 방향을 달리하여 半호형의 고리가 부착되어 있고, 동사로 이들 고리를 연결하여 결박하였다. 뚜껑은 접시를 엎은 모양으로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구연부와 만나는 지점에 얕은 돌대를 돌려 턱을 이루게 하였다. 뚜껑과 몸통이 만나는 어깨 부분에는 대칭되는 2지점에 반호형 고리를 뚜껑 고리의 방향과 어긋나게 내어 부착하였고, 이들 세 지점을 연결하여 결박한 청동 끈이 일부 구간에 걸쳐 남아 있다. 어깨 고리의 바로에는 융기선을 돌려 턱을 지게 하였다. 호는 어깨부분의 폭이 가장 넓으며 저부로 내려 가면서 점차 체감율을 줄여 나갔으며, 굽은 별도로 만들지 않고 평저형으로 되어 있다. 동탑에서 출토된 사리호보다 배가 불러 볼륨감이 있고 단구형이다. 특히 서탑의 동제사리호는 9세기 이후에 제작된 '토제 연결고리 유개호'의 조형이 되는 형식으로, 토제 연결고리 유개호 연구에 중요한 지표와 기준을 제공한다. [20]

20) 홍보식, 「통일신라 연결고리유개호의 발생과 전개」, 『韓國上古史學報』 50(한국상고사학회, 2005.11), pp.24-52 참조.

그림 69 서탑출토 청동사리호

그림 70 서탑출토 금동사리병

② 금동사리병

이 금동사리병은 동탑출토 사리병과 전체적으로 유사하나 동탑과 달리 목에는 죽절모양의 돌대가 두르지 않았으며, 뚜껑도 꼭지가 없이 윗면이 편평하고 전체적인 형태는 바둑돌 모양으로 되어 있다. 병의 목은 가운데 부분이 좁고 상하로 가면서 나팔모양으로 벌어진 형태이다. 뚜껑과 몸통은 일체형으로 제작되었고, 원래부터 개폐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몸통은 어깨부분이 넓은 타원형으로, 어깨부분에 크게 균열이 나 있다. 목과 몸통에는 아직도 찬연했던 금빛이 분명하게 확인되며, 표면은 별다른 장식 없이 민무늬의 깔끔한 형태이다. 밑면에는 45°로 외반한 굽을 달았으며, 현재 1/3가량 파손되었다. 바닥은 뚫려 있는데, 뚜껑이 막힌 일체형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곳을 통해 사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식물을 납입하고 종이나 직물 등으로 봉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태의 병은 중국의 唐代의 정병이나 일본 나라시대의 법륭사 헌납 보물 등에서 확인되는 등, 이 시기 유행한 甁의 종류 중 하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갈항사지 사리호는 초기 열반경전류에서 살펴 볼 수 있는 甕과 甕의 모습 혹은 변형된 모습으로 추정되며[21], 일찍부터 동아시아 사리기의 기형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항아리형 사리기의 이른 작례는 부여 왕흥사지 은제사리호와 익산 미륵사지 서탑의 금동 사리호 등 백제시대의 유품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있으며, 김천 갈항사지 사리호는 통일신라시대 항아리형 사리기를 대표한다. 갈항사지 사리호와 유사한 사례로는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가 있다.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는 766년의 기년명이 있는 것으로 갈항사지 석탑 동제 사리호와 재질

21) 서진시대 백법조에 의해 한역된 『불반니경』, 동진시대 번역의 『반니원경』, 동진시대 법현이 한역한 『대반열반경』에서는 공통적으로 사리를 금으로 만든 甕과 甕에 넣어 床(金床, 輿床, 寶輿 등) 위에 안치하였고 이에 상은 다시 장막 혹은 누각 및 전각 등에 봉안하여 공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韓政鎬, 「統一新羅 佛舍利莊嚴 硏究」(동아대학교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12), p.19.

면에서 차이점만 있을 뿐, 전체적인 모습에서 동시기의 시대적 특징을 담고 있다. 이와 달리 846년에 건립된 법광사 삼층석탑의 청동사리호나 민애대왕 사리호 등 9세기에 제작된 사리호는 8세기에 제작된 사리호에 비해 어깨는 좁고 배가 둥글게 부풀어 전체적으로 짧은 동체를 가진 형태인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동체가 길고 세장한 기형에서 점차 짧고 통통한 기형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안건번호 동산 2016-02-012

3. 서울 청진1구 출토 백자항아리
(서울 淸進1區 出土 白磁壺)

가. 검토사항

'서울 청진1구 출토 백자항아리'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4년「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14.5.15),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됨

○ 관계전문가 회의('15.2.5)를 통해 지정조사 추진 대상으로 검토된 '종로 청진1구 출토 백자항아리'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조사('15.7.9)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서울 청진1구 출토 백자항아리(서울 淸進1區 出土 白磁壺)

○ 소유자(관리자): 국유(서울역사박물관)

○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 수　　량: 3점

○ 규격(cm): 백자항아리 000648-높이 35.5, 입지름 16 바닥지름 15.2
백자항아리 000649-높이 35.5 입지름 16.9 바닥지름 16
백자항아리 000650-높이 28 입지름 14 바닥지름 13.3

○ 재　　질: 도토(陶土)

○ 형　　식: 백자 호

○ 제작연대: 15세기~16세기

라. 조사자 검토 의견

ㅇ

이 백자는 2009년 종로구청진동 235-1 일원 피맛골에서 일괄 출토된 순백자 항아리 3점이다. 15~16세기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관요산 양질 백자는 이 시기 이후 제작품보다 남아있는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기본적으로 가치가 높은데, 이 항아리는 만듦새가 좋고 무엇보다 출토지가 명확하여 주목된다.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하여 운종가(雲從街)라 불리우던 오늘날의 종로 청진지구에 대한 발굴 결과는, 조선 초 도시의 원형과 도로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도자 유물을 대거 드러냈다. 이 백자호 3점은 청진동 발굴의 대표적인 출토품이다.

조선백자 항아리는 접시·대접·병 등과 함께 조선시대 백자 중에서 많이 만들어진 그릇의 하나로, 전 시기를 통해 가장 중심적인 기종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백자 항아리는 외형상 몸체의 무게중심이 어깨 부분에 있고 비교적 장신(長身)인 입호(立壺)와 무게중심이 몸체 중앙에 있어 둥글게 보이는 원호(圓壺)로 크게 나뉘는데, 청진동에서 출토된 항아리 3점은 조선 전기 항아리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항아리의 주둥이는 조선 초기에 나타나는 안쪽으로 비스듬히 서거나 밖으로 말린 두 가지 형태 중에 후자에 해당하며, 뚜껑은 함께 발견되지 않았으나 덮개처럼 씌우는 원반형의 뚜껑이었을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중구 남대문로 2가에서 발견된 양질의 백자호 2점이 소장되어 있는데, 입호(신수2587) 1점과 원호(신수2586) 1점이 그것이다. 이들은 함께 발견된 대접·병 등에 비해 품질이 우수해서 주목된다. 그 중 입호는 높이 36.8㎝로 청진동 출토 항아리 보다 크나, 청진동 백자호 3점의 경우 출토지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에 비해 그 가치가 탁월하다 할 수 있다.

조선 초기에 제작된 백자로 국가지정문화재는 '천天' '지地' '현玄' '황黃'명 백자대접(국보 제286호 / 삼성미술관), 백자병(보물 제1054호 / 국립중앙박물관), 백자주자(국보 제281호 / 호림박물관) 등이 대표적이다. 뚜껑이 있는 백자호 2점 일괄품(국보 제261호 / 삼성미술관)이 있으나 높이가 각각 34.0㎝, 12.5㎝로 청진동 출토품보다 작고 몸체의 양감과 유색도 차이가 있다.

조선 초기 순백자 항아리의 희소성이나 작품의 완성도와 완전성, 출토지가 명확한 발굴품이라는 특성 등, 청진동 출토 백자호 3점은 조선 초기 순백자로서 지정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ㅇ

첫째, 長身壺 형태의 백자호 2점은 지금까지 지정된 예가 없어 조선후기 달항아리(圓壺)와 더불어 백자연구에 일조할 것이다. 원호 1점은 달항아리와는 달리 그 형태가 특이하고 또한 일괄 출토품이므로 함께 지정함이 마땅하다.

둘째, 3점 모두 서울 종로 청진동 건물지의 동일한 위치에서 완전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셋째, 3점은 모두 경기도 광주 分院의 官窯제품으로 간주되며, 특히 출토된 당시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 학술적인 연구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ㅇ

백자호 A,B형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출토의 백자호(36.8cm)와 유사하며 그 예가 드문 작품이다.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조선초기의 광주 도마리요, 광주 우산리묘, 변천리묘에서 출토된 백자호편이 있어, 광주 관요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특히 백자C형은 처음 보이는 기형으로 풍만한 동생체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으며 조선초기 16세기 전반경의 작품으로 추청된다.

이들이 서울 종로 청진 1구역의 주거지 지역에서 함께 관전한 형태로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점도 주목된다.

조선초기의 백자호 중 이처럼 발굴조사 중에 완전한 형태로 서울 중심부 지역인 청진동 주거지에서 전쟁 등의 사유로 묻어둔 것이 발견된 것으로 추청되며 생산지인 조선 관요 제작지인 경기도 광주 일대의 도마리, 우산리, 변천리 요지(16세기)출토의 백자편으로 뒷받침되는 중요한 학술자료로서 보물 지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보물 지정예고 함.

조사보고서

□

ㅇ 현 상

전체적으로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조선 초기 항아리로는 상당히 큰 편이다. 3점 모두 몸체 내면 중앙에 상단과 하단을 따로 만들어 접합한 흔적이 있다. 굽 안쪽이 완전히 자화(磁化)되지 못했거나 굽 주위가 번조 시 터져나간 흔적이 있다. 2점은 완전하나 1점은 구연부가 일부 결손되었다.

ㅇ 내용 및 특징

두 점의 항아리는 모두 목이 짧고 어깨 부분에 무게 중심이 있으며 몸체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서서히 좁아든다. 높이 28.0㎝의 항아리는 다른 두 점과는 달리 몸체가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로 하단부를 짧게 처리하였다. 세 점 모두 구연부는 밖으로 둥글게 말린 형태이다. 태토는 치밀질의 백색이며 담청색을 띠는 투명유를 씌웠다. 굽은 세 점 모두 단면이 'U'자형이며,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높이 36.5㎝의 항아리는 굽 주변에 손자국이 남아 있다. 높이 28.0㎝의 항아리는 굽 안쪽에 먹으로 쓴 명문의 흔적이 있고 다른 두 점과는 달리 외저면에 용융상태가 좋지 않고 일부 박락한 부분이 있다.

□

ㅇ 내용 및 특징 : <백자호 000648>무문의 순백자 장신호 형태
<백자호 000649>무문의 순백자 장신호 형태
<백자호 000650>무문의 순백자 원호 형태

ㅇ 조사내용

<백자호 000648> 무문의 순백자로 전면에 시유했고, 유색은 비교적 맑은 백색이다. 구연은 밖으로 짧게 말렸고, 상하부 접합 흔적이 동체부 중단에 있다. 최대 복경은 상단에 위치하며 하부로 갈수록 줄어들어 소위 長身壺의 형태를 보인다. 굽은 안다리굽이며 접지면은 1~3cm정도이다. 희고 검은 가는 모래를 유약을 훑어낸 접지면에 받쳐 번조했다. 저부 3개처에서 1mm정도의 균열이 관찰된다.

<백자호 000649> 무문의 순백자로 전면으로 시유했고 유색은 회백으로 <백자호 000648>에 비해 맑음 정도가 다소 떨어진다. 일부 표면에 죽은깨와 같은 여러 개의 점이 관찰된다. 특히 2/3선 아래에는 음식물이 베어나온 얼룩진 현상이 관찰된다. 구연은 밖으로 짧고 납작하게 말아 처리했으며 상하부 접합 흔적이 동체부 중단에 있다. 최대 복경은 상단에 위치하며 하부로 갈수록 줄어들어 장신호의 형태를 보인다. 굽은 안다리굽이며 유약을 훑어낸 접지면에는 모래받침의 번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부 1개처에 약 10cm가량의 균열이 있고 굽안에는 균열된 상태가 굽을 돌면서 있다.

<백자호 000650> 무문의 순백자로 전면으로 시유된 유색은 회백색을 띤다. 구연은 납작하게 밖으로 말렸으며 일부가 결손되었다. 달항아리와 같은 圓壺로 볼 수 있겠으나, 전체 기형에서 최대 복경은 상단에 있고 하단부는 짧게 처리하고

있어 특이한 모양이다. 상하 접합부가 매끄럽지 못해 굴곡이 있다. 굽은 안다리굽이며 굽주변 외저면에 유약이 박락된 현상이 있다 번법은 가는 모래받침이다.

□

ㅇ 조사내용

백자호 A, B : 구부가 말려있고, 짧은 목에 풍만한 어깨에서 서서히 좁아져 세워진 36.5cm크기의 백자호로, 무늬가 없는 백자이다. 유색은 담청을 머금은 회백색으로 전면에 곱게 시유되었으며 은은한 광택이 나 있다. 굽다리에는 가는 모래받침의 흔적이 나 있다.

백자호 C : 구부가 말려 있고, 짧은 목에 풍만한 동생체를 이룬 호로 서서히 좁아져 세워졌다. 무의가 없으며 유색은 회백색으로 전면에 곱게 시유되었다. 굽다리에는 가는 모래 받침의 흔적이 나 있으며, 구연 일부가 파손되었다.

안건번호 동산 2016-02-013

4. 선우추・김생 서법첩(鮮于樞・金生 書法帖)

가. 검토사항

'선우추・김생 서법첩'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부터 '선우추・김생 서법첩'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4.11.12)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5.12.23)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선우추・김생 서법첩(鮮于樞・金生 書法帖)
○ 소유자(관리자): 손**
○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 수　　량: 1책
○ 규격(cm): 선우추 44.6×28.9, 김생 44.4×28.8
○ 재　　질: 한지
○ 판　　종: 석각본
○ 형　　식: 서첩
○ 제작연대: 1524년(중종 19)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대상 유물인 '선우추・김생 서법첩'은 원나라 서예 대가인 선우추와 해동서성이라 불리는 김생의 필적을 함께 수록했고, 왕명에 의해 석각본으로 만들었으며, 중종이 당대의 명사인 사헌부 대사헌이었던 손중돈에게 하사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서지학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서예사적 사료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로 지정 대상 유물인 '선우추·김생 서법첩'이 진적이 아니라는 점, 둘째로 김생의 글씨는 편의를 위해 축소 모각하여 원본이 지닌 예술적 가치를 잃었다는 점, 셋째로 조선 중기 이후 서풍에 미친 영향이 왕희지·조맹부보다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선우추는 비록 원나라에서 유명하였던 서예가이지만, 왕희지·구양순·안진경·조맹부에 명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한국서예에 끼친 영향도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정 대상 유물인 '선우추·김생 서법첩'의 자료적 가치는 인정할 수 있지만, 국가지정문화재의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o

1525년에 중종임금이 손중돈에게 하사한 『선우추김생서법첩』은 석각하고 다시 탑본해서 꾸민 것이다. 중국 원나라의 서가 원우추의 행초서와 통일신라의 서가 김생의 행초서를 함께 묶어 필첩으로 간행한 것이 특이하다. 또한 內賜記에서 所從來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적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만 선우추에 대하여, 과거 16, 17세기에 그의 유풍이 다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중국의 서가 열전에서 볼 때 원 이전의 명가는 차치 하고라도 당시의 조맹부나 명의 동기창의 명성 및 선호도에 못 미치는 인물로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 하자로 작용될 수 있음이 우려된다. 바꾸어서 예를 들어 말하면 중국의 서성인 왕희지와 우리의 서성인 김생과 함께 묶었다면 비교의 차원에서 또는 예술적 차원에서 서예교본으로서의 그 가치가 배가 되었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한데 이와 전혀 거리가 멀다는 점이 그것이다.

또 김생에 있어서「田游巖山家序」와 그에 딸린 「전유암산가」오율의 서첩은 김생의 글씨 중에서 유일하게 독립된 서첩형태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최조의 조성연대는 알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서문5엽과 오율1엽으로 이루어져있다. 근자에 9엽으로 된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문제는 오랜동안 刻者들의 소견이나 기량의 차이에 따라 새김의 느낌이 서로 다른 몇몇 종류의 것들이 전래 유포되어 왔다는 점이다. 서풍은 의심할 바는 아니더라도 만일 이 첩의 것이 홀로 부각된다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결론적으로, 선우추의 첩은 설사 육필의 것이라 할지라도 재고해 볼 여지가 있을 법 한데 석각 간행본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할 만한 유물이 되기에 부족하고, 김생서첩은 단본이 아닌 유사본이 여럿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상정된 이『선우추김생서법첩』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족할 수 없다고 본다.

ㅇ

『선우추 · 김생 서첩』은 현존 내사본 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기에 간행된 희귀 고본이고, 중종이 당대의 名士 사헌부 대사헌이던 손중돈에게 하사한 문헌이라는 점에서 높은 서지학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종 실록』의 관련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서첩은 원본 혹은 간본(<전유암 산가서>의 경우 간본일 가능성이 크다.)을 모사하여 석각한 것을 탑본하여 간행한 것으로 제책의 편의를 위해 축소 모사하여 간행(<전유암 산가서>의 경우 현존하는 여타 판본과 비교하면 글자의 크기가 현저히 작다.)함으로써 원본이 지닌 예술적 가치가 일정 부분 훼손되었고, 또 이 책이 조선 중기 이후의 서풍 형성에 끼친 영향 또한 왕희지, 조맹부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더구나 중국의 역대 서예가 가운데 왕희지, 안진경, 구양순, 조맹부 등에 비해 지명도가 높지 않은 선우추의 작품 위주로 편집된 서첩이라는 점에서 서첩 자체의 가치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 미흡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선우추 · 김생 서법첩>>을 지방문화재로 지정함이 온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ㅇ 부결

조사보고서

□

ㅇ 현　　상

지정 대상 유물인 '선우추·김생 서법첩'은 중종의 어명으로 1524년(중종 19)에 석각하여 1525년(중종 20) 중종이 사헌부 대사헌 손중돈(孫仲暾)에게 하사한 서첩이다. 이는 원나라 선우추(鮮于樞, 1246-1302)의 진적과 신라 김생(金生, 711-?)의 작품을 모각하여 석각본으로 간행해서 만든 서예 교재용 서첩이다. 총 28면 1첩으로 선우추의 행초서 23면, 김생의 행서 5면이 있다.

면수	서예가 및 찬자	형식 및 내용
면지	좌부승지 이환(李荁) 찬(撰)	내사기(內賜記)
1-13	선우추의 행초서	당(唐) 위응물(韋應物)의 「의고십이수(擬古十二首)」
14-18	선우추의 행초서	당(唐) 위응물(韋應物)의 「잡체오수(雜體五首)」
19-23	선우추의 행초서	당(唐) 두보(杜甫)의 「하장군산림시(何將軍山林詩)」
24-27	김생의 행서	「전유암산가서(田遊巖山家序)」
28	김생의 행서	오언율시 「전유암산가(田遊巖山家)」

현재 손중돈(孫仲暾)의 직계 후손인 손성훈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다. 표지 우측의 상단과 좌측의 하단, 면지에서 우측의 하단 일부와 좌측의 상단 일부가 결락(缺落)한 것 이외에 본문은 거의 온전하다. 고본(古本)임을 감안하면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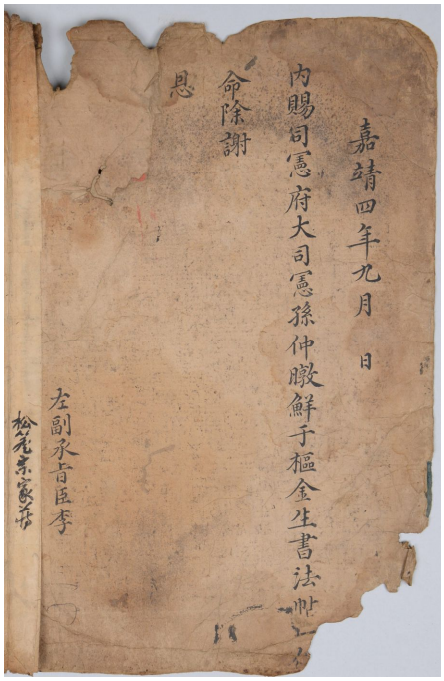

면지(面紙) : 내사기(內賜記)

표지(標紙)

ㅇ 내용 및 특징

지정 대상 유물인 '선우추·김생 서법첩'에 대한 내용이 『중종실록』의 기록에 있다. 먼저 중종 19년(1524)의 기록에 의하면, "도승지 김희수는 선우추의 초서 진적 1첩을 바치고 아뢰기를 '선우추의 서예는 세상에서 조맹부보다 낫다고 일컫는데, 동방에 전해진 것이 매우 적습니다. 지금 이 진적이 만약 없어져 전해지지 않으면 매우 애석할 것이니, 청하옵건대 화공에게 정밀하게 모사하도록 하여 돌에 새겨서 널리 전함이 어떠하신지요? 만약 흉년이어서 이 일을 할 수 없으면 먼저 모사하고 이후를 기다렸다가 개간함이 어떠하신지요?'라고 하였다. 전하여 이르시기를 '개간하도록 하여라.'라고 하시었다[都承旨金希壽, 以鮮于樞草書眞筆一貼進獻曰, 樞之書法, 世稱優於趙孟頫, 而傳于東方者甚寡. 今此蹟, 若泯滅不傳, 深可惜也, 請使畫工精模, 入石廣傳何如. 若以爲, 年凶不可爲是役, 則請先打模, 而待後開刊何如. 傳曰, 其令開刊]."(『중종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10일 갑술)라고 하였다. 이는 김희수가 선우추의 진적 1첩을 바치고 돌에 새겨서 널리 전하도록 아뢴 글이다. 그러나 당시 흉년이어서 이 일은 성사되지 못하였다가 이후 윤허를 받은 내용이 보인다. 즉 중종 19년(1524)의 기록에 의하면, "정원이 아뢰기를 '전에 김희수가 선우추·김생 등의 진적을 모사하여 개간하기를 아뢰어 청하였는데, 지금

이미 계획을 마쳤으니 청하옵건대 개간함이 어떠하신지요?'라고 하자 전하여 이르시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시었다[政院啓曰, 前者, 金希壽啓請模刊鮮于樞, 金生等眞蹟, 今旣謨畢, 請開刊何如. 傳曰, 依啓]."(『중종실록』 51권 중종 19년 6월 29일 임술)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선우추·김생 서법첩'은 중종 19년(1524)에 석간본으로 완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종실록』에는 이 일에 대해 더 이상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석각본을 완성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지정 대상 유물인 '선우추·김생 서법첩'의 내사기(內賜記)에서 '嘉靖四年九月'이라 한 것을 보면, 1525년(중종 20) 이전에 완성했음을 알 수 있다.

선우추(鮮于樞, 1246-1302)는 자가 백기(伯機)이고 호는 곤학산민(困學山民)이며, 본적은 대도(大都. 지금의 北京)이다. 일설에 어양(漁陽, 지금의 天津 薊縣) 사람이라고도 한다. 벼슬은 태상전부를 지냈기 때문에 '선우태상(鮮于太常)'이라 일컫는다. 그는 세상과 개인의 처지에 대한 불만을 필묵의 점과 획으로 나타내었 다. 시와 사를 잘 지었고, 서화에 뛰어났으며, 법서·명화 및 옛날 기물의 감정에 정통한 박학다식한 사람이었다. 만년에는 두문불출하면서 손님을 거절하고 모든 마음을 시와 글씨에 쏟았으며 자못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는 해서·행서·초서 등 모든 서체에 정통하였는데, 특히 초서를 잘 썼다. 그는 조맹부와 더불어 원나라 서단의 '양웅(兩雄)'이라 불릴 정도로 원나라 서예를 대표하고 있다. 작품으로 <초서천자문(草書千字文)>·<만강홍사(滿江紅詞)>·<초서한유진학해(草書韓愈進學解)>·<행서한유서권(行書韓愈序卷)> 등이 있다. 조선에서는 안평대군 이용(李瑢)이 선우추 초서작품 6점을 소장하였고, 15-17세기의 성수침(成守琛)·배삼익(裵三益)·조속(趙涑) 등 서예가들의 글씨에서 선우추의 서풍이 적극 수용되었다. 이를 보면, 지정 대상 유물인 '선우추·김생 서법첩'은 이들의 서풍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선우추(鮮于樞)의 행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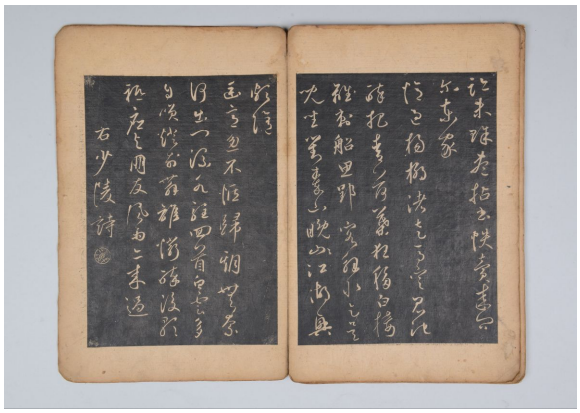

끝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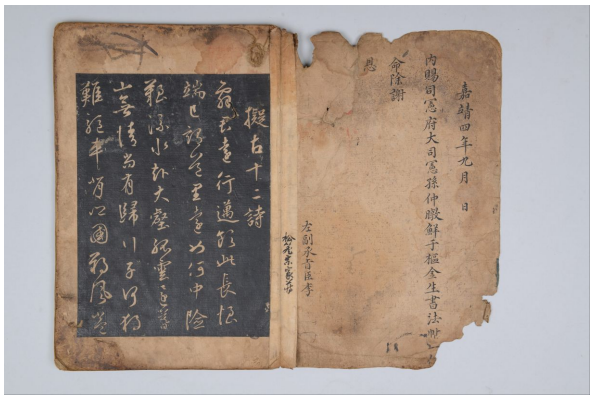

시작부분

김생(金生)의 행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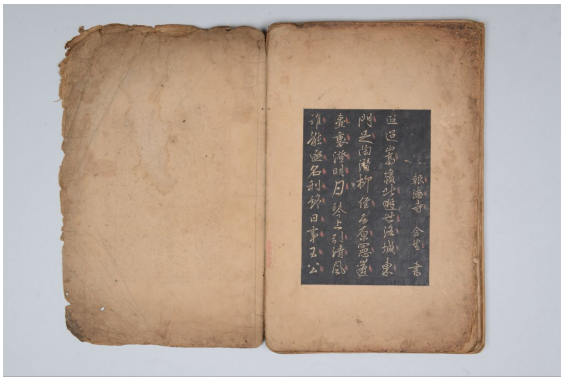

끝부분

시작부분

김생(金生, 711-?)은 통일신라에서 '해동서성'으로 불릴 정도로 글씨를 잘 썼지만, 현재 전해지는 진적은 없다. 석각본의 탁본 중에서 믿을 만한 것은 바로 지정 대상 유물인 '선우추·김생 서법첩'에 수록된 <전유암산가서(田遊巖山家序)>와 <전유암산가(田遊巖山家)>의 오언율시이다. 이는 안평대군의 『비해당집고첩(匪懈堂集古帖)』(석각, 1443년 간행)에 처음 수록된 이래 신공제의 『해동명적(海東名迹)』(석각, 1516년 간행)과 이우의 『동국명필(東國名筆)』(석각, 1667년 간행) 등에 실려 이른 시기부터 그의 진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지정 대상 유물인 '선우추·김생 서법첩'에 원나라 서예 대가인 선우추와 해동서성이라 불리는 김생의 필적을 함께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희수의 청으로 왕명에 의해 중국과 우리나라의 필적을 함께 묶어 석각하고 집첩(集帖)하여 간행한 희귀한 사례이다. 또한 중종이 당대의 명사인 사헌부 대사헌이었던 손중돈에게 하사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서지학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서예사적 사료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규격(規格, cm), 좌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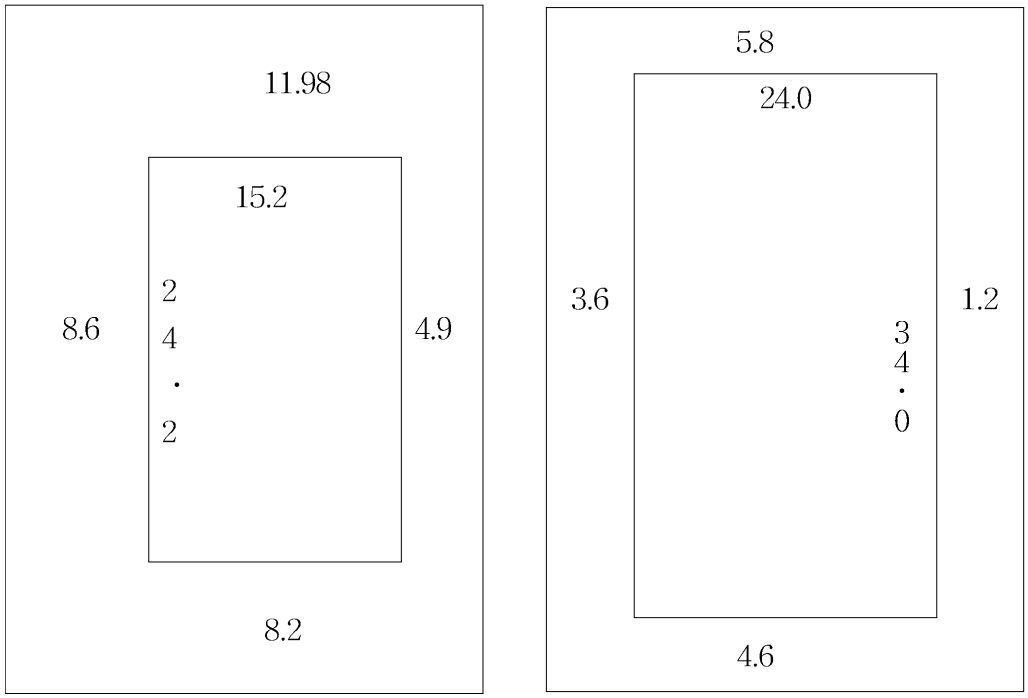

김생(金生) 44.6 × 28.9cm　　선우추(鮮于樞) 44.6 × 28.9cm

ㅇ 참고문헌

『중종실록』
곽노봉편저, 『書藝家列傳』, 다운샘 2005.

□

ㅇ 현　　상

필첩부분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며 표지에 약간의 훼손이 있다.

ㅇ 내용 및 특징

내용 : 선우추의 초서와 행서를 섞어서 쓴 필첩의 내용소재는 당대 위응물의

「의고」2수와 「잡체」5수, 그리고 두보의 「하장군산림시」등 삼종이다. 김생의 행초서는 「전유암산가서」와 이에 딸린 오언율시 「전유암산가」로 장식되어있다.
특징 : 이상의 선우추와 김생의 석각탑본을 하나로 묶은 것이 이채롭다. 모두 28엽이다. 겉표지 맨 앞장 이면에 嘉靖四年 (중종20, 1525) 9월에 사헌부 대사헌 손중돈에게 하사했다는 좌부승지 이환이 쓴 內賜記가 짧게 적혀있다.

□

ㅇ 현　　상

표지 우측 상단, 좌측하단, 내사인, 내사기 하단 일부에 결락이 있으나 고본임을 감안하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ㅇ 내용 및 특징

중국 元代의 서예가인 鮮于樞의 초서 詩稿와 신라의 명필 金生의 행서 <전유암산가서>를 함께 묶어 중종의 어명으로 석각하여 간행한 일종의 서예 교재용 法帖으로, 1525년 (중종20) 당시 사헌부 대사헌이었던 孫仲暾에게 하사한 내사본이다.

ㅇ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에 이 서첩과 관련된 기사가 2건 수록되어있다.

1. 『중종실록』 19년 5월 10일조; 도승지 金希壽가 선우추의 초서 1첩을 바치고 아뢰기를 “선우추의 서법은 조맹부보다 낫다고 일컫는데,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이 매우 적으므로 이 필적이 없어져 전해지지 못하면 매우 아까우니 畫工을 시켜 정밀하게 모사하여 석판에 새겨 넣게 하여 널리 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끼?” … 전교하기를 “개간하도록 하여라”라고 하였다.

2. 동상 6월 29일조; 政院이 아뢰기를, “전에 김희수가 선우추 · 김생 등의 진적을 모사하여 간행하기를 계청하였는데 이제 모사가 끝났으니 개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 라고 하였다.

안건번호 동산 2016-02-014

5. 황제지보(皇帝之寶)

가. 검토사항

‘황제지보’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4년「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14.5.15),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환수문화재에 대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됨

○ 이와 관련, 국립고궁박물관장으로부터 환수문화재 ‘황제지보’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14.8.2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0.12)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황제지보(皇帝之寶)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고궁박물관)

○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 수　　량: 1과(顆)

○ 규격(mm): 보신(寶身) 95.02×93.17, 높이 33.61
보뉴(寶鈕) 길이 86.15, 너비 42.42, 높이 33.36
보신과 보뉴 사이 받침대 76.41×71.82, 높이 8.23
전체 높이 104.50, 대고(臺高) 29.30
보곽(寶郭) 11.00
각 글자의 자경(字徑) 46.19, 필획 굵기 5.47

○ 중　　량: 1292.5g

○ 뉴 양 식: 용(龍)

○ 보　　문: 황제지보(皇帝之寶)

○ 재　　질: 옥(玉)
○ 제작연대: 1897년(광무 1)

라. 조사자 검토 의견

ㅇ

<황제지보>는 교명(敎命)·교서(敎書)·교지(敎旨)에 사용한 국새이다. 황제국임을 천명한 대한제국 선포 이후부터 국새로 사용된 <황제지보>는 황제가 직접 관리를 임명할 때 내려주는 친임관칙지(親任官勅旨)에 국한하였다. 지정 대상 유물인 <황제지보>는 기존의 것들이 이미 유실된 상태에서 유일한 유물이고, 제작연대와 유전 경로가 분명하며, 공예사적으로도 뛰어나면서 자료적 가치가 높은 중요한 유물이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ㅇ

龍鈕形 玉寶인 <황제지보>는 대한제국 선포 때 제작한 고종황제의 국새 9顆중 1과로 황제가 직접 관료를 임명할 때 내려주는 임명장과 훈장서훈 사유를 적은 勳記에 찍는 인장이다.『大禮儀軌』와『寶印符信總數』에는 이 옥보의 크기와 인문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황제지보>는 조선이 자주국가인 대한제국이며, 고종은 황제임을 선포하고 이후의 모든 국가 행정문서와 궁중의례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어보 중의 하나이자 국새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점, 왕실 공예품으로서의 공예사적 가치가 있는 점, 국외 반출되었다가 60년 만에 환수된 의미 있는 유물로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는 점 등에서 보물로 지정함이 마땅하다.

근대기에 덕수궁에 있던 조선왕실 어보 중 한국전쟁 때 미군에 의해 불법 반출된 9점을 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2014. 04.25~26)시 갖고 와 60년 만에 환수되었다. 그중 지정 조사대상 유물인 3점의 국새는 고종이 1897년에 조선이 자주국임을 선포하며 제작한 <황제지보>와 1876년에 제작하여 관리 임명에 사용했던 <유서지보>, 1889년에 제작한 왕세자 교육담당 관청인 춘방의 <준명지보>이다. 유물들의 보존상태는 비록 제작시의 미세한 결락과 세월의 傷痕이 다소 보이나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이러한 황제지보, 유서지보, 준명지보는 제작시기 및 배경, 크기, 재료 등이 의궤와 문헌에 실려 있는 3점의 국새로서 역사성이 있으며, 왕실공예품으로서의 공예사적 의미와 조형성이 있고, 환수문화재라는 상징성까지 있다.

이 3점의 국새는 2009년 9월 2일에 보물 제1618호로 지정된 1903년 작 大韓帝國 高宗「皇帝御璽」보다 제작시기도 앞서고 조형성도 뛰어날 뿐 아니라 보존상태 또한 양호한 편이어서 보물로 지정함이 마땅하다. 현재 어보는 300여점 이상 알려져 있으므로 문화재 지정번호와 명칭 문제가 대두된다. 이미 낱개로 지정된

보물 제1618호가 있지만, 전체 어보를「어보」,「국새」같은 분류별 상위 명칭 하에 '고종「황제지보」' 등 각각의 인문 고유명칭과 번호가 바람직하다. 또는 숙종 때 일시에 많은 어보를 1897년 대한제국 황제 대례 때 제작한 국새를 일괄로 묶어 '광무원년 어보'로 하고 1점씩 가지번호로 하든가 향후의 지정까지 예측, 논의해야 할 것이다.

ㅇ

지정 대상 유물인 '황제지보(皇帝之寶)'는 대한제국이 성립된 이후 만들어진 10과의 국새가운데 하나로 2014년 4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하여 반환된 국새(國璽)와 어보(御寶) 9종 가운데 1점이다.

조선시대의 국새로 지정된 것은 현재 없으나, 지난 2009년 대한제국기의 「황제어새(皇帝御璽)」가 보물 제1618호로 지정되어 관련 유물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조선시대 왕명 문서에 찍었던 국새는 상당수 유실되었으나 이번에 환수된 황제지보(皇帝之寶)'를 통하여 문헌에 기록된 '새보(璽寶)'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황제지보'는 다른 유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성(唯一性) 또한 제작 당시의 역사상을 살필 수 있고, 공예사적으로도 제작 연대가 뚜렷하여 다른 자료들과 상대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은 중요한 유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ㅇ 보 류

조사보고서

□

ㅇ 현 상

조선왕조(1392-1897)와 대한제국(1897-1910) 시기 국가에서 제작한 공인(公印)은 각종 국가의례에서 사용한 어보(御寶), 실제 어명을 내리는 데 사용한 인장인 국새(國璽), 각종 관청에서 발급한 행정용 인장인 관인(官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의례용 어보는 왕비·왕세자·왕세자빈 등을 해당 지위에 임명하고, 왕의 공덕을 찬양하거나 그 통치를 종합·재평가하는 의식에 사용되었다. 여기에는 책봉호(冊封號)·시호(諡號)·존호(尊號)·묘호(廟號)와 같은 존귀한 이름을 새겼는데, 이러한 어보는 사후 종묘 신실(神室)에 신위(神位)와 함께 모셨다.

이 중에서 국가의례에 사용했던 어보와 왕실과 국가의 업무에 사용했던 국새가 가장 대표적인 인장이다. 이들 인장은 왕권과 국가적 존엄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제작에서 관리까지 엄격한 법식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한제국이 한일 강제병합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이어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문화재가 국외로 불법 반출되는 와중에 이들 인장의 일부도 같은 운명을 겪었다.

한국전쟁 때 참전했던 미군이 덕수궁에서 불법으로 반출한 인장에 대해 2013년 10월 21일 문화재청이 외교부·대검찰청을 경유하여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수사 요청을 하였고, 2013년 11월 18일 HSI는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을 압수하였다. 2014년 3월 한미 문화재청과 양국 국회의원 및 국내외 민간단체 등이 조기 반환 여론을 조성하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일정에 맞추어 2014년 4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계되었다.

당시 인계한 인장은 모두 9점으로 국새 3점(<皇帝之寶>·<諭書之寶>·<濬明之寶>), 어보 1점(<壽康太王帝寶>), 보소당(寶蘇堂)의 인장 5점(<友天下士>·<雙螭>·<春華>·<硯香>·<香泉審定書畵之記>) 등이 있는데, <황제지보>는 국새 3점 중의 하나이다.

현재 보수(寶綬)는 없어졌고, '帝'와 '寶' 중간 하단부에 옥결이 있어 자연미가 풍부하며, 보전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ㅇ 내용 및 특징

황제지보(皇帝之寶)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

국새는 국왕이 국가를 통치하는 데에 사용했던 인장을 말한다. 왕위의 선양이나 외교 실무 등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문서에 날인하였던 것으로 국가 최고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상징하였다. 조선왕조 시대에는 국왕이 중국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을 때 임명장인 고명(誥命)과 함께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을 수여받아 이를 중국과의 외교문서에 사용하였고, 즉위식에서 후계왕에게 승계하였다. 또한 책봉 등의 업무를 위한 <국왕행보(國王行寶)>, 왕의 명령서인 유서(諭書)에 날인하기 위한 <유서지보(諭書之寶)> 등의 국새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는 자주국으로서 <황제지보(皇帝之寶)> 등 국새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국새는 황제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보뉴(寶鈕)를 용뉴(龍鈕)로 제작하였다.

국새는 국가최고통치자의 인장인 동시에 국가의 상징이다. 국새라는 용어는 삼국시대부터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동일한 개념으로 쓰인다. 한반도에서 국새를 사용한 기록은 고구려로부터 보이고, 삼국시대에는 국새를 대보(大寶)·국새(國璽) 등으로 불렀으며, 고려시대에는 국새(國璽)·국인(國印)·어보(御寶)·새보(璽寶) 등 다양한 용례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새(璽)와 보(寶)를 왕실 인장의 대명사로 사용하였으나 국새(國璽)와 대보(大寶)만은 국가를 상징하는 인장의 의미로 한정하였다. 조선시대의 국새는 국왕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며, 주로 외교문서에 사용하였다. 또한 왕위 계승 시에는 전국(傳國)의 징표로 전수하였으며, 국왕의 각종 행차 시에는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행렬의 앞에서 봉송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명·청나라로부터 각각 3차례 국새를 받았다. 1636년 병자호란 이후에는 청나라에서 사여한 국새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숙종 때 명나라에서 사여한 옛 국새의 자취를 찾아 별도로 모조하여 비장해 두고 왕위 계승 때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명·청나라로부터 받은 외교용 국새 이외에 국왕이 발행하는 각종 문서에 사용할 국새를 국내에서 자체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세종 때 중원의 제도를 모방하여 국새로 대체한 <국왕행보(國王行寶)>·<국왕신보(國王信寶)> 등을 제작하여 국왕 문서에 사용하였다. 이후 교명·교서·교지를 비롯하여 과거(科擧) 관계의 문서, 유서(諭書), 서적의 반사 등 각각의 용도에 따라 국새를 달리하였다.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황제국에 걸맞은 새로운 국새를 10점 제작하였다. 왕실인사의 호칭이 변경됨에 따라 태후·황후·황태자·황태자비의 어보도 함께 제작하였다. 당시 제작된 국새는 1점을 제외한 모든 국새의 보뉴(寶鈕)가 귀뉴(龜鈕)에서 용뉴(龍鈕)로 바뀌었고, 보문(寶文)은 인(印)에서 새(璽)·보(寶)로 대체하였다. 서체도 기존의 복잡한 구첩전(九疊篆)에서 대부분 간명한 소전(小篆)으로 바뀌었다.

<황제지보>는 교명(敎命)·교서(敎書)·교지(敎旨)에 사용한 국새이다. 황제국임을 천명한 대한제국 선포 이후부터 국새로 사용된 <황제지보>는 훈기(勳記)와 친임관칙지(親任官勅旨)용으로 제작하였다. 고종은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황제

국에 걸맞은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였는데, 즉 <대한국새(大韓國璽)>·<황제지새(皇帝之璽)>·<황제지보(皇帝之寶)>(3점)·<제고지보(制誥之寶)>·<칙명지보(勅命之寶)>(2점)·<흠문지새(欽文之璽)>·<대원수보(大元帥寶)>

대한제국 국새

	寶名	寶鈕	재질	크기(cm)	서체	제작시기	사용처	유실 및 소장기관
1	大韓國璽	龍鈕	天銀鍍金	10	九疊篆	1897. 9. 19	國書	유실
2	皇帝之璽	龍鈕	天銀鍍金	10	九疊篆	1897. 9. 19	勳記	유실
3	皇帝之寶	龍鈕	天銀鍍金	12	小篆	1897. 9. 17	親任官勅旨	유실
4	皇帝之寶	龍鈕	玉	9.7	小篆	1897. 9. 19	親任官勅旨	국립고궁박물관
5	皇帝之寶	龜鈕	玉	12	小篆	1897. 9. 19	親任官勅旨	유실
6	制誥之寶	龍鈕	純金鍍金	11.7	小篆	1897. 9. 19	親任官勅旨	국립전주박물관
7	勅命之寶	龍鈕	純金鍍金	11.7	小篆	1897. 9. 19	親任官勅旨	유실
8	勅命之寶	龍鈕	天銀鍍金	9.7	小篆	1897. 9. 20	加資陞六勅旨 詔勅	국립중앙박물관
9	欽文之璽	龍鈕	天銀鍍金	10	小篆	미상	御製鈐識 頒賜書籍	유실
10	大元帥寶	龍鈕	天銀鍍金	8.6	小篆	1899. 6. 22	軍令	국립진주박물관

등 모두 10점이다.

지정 대상 유물인 <황제지보>는 표 '대한제국 국새'에서 4번에 해당한다. 대한제국의 의식절차와 각종 의물(儀物)이 상세한 『대례의궤(大禮儀軌)』(전통예술원 음악사료강독회 역, 2013 『국역 대례의궤』 민속원)에 의하면, 재질은 남양옥(南陽玉)을 사용했고, 보면(寶面)은 3촌 4푼(실측, 95.02×93.17mm)이라 하였으며, 서체는 소전(小篆)이라 하였다.

남양은 본래 경기도 화성군(華城郡) 남양면(南陽面) 지역에 있던 부(府) 이름으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옥을 남양옥(南陽玉)이라 불렀다. 남양옥은 국새와 어보는 물론 옥책(玉冊)·편경(編磬)·규(圭)·옥대(玉帶) 등 왕실에서 제작한 각종 의물과 장신구에까지 널리 사용하였다.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식의 서하와 학생 이호에게 관직을 제수하도록 명하였으니, 남양의 경석을 얻어 상을 준 것이었다[命授前食醫徐賀, 學生李晧職, 賞其得南陽磬石也]."(『세종실록』 37권 9년 7월 27일 계축)라고 하였다. 또한 『승정원일기』에서도 "영조가 이르시길 '옥의 품제로 말하면 남양이 뛰어나는가?'라고 묻자 상한이 '세종조로부터 남양에서 생산된 옥이 제일입니다.'라고 답하였다[上曰, 以玉品言之, 南陽勝乎. 象漢曰, 自世宗朝, 南陽生玉而爲第一矣]."(『승정원일기』 영조 35년 4월 14일 갑자)라고 하였다. 이후 대한제국에서도 남양옥은 왕실의 의물에 널리 사용하였다.

<황제지보>에 사용한 서체는 소전(小篆)이다.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하고 중앙집권제를 실행하면서 문자와 도량형을 통일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사는 승상으로 있으면서 서동문(書同文) 정책을 실행했는데, 즉 육국문자를 버리고 서주시기 주문(籒文)인 대전을 덜고 더하여 소전을 만들었다. 이를 또한 진전(秦篆)이라고

도 일컫는다. 진시황 28년(기원전 219)에 태산·낭야·역산을 순시하고, 39년(기원전 210)에 회계를 순시할 때 소전으로 진시황의 송덕을 기리는 각석을 세웠다. 현존하는 <태산각석>·<낭야대각석>의 원탁 잔본을 보면, 이사가 썼다는 소전은 자형의 구조가 통일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서풍이 매우 규정적이고 단정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 표현인 필획은 일률적으로 둥글고 고르며, 결체는 대칭·균등을 다하였으며, 장법 또한 정제되어 조금의 느슨함도 없었다. 형체는 장방형을 나타내면서 각 글자마다 2 : 3의 비율에 합하였고, 원전(圓轉)은 마치 강철을 구부린 것 같이 힘이 안으로 응축하였으며, 엄숙하고 장엄한 면모를 나타내었다.

조선시대 국새에 사용한 서체는 대부분 구첩전이었다. 이를 또한 첩전(疊篆) 혹은 상방대전(上方大篆, 一作 尙方大篆)이라고도 한다. 한인(漢印)의 인문(印文)에서 필획이 적은 글자는 구불거리면서 가득 채워 쓰는 법이 있었다. 송나라 이후 관인은 이러한 필법을 점차 많이 운용하여 크게 발전시켰다. 이후 다시 구첩전이란 명칭이 있었는데, 필획은 구불거리면서 선회하며 가면 갈수록 더욱 세밀하였다. 이는 각 글자를 모두 9번 겹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6번·7번·8번에서 때로는 10번 혹은 그 이상 겹치게 하는 것도 있다. '구첩전'이란 명칭은 꺾고 겹쳐서 여러 층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취한 것이다.

이를 보면,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이 최초로 전국을 통일하고 황제의 지위에 오른 진시황의 권위와 상징성이 담긴 소전을 구첩전 대신 국새에 사용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또한 중국은 대대로 새보에 사용한 서체가 소전이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사용해온 구첩전에서 탈피하여 황제국으로서의 위상을 소전에 담아 국새의 서체에 반영하였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황제지보>는 4글자를 세로로 2글자씩 분포하고, 보곽(寶郭)은 넓게 하여 엄숙하고 장엄함을 나타낸 주문인(朱文印)이다. 각 글자의 자경(字徑) 46.19mm이고, 필획의 굵기 5.47mm로 <유서지보>(2.64mm)·<준명지보>(2.87mm)보다 거의 2배나 굵다. 필획은 고르고 균등하며, 기필·수필은 모두 원필로 처리하여 부드러우면서도 혼후함을 나타내었다. 글자마다 대칭을 이루고, 가로획과 세로획이 만나는 전절 부분은 모두 안은 약간 모나면서도 밖은 둥글게 처리하여 부드러우면서 굳센 외유내강(外柔內剛)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특히 '帝'자에서 2개의 곡선 세로획은 안은 수렴하고 밖은 내치면서 부드러운 가운데 기운을 안으로 품는 내엽법(內擫法)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皇·之'자에서 왼쪽 세로획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차 조금씩 안쪽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맛을 나타내어 전체 자형을 사다리꼴로 만들어 안정감을 나타내었다. '寶'자에서는 2개의 긴 세로획을 안에 있는 '王·缶'과 '貝'자를 피양(避讓)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위는 조금 가늘고 아래는 굵게 처리하면서 절주감을 나타내었다. '貝'자의 마지막 두 획도 점으로 처리하여 더욱 부드러움을 나타내었다. 가로획과 세로획의

기필·수필은 모두 원필로 처리하고, 특히 양 가장자리를 조금 강조하여 마치 붓으로 쓴 듯한 소전의 대표적인 원전(圓轉) 필법의 묘함을 보여 주고 있다. 도법은 충도법(衝刀法)을 주로 삼으면서 절도법(切刀法)으로 수식을 가해 둥글고 윤택하며 고른 필획을 나타내었다. 장법은 각 글자를 정방형의 형태로 고르게 포치하여 평정하면서도 안정감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넓은 보곽(寶郭)과 깊게 새긴 고르고 윤택한 필획, 자간과 행간의 균등함, 정제되고 안정된 장법에서 나타나는 근엄함과 부드럽고 인자함은 국새의 전형적인 작품이라 하겠다.

『대례의궤』에 의하면, 대한제국 국새 10점 가운데 <대원수보>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민병석(閔丙奭, 1858-1940)이 썼다고 하니, <황제지보>를 통해 그의 서예 수준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ㅇ 지정사례

보물 제1618호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皇帝御璽)>(2009년 9월 2일 지정, 국립고궁박물관 소장)가 있다.

ㅇ 참고문헌

・成仁根, 「조선시대 印章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09.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조의 관인』, 2009. 11.
・사맹해저 곽노봉역, 『印學史』, 다운샘 2011. 09.
・성인근, 「미국에서 환수한 조선왕실 인장문화재의 가치와 과제」, 『文化財』 제47권 제4호, 2014. 12.

□

ㅇ 내용 및 특징

황제지보는 1897년 대한제국 성립을 계기로 고종황제의 자주독립 의지를 상징하기 위해 새로 제작한 9점의 국새 중 하나로 국가적 존엄과 국민적 자긍심을 상징한다. 즉 대한제국 이전에는 중국 황제로부터 책봉 받을 때 誥命과 〈朝鮮國王之印〉 을 받아 외교문서에 사용하였는데, 1897년에 고종이 圜丘壇에서 祭天儀式과 함께 자주국가인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光武 元年으로 삼고, 국새도 새로 제작한 것이다. 황제지보는 황제가 직접 관료를 임명할 때 내려주는 임명장(親任官勅旨)과 훈장서훈 사유를 적은 勳記에 날인했다.

『大禮儀軌』에는 이때에 제작된 어보의 종류와 그 조합품들의 견양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명헌태후, 황후, 황태자, 황태자비의 왕실의례용 어보들을 제외한 고종의 행정용 어보만도 9顆가 제작되었으며, 그 중 敎命, 敎書, 敎旨에 사용한 황제지보는 3과였다. 『大禮儀軌』 서두에

「光武元年丁酉九月 日 寶冊造成所護于太僕司」
「大韓國璽一顆天銀鍍金」 「皇帝之璽天銀鍍金」
「皇帝之寶三顆 一顆天銀鍍金 二顆玉」

이라 기록되어 있어 황제지보는 천은에 도금한 것, 옥제 2과(龍鈕, 龜紐)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조사 대상유물은 옥제 2과 중 하나이다.(도1)

전체적으로 연한 녹색빛이 도는 황제지보의 寶鈕는 몸을 구부리고 얼굴을 든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사각형 대좌 위에 두발을 앞으로 모은 용뉴이다. 신체에는 매듭끈을 달기 위한 구멍이 뚫려있다. 인면은 통식의 정사각형 대좌 내에 1.1cm의 보곽을 두르고 자경 4.6cm인 "황제지보"라는 4자가 전각되어 있고 자획의 [凹] 안에 붉은 인주가 남아있다.(도2)

大禮시의 황제지보 견양은 禮器尺을 기준하여 각 부분마다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재료는 경기도 南陽産 옥을 썼다. 견양에는 용의 얼굴이 좀 더 섬세하고 신체도 가는 편이나 현존 유물은 둥근 편이다. 이는 금속처럼 모형을 만들어 주조하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 옥을 깎아 들어가면서 형체를 조각해내는 옥 가공기술 때문이다. 이후 1900년~1907년에 지은『寶印符信總數』에는 이 옥보의 크기와 인문까지 기록되어 있어『대례의궤』에는 생략된 실제 옥보의 인문을 보고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표1 및 도 3~6)

참고로 이때에 같이 조성된 또 하나의 옥제 龜鈕 황제지보의 크기는 "用南陽玉方四寸二分厚一寸三分篆刻郭廣四分上有龜鈕高二寸五分廣三寸龜頭長幷 四寸二分鈕臺方二寸六分厚三分用禮器尺腹下有橫穴"라 했으므로 구뉴의 길이가 약간 긴 편이다.[참고도판 참조]

인문의 서체는『大禮儀軌』,「寶式篆文兩行排字」에 "篆文書寫官弘文館學士臣閔丙奭"이라 기록되어 있어 조선말의 정치가이자 서예가로 당시 홍문관 학사였던 민병석(1858~1940)이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표1. 황제지보 크기에 관한 문헌 비교

분류	『大禮儀軌』(1897)	『寶印符信總數』(1900~1907)	환산치cm
크기	皇帝之寶一顆 用南陽玉方三寸四分厚一寸三分 篆刻郭廣四分上有龍鈕高二寸一 分廣二寸九分龍頭長幷三寸二分 鈕臺方二寸厚三分用禮器尺腹下有 橫穴	皇帝之寶 玉 方三寸四分臺高一寸三分栗甘只 高三分邊廣四分龍鈕長三寸二分 廣一寸三分頭高一寸六分體高一 寸五分尾高一寸刻深一分郭廣四 分	한 변 9.7 臺高 3.7 용뉴: 길이 9.2 頭高 4.6 폭 3.7

서체를 쓴 재료는『大禮儀軌』,「造作」부분에 옥제 3과[22] 의 재료로〈玉寶三

22)『大禮儀軌』의 보인중 3개의 옥보는 皇帝之寶 2과와 明憲太后之寶 1과이다.

顆每顆草圖書所入〉, “竹淸紙二長 黃筆一柄 眞墨一丁 黃蜜白蠟山猪毛各一錢五分炭五升”이라 기록되어 있어 각각 죽청지 2장과 황필 1자루, 먹 1개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23] 寶匠은 “全興吉, 全壽命, 全億萬, 全一萬 等 三名”이었는데, 수석 장인인 전흥길은 『보인소의궤』(1876)에도 보장으로 등장하므로 20여년 이상 활동한 장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황제지보는 조선이 자주국가인 대한제국이며, 고종은 황제임을 선포하고 이후의 모든 국가 행정문서와 궁중의례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어보 중의 하나이자 국새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점, 왕실 공예품으로서의 공예사적 가치가 있는 점, 국외 반출되었다가 60년 만에 환수된 의미있는 유물로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는 점 등에서 보물로 지정함이 마땅하다.

[도판]

도1. 『대례의궤』 의 고종 인장(황제지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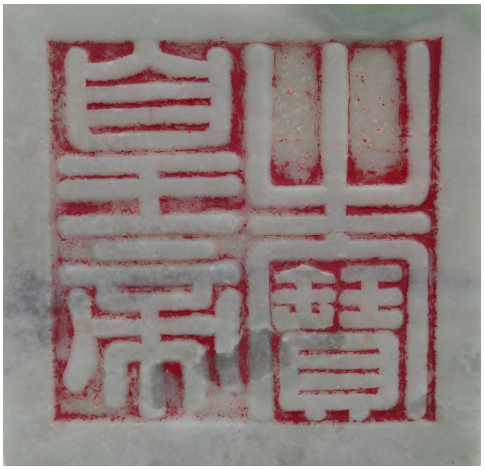

도2. 황제지보의 印文, 민병석 서체

도3. 황제지보, 옥, 189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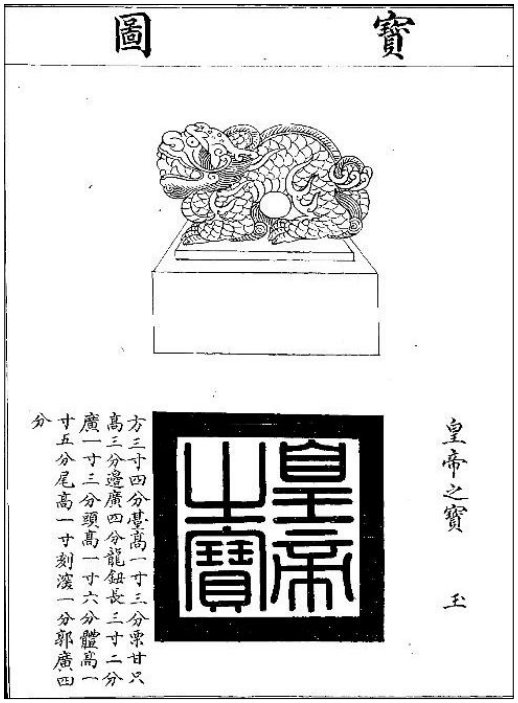

도4. 『寶印符信總數』 중의 황제지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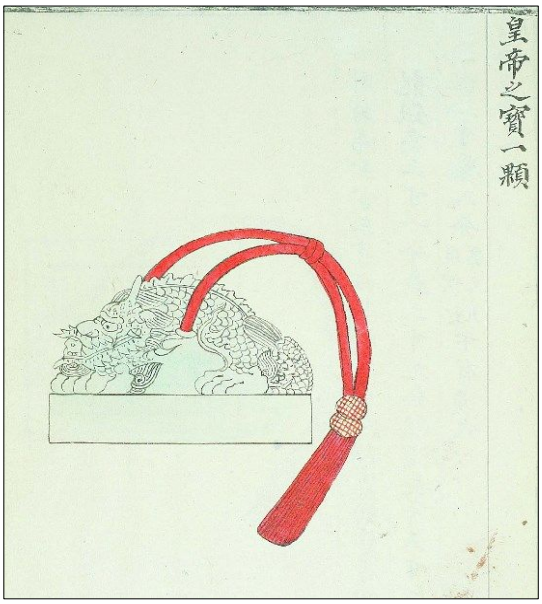

도5. 『大禮儀軌』 (1897)중의 황제지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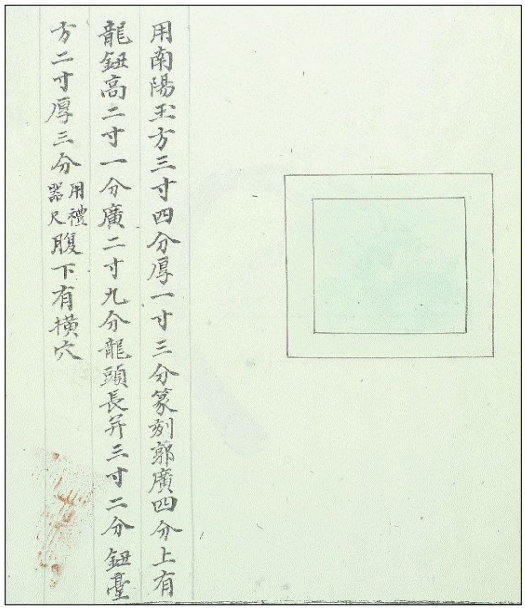

도6. 『大禮儀軌』 중의 황제지보 설명

참고도판 : 『대례의궤』에 기록된 다른 국새(用禮器尺)

대한국새, 황제지새(天銀鑄成, 금도금)

황제지보(天銀鑄成, 금도금)

황제지보(남양옥 조각)

칙명지보, 제고지보(황금주성, 금도금)

ㅇ 참고문헌

『大禮儀軌』, 1897
『寶印所儀軌』, 1876
『寶印符信總數』, 1900~1907
『李朝璽寶印押符信制』, 1910~1915

□

ㅇ 현　　상

2014년 4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하여 반환된 국새(國璽)와 어보(御寶) 그리고 조선왕실의 인장 등 9점〔황제지보(皇帝之寶), 수강태황제보(壽康太皇帝寶), 유서

지보(諭書之寶), 준명지보(濬明之寶), 향천심정서화지기(香泉審定書畵之記), 우천하사(友天下士), (雙螭), 춘화(春華), 연향(硯香)] 가운데 하나이다.

6·25전쟁 때 참전했던 미군이 덕수궁에서 불법으로 반출했다가 문화재청의 수사요청에 따라 대검찰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서 서로 수사를 도와 압수한 것이다.

현재 인끈 [寶綬] 은 없어졌으나, 전반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황제지보>(대한제국 국새)

<보인부신총수>

<실제 사진>

ㅇ 내용 및 특징

국새(國璽)는 국권의 상징으로 국가적 문서에 사용되던 인장(印章)을 말한다. 조선 시대에는 국인(國印)·새보(璽寶)·어보(御寶)·대보(大寶)라 하여 왕의 인장이 국새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국왕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대·교린의 외교 문서 및 왕명으로 행해지는 국내 문서에 사용되었다. 또한 왕위 계승 시에는 전국(傳國)의 징표로 전수되었다. 또, 왕의 각종 행차 시에는 그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행렬의 앞에서 봉송되기도 하였다.

새보(璽寶)의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역대 제왕(帝王)의 옥새와 옥보의 제도[璽寶之制]는 한(漢)나라 때에는 6옥새[璽], 당(唐)나라 때에는 8옥새, 송(宋)나라 때에는 8옥새를 일에 따라 사용하였사온데, 당나라의 신새(神璽)·송나라의 진국신보(鎭國神寶)와 같은 것은 중국을 진안(鎭安)하는 중보(重寶)로서 간직하여 두고 쓰지 않았사오나, 그 신새(信璽)와 신보(信寶)는 사신(事神) ·발병(發兵)등의 일에 쓰였고, 행새(行璽)와 행보(行寶)는 봉국(封國)·책봉(冊封) 등의 일에 쓰였사오며, 기타 새보의 글[璽寶之文] 내용과 용도는 시대에 따라 각각 같지 않았사온데, 우리 나라는 중국 황제가 보내 준 대보(大寶)의 글에, '조선 국왕(朝鮮國王)' 이라고 칭하였사오니, 이는 국내의 보통 일에 쓰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바라옵건대, 옛 제도에 따라 국왕의 신보(信寶)를 부어 만들어서 사신(事神)·교유(敎宥)·공거(貢擧) 등의 일에 쓰게 하옵시고, 국왕의 행보(行寶)도 만들어 책봉(冊封)·제수(除授) 등의 일에 쓰게 하옵시며, 그 황제가 보내 준 대보(大寶)는 사대 문서(事大文書)에만 쓰시고 그 밖에는 쓰지 마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0월 12일 정유 5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이같이 세종대에는 중국 황제가 보내 준 대보(大寶) 외에 국왕의 신보(信寶)는 사신(事神)·교유(敎宥)·공거(貢擧) 등의 일에 쓰고, 국왕의 행보(行寶)는 책봉(冊封)·제수(除授) 등의 일에 사용하였는데 이듬해인 세종 15년 3월에 행보(行寶)와 신보(信寶)를 주조하였다. 기록에는 새보의 재질과 무게 그리고 보문(寶文)이 무었인 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행보(行寶)와 신보(信寶)가 이룩되었다. 예전에 전국보(傳國寶)가 있었는데, 그 보문(寶文)에는 '국왕 신보(國王信寶)'라고 새겼다. 임금이 집현전에 명하여 옛 제도를 상고하여 이 두 보(寶)를 고쳐 만들게 하였는데, 그 제도는 한결같이 흠사대보(欽賜大寶)에 의하여 모두 금을 쓰고, 신보의 무게는 1백 64냥이고, 행보의 무게는 1백 76냥이었다. 신보의 글은 '국왕 신보(國王信寶)'이고, 행보의 글은 '국왕 행보(國王行寶)'인데, 신보는 사신(事神)·교유(敎宥) 등의 일에 쓰고, 행보는 책명(冊命)·제수(除授) 등의 일에 쓰며, '흠사대보'는 사대 문서(事大文書)에만 썼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3월 2일 을묘 2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그러나 이같은 행보(行寶)와 신보(信寶)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세종 25년에 이르러 그 사용처에 맞춘 인(印)을 다시 검토하여 용도에 맞는 국새들이 제작되었다.

의정부에서 예조(禮曹)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일찍이 황제(皇帝)께서 준 대보(大寶)의 글귀에, '조선 국왕(朝鮮國王)'이라 일컬어서 경내(境內)의 범상한 일에 쓰기가 마땅치 않으므로, 국왕 신보(國王信寶)를 만들어서 사신(事神)·사유(赦宥)·공거(貢擧) 등의 일에는 이를 쓰게 하고, 국왕 행보(國王行寶)를 만들어서 책봉(冊封)·제수(除授) 등의 일에도 이를 쓰게 하며, 황제가 준 대보(大寶)는 사대문서(事大文書) 이외에는 간직하여 두고 쓰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참상(慘祥)하건대, 행보(行寶)·신보(信寶)는 경내에서 쓴 것인데도 그 글에 아울러 국왕이라고 일컬었으니, 특히 뜻[意]이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 예전에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글을 만들었는데, 삼가 경전(經傳)을 상고하면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명고(命誥)를 사방에 베푼다.' 하였고, 《국어(國語)》에 말하기를, '말은 신(信)을 밝히[昭]는 것이라.' 하였으니, 마땅히 이 뜻을 취하여 행보(行寶)를 시명지보(施命之寶)로 고치고, 신보(信寶)를 소신지보(昭信之寶)로 고치어, 시명지보는 책봉(冊封)·제수(除授), 보통 행하는 교서(敎書) 등의 일에 쓰고, 소신지보는 신명(神明)을 섬기고 군사를 발하고 물건을 주는 등 일에 쓰오면, 거의 명령을 행하고 신(信)을 보이는 뜻에 합할 것입니다. 또 종전에는 행보(行寶)·신보(信寶)를 과거보는 사람의 권자(卷子)에 쓰고 승지(承旨)가 신봉함(臣封緘)이라고 일컬었는데, 이제 친히 압인(押印)하고 제봉(題封)하면서 인문(印文)은 다 고치었으니 공거(貢擧)에 쓰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바라옵건대, 과거(科擧)의 인(印)을 따로 만들어서 승지(承旨)로 하여금 신봉함(臣封緘)이라 일컫고 상서원(尙瑞院)에 간직하여 두고서 전시(殿試)에만 쓰게 하면 참으로 사의(事宜)에 합할 것입니다."

［세종실록 102권, 세종 25년 10월 2일 계미 2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곧 예조와 의정부에서 행보(行寶)를 '시명지보(施命之寶)'로 고치고, 신보(信寶)를 '소신지보(昭信之寶)'로 고치어, '시명지보'는 책봉(冊封)·제수(除授), 보통 행하는 교서(敎書) 등의 일에 쓰고, '소신지보'는 신명(神明)을 섬기고 군사를 발하고 물건을 주는 등 일에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을 검토하였다. 또한 과거(科擧)의 인(印)을 따로 만들 것도 제시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이외에 여러 가지 특수 목적의 어보들이 사용되었다. 서적을 반포, 하사할 때 쓰는 '선사지기(宣賜之記)'·'선황단보(宣貺端輔)'·'동문지보(同文之寶)', 왕이 지은 글에 찍는 '규장지보(奎章之寶)', 각신(閣臣)의 교지에 쓰는 '준철지보(濬哲之寶)' 등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세자시강원 관원의 교지에 쓰는 '준명지보(濬明之寶)'가 있으며, 기타로 '흠문지보(欽文之寶)'·'명덕지보(明德之寶)'·'광운지보(廣運之寶)' 등이 있었다.

이후 1894년 갑오경장 후에는 중국과의 사대 관계를 종식함으로써 이전의 대보를

폐지하고,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와 ‘대조선대군주지보(大朝鮮大君主之寶)’를 제작해 사용하였고, 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대한국새(大韓國璽)’·‘황제지새’·‘황제지보’·‘칙명지보(勅命之寶)’·‘제고지보(制誥之寶)’·‘시명지보(施命之寶)’·‘대원수보(大元帥寶)’·‘원수지보(元帥之寶)’ 등의 국새를 제작, 사용하였다.

대한제국 국새

	寶名	寶鈕	재질	크기(cm)	서체	제작시기	사용처	유실 및 소장기관
1	大韓國璽	龍鈕	天銀鍍金	10	九疊篆	1897.9.19	國書	유실
2	皇帝之璽	龍鈕	天銀鍍金	10	九疊篆	1897.9.19	勳記	유실
3	皇帝之寶	龍鈕	天銀鍍金	12	小篆	1897.9.17	親任官勅旨	유실
4	皇帝之寶	龍鈕	玉	9.7	小篆	1897.9.19	親任官勅旨	국립고궁박물관
5	皇帝之寶	龜鈕	玉	12	小篆	1897.9.19	親任官勅旨	유실
6	制誥之寶	龍鈕	純金鍍金	11.7	小篆	1897.9.19	親任官勅旨	국립전주박물관
7	勅命之寶	龍鈕	純金鍍金	11.7	小篆	1897.9.19	親任官勅旨	유실
8	勅命之寶	龍鈕	天銀鍍金	9.7	小篆	1897.9.20	加資陞六勅旨詔勅	국립중앙박물관
9	欽文之璽	龍鈕	天銀鍍金	10	小篆	미상	御製鈐識頒賜書籍	유실
10	大元帥寶	龍鈕	天銀鍍金	8.6	小篆	1899.6.22	軍令	국립진주박물관

지정 대상 유물인 ‘황제지보(皇帝之寶)’는 대한제국이 성립된 이후 만들어진 3과의 ‘황제지보’ 가운데 하나이다. 이들 ‘황제지보’ 는 손잡이의 형태나 재질, 크기를 각각 달리하여 제작하였는데 모두 황제가 관리를 임명할 때 내리는 친임관칙지(親任官勅旨)에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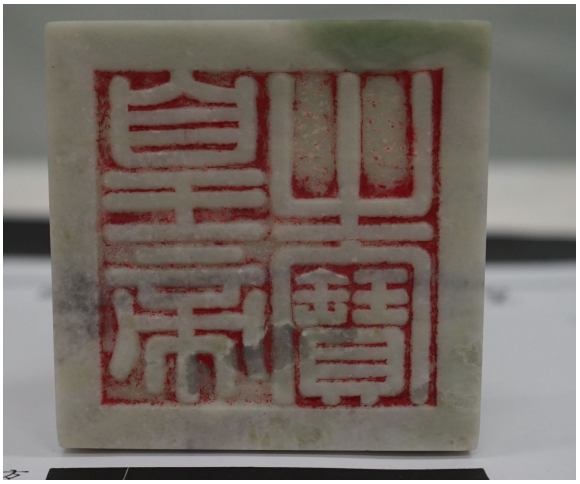

3과의 ‘황제지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대례의궤(大禮儀軌)』를 참조할 수 있다. 『대례의궤(大禮儀軌)』는 원구단에서 황제에 즉위한 것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기록한 의궤로 황제즉위를 요청하는 각종 상소를 포함하여 필요한 각종 옥새(玉璽)와 금보(金寶) 및 금책(金冊)의 제작 등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종합하여 완성한 책이다. 이를 통하여 ‘황제지보(皇帝之寶)’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皇帝之寶一顆
用南陽玉 方三寸四分 厚一寸三分 篆刻郭廣四分 上有
龍鈕 高二寸一分 廣二寸九分 龍頭長幷三寸二分 鈕臺
方二寸 厚三分(用禮器尺) 腹下有橫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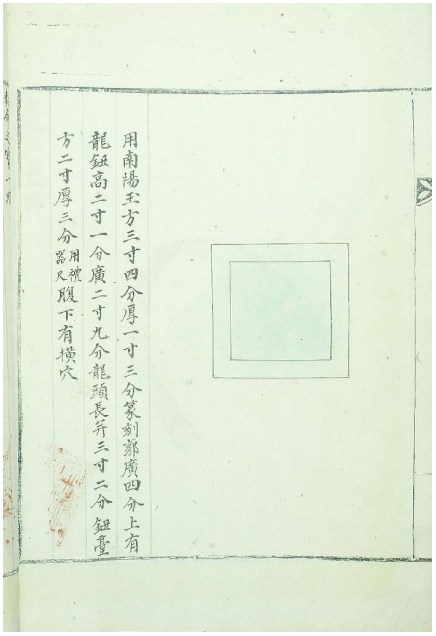

곧, 남양옥으로 만들어진 '황제지보'의 사방 너비는 3촌 4푼, 너비는 1촌 3푼이다. 인면의 곽광은 4푼으로 위에는 용뉴(龍鈕)가 있다. 용뉴의 높이는 2촌 1푼, 너비는 2촌 9푼이며, 용두(龍頭)의 길이는 3촌 2푼이다. 무게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실측 결과 1292.5(g)으로 확인되었다.

뉴(鈕)는 용 모양으로 부리부리한 눈과 큰 코, 갈기 등 사실적으로 만들어져있다.

'황제지보'의 보문(寶文)은 '皇帝之寶'로 자체는 '소전(小篆)'이며 배자(配字)는 세로로 2자씩 되어 있다. 인면은 외곽에 광곽을 두른 후 글자를 새겼는데 광곽은 넓고 글씨는 방정하다. 각 글자의 자경(字徑) 46.19mm이고, 필획의 굵기 5.47mm로 '유서지보'와 '준명지보'의 자경에 비교하여 굵은 획을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넓은 보곽(寶郭)과 깊게 새긴 고르고 윤택한 필획, 자간과 행간의 균등함, 정제되고 안정된 장법에서 나타나는 근엄함이 강조된 국새이다.

ㅇ 지정사례

보물 제1618호 〔대한제국 고종「황제어새」(大韓帝國 高宗「皇帝御璽」)〕(2009.09.02. 지정,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이 있다.

ㅇ 참고문헌

・成仁根, 『조선시대 印章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09.
・成仁根,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 國璽의 변화상」, 『역사와 실학』 제36집, 2008. 09.

·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조의 관인』, 2009. 11.
· 사맹해 저 곽노봉 역, 『印學史』, 다운샘, 2011. 09.
· 성인근, 「미국에서 환수한 조선왕실 인장문화재의 가치와 과제」, 『文化財』 제47권 제4호, 2014. 12.

안건번호 동산 2016-02-015

6. 유서지보(諭書之寶)

가. 검토사항

‘유서지보’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4년「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14.5.15),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환수문화재에 대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됨

○ 이와 관련, 국립고궁박물관장으로부터 환수문화재 ‘유서지보’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14.8.2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0.12)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유서지보(諭書之寶)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고궁박물관)
○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 수　　량: 1과(顆)
○ 규격(mm): 보신(寶身) 100.94×100.36
　　보뉴(寶鈕) 길이 110.39, 너비 63.97, 높이 41.51
　　전체 높이 69.41, 대고(臺高) 27.90
　　보곽(寶郭) 10.33
　　각 글자의 자경(字徑) 52.92, 필획 굵기 2.64
○ 중　　량: 3411.5g
○ 뉴 양 식: 거북(龜)
○ 보　　문: 유서지보(諭書之寶)
○ 재　　질: 금동(金銅)
○ 제작연대: 1876년(고종13)

라. 조사자 검토 의견

ㅇ

조선시대 왕명 문서에 찍혔던 수십 점의 국새는 대부분 유실되었고, 국왕의 서적 반사(頒賜)와 관련한 <선사지기(宣賜之記)>만 현존하였다. 이번 <유서지보>의 발견과 환수는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조선시대 국새 유물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하겠다.

현재 2009년 대한제국 시기의 <황제어새(皇帝御璽)>가 보물 제1618호로 지정되어 있지만, 조선시대의 국새로 지정된 것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지정 대상 유물인 <유서지보>는 다른 유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성과 제작 연대가 확실하고, 유전 경로가 확실하며, 자료적 가치가 높은 중요한 유물이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ㅇ

龜鈕形 金寶인 유서지보는 절도사 등의 임명장에 찍는 국새로서 1876년에 궁중의 寶와 印 총 11顆를 개주· 개조· 수보할 때 제작되었으며 『寶印所儀軌』에 크기, 재료, 형태까지 상세한 견양이 실려 있다. 이 금보와 황제지보의 제작에 참여한 寶匠 중 全興吉은 20년 이상 활동한 으뜸 장인이었다.

<유서지보> 역시 제작년대 및 배경, 크기, 재료 등이 의궤에 실려 있는 점, 국왕의 인장 중 절도사 등의 임명장에 찍는 행정용 국새로서 역사성이 있는 점, 왕실 금속공예라는 공예사적 의미와 환수문화재라는 상징성까지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하는 것이 옳겠다.

ㅇ

지정 대상 유물인 '유서지보(諭書之寶)'는 '유서(諭書)'에 사용되었던 국새로서 2014년 4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하여 반환된 국새(國璽)와 어보(御寶) 9종 가운데 1점이다.

조선시대의 국새로 지정된 것은 현재 없으나, 지난 2009년 대한제국기의 「황제어새(皇帝御璽)」가 보물 제1618호로 지정되어 관련 유물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조선시대 왕명 문서에 찍었던 국새는 상당수 유실되었으나 이번에 환수된 '유서지보(諭書之寶)'를 통하여 문헌에 기록된 '새보(璽寶)'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유서지보'는 다른 유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성(唯一性) 그리고 제작 당시의 역사상을 살필 수 있고, 공예사적으로도 제작 연대가 뚜렷하여 다른 자료들과 상대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은 중요한 유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보 류

조사보고서

□

○ 현　　상

조선왕조(1392-1897)와 대한제국(1897-1910) 시기 국가에서 제작한 공인(公印)은 각종 국가의례에서 사용한 어보(御寶), 실제 어명을 내리는 데 사용한 인장인 국새(國璽), 각종 관청에서 발급한 행정용 인장인 관인(官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의례용 어보는 왕비・왕세자・왕세자빈 등을 해당 지위에 임명하고, 왕의 공덕을 찬양하거나 그 통치를 종합・재평가하는 의식에 사용되었다. 여기에는 책봉호(冊封號)・시호(諡號)・존호(尊號)・묘호(廟號)와 같은 존귀한 이름을 새겼는데, 이러한 어보는 사후 종묘 신실(神室)에 신위(神位)와 함께 모셨다.

이 중에서 국가의례에 사용했던 어보와 왕실과 국가의 업무에 사용했던 국새가 가장 대표적인 인장이다. 이들 인장은 왕권과 국가적 존엄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제작에서 관리까지 엄격한 법식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한제국이 한일 강제병합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이어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문화재가 국외로 불법 반출되는 와중에 이들 인장의 일부도 같은 운명을 겪었다.

한국전쟁 때 참전했던 미군이 덕수궁에서 불법으로 반출한 인장에 대해 2013년 10월 21일 문화재청이 외교부・대검찰청을 경유하여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수사 요청을 하였고, 2013년 11월 18일 HSI는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을 압수하였다. 2014년 3월 한미 문화재청과 양국 국회의원 및 국내외 민간단체 등이 조기 반환 여론을 조성하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일정에 맞추어 2014년 4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계되었다.

당시 인계한 인장은 모두 9점으로 국새 3점(<皇帝之寶>・<諭書之寶>・<濬明之寶>), 어보 1점(<壽康太王帝寶>), 보소당(寶蘇堂)의 인장 5점(<友天下士>・<雙螭>・<春華>・<硯香>・<香泉審定書畵之記>) 등이 있는데, <유서지보>는 국새 3점 중의 하나이다.

현재 귀갑 등 일부에서 금도금이 벗겨졌고, 보수(寶綬)는 없어졌으며, '寶'자에서 '缶' 부분에 보수의 흔적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보존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ㅇ 내용 및 특징

유서지보(諭書之寶)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

국새는 국왕이 국가를 통치하는 데에 사용했던 인장을 말한다. 왕위의 선양이나 외교 실무 등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문서에 날인하였던 것으로 국가 최고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상징하였다. 조선왕조 시대에는 국왕이 중국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을 때 임명장인 고명(誥命)과 함께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을 수여받아 이를 중국과의 외교문서에 사용하였고, 즉위식에서 후계왕에게 승계하였다. 또한 책봉 등의 업무를 위한 <국왕행보(國王行寶)>, 왕의 명령서인 유서(諭書)에 날인하기 위한 <유서지보(諭書之寶)> 등의 국새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는 자주국으로서 <황제지보(皇帝之寶)> 등 국새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국새는 황제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보뉴(寶鈕)를 용뉴(龍鈕)로 제작하였다.

국새는 국가최고통치자의 인장인 동시에 국가의 상징이다. 국새라는 용어는 삼국

시대부터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동일한 개념으로 쓰인다. 한반도에서 국새를 사용한 기록은 고구려로부터 보이고, 삼국시대에는 국새를 대보(大寶)·국새(國璽) 등으로 불렀으며, 고려시대에는 국새(國璽)·국인(國印)·어보(御寶)·새보(璽寶) 등 다양한 용례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새(璽)와 보(寶)를 왕실 인장의 대명사로 사용하였으나 국새(國璽)와 대보(大寶)만은 국가를 상징하는 인장의 의미로 한정하였다. 조선시대의 국새는 국왕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며, 주로 외교문서에 사용하였다. 또한 왕위 계승 시에는 전국(傳國)의 징표로 전수하였으며, 국왕의 각종 행차 시에는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행렬의 앞에서 봉송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명·청나라로부터 각각 3차례 국새를 받았다. 1636년 병자호란 이후에는 청나라에서 사여한 국새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숙종 때 명나라에서 사여한 옛 국새의 자취를 찾아 별도로 모조하여 비장해 두고 왕위 계승 때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명·청나라로부터 받은 외교용 국새 이외에 국왕이 발행하는 각종 문서에 사용할 국새를 국내에서 자체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세종 때 중원의 제도를 모방하여 국새로 대체한 <국왕행보(國王行寶)>·<국왕신보(國王信寶)> 등을 제작하여 국왕 문서에 사용하였다. 이후 교명·교서·교지를 비롯하여 과거(科擧) 관계의 문서, 유서(諭書), 서적의 반사 등 각각의 용도에 따라 국새를 달리하였다.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황제국에 걸맞은 새로운 국새를 10점 제작하였다. 왕실인사의 호칭이 변경됨에 따라 태후·황후·황태자·황태자비의 어보도 함께 제작하였다. 당시 제작된 국새는 1점을 제외한 모든 국새의 보뉴(寶鈕)가 귀뉴(龜鈕)에서 용뉴(龍鈕)로 바뀌었고, 보문(寶文)은 인(印)에서 새(璽)·보(寶)로 대체하였다. 서체도 기존의 복잡한 구첩전(九疊篆)에서 대부분 간명한 소전(小篆)으로 바뀌었다.

<유서지보>는 조선시대 국왕의 명령서인 유서(諭書)에 날인하여 사용한 인장으로 세종 대에서부터 고종 대까지 사용되었으며, 대한제국 시대에는 <칙명지보(勅命之寶)>로 바뀌었다. 유서(諭書)는 조선시대에 국왕이 군사권을 가진 관원에게 내렸던 문서로 각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찰사·절도사·방어사·유수 등에게 왕과 해당 관원만 아는 밀부를 내리면서 함께 발급한 명령서를 말한다. 이외에 국왕이 관찰사 및 어사가 올린 장계 및 계본(啓本) 등을 참고하여 공적이 있는 지방 관원을 포상할 경우에 발급한 포상유서(褒賞諭書), 국왕이 왕족 및 관원과 일반 백성을 훈유(訓諭)하거나 효유(曉諭)할 때 발급한 훈유유서(訓諭諭書)와 국왕이 지방에 있는 관원을 서울로 부르는 경우 등에도 발급하였다. 이러한 모든 유서에는 국새인 <유서지보>를 찍도록 법전에 규정하였다.

<유서지보>를 처음 제작한 시점은 『세종실록』, 「오례(五禮)」의 대가노부(大駕鹵簿)·법가노부(法駕鹵簿)에서 처음 보인다. 즉 국왕의 각종 행차 때 행렬에서 기타 국새들과 함께 봉송한 것이다. 1444년(세종 26)에 정식(鄭軾)에게 내린 유서에 <유서지보>가 찍혀 있어 실존 문서로서의 상한선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유서지보>는 소전(小篆)으로 제작하였고, 이후 1459년에 새로운 <유서지보> 제작 기록은 『연산군일기』에서 "<유서지보>의 크기는 <시명지보>에 의해 새로 제조하되, 은을 바탕으로 삼아 금을 도금하라[諭書之寶大小, 依施命之寶新造, 以銀爲質, 而鍍金]."(연산군 1년 5월 16일 戊戌)라고 한 데에서 보인다. 이는 남겨진 여러 문서를 통해 구첩전(九疊篆)으로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지정 대상 유물인 <유서지보>는 1876년(고종 13)에 제작하였음을 왕실 인장의 개수(改修) 및 개조(改造)에 대한 구체적 기록인 『보인소의궤(寶印所儀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한제국 시기에 제작한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유서지보>의 형제(形制)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諭書之寶 銅鍍金
方三寸六分 臺高一寸 龜鈕長四寸 廣二寸 高一寸八分 刻深一分 郭廣三分半 安於諭書奉安大內

즉, <유서지보>는 청동에 금을 도금한 것으로 사방 3촌 6푼(실측 : 寶身 100.94×100.36mm), 받침대의 높이는 1촌, 귀뉴의 길이는 4촌으로 너비는 2촌이고 높이는 1촌 8푼(실측 : 寶鈕의 길이는 110.39mm, 너비는 63.97mm, 높이는 41.31mm), 새김 깊이는 1푼, 보곽의 너비는 3푼 반(실측 : 寶郭 10.33mm)으로 유서에 안보하여 궁전에 안치하였다.

실측한 <유서지보>의 무게는 3411.5g이었고, 보뉴(寶鈕)는 귀뉴(龜鈕)로 임진왜란 이후 만들어진 어보에서 많이 보이는 부리부리한 눈과 코, 송곳니와 갈기가 조작되는 등 용두를 닮은 형상을 하고 있다. 귀두는 목이 길고 하늘 높이 치켜올린 형태를 하고 있다. 귀갑과 귀갑문대는 2조의 음각선으로 장식하였다.

서체는 구첩전(九疊篆)으로 이를 또한 첩전(疊篆) 혹은 상방대전(上方大篆, 一作尙方大篆)이라고도 한다. 한인(漢印)의 인문(印文)에서 필획이 적은 글자는 구불거리면서 가득 채워 쓰는 법이 있었다. 송나라 이후 관인은 이러한 필법을 점차 많이 운용하여 크게 발전시켰다. 이후 다시 구첩전이란 명칭이 있었는데, 필획을 구불거리면서 선회하며 가면 갈수록 더욱 세밀하였다. 이는 각 글자를 모두 9번 겹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6번·7번·8번에서 때로는 10번 혹은 그 이상 겹치게 하는 것도 있다. '구첩전'이란 명칭은 꺾고 겹쳐서 여러 층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취한 것이다.

보면(寶面)에서 보문(寶文)의 각 글자 자경(字徑)은 52.92mm이고, 필획의 굵기는 26.4mm이며, 주문인(朱文印)이다. 4글자를 세로로 2글자씩 분포하고, 보곽(寶郭)은 넓게 하여 엄숙하고 장엄함을 나타내었다. 필획은 고르고 균등하며, 기필·수필은 모두 원필로 처리하여 부드러우면서도 혼후함을 나타내었다. 글자마다 대칭을 이루고, 가로획과 세로획이 만나는 전절 부분은 모두 모나게 꺾어 방정하

면서도 굳센 힘을 나타내었다. 도법은 충도법(衝刀法)을 주로 삼으면서 절도법(切刀法)으로 수식을 가해 둥글고 윤택하며 고른 필획을 나타내었다. 장법은 각 글자를 정방형의 형태로 고르게 포치하여 평정하면서도 안정감을 나타내었다. 특히 필획이 적은 '之'자는 구첩전을 운용하여 좌우의 빈 공간을 가득 채워 포만감이 나타나도록 하였고, '書'자에서 '曰'의 좌우에 두 개의 세로획을 세움과 동시에 '寶'자에서 '貝'의 마지막 두 개의 필획은 가로획으로 처리하여 안정감이 나타나게 처리하였다. 또한 '諭'자에서 '言'의 가운데 두 개의 세로획에서 왼쪽 윗부분을 조금 안으로 들여 '之'자와 경계를 이루고 구별하도록 한 것은 교묘한 솜씨라 하겠다. 비록 '寶'자에서 '缶'의 윗부분에 보수의 흔적이 보이지만, 전혀 손색이 없다. 전체적으로 넓은 보곽(寶郭)과 깊게 새긴 고르고 윤택한 필획, 자간과 행간의 균등함, 정제되고 안정된 장법에서 나타나는 근엄함과 그윽함은 국새의 전형적인 작품이라 하겠다.

ㅇ 지정사례

보물 제1618호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皇帝御璽)>(2009년 9월 2일 지정, 국립고궁박물관 소장)가 있다.

ㅇ 참고문헌

・成仁根, 「조선시대 印章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09.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조의 관인』, 2009. 11.
・사맹해저 곽노봉역, 『印學史』, 다운샘 2011. 09.
・성인근, 「미국에서 환수한 조선왕실 인장문화재의 가치와 과제」, 『文化財』 제47권 제4호, 2014. 12.

□

ㅇ 내용 및 특징

환수된 국새 3점 중 제작년대가 가장 이른 유서지보는 관찰사・ 절도사・ 방어사 등이 임지로 부임할 때 내리는 국왕의 명령서인 諭書에 날인하는 인장이다.(도7, 8) 유서지보는 조선 세종 이후 고종 대까지 사용했으며, 대한제국시기에는 勅命之寶로 명칭이 바뀌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유서지보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연산군 1년(1495년) 5월에 "유서지보의 크기를 施命之寶에 의하여 새로 제조하되, 은 바탕에 금을 올리라."하였다.[24] 同年 6월에는 "전자에 내린 諭書는 유서라는 글자를 圓篆으로

24) 『燕山君日記』 5권 5월16일(戊戌), "諭書之寶大小, 依施命之寶新造, **以銀爲質, 而鍍金.**".

새긴 옥보였었는데, 이제 유서지보라는 네 글자로 고쳐서 曲篆으로 새긴 金寶로 되었으니..."라 하였다.[25] 즉 연산군 1년에 옥보였던 유서를 유서지보로 바꾸고 크기는 시명지보에 준하여 은으로 주조한 후 도금한 금보로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유서지보는 고종 13년(1876)에 궁중의 寶와 印 총 11顆를 改鑄· 改造· 修補할 때 제작한 것으로『寶印所儀軌』에 견양이 기록되어 있다.(도9) 대한제국 때는 칙명지보로『대례의궤』서두에 황제지보와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금제 1과와 天銀에 도금한 1과, 총 2과를 금보로 제작했다.(도1)

동으로 주조한 후 금도금한 龜鈕形 금보인 유서지보는 예기척을 써서 각 부분의 크기를 정했는데『보인소의궤』와『보인부신총수』에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도10), [표2 참조] 이를 현대식 cm로 환산한 환산치와 실제 유서지보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현재의 총고는 9.4cm, 보신은 각 변 10cm 정도, 대좌 높이 2.79cm, 인면 보곽 1.03cm, 자경 약 5.3cm 크기이다.

표2. 유서지보 크기에 관한 문헌 비교

분류	『寶印所儀軌』(1876)	『寶印符信總數』(1900~1907)	환산치cm
크기	諭書之寶銅鍍金龜鈕 以銅改鑄方三寸六分高一寸郭三分半龜長四寸廣二寸高一寸八分 用禮器尺腹下有橫穴全體幷鍍黃金	諭書之寶 銅鍍金 方三寸六分臺高一寸龜鈕長四寸廣二寸高一寸八分刻深一分郭廣三分半安於諭書奉安大內	한 변 10.3 臺高 2.9 龜鈕: 길이 11.5 頭高 5.2 폭 3.7

재료는『보인소의궤』,〈諭書之寶一顆所入〉에 "銅寶一顆改鑄後從入次 鍍黃金三錢 水銀二兩錢 汗音黃銀五錢五分 硼砂二錢 砒礵一錢 黃蜜一錢五分"라 적혀있어 황밀로 모형을 만들고, 동으로 주조 후 구뉴와 받침을 은땜하여 형태를 만든 후 수은도금을 입혔음을 알 수 있다.[26]『보인소의궤』에는 총 11과의 보, 인을 제작에 寶匠으로 참여한 장인들은 全興吉, 安順祿, 閔祥浩, 石漢鼎이었으며, 전홍길은 1897년의『대례의궤』에도 수석 장인으로 등장하는 이름난 보장이었다.

유서지보의 구뉴는 네발로 굳건하게 땅을 짚고 생동감 있는 얼굴을 든 모습인데, 부드러운 이중 음각선으로 표현된 등의 귀갑문, 날카로운 발톱과 다리의 비닐이 비교적 사실적인 느낌을 준다. 배 부분에는 매듭끈을 끼우는 구멍이 뚫려있고, 인면에는 붉은 인주가 많이 남아있다. 보존상태는 사용빈도가 높았는지 또는 傳世 과정에서 손때가 탔는지 도금이 많이 벗겨진 편이고 드러난 동 本色은 黑化

25)『燕山君日記』6권 6월14일(乙丑), "命鑄金寶, 篆曰 諭書之寶 諭于八道觀察使曰, 前降諭書用諭書二字, 圓篆玉寶. 今改諭書之寶四字, 曲篆金寶, 卿其知悉.".

26) 비상은 주조된 구뉴의 표면 피막을 제거하고 도금전에 표면의 탈지를 위해 사용한다.

되었으며, 받침에도 굵힌 자국이 남아있다. 또한 '寶'자를 보면 주조할 때 결락된 부분도 있고, 주성 후에 銼로 갈아낸 흔적도 보인다.[27](도11)

이러한 유서지보 역시 제작년대 및 배경, 크기, 재료 등이 의궤에 실려 있는 점, 국왕의 인장 중 절도사 등의 임명장에 찍는 행정용 국새로서 역사성이 있는 점, 왕실 금속공예라는 공예사적 의미와 환수문화재라는 상징성까지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하는 것이 옳겠다.

[도판]

도7. 유서지보, 금동, 1876년(고종13)

도8. 유서지보의 인문

27) 『보인소의궤』, 〈寶匠所用〉,"大執介 小執介 圓銼 細銼 助(+乙)伊銼各一箇 廣銼 小廣銼 大銼 小銼各二個 小乭伊四箇 釘十五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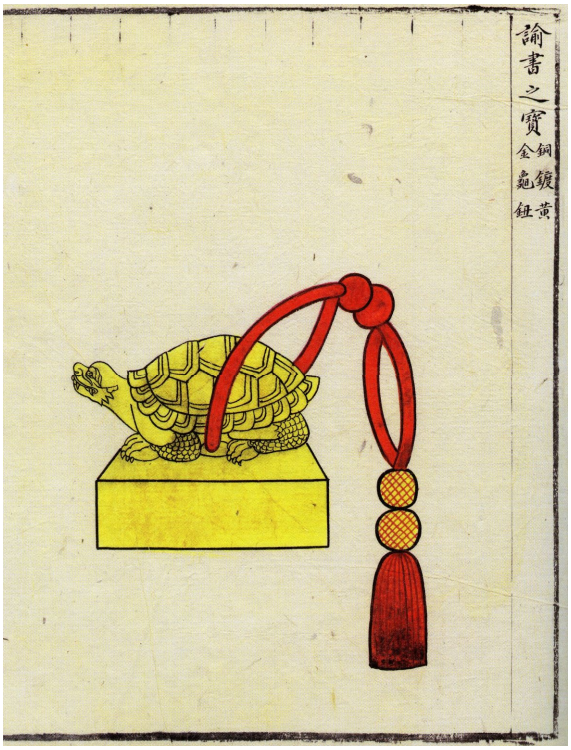

도9. 『寶印所儀軌』에 기록된 유서지보

도10. 『寶印符信總數』에 기록된 유서지보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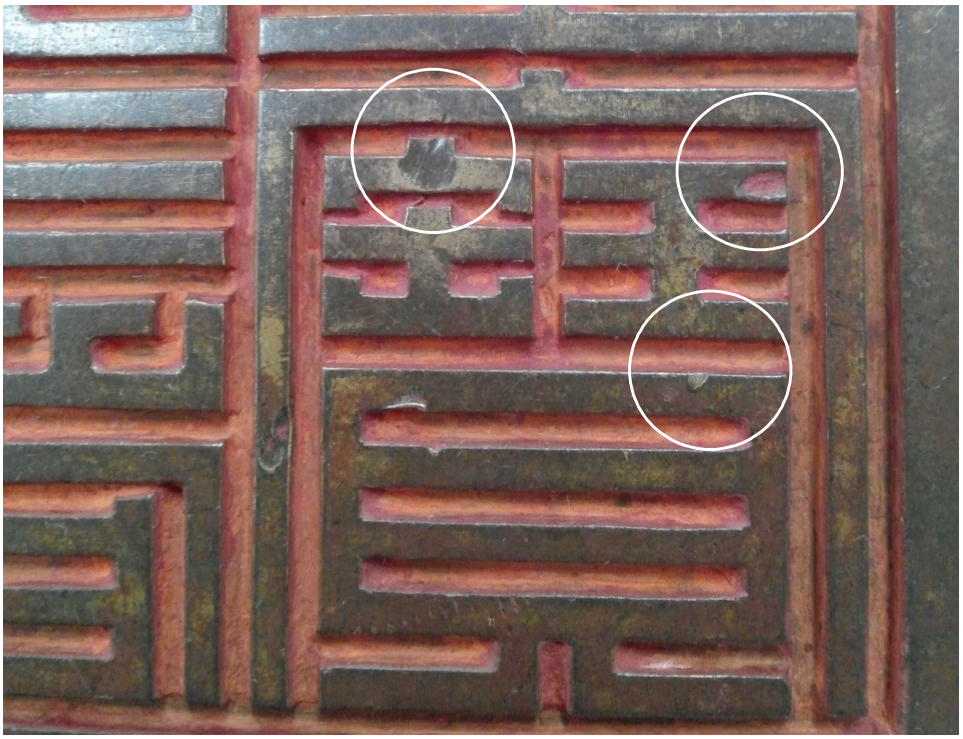

도11. 유서지보 인문의 세부(줄질, 鑄成시 결락 흔적)

ㅇ 참고문헌

『大禮儀軌』, 1897
『寶印所儀軌』, 1876
『寶印符信總數』, 1900~1907
『李朝璽寶印押符信制』, 1910~1915

□

ㅇ 현　　상

2014년 4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하여 반환된 국새(國璽)와 어보(御寶) 그리고 조선왕실의 인장 등 9점〔황제지보(皇帝之寶), 수강태황제보(壽康太皇帝寶), 유서지보(諭書之寶), 준명지보(濬明之寶), 향천심정서화지기(香泉審定書畵之記), 우천하사(友天下士), (雙螭), 춘화(春華), 연향(硯香)〕 가운데 하나이다.

6·25전쟁 때 참전했던 미군이 덕수궁에서 불법으로 반출했다가 문화재청의 수사요청에 따라 대검찰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서 서로 수사를 도와 압수한 것이다.

현재 귀갑 등 일부에서 금도금이 벗겨졌고, 인끈〔寶綬〕도 없어진 상태이나 전반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유서지보>

<보인부신총수>

<실제 사진>

ㅇ 내용 및 특징

국새(國璽)는 국권의 상징으로 국가적 문서에 사용되던 인장(印章)을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국인(國印)·새보(璽寶)·어보(御寶)·대보(大寶)라 하여 왕의 인장이 국새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국왕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대·교린의 외교 문서 및 왕명으로 행해지는 국내 문서에 사용되었다. 또한 왕위 계승 시에는 전국(傳國)의 징표로 전수되었다. 또, 왕의 각종 행차 시에는 그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행렬의 앞에서 봉송되기도 하였다.

새보(璽寶)의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역대 제왕(帝王)의 옥새와 옥보의 제도[璽寶之制]는 한(漢)나라 때에는 6옥새[璽], 당(唐)나라 때에는 8옥새, 송(宋)나라 때에는 8옥새를 일에 따라 사용하였사온데, 당나라의 신새(神璽)·송나라의 진국신보(鎭國神寶)와 같은 것은 중국을 진안(鎭安)하는 중보(重寶)로서 간직하여 두고 쓰지 않았사오나, 그 신새(信璽)와 신보(信寶)는 사신(事神) ·발병(發兵)등의 일에 쓰였고, 행새(行璽)와 행보(行寶)는 봉국(封國)·책봉(冊封) 등의 일에 쓰였사오며, 기타 새보의 글[璽寶之文] 내용과 용도는 시대에 따라 각각 같지 않았사온데, 우리 나라는 중국 황제가 보내 준 대보(大寶)의 글에, '조선 국왕(朝鮮國王)' 이라고 청하였사오니, 이는 국내의 보통 일에 쓰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바라옵건대, 옛 제도에 따라 국왕의 신보(信寶)를 부어 만들어서 사신(事神)·교유(敎宥)·공거(貢擧) 등의 일에 쓰게 하옵시고, 국왕의 행보(行寶)도 만들어 책봉(冊封)·제수(除授) 등의 일에 쓰게 하옵시며, 그 황제가 보내 준 대보(大寶)는 사대 문서(事大文書)에만 쓰시고 그 밖에는 쓰지 마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0월 12일 정유 5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이같이 세종대에는 중국 황제가 보내 준 대보(大寶) 외에 국왕의 신보(信寶)는 사신(事神)·교유(敎宥)·공거(貢擧) 등의 일에 쓰고, 국왕의 행보(行寶)는 책봉(冊封)·제수(除授) 등의 일에 사용하였는데 이듬해인 세종 15년 3월에 행보(行寶)와 신보(信寶)를 주조하였다. 기록에는 새보의 재질과 무게 그리고 보문(寶文)이 무었인 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행보(行寶)와 신보(信寶)가 이룩되었다. 예전에 전국보(傳國寶)가 있었는데, 그 보문(寶文)에는 '국왕 신보(國王信寶)'라고 새겼다. 임금이 집현전에 명하여 옛 제도를 상고하여 이 두 보(寶)를 고쳐 만들게 하였는데, 그 제도는 한결같이 흠사대보(欽賜大寶)에 의하여 모두 금을 쓰고, 신보의 무게는 1백 64냥이고, 행보의 무게는 1백 76냥이었다. 신보의 글은 '국왕 신보(國王信寶)'이고, 행보의 글은 '국왕 행보(國王行寶)'인데, 신보는 사신(事神)·교유(敎宥) 등의 일에 쓰고, 행보는 책명(冊命)·제수(除授) 등의 일에 쓰며, '흠사대보'는 사대 문서(事大文書)에만 썼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3월 2일 을묘 2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그러나 이같은 행보(行寶)와 신보(信寶)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세종 25년에 이르러 그 사용처에 맞춘 인(印)을 다시 검토하여 용도에 맞는 국새들이 제작되었다.

의정부에서 예조(禮曹)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일찍이 황제(皇帝)께서 준 대보(大寶)의 글귀에, '조선 국왕(朝鮮國王)'이라 일컬어서 경내(境內)의 범상한 일에 쓰기가 마땅치 않으므로, 국왕 신보(國王信寶)를 만들어서 사신(事神)·사유(赦宥)·공거(貢擧) 등의 일에는 이를 쓰게 하고, 국왕 행보(國王行寶)를 만들어서 책봉(冊封)·제수(除授) 등의 일에도 이를 쓰게 하며, 황제가 준 대보(大寶)는 사대문서(事大文書) 이외에는 간직하여 두고 쓰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참상(慘祥)하건대, 행보(行寶)·신보(信寶)는 경내에서 쓴 것인데도 그 글에 아울러 국왕이라고 일컬었으니, 특히 뜻[意]이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 예전에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글을 만들었는데, 삼가 경전(經傳)을 상고하면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명고(命誥)를 사방에 베푼다.' 하였고, 《국어(國語)》에 말하기를, '말은 신(信)을 밝히[昭]는 것이라.' 하였으니, 마땅히 이 뜻을 취하여 행보(行寶)를 시명지보(施命之寶)로 고치고, 신보(信寶)를 소신지보(昭信之寶)로 고치어, 시명지보는 책봉(冊封)·제수(除授), 보통 행하는 교서(敎書) 등의 일에 쓰고, 소신지보는 신명(神明)을 섬기고 군사를 발하고 물건을 주는 등 일에 쓰오면, 거의 명령을 행하고 신(信)을 보이는 뜻에 합할 것입니다. 또 종전에는 행보(行寶)·신보(信寶)를 과거보는 사람의 권자(卷子)에 쓰고 승지(承旨)가 신봉함(臣封緘)이라고 일컬었는데, 이제 친히 압인(押印)하고 제봉(題封)하면서 인문(印文)은 다 고치었으니 공거(貢擧)에 쓰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바라옵건대, 과거(科擧)의 인(印)을 따로 만들어서 승지(承旨)로 하여금 신봉함(臣封緘)이라 일컫고 상서원(尙瑞院)에 간직하여 두고서 전시(殿試)에만 쓰게 하면 참으로 사의(事宜)에 합할 것입니다."

［세종실록 102권, 세종 25년 10월 2일 계미 2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곧 예조와 의정부에서 행보(行寶)를 '시명지보(施命之寶)'로 고치고, 신보(信寶)를 '소신지보(昭信之寶)'로 고치어, '시명지보'는 책봉(冊封)·제수(除授), 보통 행하는 교서(敎書) 등의 일에 쓰고, '소신지보'는 신명(神明)을 섬기고 군사를 발하고 물건을 주는 등 일에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을 검토하였다. 또한 과거(科擧)의 인(印)을 따로 만들 것도 제시하였다.

한편 유서(諭書)에 찍는 '유서지보(諭書之寶)'의 사용도 이미 세종대에는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세종실록』 132권 「오례」의 내용 가운데 조칙(詔勅)을 맞이할 때와 사직(社稷)과 종묘(宗廟)에 친히 제향(祭享)할 때에 움직이는 대가

(大駕)의 의물(儀物)을 설명하는 과정에 유서지보(諭書之寶)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대가(大駕)를 인도하는 것은 맨 먼저 부령(部令), 【당부(當部)의 영(令). 】 다음은 판한성(判漢城), 그 다음은 예조 판서(禮曹判書), 그 다음은 호조 판서(戶曹判書), 그 다음은 대사헌(大司憲), 그 다음은 병조 판서(兵曹判書)이고, 【장관(長官)이 사고가 있으면 차관(次官)이 하게 된다. 】 그 다음은 시위군(侍衛軍) 8대(隊)이니, 제1대는 50인으로서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검(劍)을 차는데, 그 2인은 장검(長劍)을 쥐고 좌우(左右)로 나누어 서서 앞서 가고, 그 다음의 1인은 백기(白旗)를 쥐고 중앙에 있고, 그 다음의 1인은 둑(纛)을 쥐고 백기(白旗)의 뒤에 있고, 그 다음의 1인은 고(鼓)를 쥐고 왼편에 있고, 1인은 금(金)을 쥐고 오른편에 있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반주창(半朱槍)을 쥐고 가는데, 호군(護軍)이나 혹은 진무(鎭撫) 1인이 무기(武器)와 제복을 갖추고 이들을 영솔(領率)한다. 여러 대(隊)들도 이에 준한다. … …

다음은 우군 8대이니, 제1은 호용(虎勇) 2대, 제2는 호분(虎賁) 2대, 제3은 호익(號翼) 2대, 제4는 호아(虎牙) 2대이며, 그 다음은 중군 4대이니, 제1은 충무(忠武) 2대, 제2는 충좌(忠佐) 2대이다. ……

다음은 육정기(六丁旗)252) 가 좌우로 나누어 서는데, 주작기가 중앙에 있고, 다음은 백택기(白澤旗) 2개가 좌우로 나누어 서는데, 고명(誥命)이 중앙에 있다. 【싣는 말이 1필인데, 화전(畫氈)253) 으로써 이를 덮고, 서리(書吏) 2인이 좌우에서 잡고 부축하며, 보마(寶馬)도 이와 같다. 길 인도하는 사람[引路] 10인이 청의에 자주색 두건[紫巾]을 착용하고 앞서 간다. 】 대보와 시명보(施命寶)·유서보(諭書寶)·소신보(昭信寶)가 각각 1개씩 차례대로 가고, 상서 소윤(尙書少尹) 1인과 승(丞)·주부(注簿)·직장(直長)·녹사(錄事) 각각 2인씩이 이를 뒤따른다. …… 이하 생략

〔『세종실록』, 「오례(五禮)」 대가노부(大駕鹵簿)·법가노부(法駕鹵簿)〕

즉 국왕의 각종 행차 때 행렬에서 기타 국새들과 함께 봉송한 것이다. 1444년(세종 26)에 정식(鄭軾)에게 내린 유서에 '유서지보'가 찍혀 있어 실존 문서로서의 상한선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유서지보'는 소전(小篆)으로 제작하였고, 이후 1459년에 새로운 '유서지보' 제작 기록은 『연산군일기』에서 " '유서지보'의 크기는 '시명지보'에 의해 새로 제조하되, 은을 바탕으로 삼아 금을 도금하라[諭書之寶大小, 依施命之寶新造, 以銀爲質, 而鍍金]."(연산군 1년 5월 16일 戊戌)라고 한 데에서 보인다. 이는 남겨진 여러 문서를 통해 구첩전(九疊篆)으로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이외에 여러 가지 특수 목적의 어보들이 사용되었다. 서적을 반포, 하사할 때 쓰는 '선사지기(宣賜之記)'·'선황단보(宣貺端輔)'·'동문지보(同文之寶)',

왕이 지은 글에 찍는 ‘규장지보(奎章之寶)’, 각신(閣臣)의 교지에 쓰는 ‘준철지보(濬哲之寶)’ 등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세자시강원 관원의 교지에 쓰는 ‘준명지보(濬明之寶)’가 있으며, 기타로 ‘흠문지보(欽文之寶)’·‘명덕지보(明德之寶)’·‘광운지보(廣運之寶)’ 등이 있었다.

이후 1894년 갑오경장 후에는 중국과의 사대 관계를 종식함으로써 이전의 대보를 폐지하고,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와 ‘대조선대군주지보(大朝鮮大君主之寶)’를 제작해 사용하였고, 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대한국새(大韓國璽)’·‘황제지새’·‘황제지보’·‘칙명지보(勅命之寶)’·‘제고지보(制誥之寶)’·‘시명지보(施命之寶)’·‘대원수보(大元帥寶)’·‘원수지보(元帥之寶)’ 등의 국새를 제작, 사용하였다.

지정 대상 유물인 ‘유서지보(諭書之寶)’는 ‘유서(諭書)’에 사용되었던 국새이다. ‘유서’는 국왕이 군사권을 가진 관리에게 왕명을 내릴 때 ‘밀부(密符)’와 함께 발급한 명령서 외에도 국왕이 왕족 및 관원 그리고 일반 백성을 훈유(訓諭)할 때에 발급하는 ‘훈유유서(訓諭諭書)’, 관찰사 및 어사가 올린 장계(狀啓) 및 계본(啓本)을 참고하여 공적이 있는 관리를 포상할 경우에 발급하는 ‘포상유서(褒賞諭書)’ 등이 있다. 이같은 모든 유서에 국새인 ‘유서지보’를 사용하도록 법전에 규정하였다.

이번에 환수된 ‘유서지보(諭書之寶)’는 『보인소의궤(寶印所儀軌)』를 통하여 1876년(고종 13)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76년 11월 8일의 전교에서 “궁중의 보와 인이 닳았으므로 무위소(武衛所)와 호조가 그 개주·개조·수보를 거행하라”는 왕명이 있었다. 당시 개주된 보인은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대조선국주상지보(大朝鮮國主上之寶)’·‘조선왕보(朝鮮王寶)’·‘위정이덕(爲政以德)’·‘소신지보(昭信之寶)’·‘시명지보(施命之寶)’·‘유서지보(諭書之寶)’·‘과거지보(科擧之寶)’·‘선사지기(宣賜之記)’·‘무위소(武衛所)’·‘왕세자인(王世子

印)' 등인데, 해당 유물은 그 중 하나이다. 1876년 이전 사용되었던 '유서지보'는 세종대에 처음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1459년(연산군 1)에는 새롭게 주조하였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조사 유물인 '유서지보(諭書之寶)'의 규격을 『보인소의궤』를 통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諭書之寶 銅鍍金
方三寸六分 臺高一寸 龜鈕長四寸
廣二寸 高一寸八分 刻深一分 郭廣
三分半 安於諭書奉安大內

곧, 동도금한 '유서지보'의 사방 너비는 3촌 6푼(실측:100.94×100.36㎜), 대좌의 높이는 1촌〔실측:27.90㎜〕, 거북 모양의 뉴는 길이는 4촌, 너비는 2촌, 높이는 1촌 8푼(실측:길이110.39㎜, 너비63.97㎜, 높이41.31㎜)이었다. 또한 새김 깊이는 1푼, 보곽의 너비는 3푼반〔실측:10.33㎜〕이었다. 무게는 3411.5(g)이다.

뉴(鈕)는 거북 모양으로 임진왜란 이후 만들어진 어보에서 많이 보이는 부리부리한 눈과 큰 코, 송곳니와 갈기가 조각되는 등 용두를 닮은 형상으로 되어 있다. 또한 귀두는 목이 길고 하늘 높이 치켜 올린 형태를 갖고 있다. 귀갑과 귀갑문대는 2조의 음각선으로 장식하였다.

'유서지보(諭書之寶)'의 보문(寶文)은 '諭書之寶'로 자체(字體)는 '구첩전(九疊篆)'이며 배자(配字)는 세로로 2자씩 되어 있다. 인면은 외곽에 광곽을 두른 후 글자를 새겼는데 글자 새김이 깊고 획이 방정한 편이다. 보문(寶文)의 각 글자 자경(字徑)은 52.92mm이고, 필획의 굵기는 26.4mm이다.

ㅇ 지정사례

보물 제1618호 〔대한제국 고종「황제어새」(大韓帝國 高宗「皇帝御璽」)〕(2009.09.02. 지정,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이 있다.

ㅇ 참고문헌

- 成仁根, 『조선시대 印章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09.
- 成仁根,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 國璽의 변화상」, 『역사와 실학』 제36집, 2008. 09.
-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조의 관인』, 2009. 11.
- 사맹해 저 곽노봉 역, 『印學史』, 다운샘, 2011. 09.
- 성인근, 「미국에서 환수한 조선왕실 인장문화재의 가치와 과제」, 『文化財』 제47권 제4호, 2014. 12.

안건번호 동산 2016-02-016

7. 준명지보(濬明之寶)

가. 검토사항

‘준명지보’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4년「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14.5.15),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환수문화재에 대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됨

○ 이와 관련, 국립고궁박물관장으로부터 환수문화재 ‘준명지보’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14.8.2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0.12)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준명지보(濬明之寶)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고궁박물관)

○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 수　　량: 1과(顆)

○ 규격(mm): 보신(寶身) 88.08×88.46,　높이 28.30
보뉴(寶鈕) 길이 113.15 , 너비 67.77, 높이 41.13
전체 높이 69.43, 대고(臺高) 28.30
보곽(寶郭) 5.25
각 글자의 자경(字徑) 49.03, 필획 굵기 2.87

○ 재　　질: 옥(玉)

○ 뉴 양 식: 거북(龜)

○ 보　　문: 준명지보(濬明之寶)

○ 조성연대: 1889년(고종 26)

라. 조사자 검토 의견

ㅇ

<준명지보>는 세자시강원 관원의 교지에 사용한 국새로 1889년(고종 26)부터 사용되었다. 이와 유사한 국새로 <흠문지보(欽文之寶)>·<명덕지보(明德之寶)>·<광운지보(廣運之寶)> 등이 있었다. 지정 대상 유물인 <준명지보>는 다른 유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성과 제작 연대·유전 경로가 분명하며, 자료적 가치가 높은 중요한 유물이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ㅇ

龜鈕形 玉寶인 <준명지보>는 세자시강원관리를 임명하는 문서에 날인하는 국새로 1889년에 제작된 것이다.『寶印符信總數』에 세부의 크기가 적혀있고,『승정원일기』에도 고종의 명에 의한 제작배경과 보관위치, 사용된 예까지 실려 있다. <준명지보>는 제작년대가 분명한 왕실공예품이라는 점과 세자시강원관리를 임명하는 문서에 날인하는 국새라는 점에서 역사성이 있고, 환수문화재라는 의미도 있다. 보존상태 또한 양호한 편이어서 보물로 지정함이 마땅하다.

ㅇ

지정 대상 유물인 '준명지보(濬明之寶)'는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관원의 교지에 사용되었던 국새로서 2014년 4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하여 반환된 국새(國璽)와 어보(御寶) 9종 가운데 1점이다.

조선시대의 국새로 지정된 것은 현재 없으나, 지난 2009년 대한제국기의 「황제어새(皇帝御璽)」가 보물 제1618호로 지정되어 관련 유물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조선시대 왕명 문서에 찍었던 국새는 상당수 유실되었으나 이번에 환수된 '준명지보(濬明之寶)' 통하여 문헌에 기록된 '새보(璽寶)'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준명지보'는 다른 유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성(唯一性) 또한 제작 당시의 역사상을 살필 수 있고, 공예사적으로도 제작 연대가 뚜렷하여 다른 자료들과 상대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은 중요한 유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보 류

조사보고서

□

ㅇ 현　　상

조선왕조(1392-1897)와 대한제국(1897-1910) 시기 국가에서 제작한 공인(公印)은 각종 국가의례에서 사용한 어보(御寶), 실제 어명을 내리는 데 사용한 인장인 국새(國璽), 각종 관청에서 발급한 행정용 인장인 관인(官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의례용 어보는 왕비・왕세자・왕세자빈 등을 해당 지위에 임명하고, 왕의 공덕을 찬양하거나 그 통치를 종합・재평가하는 의식에 사용되었다. 여기에는 책봉호(冊封號)・시호(諡號)・존호(尊號)・묘호(廟號)와 같은 존귀한 이름을 새겼는데, 이러한 어보는 사후 종묘 신실(神室)에 신위(神位)와 함께 모셨다.

이 중에서 국가의례에 사용했던 어보와 왕실과 국가의 업무에 사용했던 국새가 가장 대표적인 인장이다. 이들 인장은 왕권과 국가적 존엄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제작에서 관리까지 엄격한 법식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한제국이 한일 강제병합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이어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문화재가 국외로 불법 반출되는 와중에 이들 인장의 일부도 같은 운명을 겪었다.

한국전쟁 때 참전했던 미군이 덕수궁에서 불법으로 반출한 인장에 대해 2013년 10월 21일 문화재청이 외교부・대검찰청을 경유하여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수사 요청을 하였고, 2013년 11월 18일 HSI는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을 압수하였다. 2014년 3월 한미 문화재청과 양국 국회의원 및 국내외 민간단체 등이 조기 반환 여론을 조성하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일정에 맞추어 2014년 4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계되었다.

당시 인계한 인장은 모두 9점으로 국새 3점(<皇帝之寶>・<諭書之寶>・<濬明之寶>, 어보 1점(<壽康太王帝寶>, 보소당(寶蘇堂)의 인장 5점(<友天下士>・<雙螭>・<春華>・<硯香>・<香泉審定書畵之記>) 등이 있는데, <준명지보>는 국새 3점 중의 하나이다.

현재 보수(寶綬)는 없어졌지만, 보존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ㅇ 내용 및 특징

준명지보(濬明之寶)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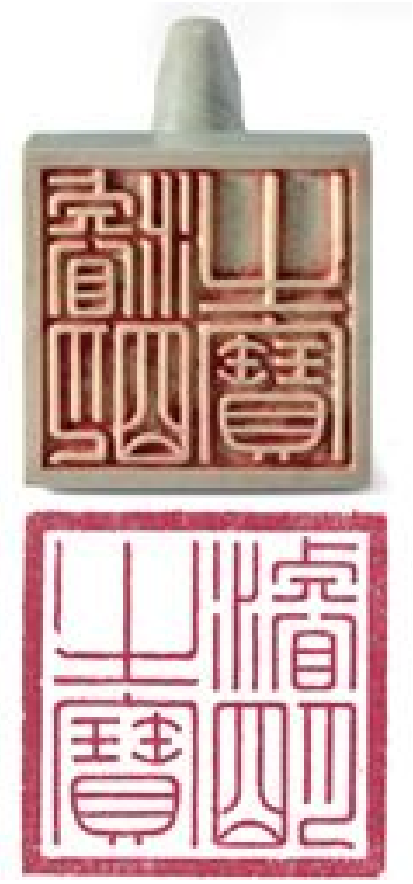

국새는 국왕이 국가를 통치하는 데에 사용했던 인장을 말한다. 왕위의 선양이나 외교 실무 등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문서에 날인하였던 것으로 나라의 최고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상징하였다. 조선왕조 시대에는 국왕이 중국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을 때 임명장인 고명(誥命)과 함께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을 수여받아 이를 중국과의 외교문서에 사용하였고, 즉위식에서 후계왕에게 승계하였다. 또한 책봉 등의 업무를 위한 <국왕행보(國王行寶)>, 왕의 명령서인 유서(諭書)에 날인하기 위한 <유서지보(諭書之寶)> 등의 국새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는 자주국으로서 <황제지보(皇帝之寶)> 등 국새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국새는 황제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보뉴(寶鈕)를 용뉴(龍鈕)로 제작하였다.

국새는 국가최고통치자의 인장인 동시에 국가의 상징이다. 국새라는 용어는 삼국시대부터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동일한 개념으로 쓰인다. 한반도에서 국새를 사용한 기록은 고구려로부터 보이고, 삼국시대에는 국새를 대보(大寶)·국새(國

璽) 등으로 불렀으며, 고려시대에는 국새(國璽)·국인(國印)·어보(御寶)·새보(璽寶) 등 다양한 용례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새(璽)와 보(寶)를 왕실 인장의 대명사로 사용하였으나 국새(國璽)와 대보(大寶)만은 국가를 상징하는 인장의 의미로 한정하였다. 조선시대의 국새는 국왕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며, 주로 외교문서에 사용하였다. 또한 왕위 계승 시에는 전국(傳國)의 징표로 전수하였으며, 국왕의 각종 행차 시에는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행렬의 앞에서 봉송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명·청나라로부터 각각 3차례 국새를 받았다. 1636년 병자호란 이후에는 청나라에서 사여한 국새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숙종 때에 명나라에서 준 옛 국새의 자취를 찾아 별도로 모조하여 비장해 두고 왕위 계승 때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명·청나라로부터 받은 외교용 국새 이외에 국왕이 발행하는 각종 문서에 사용할 국새를 국내에서 자체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세종 때 중원의 제도를 모방하여 국새로 대체한 <국왕행보(國王行寶)>·<국왕신보(國王信寶)> 등을 제작해서 국왕 문서에 사용하였다. 이후 교명·교서·교지를 비롯하여 과거(科擧) 관계의 문서, 유서(諭書), 서적의 반사 등 각각의 용도에 따라 국새를 달리하였다.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황제국에 걸맞은 새로운 국새를 10점 제작하였다. 왕실인사의 호칭이 변경됨에 따라 태후·황후·황태자·황태자비의 어보도 함께 제작하였다. 당시 제작된 국새는 1점을 제외한 모든 국새의 보뉴(寶鈕)가 귀뉴(龜鈕)에서 용뉴(龍鈕)로 바뀌었고, 보문(寶文)은 인(印)에서 새(璽)·보(寶)로 대체하였다. 서체도 기존의 복잡한 구첩전(九疊篆)에서 대부분 간명한 소전(小篆)으로 바뀌었다.

<준명지보>는 세자시강원 관원의 교지에 사용한 국새로 1889년(고종 26)부터 사용되었다. 이와 유사한 국새로 <흠문지보(欽文之寶)>·<명덕지보(明德之寶)>·<광운지보(廣運之寶)> 등이 있었다.

세자시강원은 춘방(春坊)이라고도 하는데, 세자에게 유교 경전과 역사를 강의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선 초기 서연(書筵)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1466년(세조 12)에 세자시강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선시대에 줄곧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후 세자시강원은 국왕을 위시한 왕실의 호칭 변경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1895년(고종 32) 조선에서는 '왕세자'를 '왕태자'로 고치고, 이듬해인 1896년(건양 1)에는 '왕세자시강원'을 '왕태자시강원'으로 바꾸었다. 이후 대한제국이 들어선 1897년(광무 1)에 다시 '황태자'와 '황태자시강원'으로 각각 격상하였다.

이에 따라 고종은 시강원 관격(官格) 격상에 대한 명을 내려 "전교하시기를 '춘방의 직책은 본래 청렴한 준걸들이라야 하니, 마땅히 우대하는 뜻을 보여야 할 것이다. 보덕 이하 시임 및 새로 임명된 인원에게 본원에서 교서를 만들어 특별히 반포하는 일을 지금부터 규례로 기록하라.'라고 하시었다[敎曰, 春坊之職, 本自淸選, 宜示優待之意. 輔德以下時任及新拜人, 自本院撰出敎書, 特爲頒宣事, 自今著式]."(『고종실록』 26권, 고종 26년 7월 18일 임술)라고 하였다. 이후 보름 뒤에

<준명지보>를 비롯한 국새의 새로운 제조를 명하여 “<대조선국보>·<준명지보>·<동문지보>·<흠문지보>·<명덕지보>·<광운지보>를 제조하라 명하시었다[命造成大朝鮮國寶, 濬明之寶, 同文之寶, 欽文之寶, 命德之寶, 廣運之寶]”(『고종실록』 26권, 고종 26년 8월 5일 무인)라고 하였다. 이후 3개월 뒤에 <준명지보>의 사용에 대해 “세자시강원의 교서는 <준명지보>를 청해 찍는 일을 규례로 정하라고 명하시었다[命春坊敎書, 以濬明之寶, 請出安寶事定式].”(『고종실록』 26권, 고종 26년 10월 7일 기묘)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준명지보>는 1889년(고종 26) 8월 5일에서 10월 7일 사이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시강원 관원들은 종3품 보덕(報德)을 비롯하여 필선(弼善, 정4품)·문학(文學, 정5품)·사서(司書, 정6품)·설서(設書, 정7품) 등이 모두 <준명지보>가 찍힌 교지나 교서를 받았다. 이를 보면, <준명지보>는 고종이 세자시강원의 관격을 격상하면서 제작한 국새로 1889년 10월 7일부터 품계에 관계없이 모든 시강원 관원에 대한 교지 및 교서에 찍었던 국새였음을 알 수 있다. <준명지보>의 형제(形制)에 대해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濬明之寶 玉
方三寸二分 臺高一寸一分 龜鈕長四寸 廣二寸七分 高一寸四分 刻深半分 郭廣一分半 安於春坊敎旨奉安大內

즉, <준명지보>는 옥 재질이고, 사방 3촌 2푼(실측 : 寶身은 88.08×88.46mm이고, 높이는 28.30mm), 받침대 높이는 1촌 1푼(실측 : 전체 높이는 69.43mm이고, 臺高는 28.30mm), 귀뉴의 길이는 4촌으로 너비는 2촌 7푼이고 높이는 1촌 4푼이며(실측 : 寶鈕의 길이는 113.15mm이고, 너비는 67.77mm이며, 높이 41.13mm), 새김 깊이는 반 푼, 보곽의 너비는 1푼 반(실측 : 寶郭은 5.25mm)으로 춘방 교지에 안보하여 궁전에 안치하였다.

<준명지보>의 무게는 1008.5g이고, 보뉴(寶鈕)는 귀뉴(龜鈕)로 임진왜란 이후 만들어진 어보에서 많이 보이는 부리부리한 눈과 코, 송곳니와 갈기가 조작되는 등 용두를 닮은 형상을 하고 있다. 귀두는 목이 굵고 짧은 형태를 하고 있으며, 귀갑과 귀갑문대는 2조의 음각선으로 장식하여 인공미가 풍부하다.

<준명지보>에 사용한 서체는 소전(小篆)이다.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하고 중앙집권제를 실행하면서 문자와 도량형을 통일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사는 승상으로 있으면서 서동문(書同文) 정책을 실행했는데, 즉 육국문자를 버리고 서주시기 주문(籒文)인 대전을 덜고 더하여 소전을 만들었다. 이를 또한 진전(秦篆)이라고도 일컫는다. 진시황 28년(기원전 219)에 태산·낭야·역산을 순시하고, 39년(기원전 210)에 회계를 순시할 때 소전으로 진시황의 송덕을 기리는 각석을 세웠다. 현존하는 <태산각석>·<낭야대각석>의 원탁 잔본을 보면, 이사가 썼다는 소전은

자형의 구조가 통일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서풍이 매우 규정적이고 단정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 표현인 필획은 일률적으로 둥글고 고르며, 결체는 대칭·균등을 다하였고, 장법 또한 정제되어 조금의 느슨함도 없었다. 형체는 장방형을 나타내면서 각 글자마다 2 : 3의 비율에 합하였고, 원전(圓轉)은 마치 강철을 구부린 것 같이 힘이 안으로 응축하였으며, 엄숙하고 장엄한 면모를 나타내었다.

조선시대 국새에 사용한 서체는 대부분 구첩전이었다. 이를 또한 첩전(疊篆) 혹은 상방대전(上方大篆, 一作 尙方大篆)이라고도 한다. 한인(漢印)의 인문(印文)에서 필획이 적은 글자는 구불거리면서 가득 채워 쓰는 법이 있었다. 송나라 이후 관인은 이러한 필법을 점차 많이 운용하여 크게 발전시켰다. 이후 다시 구첩전이란 명칭이 있었는데, 필획은 구불거리면서 선회하며 가면 갈수록 더욱 세밀하였다. 이는 각 글자를 모두 9번 겹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6번·7번·8번에서 때로는 10번 혹은 그 이상 겹치게 하는 것도 있다. '구첩전'이란 명칭은 꺾고 겹쳐서 여러 층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취한 것이다.

이를 보면, 고종이 최초로 전국을 통일하고 황제의 지위에 오른 진시황의 권위와 상징성이 담긴 소전을 구첩전 대신 국새에 사용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또한 중국은 대대로 새보에 사용한 서체가 소전이었기 때문에 조선왕조 500년 동안 사용해온 구첩전에서 탈피하여 소전을 국새의 서체에 반영하였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준명지보>는 각 글자의 자경(字徑)은 49.03mm이고, 필획의 굵기는 2.87mm이며, 주문인(朱文印)이다. 4글자를 세로로 2글자씩 분포하고, 필획은 고르고 균등하며, 기필·수필은 모두 원필로 처리하여 부드러우면서도 혼후함을 나타내었다. 글자마다 대칭을 이루고, 가로획과 세로획이 만나는 전절 부분에서 모두 안은 약간 모나면서도 밖은 둥글게 처리하여 부드러우면서 굳센 외유내강(外柔內剛)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도법은 충도법(衝刀法)을 주로 삼으면서 절도법(切刀法)으로 수식을 가해 둥글고 윤택하며 고른 필획을 나타내어 옥저전(玉筯篆, 一作 玉箸篆)의 전형을 이루었다. 장법은 각 글자를 정방형의 형태로 고르게 포치하여 평정하면서도 안정감을 나타내었다. 특히 곡선과 직선을 대비시켜 변화를 나타내었다. 예를 들면, '濬'자에서 '目'의 위아래 부분과 '明'자에서 '日'의 네 모서리와 안에서 공간을 분할해주는 3개의 곡선, '寶'자에서 '缶·貝'의 곡선은 나머지 직선 필획과 대비를 이루어 굳세고 곧은 가운데 부드러운 조화를 나타내었다.

<준명지보>는 <황제지보>·<유서지보>와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보곽(寶郭)의 차이점이다.

<준명지보>의 보곽은 5.25mm로 <유서지보>(10.33mm)와 <황제지보>(11.00mm)의 절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엄하고 위엄이 있는 면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새김의 차이점이다.

<준명지보>의 새김 깊이는 반 푼으로 <유서지보>(1푼)와 <황제지보>(1푼)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 또한 장엄하고 위엄이 있으면서 그윽한 맛을 나타내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장법의 차이점이다.

장법은 또한 '분간포백(分間布白)' 혹은 '분행포백(分行布白)'이라고도 일컫는다. 이는 필획과 필획 사이, 행간·자간 및 전체 글자의 포국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준명지보>의 필획 굵기는 2.87mm로 <유서지보>(2.64mm)보다 조금 굵지만, <유서지보>가 구첩전을 사용하여 보면을 가득 메워 엄숙하고 긴밀한 반면에 <준명지보>는 소전을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성글고 명랑한 느낌을 주고 있다. 또한 <유서지보>와 <황제지보>는 같은 소전을 사용하였지만, <황제지보>(5.47mm)의 필획이 2배나 굵기 때문에 더욱 중후하고 혼후한 느낌이 든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말미암아 <준명지보>는 전체적으로 <황제지보>·<유서지보>가 근엄하고 엄숙하며 그윽한 풍격을 나타낸 것에 비해 맑고 윤택하며 명랑한 풍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황제지보>가 친임관칙지(親任官勅旨)용으로 사용하고, <유서지보>는 국왕의 명령서인 유서(諭書)에 사용한 것에 비해 <준명지보>는 세자시강원 관원의 교지에 사용한 국새라는 성격 차이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또한 보뉴(寶鈕) 공예에서 <황제지보>·<유서지보>는 장엄하고 정교한 반면에 <준명지보>는 인공미가 풍부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명지보>의 예술적·자료적 가치는 결코 손상되지 않는다. 다만 <황제지보>·<유서지보>에 비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다.

ㅇ 지정사례

보물 제1618호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皇帝御璽)>(2009년 9월 2일 지정, 국립고궁박물관 소장)가 있다.

ㅇ 참고문헌

- 成仁根, 「조선시대 印章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09.
-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조의 관인』, 2009. 11.
- 사맹해저 곽노봉역, 『印學史』, 다운샘 2011. 09.
- 성인근, 「미국에서 환수한 조선왕실 인장문화재의 가치와 과제」, 『文化財』 제47권 제4호, 2014. 12.

□

ㅇ 내용 및 특징

준명지보는 왕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관청인 世子侍講院(春坊) 관원의 교지에 사용하는 국새로 1889년에 제작한 龜鈕形 玉寶이다. 고종 26년(1889) 8월에 왕이 “대조선국보, 준명지보, 동문지보, 흠문지보, 명덕지보, 광운지보를 만들라”고 명하였고,[28] 同年 10월에는 “세자시강원의 교서에는 준명지보를 청해 찍는 것을 규례로 정하라”고 명하였다.[29] 『승정원일기』를 보면 같은 해 12월1일에 시강원에서 관리 제수에 준명지보를 청한 예를 볼 때 준명지보는 1889년 8월~9월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30]

준명지보의 형태는『대례의궤』나『보인부신총수』에 수록된 옥제 龜鈕形 황제지보와 매우 유사하나 대체적으로 크기가 조금 작은 편이다.(도12, 13) 부분별 크기에 대해서는『보인부수총수』와『이조새보인압부신제』에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31](도13), [표3 참조]

표3. 준명지보에 관한 내용

분류	『寶印符信總數』(1900~1907)	『李朝璽寶印押符信制』(1910~1915)	환산치cm
크기	濬明之寶 玉 方三寸二分臺高一寸一分龜鈕長四寸廣二寸七分高一寸四分刻深半分郭廣一分半安於春坊敎旨奉安大內	濬明之寶 安於春坊官敎旨 白玉製方三寸二分臺高一寸一分龜鈕長四寸廣二寸七分高一寸四分刻深半分郭廣一分半	한 변 9.2 臺高 3.2 龜鈕: 길이 11.5 높이 4.0 폭 7.7

전체적으로 푸른 빛 결이 있는 옥을 조각하여 만든 준명지보는 기록의 환산치와 달리 총고 약 7cm, 대좌 높이 약 2.8cm이며, 인면(보신)은 한 변이 대략 8.9cm정도이고 보곽은 약 0.5cm이다. 印文은 자경 4.9cm 크기로 4글자 모두 글씨획이 細長한 편이다. 구뉴의 얼굴은 유서지보와 마찬가지로 수염과 날카로운 이빨을 갖춘 용두형이며, 구부린 자세로 네발로 대좌를 굳건하게 딛고 머리를 들고 있다. 등의 귀갑문은 이중 곡선으로 표현하였는데, 덩어리 옥을 쪼아내서 형태를 잡고, 튀어나온 거북의 얼굴과 신체를 조각하고 인문의 자획까지 전각하기가 쉽지

28) 『高宗實錄』 26권 8월5일(戊寅), “命造成大朝鮮國寶 濬明之寶 同文之寶 欽文之寶 命德之寶 廣運之寶.”.
29) 『高宗實錄』 26권 10월7일(己卯), "命春坊敎書 以濬明之寶 請出安寶事定式.".
30) 『承政院日記』 136책, 고종 26년 12월1일(壬申), “又以侍講院言啓曰 新除授說書朴箕陽 敎書安寶次 濬明之寶請出之意 敢啓 傳曰 知道.”.
31) 『李朝璽寶印押符信制』가 『寶印符信總數』의 내용을 옮겨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않을 뿐더러 수정을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솜씨가 뛰어나다. 배 아래에는 매듭끈을 끼우기 위한 구멍이 뚫려있다. 인면에는 붉은 인주가 남아 있고 “之”자의 오른 쪽(인문의 향좌측) 획이 결락된 부분이 있다.(도15)

이러한 준명지보는 제작년대가 분명한 왕실공예품이라는 점과 세자시강원관리를 임명하는 문서에 날인하는 국새라는 점에서 역사성이 있고, 환수문화재라는 의미도 있다. 보존상태 또한 양호한 편이어서 보물로 지정함이 마땅하다.

[도판]

도12. 준명지보, 옥, 1889년(고종26)

도13. 『寶印符信總數』 중의 준명지보

도14. 준명지보 印鈕

도15. 준명지보 인면의 결락부분

ㅇ 참고문헌

『大禮儀軌』, 1897
『寶印所儀軌』, 1876
『寶印符信總數』, 1900~1907
『李朝璽寶印押符信制』, 1910~1915

□

ㅇ 현　　상

2014년 4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하여 반환된 국새(國璽)와 어보(御寶) 그리고 조선왕실의 인장 등 9점〔황제지보(皇帝之寶), 수강태황제보(壽康太皇帝寶), 유서지보(諭書之寶), 준명지보(濬明之寶), 향천심정서화지기(香泉審定書畵之記), 우천하사(友天下士), (雙螭), 춘화(春華), 연향(硯香)〕 가운데 하나이다.

6·25전쟁 때 참전했던 미군이 덕수궁에서 불법으로 반출했다가 문화재청의 수사요청에 따라 대검찰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서 서로 수사를 도와 압수한 것이다.

현재 인끈〔寶綬〕은 없어졌으나, 전반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준명지보>

<보인부신총수>

<실제 사진>

ㅇ 내용 및 특징

국새(國璽)는 국권의 상징으로 국가적 문서에 사용되던 인장(印章)을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국인(國印)·새보(璽寶)·어보(御寶)·대보(大寶)라 하여 왕의 인장이 국새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국왕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대·교린의 외교 문서 및 왕명으로 행해지는 국내 문서에 사용되었다. 또한 왕위 계승 시에는 전국(傳國)의 징표로 전수되었다. 또, 왕의 각종 행차 시에는 그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행렬의 앞에서 봉송되기도 하였다.

새보(璽寶)의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역대 제왕(帝王)의 옥새와 옥보의 제도[璽寶之制]는 한(漢)나라 때에는 6옥새[璽], 당(唐)나라 때에는 8옥새, 송(宋)나라 때에는 8옥새를 일에 따라 사용하였사온데, 당나라의 신새(神璽)·송나라의 진국신보(鎭國神寶)와 같은 것은 중국을 진안(鎭安)하는 중보(重寶)로서 간직하여 두고 쓰지 않았사오나, 그 신새(信璽)와 신보(信寶)는 사신(事神) ·발병(發兵)등의 일에 쓰였고, 행새(行璽)와 행보(行寶)는 봉국(封國)·책봉(冊封) 등의 일에 쓰였사오며, 기타 새보의 글[璽寶之文] 내용과 용도는 시대에 따라 각각 같지 않았사온데, 우리 나라는 중국 황제가 보내 준 대보(大寶)의 글에, '조선 국왕(朝鮮國王)' 이라고 청하였사오니, 이는 국내의 보통

일에 쓰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바라옵건대, 옛 제도에 따라 국왕의 신보(信寶)를 부어 만들어서 사신(事神)·교유(敎宥)·공거(貢擧) 등의 일에 쓰게 하옵시고, 국왕의 행보(行寶)도 만들어 책봉(冊封)·제수(除授) 등의 일에 쓰게 하옵시며, 그 황제가 보내 준 대보(大寶)는 사대 문서(事大文書)에만 쓰시고 그 밖에는 쓰지 마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0월 12일 정유 5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이같이 세종대에는 중국 황제가 보내 준 대보(大寶) 외에 국왕의 신보(信寶)는 사신(事神)·교유(敎宥)·공거(貢擧) 등의 일에 쓰고, 국왕의 행보(行寶)는 책봉(冊封)·제수(除授) 등의 일에 사용하였는데 이듬해인 세종 15년 3월에 행보(行寶)와 신보(信寶)를 주조하였다. 기록에는 새보의 재질과 무게 그리고 보문(寶文)이 무었인 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행보(行寶)와 신보(信寶)가 이룩되었다. 예전에 전국보(傳國寶)가 있었는데, 그 보문(寶文)에는 '국왕 신보(國王信寶)'라고 새겼다. 임금이 집현전에 명하여 옛 제도를 상고하여 이 두 보(寶)를 고쳐 만들게 하였는데, 그 제도는 한결같이 흠사대보(欽賜大寶)에 의하여 모두 금을 쓰고, 신보의 무게는 1백 64냥이고, 행보의 무게는 1백 76냥이었다. 신보의 글은 '국왕 신보(國王信寶)'이고, 행보의 글은 '국왕 행보(國王行寶)'인데, 신보는 사신(事神)·교유(敎宥) 등의 일에 쓰고, 행보는 책명(冊命)·제수(除授) 등의 일에 쓰며, '흠사대보'는 사대 문서(事大文書)에만 썼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3월 2일 을묘 2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그러나 이같은 행보(行寶)와 신보(信寶)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세종 25년에 이르러 그 사용처에 맞춘 인(印)을 다시 검토하여 용도에 맞는 국새들이 제작되었다.

의정부에서 예조(禮曹)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일찍이 황제(皇帝)께서 준 대보(大寶)의 글귀에, '조선 국왕(朝鮮國王)'이라 일컬어서 경내(境內)의 범상한 일에 쓰기가 마땅치 않으므로, 국왕 신보(國王信寶)를 만들어서 사신(事神)·사유(赦宥)·공거(貢擧) 등의 일에는 이를 쓰게 하고, 국왕 행보(國王行寶)를 만들어서 책봉(冊封)·제수(除授) 등의 일에도 이를 쓰게 하며, 황제가 준 대보(大寶)는 사대문서(事大文書) 이외에는 간직하여 두고 쓰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참상(慘祥)하건대, 행보(行寶)·신보(信寶)는 경내에서 쓴 것인데도 그 글에 아울러 국왕이라고 일컬었으니, 특히 뜻[意]이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 예전에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글을 만들었는데, 삼가 경전(經傳)을 상고하면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명고(命誥)를 사방에 베푼다.' 하였고, 《국어(國語)》에 말하기를, '말은 신(信)을 밝히[昭]는 것이라.' 하였으니, 마땅히 이 뜻을 취하여

행보(行寶)를 시명지보(施命之寶)로 고치고, 신보(信寶)를 소신지보(昭信之寶)로 고치어, 시명지보는 책봉(冊封)·제수(除授), 보통 행하는 교서(敎書) 등의 일에 쓰고, 소신지보는 신명(神明)을 섬기고 군사를 발하고 물건을 주는 등 일에 쓰오면, 거의 명령을 행하고 신(信)을 보이는 뜻에 합할 것입니다. 또 종전에는 행보(行寶)·신보(信寶)를 과거보는 사람의 권자(卷子)에 쓰고 승지(承旨)가 신봉함(臣封緘)이라고 일컬었는데, 이제 친히 압인(押印)하고 제봉(題封)하면서 인문(印文)은 다 고치었으니 공거(貢擧)에 쓰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바라옵건대, 과거(科擧)의 인(印)을 따로 만들어서 승지(承旨)로 하여금 신봉함(臣封緘)이라 일컫고 상서원(尙瑞院)에 간직하여 두고서 전시(殿試)에만 쓰게 하면 참으로 사의(事宜)에 합할 것입니다."

［세종실록 102권, 세종 25년 10월 2일 계미 2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곧 예조와 의정부에서 행보(行寶)를 '시명지보(施命之寶)'로 고치고, 신보(信寶)를 '소신지보(昭信之寶)'로 고치어, '시명지보'는 책봉(冊封)·제수(除授), 보통 행하는 교서(敎書) 등의 일에 쓰고, '소신지보'는 신명(神明)을 섬기고 군사를 발하고 물건을 주는 등 일에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을 검토하였다. 또한 과거(科擧)의 인(印)을 따로 만들 것도 제시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이외에 여러 가지 특수 목적의 어보들이 사용되었다. 서적을 반포, 하사할 때 쓰는 '선사지기(宣賜之記)'·'선황단보(宣貺端輔)'·'동문지보(同文之寶)', 왕이 지은 글에 찍는 '규장지보(奎章之寶)', 각신(閣臣)의 교지에 쓰는 '준철지보(濬哲之寶)' 등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세자시강원 관원의 교지에 쓰는 '준명지보(濬明之寶)'가 있으며, 기타로 '흠문지보(欽文之寶)'·'명덕지보(明德之寶)'·'광운지보(廣運之寶)' 등이 있었다.

지정 대상 유물인 '준명지보(濬明之寶)'는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관원의 교지에 사용되었던 국새이다.

세자시강원은 조선시대 왕세자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로서 왕세자를 모시고 경서(經書)와 사적(史籍)을 강의하며 도의(道義)를 가르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관원으로는 사(師, 정1품), 부(傅, 정1품), 이사(貳師, 종1품), 좌우빈객(左右賓客, 정2품), 좌우부빈객(左右副賓客, 종2품), 찬선(贊善, 정3품), 보덕(輔德, 정3품), 겸보덕(兼輔德, 정3품), 진선(進善, 정4품), 필선(弼善, 정4품), 겸필선(兼弼善, 정4품), 문학(文學, 정5품), 겸문학(정5품), 사서(司書, 정6품), 겸사서(兼司書, 정6품), 설서(說書, 정7품), 겸설서(兼說書, 정7품), 자의(諮議, 정7품)가 각각 1인이 있었다. 사는 영의정이, 부는 좌우의정 중에 1인이, 이사는 찬성 1인이 겸하였고, 빈객과 부빈객도 모두 겸직이었다. 찬선 이하는 모두 녹관(祿官)이었는데, 찬선과 진선은 겸관으로 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환수된 ‘준명지보(濬明之寶)’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하여 1889년(고종26)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 ‘준명지보(濬明之寶)’, ‘동문지보(同文之寶)’, ‘흠문지보(欽文之寶)’, ‘명덕지보(命德之寶)’, ‘광운지보(廣運之寶)’를 만들라고 명하였다.
〔고종실록 26권, 고종 26년 8월 5일 무인 2번째기사 1889년 조선 개국(開國) 498년〕

이같은 조치는 새로운 국새를 만들기 보름여 전 세자시강원의 관격(官格)을 높이고자 하는 고종의 명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후 세자시강원의 교서에 ‘준명지보’를 청하여 찍는 일은 정식이 되었다.

전교하기를,
"춘방(春坊)의 직책은 본래 청렴한 준걸들이라야 하니 우대하는 뜻을 보여야 할 것이다. 보덕(輔德) 이하의 시임(時任)과 새로 임명된 인원에게 본원에서 교서(敎書)를 만들어 특별히 반포하는 것을 이제부터 정식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고종실록 26권, 고종 26년 7월 18일 임술 2번째기사 1889년 조선 개국(開國) 498년〕

조사 유물인 ‘준명지보’의 규격은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를 참조할 수 있다. 『보인부신총수』는 대한제국 황실의 공용(公用)의 보인(寶印)과 부신(符信)을 그림과 함께 설명한 책으로, 고종에 관계된 보인과 부신을 비롯하여 각 궁별로 총 55종(明憲太后殿 6종, 皇后殿 7종, 皇太子殿 13종, 皇太子妃殿 7종, 皇太孫殿 9종, 皇太孫妃殿 6종, 順和宮 2종, 慶善宮 4종, 英親王宮 1종)의 보인·부신이 수록된 자료이다. 이 책을 통하여 ‘준명지보’의 규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濬明之寶 玉
方三寸二分 臺高一寸一分 龜鈕長
四寸廣二寸七分 高一寸四分 刻深
半分 郭廣一分半 安於春坊敎旨奉安大內

곧, 옥으로 만들어진 '준명지보'의 사방 너비는 3촌 2푼(실측:너비88.08×88.46㎜, 높이28.30㎜), 대좌의 높이는 1촌 1푼(실측:28.30㎜), 거북 모양의 뉴는 길이는 4촌, 너비는 2촌 7푼, 높이는 1촌 4푼〔실측:길이113.15㎜, 너비67.77㎜, 높이41.13㎜)이었다. 또한 새김 깊이는 반푼, 곽의 너비는 1푼반〔실측:곽광5.25㎜)이었다. 무게는 1008.5g이다.

뉴(鈕)는 거북 모양으로 임진왜란 이후 만들어진 어보에서 많이 보이는 부리부리한 눈과 큰 코, 송곳니와 갈기가 조각되는 등 용두를 닮은 형상으로 되어 있다. 또한 귀두는 목이 굵고 짧은 형태이다. 귀갑과 귀갑문대는 2조의 음각선으로 장식하였다.

'준명지보'의 보문(寶文)은 '濬明之寶'로 자체(字體)는 '소전(小篆)'이며 배자(配字)는 세로로 2자씩 되어 있다. 인면은 외곽에 광곽을 두른 후 글자를 새겼는데 광곽은 '유서지보', '황제지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는 편이다. 또한 새김 깊이에 있어서도 반푼으로 '유서지보'와 '황제지보' 두 국새의 절반 정도이다. 각 글자의 자경(字徑)은 49.03㎜이고, 필획의 굵기는 2.87㎜이다,

ㅇ 지정사례

보물 제1618호 〔대한제국 고종「황제어새」(大韓帝國 高宗「皇帝御璽」)〕(2009.09.02. 지정,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이 있다.

ㅇ 참고문헌

- 成仁根, 『조선시대 印章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09.
- 成仁根,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 國璽의 변화상」, 『역사와 실학』 제36집, 2008. 09.
-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조의 관인』, 2009. 11.
- 사맹해 저 곽노봉 역, 『印學史』, 다운샘, 2011. 09.
- 성인근, 「미국에서 환수한 조선왕실 인장문화재의 가치와 과제」, 『文化財』 제47권 제4호, 2014. 12.

안건번호 동산 2016-02-017

8. 임계기사(壬癸記事)

가. 검토사항

‘임계기사’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임계기사’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3.7.9)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3.20)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임계기사(壬癸記事)
○ 소유자(관리자): 안**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 수　　량: 1책(35장)
○ 규격(cm): 세로 27.7× 가로 19.6
○ 재　　질: 저지(楮紙)
○ 판　　종: 필사본(筆寫本)
○ 형　　식: 선장본[線裝本(五針眼訂)]
○ 제작연대: 1656년(효종 7년 필사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조사본 「壬癸記事」에는 安義(1529~1596)와 孫弘祿(1537~1610)이 왜군의 전라도 침략이 임박해오자 全州史庫의 「王朝實錄」을 內藏山의 龍窟庵과 隱峰庵 및 飛來庵으로 옮겨 보관하며 370일 동안이나 守直함으로써 역사기록의 단절을 막았을 뿐 아니라 「王朝實錄」의 移安·守直·保存의 과정을 <守直相遞日記>의 형태로 기

록을 남겨 「王朝實錄」이 守直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또한 조사본 「壬癸記事」에는 <守直相遞日記>와 더불어 당시 <上疏文> 및 <穀物募取記> 등이 수록되어 있어 임진왜란과 당시의 사회상 및 「王朝實錄」의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全羅北道 井邑市에서는 「壬癸記事」를 바탕으로 하는 <安義·孫弘錄先生 墓域整備>·<「朝鮮王朝實錄」 保存터 夏元 및 紀念祝典>·<「朝鮮王朝實錄」 지킴이 映畵製作> 등 文化財 保存·整備·活用計劃을 수립하여 國家的인 사업으로 발전시키려는 듯하다. 그러나 조사본 「壬癸記事」는 補筆記錄과 張次記錄 및 筆寫年 推定記錄 등에서 볼 때, 壬辰倭亂 당시의 임진(1592)년과 계사(1593)년의 筆寫된 草稿本이 아니라 孝宗 7(1656)년의 丙申에 다시 淨書된 筆寫本인 듯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조사본 「壬癸記事」의 壬辰倭亂과 当時의 社會相 및 「朝鮮王朝實錄」의 硏究에 소중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는 반감되고 있다. 따라서 조사본 「壬癸記事」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는 부족하나 地方有形文化財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全羅北道 有形文化財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것을 적극 勸告하고자 한다. 또한 차후에 紙類文化財保存修理 專門家나 褙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요구된다.

ㅇ

조사본 『임계기사(壬癸記事)』는 안의(安義, 1529~1596)와 손홍록(孫弘綠, 1537~1610)이 당시 전주사고(全州史庫)에 소장되었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이안(移安)·수직(守直)·보존(保存) 하였던 과정을 「수직상체일기(守直相遞日記)」의 형태로 기록한 것이다. 또한 당시 「상소문」 및 「곡물모취기」 등도 수록하고 있어 임진왜란과 당시의 사회상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다만, 조사본 『임계기사』는 임진왜란 당시 필사된 초고본(草稿本)이 아니라 약 60여 년이 지난 1656년(효종 7, 丙申)에 다시 정서된 필사본으로 추정된다. 또한 책의 여러 곳에 칼로 도려내고 보필(補筆)하였고, 장차(張次)의 표기에 있어서 본문에는 없고 서뇌(書腦) 속의 면지(面紙)에 기록하는 등 원형에서 벗어나 있다.
따라서 조사본 『임계기사』는 전주사고의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에 옮겨 보관하였던 사실을 기록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후대에 보사되었다는 면에서 국가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조금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자료가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하여 자료의 보존과 활용책이 마련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ㅇ

본『壬癸記事』에는 '守直相遞日記'와 더불어 당시의 '上疏文'과 '穀物募取記' 도 수록되어 있어서『朝鮮王朝實錄』의 移管史, 임진왜란 당시의 社會相 및 義兵史의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본『壬癸記事』는 사용된 종이의 제작 연대와 뒷표지의 이면에 묵서되어 있는 간지 등을 볼 때 저자인 안의와 손홍록이 최초로 필사한 草稿本이 아니라 후대인 1656년(효종 7년; 丙申年)에 다시 정서한 필사본일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여러 곳에서 본문을 칼로 도려내고 글자나 문장을 다시 書寫하여 풀로 붙인 흔적이 나타나고 있어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저하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본『壬癸記事』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귀중본으로 여기는 시대적 기준인 임진왜란 이전의 책이 아니며, 筆寫本으로서 문헌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초고본도 아니다. 또한 앞·뒤의 표지가 떨어져 나가있고 본문 중에는 칼로 도려내고 보수한 곳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을 國家文化財(寶物)로 지정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된다. 다만 지방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만한 가치는 충분하므로 全羅北道 有形文化財로 지정하여 보존할 것을 권유한다.

마. 의결사항

ㅇ 부 결

조사보고서

□

■ 書誌記述 : 調査本「壬癸記事」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壬癸記事 / 安義(1529~1596), 孫弘祿(1537~1610) 共著. -- 筆寫本. -- [筆寫地不明] : [筆寫處(者)不明], [孝宗 7(1656) 筆寫 推定].
不分卷1冊(35張) : 行字數不定, 無魚尾 ; 27.7×19.6㎝. 楮紙. 線裝(五針眼訂).

表 題: [壬癸]記事
內 卷: 壬癸記事
補 筆: 第3張 後葉, 第5張 後葉, 第13張 前葉, 第25張 前葉, 第28張 後葉, 第

29張 後葉, 第32張 前·後葉, 第33張 前葉, 第34張 後葉 등에 刀切하고 補入紙를 대어 補筆하거나 刀切한 뒤 補入紙를 대지 않은 경우도 있다.

張　次: 本文에는 張次의 표시가 없으나, 書腦 속의 面紙에는 張次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第35張에 本文의 第1張이 기록되어 있는 등 本文의 次第와 書腦의 張次는 逆行되고 있다.

筆寫年: 後表紙 裏面에 '丙申'이라는 記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孝宗 7(1656)년의 丙申인 듯하며 筆寫記錄으로 판단된다.

製作歷: 日帝强占期 당시에 全羅北道 井邑郡 山外面에 거주하던 安載坤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日人이 발견하여 朝鮮史編修會에서 이를 複本으로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複寫本을 安義의 後孫이 '亂中日記'라 題名하여 놓았다 한다.

狀　態: 前·後表紙의 毁損이 심하고 內部에 일부 곰팡이에 의한 菌食이 있으나 비교적 良好한 편이다. 그러나 차후 지류문화재보존수리 전문가나 褙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요구된다.

伝來歷: 2011년 6월 13일에 安義의 후손인 안성하(서울거주)가 정읍시에 기탁하여 井邑市立博物館(全羅北道 井邑市 內藏山路 370-12 번지)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ㅇ 현　　상

조사본 「壬癸記事」는 2011년 6월 13일에 共著者 중의 한 사람인 安義(1529~1596)의 후손인 안성하(서울거주)가 정읍시에 기탁하여 全羅北道 井邑市 內藏山路 370-12번지의 井邑市立博物館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壬癸記事」의 현재 상태는 前·後表紙의 毁損이 심하고 內部에 일부 곰팡이에 의한 菌食이 있으나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차후 지류문화재보존수리 전문가나 褙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요구된다.

ㅇ 내용 및 특징

조사본 「壬癸記事」는 安義(1529~1596)와 孫弘祿(1537~1610)이 임진(1592)년에서 계사(1593)년까지 임진왜란 기간에 당시 全州史庫에 소장된 「朝鮮王朝實錄」의 移安過程에서 「王朝實錄」을 守直한 <守直相遞日記>이다.

安義(1529~1596)는 조선시대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耽津이고 자는 宜叔이며 호는 勿齋이다. 全羅道 泰仁縣 東村面(현 정읍시 옹동면)에서 출생하여 一齋 李恒(1499~1576)의 문하에서 공부하며 학덕을 갖추었다. 선조 25(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義穀繼運將이 되어 군량 300석과 목화 1,000근 및 종이 등을 모으고 스스로 쌀과 포목을 내어 절반은 임금의 피난처인 義州의 行在所로, 절반은

의병장 閔汝雲(?~1593)의 진중으로 보냈다. 孫弘祿(1537~1610)과 함께 전주 慶基殿의 <太祖影幀>과 史庫에 있던 「王朝實錄」을 內藏山의 龍窟로 옮겨 守直하였는데, 이때의 기록이 <守直日記>이다. 난이 수습된 후에 宣敎郞과 活人署別提에 제수되었다. 全羅北道 井邑市 七宝面 詩山里 844번지에 있는 藍川祠(전라북도문화재자료 제154호)에 배향되었다.

孫弘祿(1537~1610)은 조선시대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密陽이고 字는 景安이며 号는 寒溪이다. 전라도 泰仁에서 출생하였으며, 일재 李恒(1499~1576)의 문인이다. 선조 25(1592)년에 임진왜란으로 왜군이 全州로 공격해 왔을 때 慶基殿 參奉인 吳希吉(1556~1623)로부터 全羅道觀察使 李洸(1541~1607)이 全州史庫의 「王朝實錄」 등을 井邑縣 內藏山에 옮겨 보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을 전해듣고는 安義(1529~1596)와 함께 가동 30여 명을 이끌고 「實錄」과 <御影> 등을 내장산 龍窟庵으로 옮겼다. 이듬해(1593) 전란이 소강상태에 빠지자 왕명을 받아 安義와 함께 「實錄」을 다시 忠淸道 牙山으로 옮겼다. 동년(1593)에 평양으로 가서 왕에게 <中興時務六策>을 올려 宣務郞과 司圃署別提에 제수되었다. 선조 30(1597)년 丁酉再亂 때는 牙山에 있던 「王朝實錄」을 妙香山 普賢寺로 옮겼는데, 이 결과 다른 곳의 史庫는 戰亂으로 모두 소실되었으나 全州史庫의 「王朝實錄」만이 남게 되어 후에 再刊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全羅北道 井邑市 泰仁面 南川祠에 제향되었다.

「朝鮮王朝實錄」은 太祖부터 25대 哲宗까지 472년간의 政治·經濟·軍事·社會·産業·外交 등 諸 方面의 歷史的 사실을 編年体로 기록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귀중한 역사서로 인정되어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바 있다. 壬辰倭亂의 國難에서도 「王朝實錄」이 온전하게 保存·伝承될 수 있었던 것은 井邑出身의 선비인 安義(1529~1596)와 孫弘祿(1537~1610)이 全州史庫의 「王朝實錄」을 잘 守直하였던 功이 절대적이다.

全州史庫는 세종 11(1429)년 7월에 전주에 설치되어, 세종 27(1445)년에 「太祖實錄」 15권과 「定宗實錄」 6권 및 「太宗實錄」 36권이 수장되었다. 그러나 설비가 미비하여 成宗朝 초에 근방에 새로이 史庫를 짓고 「王朝實錄」을 옮기기에 이르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王朝實錄」의 燒失을 우려하여 선조 26(1593)년 7월에는 井邑의 內藏山 龍窟 등에 피란을 시켰다가 海州를 거쳐 寧邊의 妙香山으로 移置시키게 되었다. 이 「王朝實錄」은 임진왜란 뒤에 유일하게 남은 「王朝實錄」으로 국난이 끝나자 이를 江華의 摩尼山史庫에 옮겨 보관하는 동시에 이 「王朝實錄」을 대본으로 4부의 代替本을 제작하여 사고에 비치하였다. 그 후 李适의 난을 계기로 「王朝實錄」은 강화의 鼎足山史庫에 移置되었으며 日帝强占期에는 奎章閣에 守藏되고 解放 후로는 서울대학교 奎章閣에 守藏되고 있다

조사본 「壬癸記事」에는 安義(1529~1596)와 孫弘祿(1537~1610)이 왜군의 전라도

침략이 임박해오자 全州史庫의 「王朝實錄」을 內藏山의 龍窟庵과 隱峰庵 및 飛來庵으로 옮겨 보관하며 370일 동안이나 守直함으로써 역사기록의 단절을 막았을 뿐 아니라 「王朝實錄」의 移安·守直·保存의 과정을 <守直相遞日記>의 형태로 기록을 남겨 「王朝實錄」이 守直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또한 조사본 「壬癸記事」에는 <守直相遞日記>와 더불어 당시 <上疏文> 및 <穀物募取記> 등이 수록되어 있어 임진왜란과 당시의 사회상 및 「王朝實錄」의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본 「壬癸記事」의 重要性을 감안하여 全羅北道 井邑市에서는 「壬癸記事」를 바탕으로 하는 <安義·孫弘錄先生 墓域整備>·<「朝鮮王朝實錄」 保存터 夏元 및 紀念祝典>·<「朝鮮王朝實錄」 지킴이 映畵製作> 등 文化財 保存·整備·活用計劃을 수립하여 國家的인 사업으로 발전시키려는 듯하다.

그러나 조사본 「壬癸記事」는 壬辰倭亂 당시의 임진(1592)년과 계사(1593)년의 筆寫된 草稿本이 아니라 孝宗 7(1656)년의 丙申에 다시 淨書된 筆寫本인 듯하다. 그것은 補筆記錄과 張次記錄 및 筆寫年 推定記錄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補筆記錄의 경우 第3張 後葉, 第5張 後葉, 第13張 前葉, 第25張 前葉, 第28張 後葉, 第29張 後葉, 第32張 前·後葉, 第33張 前葉, 第34張 後葉 등에 刀切하고 補入紙를 대어 補筆하거나 刀切한 뒤 補入紙를 대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張次記錄의 경우 本文에는 張次의 표시가 없으나, 書腦 속의 面紙에는 張次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第35張에 本文의 第1張이 기록되어 있는 등 本文의 次第와 書腦의 張次는 逆行되고 있다. 또한 筆寫年 推定記錄의 경우 後表紙 裏面에 '丙申'이라는 記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孝宗 7(1656)년의 丙申인 듯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조사본 「壬癸記事」의 壬辰倭亂과 当時의 社會相 및 「朝鮮王朝實錄」의 硏究에 소중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는 반감되고 있다. 따라서 조사본 「壬癸記事」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는 부족하나 地方有形文化財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全羅北道 有形文化財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것을 적극 勸告하고자 한다.

ㅇ 지정사례

조사본 「壬癸記事」와 동일한 版本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ㅇ 문헌정보

- 전주역사박물관·정읍시 공편, 「임계기사」의 자료적 성격과 문화재 지정 가치. 전주, 전주역사박물관·정읍시, 2013.
- 전라북도 정읍시 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자료 「임계기사」. 정읍 :

정읍시, 2011.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書誌事項

壬癸記事 / 安義(1529 - 1596), 孫弘祿(1537-1610) 共著. -- 筆寫本 -- [筆寫地不明]: [筆寫者不明], [孝宗 7年(1656) 筆寫 推定]
1冊(35張) : 行字數不定, 無版心 ; 27.7X19.6cm.

ㅇ 현 상

조사본 『임계기사(壬癸記事)』는 2011년 6월 13일에 안의(安義, 1529~1596)의 후손인 안성하(서울거주)가 정읍시에 기탁하여 현재 정읍시립박물관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다.

현재 앞표지는 윗부분 1/4가량이 훼손되어 떨어져 나갔고, 뒷표지는 윗부분은 멸실되었고 하단부는 마멸된 상태이다. 또한 표지의 안쪽에는 본래 2-3장의 여백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다.

본문은 여러 곳에서 후대의 보수 흔적이 확인된다. 제3장의 후엽, 제5장의 후엽, 제13장의 전엽, 제25장의 전엽 등에는 칼로 도려낸 흔적이 보이고, 제28장의 후엽, 제29장 후엽, 제32장 전엽과 후엽, 제33장 전엽 등은 칼로 도려내고 글자를 보필한 흔적 등이 확인된다.

ㅇ 내용 및 특징

조사본 『임계기사(壬癸記事)』는 안의(安義, 1529~1596)와 손홍록(孫弘綠, 1537~1610)이 당시 전주사고(全州史庫)에 소장되었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변란으로부터 지켜냈던 임진(1592)년에서 계사(1593)년까지의 수직(守直) 내용을 적은 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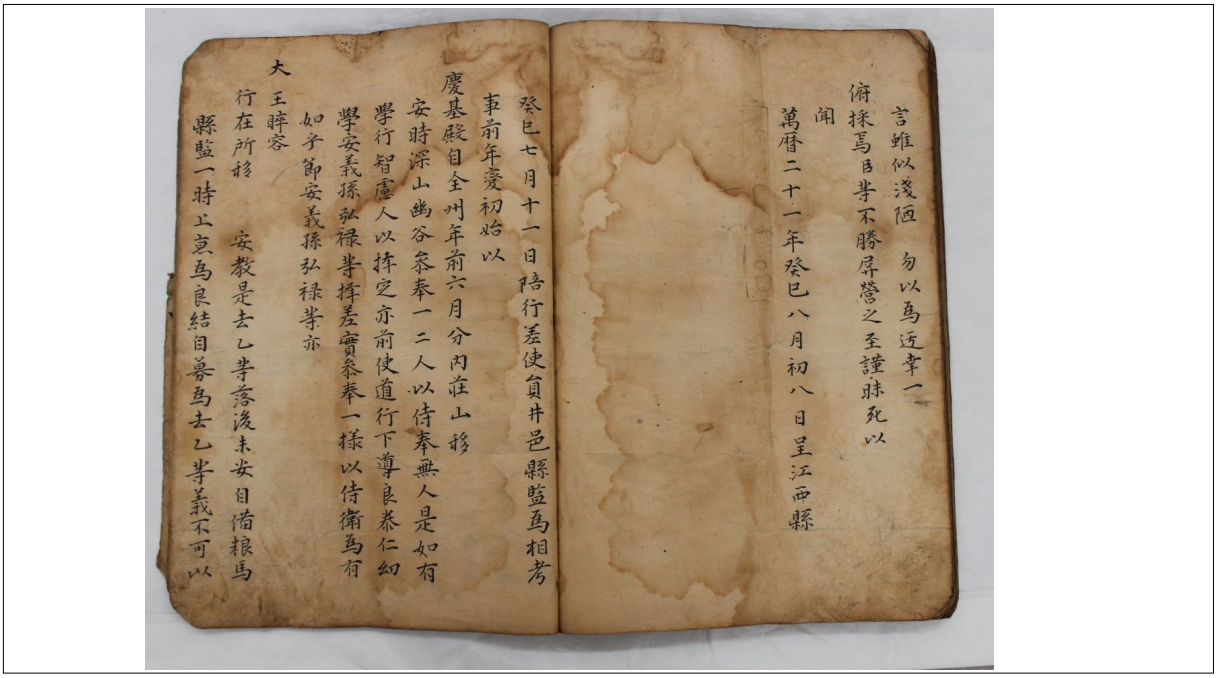

안의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탐진(耽津)이고 자는 의숙(宜叔)이며 호는 물재(勿齋)이다. 전라도 태인현 동촌면(東村面, 현 정읍시 옹동면)에서 출생하여 일재(一齋) 이항(李恒, 1499~1576)의 문하에서 공부하며 학덕을 갖추었다. 선조 25(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곡계운장(義穀繼運將)이 되어 군량 300석과

목화 1,000근 및 종이 등을 모으고 스스로 쌀과 포목을 내어 절반은 임금의 피난처인 의주(義州)의 행재소(行在所)로, 절반은 의병장 민여운(閔汝雲, ?~1593)의 진중으로 보냈다. 손홍록과 함께 전주 경기전(慶基殿)의 「태조영정」과 사고에 있던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內藏山)의 용굴(龍窟)로 옮겨 수직하였는데, 이때의 기록이 「수직일기(守直日記)」이다. 난이 수습된 후에 선교랑(宣敎郞)과 활인서 별제(活人署別提)에 제수되었다. 남천사(藍川祠, 전라북도문화재자료 제154호)에 배향되었다.

손홍록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밀양(密陽)이고 자는 경안(景安)이며 호는 한계(寒溪)이다. 전라도 태인에서 출생하였으며, 일재(一齋) 이항(李恒, 1499~1576)의 문인이다. 선조 25(1592)년에 임진왜란으로 왜군이 전주로 공격해 왔을 때 경기전 참봉인 오희길(吳希吉, 1556~1623)로부터 전라도관찰사 이광(李洸, 1541~1607)이 전주사고의 『조선왕조실록』등을 내장산에 옮겨 보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을 전해듣고는 안의와 함께 여러 사람을 이끌고 『조선왕조실록』과 「어영(御影)」 등을 내장산 용굴암으로 옮겼다. 이듬해(1593) 전란이 소강상태에 빠지자 왕명을 받아 다시 충청도 아산(牙山)으로 옮겼고, 동년 평양으로 가서 왕에게 〈중흥시무육책(中興時務六策)〉을 올려 선무랑과 사포서별제(司圃署別提)에 제수되었다. 또한 1597년(선조 30)의 정유재란 때는 아산에 있던 『조선왕조실록』을 묘향산 보현사(普賢寺)로 옮겨 후에 재간(再刊)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남천사(南川祠)에 제향되었다.

조사본 『임계기사』는 안의와 손홍록이 전주사고의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의 용굴암과 은봉암(隱峰庵) 및 비래암(飛來庵)으로 옮겨 보관하며 370일 동안이나 수직(守直)하였던 과정을 「수직상체일기(守直相遞日記)」의 형태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당시 「상소문(上疏文)」및 「곡물모취기(穀物募取記)」등도 수록하였다. 다만, 조사본 『임계기사』는 임진왜란 당시의 임진(1592)년과 계사(1593)년의 필사된 초고본(草稿本)이 아니라 약 60여 년이 지난 1656년(효종 7, 丙申)에 다시 정서된 필사본으로 추정된다.

곧 제3장 후엽, 제5장 후엽, 제13장 전엽, 제25장 전엽, 제28장 후엽, 제29장 후엽, 제32장 전·후엽, 제33장 전엽, 제34장 후엽 등에 칼로 도려내고 보필(補筆)하였고, 장차(張次)의 표기에 있어서 본문에는 없고 서뇌(書腦) 속의 면지(面紙)에 기록하는 등 원형에서 벗어난 흔적이 보인다. 더욱 제35장을 본문의 제1장으로 기록하는 등 본문의 차례와 장차의 표기가 반대로 되어 있다.

따라서 조사본 『임계기사』는 임진왜란 당시 전주사고를 제외한 다른 사고에 있던 실록이 전란으로 모두 소실되었던 상황 속에서 전주사고의『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에 옮겨 보관하였던 사실을 기록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후대에 보사되었다는 면에서 국가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조금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자료가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하여 자료의 보존과 활용책이 마련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ㅇ 지정사례

조사본 『임계기사』와 동일한 유물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ㅇ 참고문헌

전주역사박물관・정읍시, 「임계기사의 자료적 성격과 문화재 지정 가치」, 전주역사박물관, 2013.

□

ㅇ 현　　상

1. 서지사항

壬癸記事 / 安義(1529 - 1596), 孫弘祿(1537-1610) 共著. -- 筆寫本 -- [筆寫地不明]: [筆寫者不明], [孝宗 7年(1656) 筆寫]

1冊(35張) : 行字數不定, 無版心 ; 27.7×19.6cm.

楮紙.

線裝.

2. 상태

1) 앞표지 상단부 약 1/4가량이 훼손되어 떨어져 나가고, 뒷표지는 하단부는 마멸되고 상단부는 훼손되어 떨어져 있음.

2) 앞표지와 뒷표지의 안쪽은 2-3장의 여백지가 본래 있었는데, 이를 칼로 도려내어 없앤 흔적이 있음.

3) 본문에는 다음과 같이 후대에 보수한 흔적이 보임.

장 3 후면 : 칼로 도려내고 보수

장 5 후면 : 〃 〃

장 13 전면 : 칼로 도려내어 직사각형의 빈공간이 생김

장 25 전면 : 〃 〃 〃

장 28 후면 : 1자(字)를 수정하여 보수

장 29 후면 : 칼로 도려내고 글자를 서사하여 보수(1行)

장 32 전면 : 〃 〃 〃 (〃)

장 32 후면 : 〃 〃 〃 (〃)

장 33 전면 : 〃 〃 〃 (4行)

장 34 후면 : 칼로 도려내고 글자를 서사하여 보수(1行), 1자 수정

4) 그 외의 본문은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임.

3. 張次 표시

본문의 판심부위에는 장차 표시가 없다. 특이하게도 책장을 반으로 접은 안쪽에 장차가 묵서로 적혀있는데, 그 순서가 보통의 책과는 반대로 적혀져 있다.

4. 筆寫年의 推定

本書의 뒷표지의 裏面에 '丙申'이라는 干支가 묵서되어 있는데, 이는 壬辰倭亂의 亂中에 해당하는 1596년(선조 29)이 아니라 그 다음의 丙申年인 1656년(효종 7년)으로 여겨진다. 이는 종이의 제작 시기를 상한선은 17세기 중반정도이며 하한선은 18세기로 조사된 사실(남권희 교수 조사 소견서)로도 그 추정이 가능하다.

ㅇ 내용 및 특징

1. 본『壬癸記事』는 전라도 泰仁지방의 선비인 安義(1529-1596)와 孫弘祿(1537-1610)이 임진왜란이 일어난 壬辰年(1592)부터 그 이듬해인 癸巳年(1593)까지 당시 全州史庫에 소장하고 있던『朝鮮王朝實錄』을 내장산 일대로 옮겨와 370일 동안 이를 지키면서 守直한 '守直相遞日記'이다.

2. 저자 중 한 사람인 安義(1529-1596)는 조선시대 중기 전라도 태인 사람으로, 본관은 眈津, 자는 宜叔, 호는 勿齋이다. 一宰 李恒(1499-1576)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義穀繼運將이 되어 군량미와 포목 등을 거두어 왕의 피난처와 의병의 진중에 보낸 적이 있다. 또한 손홍록과 함께 전주 慶基殿에 있던 '太祖影幀'과 전주사고에 보관되고 있던『朝鮮王朝實錄』을 내장산의 龍窟庵으로 옮겨 守直하였다. 이때의 기록이 '守直日記'이다.

3. 또 다른 저자인 孫弘祿(1537-1610)은 안의와 같은 조선시대 중기 전라도 태인 사람으로, 본관은 密陽, 자는 景安, 호는 寒溪이다. 역시 그도 一宰 李恒(1499-1576)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왜군이 전주로 쳐들어오자 경기전 參奉 吳希吉(1556-1623)로부터 전라도관찰사 李洸(1541-1607)이 전주사고의『朝鮮王朝實錄』과 어진 등을 내장산으로 옮겨 보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안의와 함께 家僮 30여 명을 이끌고 실록과 영정 등을 용굴암으로 옮겼다. 또한 안의와 번갈아 가면서 수직하였다. 이듬해에는 왕명을 받들어『朝鮮王朝實錄』을 충청도 牙山으로 이관하였다. 1597년(선조 30)에 丁酉再亂이 일어나자 아산에 있던 실록을 묘향산 普賢寺로 다시 이관하였다. 다른 사고에 있던 실록이 전란으로 모두 소실되었지만, 이러한 과정의 이관으로 인하여 전주사고의『朝鮮王朝實錄』 만은 戰禍를 피해 남게 되어 후에 다시 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이다.

4. 泰仁지방의 선비인 安義(1529-1596)와 孫弘祿(1537-1610)은 왜군의 전주침략이 임박해 오자 전주사고의『朝鮮王朝實錄』을 내장산 용굴암과 은봉암, 비래암 등으로 이관하면서 370일 간이나 이를 지킴으로써, 국가적 역사기록이 전화에 소실되는 것을 막은 공로가 크다. 또한『朝鮮王朝實錄』의 수직과정을 '守直相遞日記'로 기록을 남겨 실록의 移安, 守直, 保存되는 과정을 후대에 전하고 있다. 그리고 본『壬癸記事』에는 '守直相遞日記'와 더불어 당시의 '上疏文'과 '穀物募取記'도 수록되어 있어서『朝鮮王朝實錄』의 移管史, 임진왜란 당시의 社會相과 義兵史의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본『壬癸記事』는 사용된 종이의 제작연대와 뒷표지의 이면에 묵서되어 있는 간지 등을 볼 때 저자인 안의와 손홍록이 최초로 필사한 草稿本이 아니라 후대인 1656년(효종 7년; 丙申年)에 다시 정서한 필사본일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여러 곳에서 본문을 칼로 도려내고 글자나 문장을 다시 서사하여 풀로 붙인 흔적이 나타나고 있어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저하

되어 있다.

6.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본『壬癸記事』는『朝鮮王朝實錄』의 移管史와 임진왜란당시의 社會相 및 義兵史의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평가가 되긴 하나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만한 가치는 충분하므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것을 권유한다.

ㅇ 참고문헌

1. 임계기사의 자료적 성격과 문화재 지정 가치/ 전주역사박물관: 정읍시 공편. 전주; 전주역사박물관, 2013.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자료『임계기사(壬癸記事)』/ 전라북북도 정읍시 편. 정읍; 정읍시, 2011.

안건번호 동산 2016-02-018

9. 대명률(大明律)

가. 검토사항

'대명률'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대명률'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3.12.16)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09.15)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대명률(大明律)
○ 소유자(관리자) : 김**
○ 소 재 지 : 경북 영천시
○ 수　　량 : 1책(76張, 零本)
○ 규격(cm) : 半郭 21.3×15.5(28×19) (cm)
○ 재　　질 : 종이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線裝(五針眼訂)
○ 조성연대 : 조선전기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조선초기에 간행된 『대명률(大明律)』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1. 조선전기 법률, 특히 형률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조선시대는 태조가 1392년 반포한 즉위교서에서 『대명률(大明律)』을 쓰기로 선언한 이후, 형률(刑律)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담지 않고, 『대명률』을 우리 현실에 맞게 직해(直解)하여 사용하였다. 이『대명률』은『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의 저본이 된 홍무22년률(1389)로 판단되며, 국내외에 전본(傳本)이 알려지지 않은 희귀본이다.

2. 조선전기의 인쇄사 및 출판사, 서지학 연구의 소중한 자료이다.
우리나라가 일찍부터 출판이 발달하였음에도 조선 개국 초기의 책으로 전존하고 있는 것은 극소수에 속한다.

3. 이 책은 전후 몇 장의 낙장이 있고, 판면의 마멸도로 보아 판각하고 얼마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인출한 책이지만, 인쇄상태와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유일본이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o

고경박물관 소장의 『대명률』은 조선 초기에 간행된 440조(세분 456조)로 구성된 원문본이다. 이 책을 통해 조선에서 원문본을 간행하였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조목을 편성한 판본은 중국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의 독자적인 편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그 저본은 최종적으로 반포되던 1397년 이전의 중국본으로 추정된다. 아마 최종본이 3차본보다 수록된 조목이 적은 점으로 볼 때, 3차 반포(1389) 이후 최종본이 반포되던 홍무 30년(1397) 이전의 편성본으로 볼 수 있겠다.

보존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고, 약간의 오자가 있기도 하나 『대명률』의 완성과정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o

이 책은 조선전기에 간행한 『大明律』의 原文本으로써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440條(細分 456條)로 구성된 稀貴本이다. 또한 조문(條文)과 탈오자(脫誤字)와 약자(略字) 등 여러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앞부분의 1장과 뒷부분의 몇 장 등이 결락되어 부분적인 한계는 있으나, 우리나라 『大明律』의 판본 비교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라 판단된다. 이에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예고 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조사대상본의 상태>

▲낙장(落張)과 보사(補寫)

조사대상본 『대명률』은 전면과 후면에 낙장이 있다. 전면의 권수에는 오형도 등 10도와 1표(例分八字之意)를 싣고 있다. 총목은 없다. 표가 도의 뒤에 편철된 것은 장책(粧冊) 시에 순서가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권제28의 단옥(斷獄)조의 관사출입인죄(官司出入人罪)의 제 2行 이후로 변명원왕(辨明冤枉)죄등 13조와 공률(工律) 13조 전체가 낙장인 상태이다. 이 외에 권제2 이률(吏律) 직제(職制)조의 남설관리(濫設官吏)죄에서 천구속관(擅拘屬官)죄 까지 1장(제20장)은 보사(補寫)한 것이다.

▲ 판각과 용지 및 전래

이 판본은 고정지가 섞인 저지로 인출한 책으로 인쇄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보존상태도 일부 탈락된 부분과 있는 것을 제외하면 양호한 편이다. 판각은 묵등(墨等)이 다수 보이고 문장의 행간에 추각(追刻)한 것으로 보이는 글자가 적지 않은 점에서 매우 서두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자의 새김은 자면(字面)이 선명하여 보기에 시원한 감을 준다. 홍무30년률(1397)이 반포되고 이 판본이 정제(定制)로 시행되면서 홍무22년률(1389)은 사용되지 않은 관계로 그 이후에 전해진 판본은 거개가 홍무30년률이다. 따라서 22년률의 판본은 국내외에서 희귀한 존재가 되었다.

○ 서지사항 : 四周單邊, 半郭 21.3x15.5 cm, 無界, 17行 25-28字不定, 無魚尾.
版心題 : 明律.　所藏張數 : 2板-77板a(제20板은 補寫)

○ 내용 및 특징

▲대명률의 편찬과 반포 및 조선의 전래

조사 대상서는 명태조(明太祖)의 지시로 형부상서(刑部尙書) 유유겸(劉惟謙) 등이 편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편하여 홍무22년(1389)에 반포한 명나라의 형률서이다.

이『대명률(大明律)』은 태조의 주관하에 30여 년에 걸쳐 여러 차례 편찬과 개정을 거쳐 완성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대규모의 수정을 거쳐 반포한 것은 홍무7

년률(1374) · 홍무22년률(1389) · 홍무30년률(1397)이다. 홍무22년률에는 가혹한 조문이 적지 않다는 손자의 건의에 따라 수정을 거쳐서 최종 완성본으로 반포한 것이 홍무30년률로서 명청시대를 대표하는 형률서로 평가되는 법전이다.

조선에 이 책이 전래된 것은 고려 말에서 조선 태조시기이다. 1392년에 조선을 개국한 태조(太祖)는 즉위교서에서, 관리의 파면과 재산의 몰수 등 인사와 경제적 중요조치는 대명률에 해당 조문이 있을 경우에만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따라서 대명률은 편찬 간행되고 나서 바로 조선에 전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 전해진 것이 홍무22년률(1389)일 것이다. 이두(吏讀)로 직해(直解)를 붙여 간행한 대명률직해가 1395년에 간행되었고, 이 직해본이 456조로 된 홍무22년률과 같은 점이 이를 말해준다.

□ 구성과 내용

이 책은 앞뒤에 몇 장이 결락이 있고, 간행시기를 알 수 있는 서발은 없다. 조사 대상본은 권수(卷首)와 상하권의 세목(細目) , 그리고 내용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수에는 형률에 대한 개념도와 옥구(獄具) 및 종법제하에서의 본종과 외족 처족 등의 상복도를 싣고 있다. 순서는 오형지도(五刑之圖) · 옥구지도(獄具之圖) · 상복총도(喪服總圖) · 본존9족5복정복지도(本宗九族五服正服之圖) · 처위부족복지도(妻爲夫族服之圖) · 첩위가장족복지도(妾爲家長族服之圖) · 출가녀위본종강복지도(出家女爲本宗降服之圖) · 외친복도(外親服圖) · 처친복도(妻親服圖) · 삼부팔모복도(三父八母服圖)의 10도와 예분팔자지의(例分八字之意)표의 순서이다. 이 표는 명률에서 자주 쓰이는 이(以) · 준(准) · 개(皆) · 각(各) · 기(其) · 급(及) · 즉(卽) · 약(若) 8자의 용법을 예문을 들어 설명한 것이다.

본문은 전체 7편 30권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1권에서 12권까지를 上으로, 13권에서 30권까지를 下로 나눈 다음, 상권의 총목과 그 내용을 수록하고, 다시 하권의 총목과 내용의 순으로 실었다. 조문수는 총 456조이다.

목차에 따라서 구성과 조문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大明律 上卷 (권제1-권제12)

▲名例律(계47조)권제1 : 오형(五刑) · 십악(十惡) · 팔의(八議) · 응의자범죄(應議者犯罪) 등.

▲吏律(계33조)

職制 권제2 : 계15조

公式 권제3 : 계18조

▲戶律(계95조)

戶役 권제4 : 계15조

田宅　권제5 :　계11조
婚姻　권제6 :　계18조
倉庫　권제7 :　계24조
課程　권제8 :　계19조
錢債　권제9 :　계3조
市廛　권제10:　계5조

▲禮律(계26조)
祭祀　권제11 :　계6조
儀制　권제12 :　계20조

△大明律下卷(권제13-권제30)
▲兵律(계74조)
宮衛　권제13　계18조
軍政　권제14　계20조
關津　권제15　계7조
廐牧　권제16　계11조
郵驛　권제17　계18조

▲刑律(계168조)
賊盜　권제18　계28조
人命　권제19　계20조
鬪毆　권제20　계22조
罵詈　권제21　계8조
訴訟　권제22　계11조
受贓　권제23　계10조
詐僞　권제24　계12조
犯姦　권제25　계10조
雜犯　권제26　계11조
逋亡　권제27　계8조
斷獄　권제28　계28조
▲工律(계13조)
營造　권제29　계9조
河防　권제30　계4조

上下 7編 30卷　총456條

△ 조사대상본 『대명률』과 『대명률강해』와 『대명률부례』의 조문 비교

『대명률강해』와 대명률부례는 홍무22년률(1389년)인 조사대상본에 4조가 더 많다. 이 460조 본 『대명률』은 홍무30년률(1397)을 저본으로 한 형률서임을 알 수 있다. 늘어난 조문이 해당 위치의 끝에 배치된 점에서 시기의 선후를 짐작케 한다. 증가한 4조문과 그 위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병률의 궁위(宮衛) 全18조의 다음에 현대관방패문(懸帶關防牌面)조 추가.

② 형률의 소송(訴訟) 全11조의 다음에 무고충군급천사(誣告充軍及遷徙)조 추가.

③ 형률의 수장(受贓) 全10조의 다음에 관리청허재물(官吏聽許財物)조 추가.

④ 형률의 단옥(斷獄) 全28조의 다음에 이전대사초초(吏典代寫招草)조 추가.

ㅇ 문헌자료

▲1.조선 태조의 즉위 교서(발췌)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1392) 7월 28일 정미조(명 홍무25년)

고려의 말기에는 형률(刑律)이 일정한 제도가 없어서, 형조(刑曹)·순군부(巡軍府)·가구소(街衢所) 042) 가 각기 소견을 고집하여 형벌이 적당하지 못했으니, 지금부터는 형조는 형법(刑法)·청송(聽訟)·국힐(鞫詰)을 관장하고, 순군(巡軍)은 순작(巡綽)·포도(捕盜)·금란(禁亂)을 관장할 것이며, 그 형조에서 판결한 것은 비록 태죄(笞罪)를 범했더라도 반드시사첩(謝貼) 043) 을 취(取)하고 관직을 파면시켜 누(累)가 자손에게 미치게 하니, 선왕(先王)의 법을 만든 뜻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서울과 지방의 형(刑)을 판결하는 관원은 무릇 공사(公私)의 범죄를, 반드시 『대명률(大明律)』의 선칙(宣勅)을 추탈(追奪)하는 죄에 해당되어야만 사첩(謝貼)을 회수하게 하고, 자산(資産)을 관청에 몰수하는 죄에 해당되어야만 가산(家産)을 몰수하게 할 것이며, 부과(附過)해서 환직(還職)하는 것과 수속(收贖)해서 해임(解任)하는 것 등의 일은 일체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죄를 판정하고, 그전의 폐단을 따르지 말 것이다.(前朝之季, 律無定制, 刑曹、巡軍、街衢各執所見, 刑不得中。 自今刑曹, 掌刑法、聽訟、鞫詰, 巡軍掌巡綽、捕盜、禁亂。 其刑曹所決, 雖犯笞罪, 必取謝貼罷職, 累及子孫, 非先王立法之意。自今京外刑決官, 凡公私罪犯, 必該《大明律》追奪宣勅者, 乃收謝貼; 該資産沒官者, 乃沒家産。 其附過還職、收贖解任等事, 一依律文科斷, 毋蹈前弊.)

▲2.대명률직해 발문

- 1395년에 대명률직해를 간행하였음을 밝히는 자료

청장관전서 앙엽기 7(盎葉記七) 우리나라 활자(活字)의 시초

활자는 태종 3년(1403)에 임금의 명으로 주자소(鑄字所)를 설치하고 내부(內府)의

동(銅)을 지출하여 주조한 데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김지(金祗)의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발문(跋文)을 상고해 보면,

"『대명률』은 그 과조(科條)의 경중이 각각 타당하게 되어 있다. 성상(聖上 태조를 말한다)이 이를 온 나라에 반포하려 하였으나 거기에 사용된 문자가 저마다 이해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삼한(三韓) 시대에 설총(薛聰)이 만든 방언 문자(方言文字)를 이두(吏讀)라 하는데, 거기에 토착된 속습(俗習)을 갑자기 고칠 수 없으므로 이 글도 마땅히 이두로 구두를 떼어 놓아야만 했다. 그리하여 정승 평양백(平壤伯) 조준(趙浚)이 검교중추원(檢校中樞院) 고사경(高士褧)과 나에게 그 작업을 맡기고, 자세히 연구하여 글자마다 직해(直解 문구(文句)대로 해석함)하도록 하였다. 이에 맨 먼저 우리 두 사람이 원고를 작성하고 맨 뒤에 삼봉(三峯) 정도전(鄭道傳) 선생과 공조 전서(工曹典書) 당성(唐誠)이 원고를 윤문(潤文)하여 작업을 마친 뒤에 서적원(書籍院)에 넘겨 백주 지사(白州知事) 서찬(徐贊)이 조각(造刻)한 글자로 인쇄 반포하였다. 때는 홍무(洪武) 28년(1395)이다."

하였으니, 이 발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활자가 태종 시대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찬이 조각하였다는 글자란 곧 나무로 된 활자이니, 활자는 서찬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고려 시대부터 활자를 만들어 사용해 왔지만 서찬이 만든 활자가 신형(新型)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동(銅)으로 주조하는 법이 태종 시대에 시작된 것인지 모를 일이다. 아무튼 『대명률』을 홍무 28년(1395)에 인쇄했다 하였으니, 동으로 주조했다는 태종 3년보다 9년이 더 앞선다. 김지의 호는 상우당(尙友堂)으로 정도전의 문생(門生)인 듯하며, 홍무 28년은 도전이 주살(誅殺)되기 겨우 6년 전인데 그가 편집 교열한 글을 인쇄 반포하게 되었다니, 그 당시에 법망(法網)이 매우 허술하였음을 이로써 짐작할 수 있다.

(東方活字之始 : 活字始於太宗三年癸未。命置鑄字所。出內府銅爲字。案金祗大明律跋曰。大明律科條輕重。各有攸當。聖上思欲頒布中外。然其使字人人未易曉。況三韓時。薛聰所製方言文字。謂之吏道。土俗習。未能遽革。宜將是書。讀之以吏道。政丞平壤伯趙浚。命檢校中樞院高士褧。與予囑其事。詳究反復。逐字直解。予二人草創於前。三峯鄭先生道傳。工曹典書唐誠。潤色於後。功告訖。付書籍院。以白州知事徐贊所造刻字。印出頒行。時洪武乙亥。詳究此文。始知活字非創於太宗朝也。徐贊所造刻字云者。卽木活字。無乃贊創造歟。或自麗朝有此法。而贊之所造。又是新樣歟。鑄銅之制。始起於太宗朝歟。印大明律乙亥之歲。已先於鑄字癸未之歲九年矣。金祗號尙友堂。似是鄭道傳之門生也。乙亥。距道傳被誅才六年。而頒行其編閱之書。可想當時法網之太踈也.)

▲3.진주 官庫에 소장하고 있는 대명률직해의 권후에 박규수가 1862년에 쓴 발문
瓛齋先生集卷之四 潘南朴珪壽瓛卿(1807-1876)著

雜著

題晉州官庫所藏大明律卷後

余按事晉州。索大明律。吏以兩部進。其一以活字印。其一鏤版本也。而紙色甚古。字刓墨黯。遂取活字本攷閱。一日有暇。乃閱鏤版本。尾有短跋。洪武乙亥二月。尙友齋金氏作也。其名字已刓缺。而殘畫似哲似樵。未知爲何人。博攷或可得之耳。其文曰。

刑者輔治之法。不可爲忽也尙矣。諸刑家製律。或有過不及之差。有司病焉。此大明律書科條。輕重各有攸當。誠執法者之準繩。聖上思欲頒布中外。使仕進輩傳相誦習。皆得以取法。然其使字不常。人人未易曉。況我本朝三韓時辭聰所製方言文字。謂之吏道。土俗生知習熟。未能遽革。焉得家到戶諭。每人而敎之哉。宜將是書。讀之以吏道。導之以良能。政丞平壤伯趙浚。乃命檢校中樞院高士褧與予囑其事。某等詳究反復。逐字直解。於彦。予二人草刱於前。三峯鄭先生道傳，工曹典書唐誠潤色於後。豈非切磋琢磨之謂也歟。功旣告訖。付書籍院。以白州知事徐贊所造刻字印出。無慮百餘本。而試頒行。庶不負欽恤之意也。時洪武乙亥二月初吉。尙友齋金哲謹識。盖其初亦以活字印之。而後來有人爲之刻312_372d版也。其每條下方。有雙行書若注釋。卽所謂讀之以吏道者也。悉用東國吏道方言。以釋其文。又往往有原文所未及者。推演其意而廣之。如立嫡子違法條中。原文曰其遺棄兒年三歲以下。雖異姓仍聽收養。卽從其姓。旣釋以吏道而推廣之曰。父母亦難便棄小兒。而見人財産富饒。貪利爲安。自己子息强置他人戶中。冒稱遺棄小兒。毁亂風俗者。不在此限。此其本文所未及也。如此者應不止此一段。余方按事匆匆。未及盡閱。嗚呼。歷代律書。惟此爲至精盡矣。今淸律例皆原據此書。則大明律一部。至今遵用。天下皆同。而攷乾隆四庫總目。特揭淸律。退置此書於存目。意者中有忌諱而然歟。我四五百年。明啓刑書。惟此是遵。而國初名臣之致意於有用之書者乃如是焉。凡今之士。廢而不講。只付諸吏胥故紙堆中。披閱之餘。不勝感慨。此本未知他邑亦更有之否。殘缺如此。重可悲矣。

*이 글을 쓴 것은 1862년에 진주 민란이 일어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慶尙道 按廉使파견되었을 때이다.-

□

ㅇ 현　　상

제1장과 끝부분의 몇 장(권28의 일부, 권29-30 등 7장 내외)이 결락되었음.

앞의 몇 장은 손상이 있고, 서툰 솜씨로 배접되어 있음.

앞뒤표지는 후대에 개장되었음.

누습의 흔적이 있고, 제 20장은 보사(補寫)되었음.

ㅇ 내용 및 특징

『대명률』은 당률(唐律)과 송률(宋律)을 계승하여 홍무연간(洪武年間)에 편찬된 법률서이다. 홍무제의 뜻을 따라 원률(元律)이 아니라 당나라의 형법전인 『당률소의(唐律疏議)』(737년)의 체제를 답습하여 총칙격인 「명례률(名例律)」을 서두에 배치하고 육전(六典) 체제에 맞춰 각론격인 이률, 호률, 예률, 병률, 형률, 공률을 본문으로 삼은 법전이다.

『대명률』은 1364년 제정된 이후 네 차례의 수정을 거쳐 편찬되었다. 명나라 태조가 아직 오왕(吳王)이라 일컫던 오왕 원년(1364) 12월에 공포한 것이 최초의 『대명률』이다. 이 대명률은 모두 285조로 된 율(律) 및 145조의 영(令)으로 구성된 것이었다.

제2차는 오왕이 명나라 황제로 즉위하여 연호를 홍무라 칭한 홍무 원년(1368) 8월에 제1차 반포한 율령에다 추가로 보충한 속률(續律), 임시률 그리고 당률에서 보유를 더한 방대한 조문인데 홍무 7년(1374) 2월에 완성하여 반포하였다.

제3차는 홍무 22년(1389) 8월에 명례률, 이률, 호률, 예률, 병률, 형률, 공률의 7분 방식을 채택하여 460조로 된『대명률』을 반포하였다. 이때 특이한 점은 명례를 첫 머리로 옮겨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명례를 따로 앞에 둔 것은 유교의 삼강오륜에 중점을 둔 총칙편인 명례는 체(體)이고, 육률(六律)은 용(用)이기 때문이었다. 곧 명례는 유교사회의 도덕률이고, 육률은 각 분야별로 현실 문제를 반영한 법률인 것이다. 이때 법전의 첫머리에 「오형지도(五刑之圖)」와 예를 중요시하는 뜻에서 「상복지도(喪服之圖)」를 실은 것이 특색이다.

제4차는 홍무 30년(1397) 5월에 개정 공포된 것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는 제3차본과 대동소이하나 조목이 460조에서 444조(세분 460조)로 개편되었다.[32] 이 때 새로 추가된 조목은 병률 궁위(宮衛)의 "현대관방패면(懸帶關防牌面)"과 형률 단옥(斷獄)의 "이전대사초초(吏典代寫招草)"이며 어제대명률서(御製大明律序)도 수록되었다.

이렇게 대명률은 오원년(1364)에 처음 율령을 만들고, 홍무 7년(1374)에 다시 반포되고, 홍무 22년(1389)에 정리하고 고쳤다가 홍무 30년(1397)에 최종적으로 반포된 것이다. 명나라 태조는 후세에 이를 고치지 말고 준수하라는 유훈을 남겼는데 실제로 명나라에서는 이를 따랐다. 이후 대명률은 『대청률(大淸律)』, 『대청현행형률(大淸現行刑律)』 등의 모범이 되었을 정도로 중국 법제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최종본 『대명률』의 편명이나 조목의 수는 이전보다 축소된 것은 명나라 태조의 입법간명(立法簡明)이라는 의지에서 찾을 수 있다. 곧 첫째는 법이 간단해야

32) 이성무는 "경국대전의 편찬과 대명률"(『역사학보』 125, 1990.3, p.103의 주석)에서 근거는 밝히지 않았으나 "『대명률』의 육전별 권수와 조문수는 다음과 같다"면서 고경박물관 소장의 조문과 동일하게 30권 456조문(명례률 1권 47조문, 이률 2권 33조문, 호률 7권 95조문, 예률 2권 26조문, 병률 5권 74조문, 형률 11권 168조문, 공률 2권 13조문 등 합계 30권 456조문)이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둘째는 법률조항이 너무 많으면 한 가지 사건에 두 가지 법률조문이 해당되어 간악한 관리들이 사적으로 농단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되고, 셋째는 법망이 너무 조밀하면 백성들의 반항을 불러일으키는 폐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명률』은 『당률』보다 적은 7편(篇)이고, 조목 역시 축약되었던 것이다.

이 『대명률』은 고려말기에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던 것으로 확인이 된다. 곧 우왕 14년(1388) 9월에 전법사(典法司)에서는 『대명률』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당시 중국에서 시행되던 법제, 곧 시왕지제(時王之制)이므로 이를 준용해야 한다고[33] 한 것이나 원나라의 『의형이람(議刑易覽)』이나 『대명률』을 혼용하여 시행하자는 건의가 보이기 때문이다.[34]

조선 태조는 즉위하자 서울과 지방의 형을 판결하는 관원은 모두 공사죄(公私罪)의 사첩(謝貼) 회수나 가산 몰수 등의 경우에 반드시 『대명률』을 적용하도록 명령하였다.[35] 이렇게 국초부터 『대명률』은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 태조 3년(1394)에 정도전이 지은 『조선경국전』에서 모든 형률은 『대명률』에 준거할 것을 밝히고, 『대명률』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36] 이렇게 『대명률』은 법보다는 예를 더 중시하고, 행형(行刑)에 관용주의를 택하는 등 유교주의 국가에서 집대성된 형률이었으므로 조선초기부터 일반 형률로 신속하게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조선에서는 명나라의 『대명률』을 그대로 준용할 수 없었다. 그것은 『대명률』이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데다 원문이 난해하여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태조 4년(1395)에 조선에 맞는 『대명률』(후일 『대명률직해』로 일컬음)이 간행된다. 서명에 "직해"를 붙이지 않았던 것은 조선의 법적용에 이용된 『대명률』은 『대명률직해』이었기 때문이다.[37]

현전하는 후대 『대명률직해』의 대본은 "이른 시기에 간행된 책의 조문 수가 442조인 점을 보아 제3차 수정본(460조)이 아니라 1397년 반포된 제4차 수정본(444조)과 유사해 보인다. 이것은 『대명률직해』가 조선왕조 500백년 사용되면서 가장 나중에 반포된 1397년 제4차 최종본을 다시 참조하여 보완한 것으로 추정"[38]되고 있다.

---

33) 『高麗史』 志 卷38 刑法1 職制 ,"辛稱十四年戊辰九月 典法司上疏曰...今大明律 考之議刑易覽, 斟酌古今尤頗詳盡, 況時王之制尤當倣行."

34) 『高麗史』 卷84, 刑法1. "有建議, 雜用元朝議刑易覽, 大明律以行者"

35) 『太祖實錄』 卷1, 1年(1392) 7月 28日, "一, 前朝之季, 律無定制, 刑曹 巡軍 街衢各執所見, 刑不得中... 自今京外刑決官, 凡公私罪犯, 必該大明律, 追奪宣勅者, 乃收謝貼, 該資産沒官者, 乃沒家産. 其附過還職 收贖解任等事, 一依律文科斷, 毋蹈前弊, 街衢革去."

36) 『朝鮮經國典』 憲典後序.

37) 서명은 『大明律』인데 조선총독부에서 활자본으로 간행하면서 『校訂 大明律直解』라고 한 이후 『대명률』과의 구분을 위해 『대명률직해』로 일컫는다.

38) 『대명률직해』는 고사경과 김지가 번역하여 1395년에 서적원에서 목활자로 간행하였으나 아직까지 실물이 공개된 바가 없다. 이후 태종연간, 세종 13년(1431)경의 간본(이 판본은 원본은 전하지 않고 일본의

이후 『대명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리의 품계와 각 관청의 관원 수, 거기에 배속된 관노비의 숫자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경국대전』의 편찬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경국대전』은 『대명률』의 체계성과 합리성에 대한 신뢰의 측면을 바탕으로 조선왕조 실정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한 것이었다. 이렇게 조선의 『대명률(직해)』은 『경국대전』이 보급(1485년부터 시행) 전까지 사용되었다.

○ 고경박물관 소장의『대명률』

고경박물관 소장의 『대명률』은 앞뒤 몇 장(앞은 1장, 뒤는 7장 내외)이 결락되어 있다. 그래서 간행사실이 수록된 발문이나 간기 등이 원래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광곽이나 인쇄상태로 보아 간행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의 인본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문의 오자(誤字)나 잘 보이지 않는 자 그리고 조문 명칭을 윗부분에 필사해 놓은 점으로 보아 보관용이 아니라 실용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동일한 판본이 공개된 일이 없으므로 먼저 서지적 특징에 대해서 살피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결락되었으며, 권28의 단옥 28조 중에서 “관사출입인죄(官司出入人罪)” 제2행부터 마지막 “단옥부당(斷獄不當)”까지의 13-4조문 그리고 권29-30의 공률 13조문(영조 9조, 하방 4조 등)이 모두 결락되었다.

책머리에는 「오형지도(五刑之圖)」, 「옥구지도(獄具之圖)」, 「상복총도(喪服總圖)」, 「본종구족오복정복지도(本宗九族五服正服之圖)」, 「처위부족복지도(妻爲夫族服之圖)」, 「출가녀위본종강복지도(出嫁女爲本宗降服之圖)」, 「외친복도(外親服圖)」, 「처친복도(妻親服圖)」, 「삼부팔모복도(三父八母服圖)」, 「예분팔자지의(例分八字之義)」 등이 있다. 전 30권을 권1-12, 권13-30 등으로 나누어 상하권으로 편성하였다. 각권 권수의 제명과 권차 표시는 “大明律卷第○”, 권미의 제명과 권차 표시는 “大明律第○卷 終”과 같은 형식이다.

『대명률』이라는 제명아래 「명례율(名例律)」을 비롯, 「이률」, 「호률」, 「예률」, 「병률」, 「형률」, 「공률」 등 7편(篇)으로 편성되어 있다. 수록된 조목 수는 모두 440조(세분 456조)이며, 편별 조목 수와 명칭은 아래 <표 1>과 같다. 다만 결락된 뒷부분 몇 장에 수록된 조목은 목록에 근거하였다.

그런데 목록에서의 조목 수와 실제 조목 수는 차이가 있다. 곧 「이률」 공식(公式)의 17조(목록에서는 18조), 「호률」 과정(課程)의 8조(목록에는 19조), 「병률」 궁위(宮衛)의 16조(목록에는 18조)과 “우역(郵驛)”의 16조(목록에는 18조) 등 모두 16조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목록에 표시된 숫자는 모두 456조이나 실제로는 440조로 편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호사문고와 고마자와대학에 전하는 16세기의 중간본을 보아 간행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과 15세기 중엽에 수정 간본 등 두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곧 세종 13년(1431)경 간행본(일본의 호사문고와 고마자와대학 소장본)과 이후 수정본(공주, 광주, 진주, 낙안, 평양판 등)이다.(장경준, 진윤정,“대명률직해의 계통과 서지적 특징”, 『서지학연구』, 제58집, 2014.6)

<표 1> 고경박물관 소장 『대명률』의 내용과 편성

篇名 (律名)	卷數	조목 수 (細分)	조목 명칭	조목통합
名例律	1	47	五刑, 十惡, 八議[39], 應議者犯罪 등 47조	
吏律	2	32(33)	職制 15조, 公式 17조	公式은 18조이나 "棄毁制書印信" 2條를 1조로 통합하여 17조
戶律	7	84(95)	戶役 15조, 田宅 11조, 婚姻 18조, 倉庫 24조, 課程 8조, 錢債 3조, 市廛 5조	課程은 19조이나 "鹽法" 12條를 1조로 통합하여 8조
禮律	2	26	祭祀 6조, 儀制 20조	
兵律	5	70(74)	宮衛 16조, 軍政 20조, 關津 7조, 구목(廐牧) 11조, 郵驛 16조	宮衛는 18조이나 "衝突儀仗" 3條를 1조로 통합하여 16조. 郵驛은 18조이나 "遞送公文" 3조를 1조로 통합하여 16조
刑律	11	168	賊盜 28조, 人命 20조, 투구(鬪毆) 22조, 매리(罵詈) 8조, 訴訟 11조, 수장(受贓) 10조, 사위(詐僞) 12조, 犯姦 10조, 雜犯 11조, 捕亡 8조, 斷獄 28조	
工律	2	13	營造 9조, 河防 4조	
합계	30	440(456)		

위에서 소개한 바를 근거로 고경박물관 소장의 『대명률』은 다음과 같은 가치와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조선에서 간행된 원문 『대명률』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조선에서 원문으로 된 『대명률』이 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오히려 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40] 현재 중국에는 1397년에 반포된 최종본 『대명률』만 전해지고 있는데 비해 국내에서 간행된 제3차 반포본(1389)을 대본으로 삼은 『대명률(직해)』이 전존하는 것만으로도 조선 간본의 의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고경박물관 소장의 『대명률』은 원문본인데다 최종본(1397) 이전의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전존의 의의 역시 조선의 『대명률(직해)』에 못하지 않다고 하겠다.

둘째, 조선에서 간행된 『대명률(직해)』의 조문이 442조인 것 등으로 보아 그 대본은 홍무 22년(1389)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고경박물관 소장본은 『대명률(직해)』에 있는 "무고충군급천도(誣告充軍及遷徒)"(「형률」 소송(訴訟) 12번

39) 五刑은 笞刑, 杖刑, 徒刑, 流刑, 死刑 등 罰, 十惡은 謀反, 謀大逆, 謀叛, 惡逆, 不道, 大不敬, 不孝, 不睦, 不義, 內亂 등 罪, 八議는 議親, 議故, 議功, 議賢, 議能, 議貴, 議賓.

40) 張允熙, 「<大明律直解>」의 書誌學的 考察」(진단학회, 『진단학보』, 96호, 2003), p.276.

째)와 “관리청허재물(官吏聽許財物)”(「형률」 수장(受贓) 11번째)뿐 아니라 제4차 최종본(444조, 세분 460조)에 추가된 「병률」 궁위의 “현대관방패면(懸帶關防牌面)”), 「형률」 단옥의 “이전대사초초(吏典代寫招草)”) 등 4조목이 없는 440조(세분 456조)이다. 이와 같이 고경박물관 소장본은 홍무 22년(1389)본을 대본으로 번역한 『대명률직해』보다 2조목이 적고, 홍무 30년(1397) 반포의 최종본보다 또 4조목이 적다. 그렇다면 국역 당시에 참고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국역대본으로 완전하게 사용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셋째, 수록된 조목으로 볼 때, 이 소장본은 중국에서 간행된 원문본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다만 명 태조가 간명(簡明)을 원했고, 또 최종본이 3차본보다 수록된 조문이 적은 점을 미루어 볼 때, 3차 반포(1389)이후 최종본이 반포(1397)되기 이전 사이에 완성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외에도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홍무 30년의 최종본에 비해 오탈자가 제법 있고, 형벌이 더 가중되었으며, 약자(略字)가 제법 사용되었다는 것을 들고 있다.[41]

한편 현재 중국에는 최종본 『대명률』 외에는 이전의 판본들은 거의 전하지 않으므로 고경박물관 소장의 『대명률』의 저본을 확인할 수가 없다. 심지어 저본이 간본인지 필사본이었는지도 불분명하다. 추측한다면, 조문이 합해지거나 내용이 보완되는 과정에서 한 계통의 책이 조선에 전래되자 이를 신속하게 간행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오탈자와 약자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어숙권(魚叔權)의 『고사촬요(故事撮要)』에는 원주(原州)와 광주(光州)에 『대명률』 책판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소개한 『대명률』이 원문본인지 직해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고경박물관 소장본과 동일한 책판여부인지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ㅇ 참고문헌

김구진, “『대명률』의 편찬과 전래”, 『백산학보』 제29호(1984.7)

문형진, “『大明律』전래와 한국적 변이 양상”, 『국제지역연구』 제6권 제3호(2002. 10.21)

박성종, 장윤희, 심재우, 정긍식, “『大明律直解』의 종합적 연구”, 한국연구재단 연구성과물(2004)

41) 황위주, 장인진, 경상북도 조사의견서,‘外甥’에서‘甥’을 墨等표기하여 脫字(11장),‘無疾’을‘廢疾’로 誤記(11장),‘不種者俱以十分’에서‘俱以十’을 墨等표기하여 3자 脫字(28장),‘應課種桑棗黃麻’에서‘應課’및‘棗’를 墨等표기하여 3자 脫字(28장),‘軍民約會詞訟’을‘軍民納會詞訟’으로 誤記(41장),‘門官與守衛官’에서는‘守’字의 脫字(43장),‘告惡逆不受理者’를‘造惡逆不受理者’로 誤記,‘因而致死者’를‘困而致死者’로 誤記(76장) 등을 포함하여 여러 곳에서 誤字와 脫字가 있다. 또 「賊盜」의‘謀反大逆’條, 「受贓」의‘官吏受財’條, 「詐僞」의‘詐僞制書’條 및‘詐僞詔旨’條 등의 경우, 洪武 30年律에서 형벌을 더 무겁게 하였다. 이 외에도 偹(備), 皈(歸), 与(與), 畧(圖), 絰(經), 听(聽), 尽(盡) 实(實), 礼(禮), 駅(驛), 无(無) 등과 같은 略字의 표기가 많다.

이성무, “경국대전의 편찬과 대명률”, 『역사학보』 125(1990.3)
장경준, 진윤정, “『대명률직해』의 계통과 서지적 특징”, 『서지학연구』, 제58집(2014.6)
장윤희, “『대명률직해』의 서지학적 고찰”, 『진단학회』 96집(2003.12)
정긍식, 조지만, “朝鮮 前期 『大明律』의 受容과 變容”, 『진단학회』 96집(2003.12)
황위주, 장인진, 「영천고경박물관 소장 대명률 조사의견서」(2013.12)
윤병태, 『한국의 책판목록』상, 보경문화사, 1995.
조선일보, “조선시대 형법 근간 '大明律' 원본 판본 발견”(2013.10.18.)

□

書誌事項
大明律 / 劉惟謙(明) 等編. -- 木板本[後刷本] --, [朝鮮前期]
1冊(76張, 零本) : 四周單邊, 半郭 21.3×15.5cm, 無界, 17行字數不定, 無魚尾. 28×19 cm.
版心題 : 明律

ㅇ 현 상

전체 77판으로 현재 2板-77板a가 남아 있다. 20板은 補寫되었다. 전체 30권 1책 가운데 앞부분에는 總目 1장이 낙장된 것으로 보이고, 뒷부분에는 권28의 「斷獄」篇, 제15조 ‘官司出入之罪’의 2행으로부터 권30까지 총 7장 내외 26조(斷獄 13조, 營造 9조, 河防 4조)가 결락되었다.
책의 표지는 물론 본문 전체가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심하게 오염된 상태이다. 빠른 보존 처리가 요구된다.

ㅇ 내용 및 특징

『대명률』은 조선시대에 적용한 명나라의 형율서(刑律書)로서, 4차례의 편찬 및 개정 과정이 있었다. 1차 편찬은 명나라 태조인 주원장(朱元璋)이 오왕(吳王)으로 칭한 그 해(1367년)에 공포한 것인데, 좌승상(左丞相) 이선장(李善長)을 총재관(總裁官)으로 임명하여 당율(唐律)을 손질하여 이율(吏律) 18조, 호율(戶律) 63조, 예율(禮律) 14조, 병률(兵律) 32조, 형률)刑律) 150조, 공률(工律) 8조로 모두 285조로 된 율(律) 및 145조의 영(令)을 완성하여 『율령직해(律令直解)』라 이름하여 공포하였다. 2차 편찬은 1374년(洪武 7)에 공포한 것으로, 당시 형부상서 유유겸 등이 편찬한 것인데, 유유겸 등이 올린 「진대명률표(進大明律表)」에 의하면 전체

606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차 편찬은 1389년(홍무 22)에 형부의 건의에 따라 한림원(翰林院)과 형부의 관리들이 새로 공포된 법령들을 포함하여 공포하였다. 4차 편찬은 1397년(홍무 30)에 444조(細分 460조)로 개편하고 홍무제의 '어제대명률서(御製大明律序)'를 넣어서 공포하였다.

조선 초기 『대명률』의 유통에 관해서는 어숙권(魚叔權)의 『패관잡기(稗官雜記)』에 있는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大明律은 오로지 吏文의 문자를 쓰고 있어서 … 洪武 乙亥年(1395)에 정도전 등이 律文을 이해하는 어려움을 걱정하여 설총이 지은 吏讀로 逐條飜譯하여 直解大明律이라 하였다."

이를 참고한다면, 당시 『대명률』과 관련된 책은 한문으로 된 원문의 '대명률'과 이두로 된 '직해대명률(直解大明律)' 등 2종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직해대명률(直解大明律)'은 실제적인 활용을 위해 조준(趙浚)의 주관 아래 이두(吏讀)로 자구(字句)를 직해하고, 정도전(鄭道傳)·당성(唐誠)이 이를 윤색하여 1395년(태조 4)에 간행한 것이나, 당시의 판본이 전해지지 않아서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지정 조사 대상인 『대명률』은 직해(直解) 또는 강해(講解)가 아닌 원문(原文)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명예율(名例律), 이율(吏律), 호율(戶律), 예율(禮律), 병율(兵律), 형율(刑律), 공율(工律) 등 7편 440조로 구성되었다. 책의 첫머리에 예를 중요시하는 뜻에서 오형지도(五刑之圖)와 상복지도(喪服之圖) 등을 수록하였다.

卷首 : 五刑之圖, 獄具之圖, 喪服總圖, 本宗九族五服正服之圖, 妻爲夫族服之圖, 出嫁女爲本宗降服之圖, 外親服圖, 妻親服圖, 三父八母服圖, 例分八字之義
名例律 47條 : 五刑, 十惡, 八議, 應議者犯罪 등 47조.
吏　律 32條 : 職制 15조, 公式 17조('棄毁制書印信'이 2條로 細分되어 33조).
戶　律 84條 : 戶役 15조, 田宅 11조, 婚姻 18조, 倉庫 24조, 課程 8조, 錢債 3조, 市廛 5조.('鹽法'이 12條로 세분되어 95조)
禮　律 26條 : 祭祀 6조, 儀制 20조.
兵　律 70條 : 宮衛 16조, 軍政 20조, 關津 7조, 구목(廐牧) 11조, 郵驛 16조('衝突儀仗'이 3條로 세분, '遞送公文'이 3조로 세분되어 75조)
刑　律 168條 : 賊盜 28조, 人命 20조, 투구(鬪毆) 22조, 매리(罵詈) 8조, 訴訟 11조, 수장(受贓) 10조, 사위(詐僞) 12조, 犯姦 10조, 雜犯 11조, 捕亡 8조, 斷獄 28조.

工律 13條 : 營造 9조, 河防 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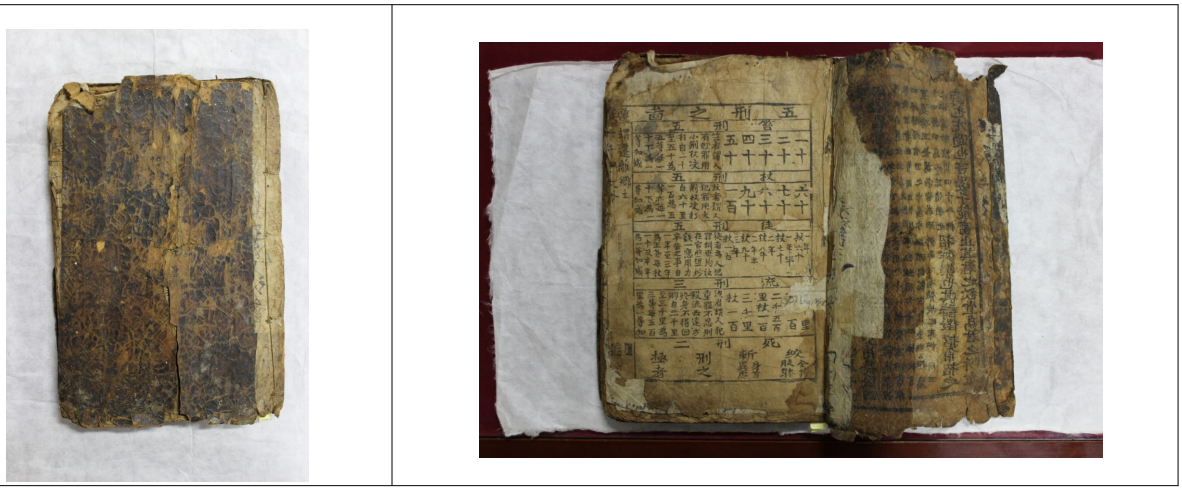

명례율(名例律)은 『대명률(大明律)』의 죄명(罪名)과 오형을 적용하는 법례(法例)를 밝혀 놓은 것이다. 이율(吏律)은 직제(職制) 15조와 공식(公式) 17조로 되어 있는데, 관리의 권한, 의무, 임면(任免), 권태(勤怠), 상벌, 사무 처리 등의 규준(規準), 절차와 의무 위배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정하여 놓았다. 호율(戶律)은 호역(戶役), 전택(田宅), 혼인(婚姻), 창고(倉庫), 과정(課程), 전채(錢債), 시전(市廛) 등의 8개 부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예율(禮律)은 제사 의례에 관한 위반 사항을 적어 놓은 것이다.

지정 조사 대상인 『대명률』은 1397년에 공포된 '홍무 30년율(洪武三十年律)'의 444조(細分 460조)와 비교하면, '무고충군급천도(誣告充軍及遷徒)'(刑律:訴訟), '관리청허재물(官吏聽許財物)'(刑律:受贓) 등의 2조를 포함하여 '현대관방패면(懸帶關

防牌面)'(兵律:宮衛), '이전대사초초(吏典代寫抄草)'(刑律:斷獄) 등 총 4조가 누락되어 있다.
또한, 형벌 내용에 있어서도 「적도(賊盜)」의 '모반대역(謀反大逆)' 조, 「수장(受贓)」의 '관리수재(官吏受財)' 조, 「사위(詐僞)」의 '사위제서(詐僞制書)' 조 및 '사위조지(詐僞詔旨)' 조 등의 경우, '홍무 30년율'에서 형벌을 더 무겁게 하여 차이를 두고 있다.
표기 내용에 있어서도 . '외생(外甥)'에서 '생(甥)'을 묵등(墨等) 표기하여 탈자［脫字(11板)］, '무질(無疾)'을 '폐질(廢疾)'로 오기［誤記(11板)］, '부종자구이십분(不種者俱以十分)'에서 '구이십(俱以十)'을 묵등 표기하여 3자 탈자(28板) 등 여러 곳에서 오자와 탈자가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偹(備), 皈(歸), 与(與), 啚(圖), 経(經), 听(聽), 盡(盡) 實(實), 礼(禮), 驛(驛), 无(無) 등과 같은 약자(略字)의 표기가 많다.
지정 조사 대상인 『대명률』은 판심(版心)에 어미(魚尾)가 없는 것은 고려본(高麗本)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하겠으나, 고려시대 임금의 이름자에 대한 피휘(避諱), 결획(缺劃)이 나타나지 않아서 조선 초기에 판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책은 1395년의 『대명률직해』 보다는 앞서 간행한 것으로, '홍무 22년율(1389)'의 原文本으로 추정된다.

ㅇ 지정사례
지정된 사례는 없다

ㅇ 문헌자료
김구진, 「대명률의 편찬과 전래」, 『백산학보』 29, 1984.
이성무, 「경국대전의 편찬과 대명률」, 『역사학보』125, 1990.
張允熙, 「'大明律直解'의 書誌學的 考察」, 『진단학보』96호, 2003년.

Ⅱ.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명칭변경

안건번호 동산 2016-02-019

1. 국보 제233호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 지정 명칭·번호 변경

가. 검토사항

'국보 제233호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 지정 명칭·번호 변경 검토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물 제1021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국보 제233-1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으로 승격됨에 따라 관련 문화재인 국보 제233호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의 지정 명칭과 지정번호 변경에 대한 검토사항을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지정명칭과 지정번호가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변경 안

현행	변경 안
국보 제233호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	국보 제233-2호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

○ 변경 사유 : 보물 제1021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국보 승격(국보 제233-1호)에 따라 지정번호 및 명칭 변경으로 유관 문화재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라. 전문가 검토 의견

ㅇ

- 국보 제233호로 지정되어 있는 “전)산청 석남암지 납석사리호”는 사리호에 새겨진 명문기록과 이를 직접 수습한 사람의 증언, 그리고 이를 안치했던 비로자나불상 대좌의 납입공간과 사리호의 크기가 꼭 일치하여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상에서 반출된 것이 분명하므로 현재 국보 제233호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와 국보 제233-1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 대한 명칭과 지정번호 변경이 필요함.

- 해당 석조비로자나불상의 조성목적과 존격을 고려하면, 불상에서 출토된 납석사리호는 비로자나불상의 부속유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지정번호도 그에 따라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한편, 석조비로자나불상과 납석사리호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기적인 성격의 문화재이므로 한 번호로 지정관리되어야 하지만, 현재 두 문화재가 소장처와 소유자 각기 다르므로 명칭과 가지번호로서 두 문화재가 관련성 있는 유물임을 드러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주존격이므로 국보 제233-1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부속유물인 납석사리호는 국보 제233호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에서 국보 제233-2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납석사리호”로 지정번호와 지정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보 고 사 항

안건번호 동산 2016-02-020

1. ‘고려금속활자(증도가자)’ 지정조사 중간보고

가. 보고사항

‘증도가자’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고려금속활자’ 지정조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증도가자’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고려금속활자’ 지정조사의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하는 것임.

다. 지정신청 대상 개요

○ 명칭 / 수량 : 증도가자 / 101점
○ 지정현황 : 비지정
○ 소유자 / 소재 : 이** / 서울 종로구
○ 크기 / 재질 : 각 가로 12.55 ~ 16.68 × 세로 11.62 ~ 15.57mm /금속

라. 주요경과

□ 지정 검토 및 연구용역 완료

○ ’11.10.06 : “증도가자” 보물 지정 신청
○ ’11.12.13 : 문화재위원회 보고(소위원회에서 지정가치 검토)
○ ‘12.10.11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출처 불명, 진위판별 후 지정절차 진행)
○ ’13.01.29 : 증도가자 현지 실견조사(조사연구 축적이후 지정검토)
○ ’13.02.14 : 문화재위원회 보고(지정추진 보류)
○ ’13.06.18 : 지정신청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촉구
○ ’13.10.10 : 문화재위원회 보고(종합학술조사 필요)
○ ’14.12.19 :「증도가자 기초학술조사 연구용역」완료(국립문화재연구소)

□ 지정조사 실시

○ '15.02.12. : 문화재위원회 보고(지정조사 실시 의결)
○ '15.06.04. : '고려금속활자' 지정조사단 구성(3개 분야 12명)
○ '15.08.11./09.18./10.07. : 분야별(연대측정/서체비교/제작기법) 회의 개최
○ '15.12.02. : 고려금속활자 지정조사단 제2차 전체 회의 및 조사계획 확정
○ '15.12.30. : 신청 대상 101점 실견조사 및 1차 분석 대상 16점 선정
○ '16.1.25. :『남명천화상송증도가』 3종 인본 실견조사
○ '16.1.2.~3.17. : 국립문화재연구소 16점 1차 분석
○ '16.1.18.~ : 국립과학수사원 『남명천화상송증도가』3종 인본간 변화율 분석
○ '16.4.8. : '고려금속활자' 지정조사단 제3차 전체회의

마. 고려금속활자 지정조사 중간 보고

□ 국립문화재연구소 과학분석

○ 1차 분석대상 16점 비파괴조사 완료 및 데이터분석**(완료)**
○ 분석결과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일부 유물의 파괴분석을 통해 비파괴분석 보완
- 활자 내부 성분분석(ICP · SEM-EDS)
- 부식화합물에 대한 XRD · 라만분광분석
- 납동위원소 분석 등
○ 나머지 85점에 대한 전수 분석

※ 보완사항
○ 한국기초과학연구원과 파괴분석 공동 수행(85점 비파괴조사 추가협의 예정)
○ 과학분석에 대한 소유자 동의(파괴+비파괴 총 101점)
○ 분석자문단 5명 위촉

□ 국립과학수사원 서체분석

○ '남명천화상송증도가' 인본 3종 간 인출 선후 관계에 따른 '변화율'**(진행중)**
○ '남명천화상송증도가' 선인출본과 증도가 활자와의 '일치율'
- 59개 활자(증도가자)의 모형 제작 및 실험을 통한 서체 비교
○ 금속활자 및 주자본(금속활자본)과 복각본 간 '일치율' 또는 '변화율'

구분	금속활자	주자본	복각본	비고
초주갑인자	없음	보물 제523호 석보상절	보물 제523-3호 석보상절	
임진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속활자	속명의록 (일산 古2156-5)	속명의록 (한 古朝31-530)	

□ 고려금속활자 지정조사단

○ 동시대 금속활자본의 특징 연구**(진행중)**

○ 주조, 조판 검증

바. 의결사항

○ 원안접수

안건번호 동산 2016-02-021

2. ‘동산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현상변경 관련 제도개선 보고

가. 보고사항

동산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현상변경과 관련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2016년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시(‘16.2.4. 목) 동산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의 일괄 현상변경 심의로 당해 문화재 보존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 판단, 보존처리 계획 등 미비점 지적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보고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개선 방안)

○ 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신청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문화재위원 및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예산 신청하도록 제도 개선

○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진행시 사전에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보존처리 방법, 범위, 학술연구 내용, 현 상태의 과학적 조사 분석 등을 작성하여 개별적으로 현상변경 심의 진행

- 다수 안건인 점을 감안 소위원회 구성 운영하는 방안 검토

○ 매년 청에서 실시하는 정기조사도 과학적 조사를 병행 진행해 다음연도 예산신청 시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조사 진행

라. 기대효과

○ 지자체의 자체조사 강화, 보존처리 전 과학적 방법을 통한 예비조사 강화 등 동산문화재 국고보조사업 보존처리 업무 프로세스를 체계화하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품질향상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안건번호 동산 2016-02-022

3.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현상변경 심의 소위원회 구성(안) 보고

가. 보고사항

동산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현상변경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과 관련해 보고합니다.

나. 관련근거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8조) ①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이 지정한다.

◇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6조) ①문화재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사전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안건 또는 법 제8조1항의 사항에 대한 심의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다. 보고사유

○ 당해 문화재 보존처리 계획에 대한 적절성,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와 보존처리에 대한 인문학적, 과학적 조사를 바탕으로 보존처리의 범위, 방법 등에 대해 면밀한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보고드림.

라. 주요내용

○ **(기능 및 범위)** 동산문화재 현상변경 안건(보존처리 국고보조사업) 심의

○ **(위원회의 구성)** 10명 내외로 구성(인문 분야+과학 분야)

* 현상변경 안건 심의 시 인력풀에서 관련전문가를 선정하여 심의

마. 향후 계획(방향)

○ '16년도 동산문화재 국고보조사업부터 소위원회 구성·운영

○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계획서에 대해 충실한 인문학적·과학적 관점에서 개별 건별 현상변경 심의 진행

○ 지자체 담당자 또는 보존처리 전문가가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보존처리 계획을 직접 설명하는 절차 신설

○ 보존처리 결과보고서 검토, 우수 보존처리업체 선정 등

바. 의결사항

○ 원안접수